연구보고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가정·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이혜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용교(광주대학교·교수)
이향란(한국아동정책연구소·소장)
연구보조원 : 윤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빈곤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문제, 욕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아울러 이들이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주요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자료 수집 및 관련개념 정의, 이론 정립,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복지정책 파악 둘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과 현장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셋째, 문헌연구와 인터넷 자료조사를 통한 영국, 미국, 일본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사례 선정·분석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웍샵을 통한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방안 도출 등임.

2. 주요내용

-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관련 이론: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있어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이라는 세 유형의 위기가정들은 부성실조, 모성실조, 모성과 부성의 실조라는 각기 다른 결핍에 의해 다소 서로 다른 양상의 문제와 욕구를 보이고는 있음. 또한 모든 유형의 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불안, 자아정체성, 인지적 발달, 성정체성, 학교부적응, 폭력,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 반면,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및 지원정책: 첫째,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현황파악. 둘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지원,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한부모가족 관련 예산 등과 같은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분석.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가정위탁, 입양제도, 건강가정지원제도 등과 같은 조손가정 관련 지원정책 분석.
- 외국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정책: 영국, 미국, 일본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첫째, 영국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주요한 형태로 제시되는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 NDLP)'을 중심으로 영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주요한 내용과 지원성과와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함. 둘째, 미국의 정액보조금제도(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를 중심으로 미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알아보고자 함. 셋째, 일본 오사카시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일본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자녀양육생활지원, 취업지원, 양육비지원, 경제적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조사결과 : 첫째, 위기가정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부자가정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다른 가정유형청소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음. 둘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조사대상청소년들은 교과과목별, 성별, 교급별로 성적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셋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정서적 발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남녀와 교급별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해야 함. 조사결과 우울감과 불안감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불안감의 경우,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게 나

타났음. 넷째, 가정폭력과 청소년비행에 있어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자칫 무심히 지나치게 되는 가벼운 가정폭력이나 청소년비행에 대해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함. 17.7%의 청소년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로부터 욕을 들은 경험이 있었고, 21%의 청소년이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라는 폭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66%의 청소년이 거짓말이나 남을 속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0% 이상의 청소년이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 적이 있다고 함. 다섯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들 특히 부자가정청소년이나 조손가정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학생과 여자청소년의 경우 또래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섯째, 진로지도와 취업지도를 조기에 실시해야 함. 학교 졸업 후 진로: 조사대상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일반계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며, 실업계고등학교(25.1%), 취업(6.0%), 기타(10.2%) 순으로 응답하였음. 위기가정청소년들은 82%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었음. 또한 3분의2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러한 원의나 기대는 막연한 것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위기가정 청소년들은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지도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첫째, 가정의 유형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 둘째,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셋째,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실무전문가들의 답변에서 아동에게도 경제적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넷째, 학교의 역할로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고, 소외아동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나 시설들과의 협력을 해야 함.

3. 복지지원방안

- 첫째, 한부모가족의 범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함. 둘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증액해야 함. 셋째,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육비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방식의 개혁이 필요함. 다섯째,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부자가정을 위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함. 여섯째, 부자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함. 일곱째,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혼부모를 조기에 돕는 거점기관을 활성화시켜야 함. 여덟째, 양육비조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양육비 확보대책을 세워야 함. 아홉째,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계좌'를 지원. 열 번째, 고용지원 강화를 통한 자활중심의 복지정책 강화. 열한번째, 한부모가정을 위한 홈메이커 서비스를 제도화 함. 열두번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을 제도화 함. 열세번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함. 열네번째,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사정하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조직이 필요함. 열다섯번째,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확대하고 지원을 현실화해야 함. 열여섯번째,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취업 정책을 개발. 열일곱번째, 조손가정을 위한 전담주치의, 간호사 방문 의료서비스 및 간병인 파견제도 실시.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 4
3. 연구의 방법 ····· 6

Ⅱ. 이론적 배경 ····· 13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 15
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 ····· 35
3.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 45

Ⅲ. 외국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정책 ····· 79
1. 영국 ····· 81
2. 미국 ····· 121
3. 일본 ····· 155

Ⅳ.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욕구 ····· 195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결과 ····· 197
2.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70

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방안 ····· 293

참고문헌 ····· 313
부록 ····· 325

표 목차

<표 I-1> 설문 구성내용 ····· 8
<표 II-1> 전국 한부모가구 현황 ····· 37
<표 II-2> 한부모가구 형성요인 ····· 39
<표 II-3>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전체) ····· 40
<표 II-4>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2007년말 기준) ····· 40
<표 II-5>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41
<표 II-6>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개소 수 및 개요 ····· 49
<표 II-7>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 ····· 52
<표 II-8> 가정위탁보호 현황 ····· 61
<표 II-9> 국내외입양 현황 ····· 64
<표 II-10> 시도별 신고정원 및 이용아동 수 ····· 73
<표 II-11> 학년별 이용아동 수 ····· 74
<표 II-12> 상황별 이용아동현황 ····· 75
<표 III-1> 자녀유형별 가족구조 현황 ····· 85
<표 III-2> 가족구조 유형별 아동비율 (단위: %) ····· 86
<표 III-3> 가족구조유형에 따른 요부양아동 수 ····· 87
<표 III-4> 미국의 공공부조 정책 ····· 126
<표 III-5> 미국의 PRWORA와 과제 제도의 비교 ····· 131
<표 III-6> 연방정부의 공공부조 수급자격 조건, 과거와 현재 ····· 134
<표 III-7> 미국 행정부별 EITC제도 변화 ····· 144
<표 III-8> 모자세대가 된 원인별 구성비율 추이 ····· 157
<표 III-9> 부자세대가 된 원인별 구성비율 추이 ····· 158
<표 III-10> 전국모자세대 조사에서 본 모자세대 취업·소득상황 ··· 158
<표 III-11> 모의 취업상황 ····· 159
<표 III-12> 부의 취업상황 ····· 160

<표 III-13> 한부모본인의 고민내용 ····· 160
<표 III-14> 자녀에 대한 고민내용 ····· 161
<표 III-15> 상담상대의 유무 ····· 162
<표 III-16> 모자가산폐지의 경과(아동 1명의 경우, 금액은 1급의 경우) ·· 165
<표 III-17> 2008년도 모자과부복지자금 대부금의 개요 ····· 172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7
<표 IV-2> 가정형편 ····· 198
<표 IV-3> 현재 부모님의 결혼상태 ····· 199
<표 IV-4> 국어성적 ····· 200
<표 IV-5> 영어성적 ····· 201
<표 IV-6> 수학성적 ····· 202
<표 IV-7> 사회성적 ····· 202
<표 IV-8> 과학성적 ····· 203
<표 IV-9>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정유형별 차이 ····· 204
<표 IV-10>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성별/교급별 차이 ····· 204
<표 IV-11> 가정 생활의 어려움 1 ····· 205
<표 IV-12> 가정 생활의 어려움 2 ····· 207
<표 IV-13>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혹은 주먹으로 맞거나) 몽둥이로 맞았다. ····· 208
<표 IV-14> 부모님이 위험한 도구로 나를 위협했다. ····· 208
<표 IV-15>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욕을 한 적이 있다. ····· 209
<표 IV-16>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셨다. ····· 210
<표 IV-17>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 211
<표 IV-18> 나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 212

<표 IV-19>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 212
<표 IV-20>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213
<표 IV-21>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 214
<표 IV-22>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 215
<표 IV-23>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 216
<표 IV-24>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 217
<표 IV-25> 가출을 한 적이 있다. ····· 218
<표 IV-26>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적이 있다. ····· 218
<표 IV-27>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 적이 있다. ····· 219
<표 IV-28>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 220
<표 IV-29> 남을 따돌림 시킨 적이 있다. ····· 221
<표 IV-30> 최근 앓은 질병 ····· 222
<표 IV-31> 현재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사람 ····· 223
<표 IV-32> 공부하기 원하는 장소 ····· 224
<표 IV-34> 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 2 ····· 226
<표 IV-35> 용돈이 여유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226
<표 IV-36> 용돈이 넉넉하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 ····· 227
<표 IV-37>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228
<표 IV-38>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 229
<표 IV-39> 결식 유무 ····· 229
<표 IV-40> 결식 이유 ····· 230
<표 IV-4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정유형별 지지 차이 ····· 231
<표 IV-4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성별/교급별 지지 차이 ····· 231
<표 IV-43> 주말이나 휴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 232
<표 IV-44> 무료지원 프로그램 참여 ····· 233
<표 IV-45>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 234
<표 IV-46>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 235
<표 IV-47>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36

<표 IV-48>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 237
<표 IV-49>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 237
<표 IV-50> 나도 언젠가는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 238
<표 IV-51> 희망 진로 ····· 239
<표 IV-52> 진로선택 이유 ····· 240
<표 IV-53> 희망 학력 ····· 241
<표 IV-54> 대학 진학 가능성 ····· 242
<표 IV-55>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이유 ····· 243
<표 IV-56> 학습향상 위해 필요한 것 ····· 243
<표 IV-57> 학원/개인지도 못 받은 경험 ····· 244
<표 IV-58> 현재 개인지도 받고 있는 것 ····· 245
<표 IV-59> 앞으로 배우거나 하고 싶은 것 ····· 247
<표 IV-60> 현재 갖고 있는 것 ····· 247
<표 IV-61>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 ····· 249
<표 IV-62> 자유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활동 ····· 250
<표 IV-63>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 251
<표 IV-64>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 ···· 253
<표 IV-65> 주로 읽은 독서 분야 1 ····· 254
<표 IV-66> 주로 읽은 독서 분야 2 ····· 256
<표 IV-67>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 258
<표 IV-68> 앞으로 이용 희망하는 서비스 ····· 258
<표 IV-69>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 270
<표 IV-70>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 272
<표 IV-71>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 273
<표 IV-72> 현재 실시중인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 ····· 275
<표 IV-73>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 276
<표 IV-74>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 277
<표 IV-75>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 278

<표 IV-76>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희망하는 프로그램 ····· 279
<표 IV-77>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280
<표 IV-78>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281
<표 IV-79> 정부의 역할 ····· 282
<표 IV-80> 학교의 역할 ····· 283
<표 IV-81>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 284
<표 IV-82> 기타의견 ····· 285

그림 목차

[그림 II-1]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체계 ····· 70
[그림 II-2] 청소년동반자사업 체계도 ····· 72
[그림 III-1] 1996년과 2006년의 영국 가족구조 현황 ····· 84
[그림 III-2] 가족구조 유형별 부양아동의 연령현황 ····· 88
[그림 III-3] 영국의 빈곤아동 추이(단위: 백만명) ····· 90
[그림 III-4] 가족구조유형별 비근로가족의 아동인구 비율 ····· 92
[그림 III-5] 가족유형별 저소득층 인구의 비율 ····· 93
[그림 III-6] 근로활동 비참여 가족의 빈곤위험율 및 가구특성 ····· 94
[그림 III-7] 근로형태별 가족의 아동빈곤 위험율 ····· 95
[그림 III-8] 영국의 아동빈곤율 퇴치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 96
[그림 III-9] 아동가족의 소득증대를 위한 개입전략 ····· 98
[그림 III-10] 2020년 아동빈곤퇴치를 위한 기본전략 ····· 99
[그림 III-11] 근로연령 가구중 세액공제급여 수급가구의 비율 ····· 103
[그림 III-12] 세액공제급여 혜택을 통한 빈곤이탈 아동수 ····· 104
[그림 III-13] 세액공제혜택으로 인해 빈곤이탈이 가능하였던 아동의 가구유형별 비율 ····· 105
[그림 III-14]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기개입 및 예방프로그램 ··· 117
[그림 V-1] 위기가정 아동이 욕구와 프로그램 ····· 303
[그림 V-2] 서비스 흐름도 ····· 305
[그림 V-3] 사회적 보호망 구축을 위한 각 수준에서의 과제 ····· 306
[그림 V-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 308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위기가정은 양극화와 빈곤, 가족해체가 급증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한 가족형태로 빈곤가정,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조부모가 자녀세대 없이 미성년인 손자녀의 양육에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조손가정 등을 포함한다(최해경, 2006). 이러한 위기가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구조적, 기능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위기가정 현황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수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명숙(2009)의 연구에 의하면 우선 아동·청소년의 절대빈곤율을 보면 2001년 5.4%에서 2006년 8.5%로 증가하였으며(통계청, 2001-2006), 1-5분위간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2003년 4.8배에서 2006년 6.1배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3-2006). 또한 불안정한 가족의 증가와 함께 가정의 자녀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1996년 1.7건에서 2007년 2.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통계청, 1996-2007), 한부모 가구수가 1990년에 889천 가구이던 것이 2006년에는 1,370천 가구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0-2006). 조손가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995년에 35,194가구이던 것이 2000년에 45,224가구, 2005년에는 58,101가구까지 증가하였고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 노인인구 486만 명 중 174,960명 정도의 노인이 조손가정 조부모로 추정된다. 조손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평균 7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조손가족이 신빈곤층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여성부, 2007).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의 증가도 신빈곤층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3년-2007년 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비빈곤층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감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친구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물질스트레스가

높고, 무관심, 무흥미, 자살충동과 같은 우울정서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비빈곤층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만성형 비행으로 발달할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한 부모 결손은 자녀의 성격형성 및 사회적응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적응문제와 공격성, 불안, 과잉행동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순애, 1989; 이정이, 2007).

따라서 빈곤과 가정해체라는 이중적인 고통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 및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원 정책의 모색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아동・청소년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과 같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으로 범주화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실시되어 왔으나 기존의 연구는 심리사회적 특성 및 행동문제 또는 관련 정책 등 부분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현황과 문제, 욕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분석과 아울러 이들이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관련 이론

빈곤과 한부모가정・조손가정의 개념,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범주,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여 설문조사 내용구성에 반영한다.

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및 지원정책

첫째,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지원,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 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한부모가족 관련 예산 등과 같은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을 분석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가정위탁, 입양제도, 건강가정지원제도 등과 같은 조손가정 관련 지원정책을 분석한다. 넷째, 이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한계점을 파악하고 차후 지원정책 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외국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영국, 미국, 일본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영국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주요한 형태로 제시되는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 NDLP)'을 중심으로 영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주요한 내용과 지원성과와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정액보조금제도(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를 중심으로 미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일본 오사카시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일본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자녀양육생활지원, 취업지원, 양육비지원, 경제적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욕구 파악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지니고 있는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설문내용은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성역할정체성,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공격성, 비행 등), (2) 생존욕구(건강, 의식주, 경제), (3) 관계욕구(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4) 성장욕구(학업 및 진로, 여가, 지역사회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5)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방안 모색

국내외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정책 분석과 위기가정 아동·청소년과 현장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가정 유형별 즉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즉 세 가정유형별 아동·청소년의 차이를 고려한 복지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또한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와 같이 이 연구조사에서 파악된 복지욕구 결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지원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첫째, 연구 관련 이론을 정립하고, 둘째, 관련 통계 및 정책을 제시하고, 셋째,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고, 넷째, 외국정책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학계와 현장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과 내용, 설문조사 대상 선정방법 및 조사방법, 설문영역 및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한다.

3) 설문조사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①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990명과 이들과의 비교를 위한 일반가정 아동・청소년 330명 즉 총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	
표집틀	- 전국 지역아동센터 명단	
표본수	-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일반가정 아동・청소년 각 330명씩 총 1,320명	
표집방법	- 층화할당표집 -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연령(초등학교 5-6학년, 중학생), 성별을 고려하여 표집한다.	
조사시기	- 9-10월	

② 조사내용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복지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첫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있어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이라는 세 유형의 위기가정들은 부성실조, 모성실조, 모성과 부성의 실조라는 각기 다른 결핍에 의해 다소 서로 다른 양상의 문제와 욕구를 보이고는 있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불안, 자아정체성, 인지적 발달, 성정체성, 학교부적응, 폭력, 아동학

대와 방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 반면,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러한 모든 유형의 위기가정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위기가정 유형별로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서는 욕구위계론의 5단계 욕구수준을 3단계로 수정하여 욕구위계 이론을 제시한 C. Alderfer의 욕구이론을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욕구조사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Alderfer가 주장한 세 단계의 욕구인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 이 연구의 청소년 복지욕구의 세 가지의 욕구영역으로 잡고, 다음과 같이 청소년 복지욕구의 분석틀을 만들었다.

1) 생존욕구 : 의・식・주, 건강・의료, 경제
2) 관계욕구 :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3) 성장욕구 : 자아, 교육, 직업, 문화・여가활동

따라서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아래 설문지의 구성내용과 같이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비행
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생존욕구
3)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관계욕구
4)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성장욕구로 영역화 되어 분석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표 I-1> 설문 구성내용

전체영역	항목	설문내용
Ⅰ. 문제와 비행	정서문제	성역할 정체성[1]
		자아존중감[2]
		우울[3]
		불안[4]
		공격성[5]

전체영역	항목	설문내용
Ⅰ. 문제와 비행	학교 부적응	학교생활 적응정도
		등교하기 싫었던 경험여부, 등교하기 싫은 이유
		결석일수, 결석이유
	가정문제	가정생활의 어려움
		미래 행복 예감도
		가정학대 방임[6]
	비행	흡연
		음주
		절도
		폭행
		갈취
		무단결석
		가출
		거짓말
		욕설
		성인사이트 접속
Ⅱ. 생존욕구	건강	질병유무, 질병 치료유무
		건강관련 어려움
	주생활	공동으로 방을 쓰는 사람
		희망 공부장소
		희망 주거개선 사업
	경제	한달 평균용돈, 용돈 만족도 희망 한달 용돈, 용돈 희망 사용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액수, 종류, 이유

1) 이유희(2008). 중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성역할검사(KSRI)문항 중 남성성 10문항과 여성성 10문항 사용.

2)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3) Achenbach, T. M.(1991). 아동용 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 List : CBCL) 중 우울에 관한 문항을 사용.

4) 성지혜(2001).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불안측정 문항 중 10문항만 사용.

5) 이영진(2008). 결손가정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 공격성 검사 30문항 중 10문항만 사용.

6) Straus(1990). 갈등전술척도(Conflict Tactics, CT)와 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2002). 아동학대척도를 사용.

전체영역	항목	설문내용
Ⅲ. 관계욕구	가족·친구·학교·지역사회	가정지지·또래지지·학교지지·지역사회지지[7]
		방과 후 함께 지내는 사람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참여여부, 희망 프로그램, 불참 이유
		교사에 대한 희망사항
		친구와의 모임횟수, 만나는 장소, 원하는 친구역할
		방과 후 활동지도자 필요여부, 활동의 도움 형태, 적합한 지도자, 적절한 장소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받은 경험, 서비스 제공 받았을 때 드는 생각
Ⅳ. 성장욕구	학업 및 진로	중졸 후 진로선택, 진로선택 이유, 희망 최종학력
		대학진학 계획 여부, 대학 미진학 이유
		학습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현재 수강내용, 희망 수강내용
		희망직업
	여가	전자기기 보유현황
		현재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여가활동 장애요인
		한달 평균 독서량 및 즐겨 읽는 독서 분야
	지역사회 서비스	앞으로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Ⅳ. 일반사항		성별
		학교
		가정형편
		부모님의 결혼 상태
		부모 및 조부모의 교육정도
		동거 가족원
		학교 성적

7)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척도수정하여 사용.

③ 분석방법

조사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 17.0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변수의 특성별로 빈도와 백분율 혹은 평균값을 구한 후 사회인구학적 특성(가정유형, 연령, 교급, 지역)별 분포나 평균 차이를 빈도(%) 분포의 경우 분할표 분석(crosstabs)과 Pearson's Chi 검증을 통해, 평균차이의 경우 t-test나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2) 현장전문가 조사

① 조사대상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전문가	
표집틀	- 전국 지역아동센터 명단	
표본수	- 110기관의 실무자 110명	
표집방법	- 층화임의추출법 - 특별·광역시 자치구,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을 고려하여 표집한다.	
조사시기	- 8-9월	

지역아동센터의 실무자 11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일반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복지지원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지 63부를 회수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② 조사내용

빈곤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빈곤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현행 서비스 프로그램과 장차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빈곤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 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정책협의회

연구주제 관련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기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실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
3.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Ⅱ. 이론적 배경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에서는 빈곤과 가정해체라는 이중적인 고통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위기가정으로 보고, 연구 대상을 빈곤한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정(모자가정, 부자가정)[8]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이론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빈곤과 한부모가정・조손가정의 개념

빈곤은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의 결핍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원의 결핍상태라 할 수 있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박용순, 2001)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은 기준이 되는 빈곤선(poverty line), 즉 최저생활의 기본수요를 추정함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스트리턴과 버어키(P. Streeten & S. Burki)는 생활의 기본수요인 최저생활수준을 다음의 세 단계 즉. 최저생존(bare survival)을 위한 수준, 지속된 생존(continued survival)을

8) 가족은 가정, 가구 등과 다른 낱말이지만, 혼용되기도 한다. 가족(家族)의 사전적 의미는 “ 1)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 2)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이다. 가족이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강조한다면, 가정(家庭)은 “1)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2)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와 같이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라는 물리적인 시설을 강조한다. 하지만 가족의 2의 정의와 가정의 2의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과 가정은 혼용되기도 한다. 한편 가구(家口)는 “1) 집안 식구, 2) 집안의 사람 수효, 3)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하는데, 특히 인구및주택총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가족이 한 가정에서 살 경우에는 가구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주말부부처럼 분거할 경우에는 한 가족에 두 가구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가급적 가족 혹은 가정이란 낱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위한 수준, 생산적 생존(productive survival)에 필요한 수준으로 구분하고 절대적 빈곤이란 신체적인 건강과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수요가 결여된 상태라고 정의한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 이렇게 빈곤을 일반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과는 별개의 생존 개념으로 본 반면,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 하에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은 한 사회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정의하는 경우이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에 의해 결정되지만, 상대적 빈곤은 중간계층의 가족소득비율을 빈곤선으로 단정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순수상대빈곤(pure-relative poverty)과 유사상대빈곤(quasi-relative poverty)이 있다. 즉 순수상대빈곤은 전체 사회의 계층별 소득순위에서 하위층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이다. 유사상대빈곤은 전체 사회에서 평균소득에 해당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순수상대빈곤 개념을 취하여 소득순위 하위층에 해당하는 빈곤가정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Schelstinger(1969)는 한부모가정을 '부모 중 한쪽과 18세 이하의 자녀가 함께 사는 부모-자녀 집단'이라고 보았고, Again, Orthner, Brown, Ferguson(1976) 등은 한부모가정을 '한 가정에 사는 한쪽 부모와 요보호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하였다(김은정, 2007).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1984)에서는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편부모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결손, 결핍의 의미가 강한 '편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한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으나 한쪽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을 '부모 중 한쪽의 이혼 및 사별,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되며, 부 또는 모가 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활전반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정'으로 정의하며, 결합형태에 따라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조손가정 조부모의 개념은 성인자녀가 가출, 사망, 이혼, 실직, 약물남용 등으로 인해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대신 손자녀를 양육하며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조부모로 정의된다(서혜석, 2004). 박창기(2002)는 조부모-손자녀 가족을 '아동의 부모가 사망이나 이혼, 가출 등으로 원가족이 해체되어 현재 조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간 혹은 영속적으로 생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가족기능이 수행되는 가족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김정은(2001), 김혜선(2005), 이희섭(2004) 등은 조손가정을 '가족해체 등의 원인으로 인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과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아동과 함께 살며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활전반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조손가정을 '자녀세대의 가족해체로 그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조부모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생활하며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활전반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정'으로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범주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빈곤에 대한 이론 중 순수상대빈곤 개념을 취하여 소득순위 하위층에 해당하는 빈곤가정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식제공 등의 사유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가정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단 그리고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하여 빈곤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08)[9]는 빈곤아동을 “경제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문화적인 결핍상태에 있는 아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자원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된 상황에 처해 있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없는 모든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의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반아동의 비율이 30%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일반아동 역시 수급자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의 아동으로 판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가정 아동·청소년 중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라는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님으로 인해 이중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3)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

빈곤과 가정해체라는 이중적인 고통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위기가정이라고 보는 이 연구의 위기가정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 즉 그 문제와 욕구를 (1) 빈곤가정, 한부모가정을 결합형태에 따라 분류한 (2) 모자가정과 (3) 부자가정, 그리고 (4)조손가정으로 유형화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출생시 저체중,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실직, 모성의 우울, 사회적 지지의 결핍,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태도 등과 같은 생물학적·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빈곤

9) 이향란(2009).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새미나 자료집 09-S-02.

관련 요인들은 아동·청소년 발달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Brooks-Gunn, 1993; Huston, 1991; Liaw & Brooks-Gunn, 1933; McLoyd, 1990, 1998).

정보처리이론(social information-processing theory)에 따르면 빈곤은 인지능력의 부족이나 학업성취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빈곤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이나 기회 획득의 가능성이 낮다. 즉 빈곤한 가족은 책, 장난감, 컴퓨터 등과 같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확률이 낮아진다(Mayer, 1997a; Downey, 1994; Gerard & Buehler, 1999; Seccombe, 2000). 인지능력이 개발되면 특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생각해내고 그 중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높으면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신호에만 선별적으로 관심을 집중한다(Dodge & Newman, 1981; Gouze, 1987). 그리고 신호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무슨 신호든 그 의도가 적대적인 것으로 귀속시켜 버리는 편견(attributional bias)을 보인다(Dodge & Feldman, 1990; Dodge & Coie, 1987). 또한 Rubin(1991) 등의 학자들은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은 초기 반응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다른 종류의 반응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하였다(모상현 외, 2009, 재인용).

정보처리 단계에서의 여러 형태의 결핍도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를 가져온다. 이러한 소외는 항상 타인의 신호를 적대적인 것으로 귀속시켜버리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형태의 반응적인 공격성을 가져오게 된다. 귀속편견은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아동·청소년이 다른 아동·청소년들의 행동에 좀 더 공격적이고 보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다른 아동·청소년들도 그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좀 더 심하게 집단따돌림 시키도록 한다(Hymel, Wagner & Butler, 1990; Perry, Kusel & Perry, 1988).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으며

(Olweus, 1993) 이는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된다(송미원, 1999; 최진희, 2000; Hoover & Hazler, 1991).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수준 높은 단어의 사용, 글씨에 대한 흥미 등 언어적 측면의 발달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빈곤가정의 언어적 결핍을 확연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이재연 외, 1997; 권중돈, 2000). 빈곤아동・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언어발달은 부모와 아동・청소년간의 상호작용 부족과 잘못된 양육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박소혜, 1995).

빈곤아동・청소년들은 문제해결에서 언어적인 방법보다는 물리적 방법을 선호하며, 친구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친구 및 교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Mayer, 1997a; Seccombe, 2000; 유희정, 1996).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은 특히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peer rejection)는 좀 더 심각한 비행의 원인인 동시에 초기 부정적 행동의 결과이기도 하다(Coie & Miller-Johnson, 2001).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공격적 아동・청소년들은 일반 공격적 아동・청소년보다 훨씬 더 만성적 비행에 빠져들 위험이 높다. 청소년기가 되면 소외받던 아동・청소년들끼리 비행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또래집단은 심각한 비행의 좋은 훈련장소가 된다(Patterson & Bank, 1989; Patterson, Capakdi & Bank, 1991).

미국의 자료(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8)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7배나 높았으며, 발생하는 학대의 수준도 저소득층에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Downs, Costin, McFadden, 1996). 빈곤가족 내에서 특히 방임의 비율이 높다(Sedlak & Broadhurst, 1996). 피학대, 방임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정서적 문제, 성 문제, 알콜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며, 심각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English, 1998; Start, MacLean & Keating, 1991).

박현선(1998a)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소가 부정적・갈등적 가족과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빈곤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관심

을 받으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강조하였다. Garmezy(1991, 1993)와 Werner(1990)는 학교분위기 자체가 학생의 욕구에 반응적이고, 뚜렷한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가 존재하고,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 및 그 이외의 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모상현 외, 2009, 재인용).

빈곤아동・청소년의 발달을 설명하는 보호요인 관련 이론은 빈곤이라는 상황에서 적응의 개인차를 보다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Hernandez, 1993; 박현선, 1998a, 1998b).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어린 시절부터 양육자와 기본적인 신뢰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했으며, 서로 가족내 역할에 협조적이고, 통제와 애정이 적절하게 균형잡힌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이루어질 때, 적응유연성이 발달할 수 있는 가족분위기가 된다. 또한 자녀와 부모가 가치를 공유하고,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며, 가족 내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가족응집력이 높고, 부모 및 자녀의 역할이 잘 규정되어 있는 가정이 보호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ock & Block, 1980; Clark, 1983; Garmezy, 1991; Kirby & Fraser, 1997; Rutter, 1990; Werner, 1990; Werner & Smith, 1987).

(2)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가 제공하는 경제적 및 사회정서적 자원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모자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존재하는 일반가정에 비해 3~4배 정도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과 공동의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관여가 높은 가정에서 비행, 약물남용, 불안, 우울증 등과 같은 아동기 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mato & Rivera, 1999; Harris, Furstenberg, & Marmer, 1998; Harris & Marmer, 1996; Zimmerman, Salem & Maton, 1995).

모자가정은 부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문제 그리고 모의 취업문제 등을 갖게 된다. 특히 저소득인 경우에는 부의 부재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모를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전선에 나가게 하지만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 대부분이 시간제가 많고 전형적인 저임금 직종이어서 취업만으로 그들의 가계를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모자가정은 절대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하여 여성한부모의 건강이나 생존전략에 따라 빈곤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이소희 외, 1997).

생계를 위한 직업에 전념하게 되면서 더욱 과중한 역할 수행으로 자신이 지칠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 충분히 돌보아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양육에 있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일관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빈곤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일반 여성한부모에 비해 더욱 복합적인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민가영, 2004; 재인용).

모자가정의 여성은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자녀에게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야한다는 점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남편상실에 대한 소외감, 비애감이 과잉행동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불분명한 분노감과 적대감이 역기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립감이 심해질 경우, 무력감과 세상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절망감, 사회로부터의 거부감, 부양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무능력하고 부적절한 존재로 간주하게 되는 등 우울과 불안, 소외감에 빠져들 수 있다(김영희, 1996; 재인용).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빈곤층 모자가정의 경우 거부적 양육태도와 처벌적인 훈육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자가정 아동은 남성다운 것을 배우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더 복종적이고, 덜 공격적이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김순애, 1987). 반대로 자신의 이러한 경향을 감추기 위해 더 과격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내고 감정적으로 동요함이 없이 모친의 역할과 부친의

역할을 잘 조화시킨다면 자녀는 도리어 협력적이고 애정적이 되어 자제력도 갖출 수 있고, 아버지상에 접근할 대리적 모델이 있다면 발달과정에 별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병림, 1984).

부와 자녀관계에서 부는 경제적 담당자로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의 표본이 된다. 그리고 자녀들의 좋은 동료적 역할을 하며, 아버지는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자의 역할을 한다. 부의 결손으로 인한 감독관 및 동일시 대상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통념과 편견에서 오는 압박감과 열등감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자녀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하루아침에 사라짐으로써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은 가정의 어려움 및 주변사람의 편견과 함께 작용하여 자녀의 부적응이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은 한쪽 부모의 상실로 인해 부모역할의 질적·양적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부모가족에 비해 학교성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 부의 결손은 여성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의 학업성취와 지적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김정자, 1984)가 나타나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부를 상실한 후 자녀의 성적이 나빠진 경우가 많았으며, 학업성적이 나빠진 이유로는 '모가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와 '공부에 전념할 환경이 못 되어서'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모의 역할과중에 의해 소홀히 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부의 결손이 남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남성답기보다는 여성적이고 성숙하여 독립성이 많으며, 사회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복종적이며 헌신적인 면이 있으며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애, 1985). 또한 여아에게는 부결손이 남성과의 대인관계에 혼란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의 여자청소년들은 남자 앞에서 억압적이 되고 딱딱하고 회피적이 되거나 반대로 남성에게 주의를 끌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유재선, 1989).

또한 모자가정의 원인이 부의 사망 혹은 이혼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가정일 경우의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이나 열등감이 심하다. 이는 이혼 이전에 부모들 간의 갈등이나 불화를 경험에 왔고 그 여파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문제가 언제나 심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뢰를 가진 한쪽 부 또는 모만 있음으로 인해 일관성 있게 양육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안진희, 2005; 재인용).

(3)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

이혼이나 가출, 유기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한 부자가정이 늘어나면서 부자가정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과 가사역할에 대한 부담감, 심리적인 불안감 등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부자가정에서의 문제는 직장생활과 부재한 모를 대신하여 가사와 아동양육을 병행하는 데서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되어 온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갑자기 맡게 된 아버지의 경우,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직장에서 시간을 적게 보내고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직장에 충실할 수 없게 되는 등 이중의 책임으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저학력, 기술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단순노무나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으며(신수자, 1995), 이러한 직업들은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못하므로 가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모자가정보다는 부자가정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감성적인 표현과 애정표현 등이 어머니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인성형성과정, 심리적 문제해결, 건강문제 등 자녀의 제반사에 도움을 주며, 자녀가 독자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기 시작하는 아동 후기부터의 자아형성 과정과 자기수용의 태도 및 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와의 이별은 절대적인 대상의 상실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이다. 이는 곧 모성실조현상을 수반하여

유아에게 신체발달지연현상을 보이거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자기고립상태와 같은 심리적 증후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녀의 동일시대상상실로 인한 역할수행상의 혼란, 심리적 고독감, 애정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표현 및 수용의 좌절,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안진희, 2005; 재인용).

양부모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 중 위축과 우울, 불안영역에 있어서 부자가정 자녀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자가정의 여자아동들은 남자아동들보다 사회적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여주고 있다. Wallerstein와 Kelly의 조사에 의하면, 어머니는 딸을 양육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양육하기가 편하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필요한 상식을 주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아버지가 양육하는 딸은 아버지가 양육하는 아들보다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탈행위가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신건희, 1995; 오승환, 2001).

또한 그들은 가사처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부모에 대한 원망 및 가족에 대한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선화 외, 1998; 고순생, 2001 재인용). 실제로 많은 연구(신수자 1995; 전재일 외, 1999; 고순생 2001; 한민수, 2001; 정윤남 2002)에서도 상당수의 부자가정에서 가사책임을 아동과 함께 분담한다고 나타났으며, 정윤남(2002)의 연구에서는 가사(밥짓기, 청소, 빨래 등)를 돕고 있는 청소년의 성 비율이 여자 71.9%, 남자 28.1%로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가사를 분담하고 있었다. 또한 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 가사처리를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1.2%로 나타났다.

부자가정에서는 반 이상의 아버지가 자녀를 구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녀들에게 매 맞은 이유를 물었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야단을 맞았다는 생각보다 아버지의 주벽이나 화풀이로 인해 매를 맞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신수자, 1995).

부자가정의 아동은 가정생활과 학업생활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모의 부재로 인해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방임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이영주, 1999).

부자가정의 경우, 양부모가정이나 모자가정에 비해 아동학대나 방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39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을 학대하는 가정의 유형은 부자가정(33.7%), 일반가정(25.3%), 모자가정(14.2%), 재혼가정(6.8%) 순으로 나타나, 부자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고생순(200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의 장기간 부재 시 자녀양육의 대처방안으로 67.8%가 '집에 그냥 둔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부자가정 아동의 방임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모의 가출 혹은 이혼으로 부자가정이 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의 방임과 학대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여준다. 부자가정의 경우 부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혹은 구직을 위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아동들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학대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보건은 충분한 영향섭취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건으로 하지만 모의 부재는 불결, 결식, 영양실조 등과 결합되기 때문에 부자가정의 아동들은 모자가정의 아동들보다 질병에 보다 많이 노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업지도, 가사일 모두를 어머니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어머니의 부재는 아동에게 상대적인 열등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한다(이채영, 2007; 재인용). 물질적이고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가정사정으로 인한 불결, 약한 체질, 학업성적의 하락 등으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

조손가정(족)이란 용어사용과 함께 조손가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IMF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가족해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가족유형의 하나이다. 그리고 199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2세대가구 가운데 조손가구를 분리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손가정에 대

한 실체와 그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변화순 외, 2000).

대체로 조부모가 그들의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는 먼저, 사고나 질병, 실직, 이혼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기존의 가족관계가 해체되면서 성인자녀가 더 이상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성인자녀의 취업과 사회참여로 인하여 조부모가 일시 혹은 특정시기까지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대별된다(이미영, 1007; 이상현, 2005). 이 가운데 성인자녀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손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기까지 한정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중한 역할과 책임이 부과되는데, 지금까지의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염동훈 외, 2007).

노년기에 조부모로서의 역할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제공하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맡지 않은 채 손자녀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한국여성복지연구회, 2005).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손가정 조부모들은 자신이 손자녀를 양육해야 할 유일한 혈육이라는 절대적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손자녀 양육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노년기에서 겪을 수 있는 외로움,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돌봐야하는 부담감과 갈등, 신체적인 한계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양육 및 훈육행동의 질을 저하하게 하고, 손자녀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격적, 정서적 결함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이화진, 2004). 실제로 조손가정의 손자녀에 대한 성지혜(2001), 신은정(2004), 정효미(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손가정 손자녀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함께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고 가족기능에 대해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은 우울, 불안, 철회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Guidubaldi, Joseph, Perry & Cleminshawl, 1984; Fordhand, Middleton & Longo, 1987)를 갖는다. 그리고 부모의 부재에 의해 남겨진 허탈감(Houtman, 1999)뿐만 아

니라 두려움, 당혹감, 분노 또는 숨겨진 분노 등으로 인해 정서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Brown, 2003).

그리고 아동들은 조손가정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받아(Rogers & Henkin, 2000)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는 등 사회 적응에의 문제를 보이며, 낮은 인지적 및 사회적 능력(Fordhand et al., 1987)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행과 일탈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로 인해 높은 공격성 및 행동장애 등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Peterson & Zill, 1986), 학교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생물학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있는 관계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적어도 40년 이상의 연령간격이 있으며 이것은 양자의 사회적 지위, 권위뿐만 아니라 사상, 가치, 즐거움, 취미 등에 있어서조차도 넘어설 수 없는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 세대보다 가족 간의 벽이 높으며 의사소통 역시 원활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족기능이 낮아진다(신은정, 2004). 이렇듯 조부모와 손자녀를 연결해주는 중간세대의 부재는 서로에 대해 더욱 끈끈한 정을 느끼게도 하지만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과, 전적으로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양가감정을 경험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손자녀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또한 중요한데, 양육자의 연령과 건강상의 문제 및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가정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손자녀들은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등 1차 양육자의 결손경험과 조부모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2차 양육자마저도 사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에 더해지는 경제적 어려움, 지지체계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 등 다양한 요인의 심리적인 불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감은 우울 및 불안, 공포에 대한 감정을 낳게 되고 이는 학업부진, 공격, 도벽,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문제를 표출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적응의 징후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까지 심각한 장애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욱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홍경자, 1986; 성지혜, 2001: 14 재인용).

박창기(2002)의 농촌지역 조손가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가족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부모-손자녀 간 대화정도와 조부모의 양육보람정도를 밝히고 있으며, 친밀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 가족기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지혜(2001)는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우울 및 불안 수준을 파악하고, 특히 사회적 지지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이들의 불안 수준은 일반가정의 아동과 비교적 차이가 없지만, 우울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요인으로 성적과 사회적 지지 중 선생님 지지가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김성미(2002)의 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연구에서 일반가정의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중 자기수용성과 친밀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가정의 구조적인 결손이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최은희(2006)의 연구에서 밝혀진 조손가정 손자녀의 특성으로는 스스로 공부하며 효행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아동도 있지만, 내성적이고 애어른 같으며 말이 없고 무뚝뚝하거나, 성격장애로 인해 소극적이고 소심한 경우, 불만이 많고 폭력적인 경우 등 다양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부모와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성격이 소심해서 또래 친구들에게 구타당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빈곤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이 그 유형별로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양육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 유형의 위기가정들은 부성실조, 모성실조, 모성과 부성의 실조라는 각기 다른 결핍에 의해 다소 서로 다른 양상의 문제와 욕구를 보이고는 있으나, 모든 유형의 가정들이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불안, 자아정체성, 인지적 발달, 성정체성, 학교부적응, 폭력,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 반면,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러한 모든 유형의 위기가정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위기가정 유형별로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위기가정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

이 연구는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복지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1절에서 파악한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Kahn(1969)은 “욕구란 주어진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회의 전반적 진행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고, 적절한 수준의 활동력 및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욕구란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필요에 의해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생존과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하여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영양, 보건, 직업, 소득, 지식, 사회참여, 정치활동, 개인의 자유 등이 욕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그 자체는 욕구가 아니며 개인이나 집단이 그것들을 필요로 하여 구할 때 이를 욕구라 할 수 있다. (김성이・채구묵, 1997 : 16 재인용).

청소년의 복지욕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가 욕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특정집단이나 지역주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청소년 복지욕구 조사 역시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H. A.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설명하였다.

(1) H. A. Maslow의 욕구위계론

Maslow는 인간이란 누구나 내면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을 성장하게 하고 발달하게 하며 인간 자신을 실현시키고 인간 모두를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면서 심리적인 건강과 성숙을 향한 잠재능력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Maslow는 인간의 욕구와 그것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간 동기화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욕구를 갖는 존재로서 항상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둘째, 만족의 욕구는 더 이상 행위의 동기 요인이 되지 못한다.

셋째, 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욕구체계를 이룬다.

즉 인간은 여러 가지 선천적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 욕구들은 위계가 있어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단계의 욕구가 나타나고, 더 높은 단계로 갈수록 보다 바람직하다는 욕구의 위계를 주장하였다. 그 욕구를 낮은 단계로부터 열거하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단계로 나누어진다.

①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생리적 욕구는 계층의 가장 낮은데 놓여져 있다. 이 욕구는 의·식·주 등을 포함한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기본적 욕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단계의 욕구나 동기의 충족만을 추구하게 되어 보다 상위의 욕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②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안전의 욕구는 확실성, 예측성, 질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인간은 일단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안전의 욕구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난다. 어린이가 낯선 사람을 피하려는 경향이나 성인이 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에서 잘 나타난다.

③ 소속·사랑의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욕구로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여러 집단에 소속하고 싶어하고, 수용되고 싶어하며, 우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게된다는 것이다. 이 욕구가 강하면 다른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려는 행동이 높아지지만, 이 욕구가 결여되면 조직목표 달성은 외면당하게 된다.

④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존경의 욕구는 자기존중과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전자는 자신의 능력, 적합성 등이 포함되며 후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식, 수용, 주목, 명성 등이 포함된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좌절감, 열등감, 무력감 등을 초래한다.

⑤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아발전을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하는데 있어, 시인은 시를 쓰는데 있어, 교수는 교육하는데 있어 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이다. 이 욕구는 전제한 모든 욕구들이 충족되어야만 나타나게 된다.

이들 이론의 특징은 각 욕구가 위계적 질서를 이루고 있어서 하위욕구가 충족되기 전에는 상위욕구가 나타나지 않으며 동기부여도 상위욕구가 충족되기 전의 하위수준의 욕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Maslow의 이러한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은 한편 비판도 받았지만 대체로 인간 욕구를 체계화하고 수준을 구별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사회계획과 관련해 그의 주장은 계획가가 대상집단의 어떤 욕구를 먼저 다루어야 할 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기초적인 물질적 또는 안전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자기실현 등 정신적 서비스 대신 그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적 욕구이론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화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것은 아니며 그 질서순위가 반드시 하위에서 상위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Maslow가 제시한 인간의 5가지 기본적 욕구는 인간행동의 유인과의 관계연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기숙미, 1995 : 8-10 재인용 ; 최일섭·이창호, 1993 : 166).

이러한 Maslow의 5단계 욕구수준을 C. Alderfer는 3단계로 수정한 욕구위계이론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이 3단계 욕구란 생존 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 말하는데 이의 첫글자들을 따서 Alderfer의 이론을 E.R.G이론이라고 한다.

(2) C. Alderfer의 욕구이론

① 생존욕구(existence needs)

생존욕구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므로 이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며, 이 욕구들은 주로 한정된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Maslow 욕구이론과 비교하면 그의 생리적 욕구와 물리적 안전의 욕구가 이 생존 욕구에 포함된다.

②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서로 교환하려고 한다. 즉 관계욕구는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Maslow 이론과 비교하며 안전의 욕구 중 대인관계에서의 안전, 사회적 욕구 중 애정 및 소속감, 그리고 존경의 욕구 중 대인관계에서의 자존심 등이 포함된다.

③ 성장욕구(growth needs)

이 욕구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적 능력이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욕구를 말한다. Maslow 이론과 비교하면 능동적인 자신감의 획득 과정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욕구 뿐 만 아니라 존경의 욕구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

Alderfer의 이론은 Maslow이론과 비교할 때 욕구위계의 구분에서도 다르지만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Maslow의 욕구위계는 한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인 낮은 수준의 욕구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Alderfer의 욕구위계에서는 하위의 욕구에서 상위의 욕구로 진전될 뿐 아니라 상위의 욕구에서 하위의 욕구로 퇴행되기도 한다고 본다.

둘째, Maslow의 이론에서는 다섯 가지 욕구 중에서 우세한 욕구가 지배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주장하였으나 Alderfer의 이론은 일정한 시점에서 세 가지 욕구의 강도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을 하거나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무의식수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Alderfer는 우세한 욕구는 자신에 의해서 잘 인식되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인간의 욕구를 의식수준에서 다루었다.

이와 같이 Alderfer는 인간이 조직생활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욕구와 만족을 중심으로 동기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의 욕구위계론은 Maslow의 이론을 보다 전개, 발전시킨 것으로 조직산업사회에서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기숙미, 1995 : 11-13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의 욕구위계론의 5단계 욕구수준을 3단계로 수정하여 욕구위계 이론을 제시한 C. Alderfer의 욕구이론을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욕구조사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Alderfer가 주장한 세 단계의 욕구인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를 이 연구의 청소년 복지욕구의 세 가지의 욕구영역으로 잡고, 다음과 같이 청소년 복지욕구의 분석틀을 만들었다.

(1) 생존욕구 : 의・식・주, 건강・의료, 경제
(2) 관계욕구 :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의 대인관계
(3) 성장욕구 : 자아, 교육, 직업, 문화・여가활동

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

이 연구에서는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과 같은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아동・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한부모가족에 한정되어 있고,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 또한 기존 연구는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한부모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그 자녀에 대한 연구가 별로 이루지지 않았기에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통계나 연구문헌을 인용하면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과 그 가정에서 사는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한부모가정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가족 통계는 통계청이 산출한 '인구주택총조사'인데, 이 조사는 엄격하게 말해서 '가족'을 단위로 하지 않고 '가구'를 단위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가구를 제

외한 총가구는 15,903,679가구이고, 그중 일반가구는 15,887,128가구(전체의 99.9%)이고, 나머지 16,551가구는 집단가구이다. 통상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일반가구는 다시 혈연가구 12,490,507가구(전체의 78.6%), 비혈연가구(5인 이하) 225,946가구(전체의 1.4%), 1인가구 3,170,675가구(전체의 20.0%)이다(통계청, 2006: 183).

일반가구 중에서 비혈연가구의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 통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비율은 일반가구에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1인 가구는 1995년에 1,642,406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2.7%이었지만, 2000년에는 2,224,433가구로 일반가구의 15.5%, 2005년에는 3,170,675가구로 일반가구의 20.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통계청, 2006: 183).

가구단위로 파악된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가족연구에 활용할 때 어려움은 가구와 가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 함께 살면 가구와 가족이 일치하지만, 그 자녀가 취학, 취업 등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떨어져 살면 인구주택총조사는 현재 거주를 기준으로 하기에 어머니 1인 가구와, 자녀 1인 가구 혹은 집단가구(기숙사에서 거주할 경우)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단위로 조사된 자료를 가족이란 용어로 쓰는 이유는 대부분의 가족이 한 가구를 이루어서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비록 엄격한 수치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큰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제 때문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당시 한국인 일반가구 15,887,000가구 중에서 한부모가구는 1,370,000가구로 전체의 8.6%이다. 한부모가구의 유형을 보면 모자가구가 1,083,000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79.1%이고 부자가구가 20.9%이다. 한부모가구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5년 전체 일반가구의 8.9%에서 1995년 7.4%로 감소되었다가, 2000년 7.9%, 2005년 8.6%로 점차 증가되었다. 또한 전체 한부모가구 중에서 모자가구의 비율이 부자가구보다 훨씬 많지만, 최근 10여년간 부자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한 흐름이다. 부자가구는 1995년에 172,000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17.9%이었지만, 2000년에는 한부모가구의 19.6%를 차지하였고, 2005년에는 한부모가구의 20.9%

로 전체 한부모가구 5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은 부자가구로 나타났다.

이로서 과거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모자가족에 한정되었는데, 이제는 전체 한부모가구의 1/5이상을 차지하는 부자가구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부모가족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향후 정책과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 내에서도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상황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Ⅱ-1> 전국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 1,000가구, %)

연도	총가구수	한 부 모 가 구		
		계	모자가구	부자가구
1985	9,571	848 (8.9)	-	-
1990	11,355	889 (7.8)	-	-
1995	12,958	960 (7.4)	788 (82.1)	172 (17.9)
2000	14,312	1.124 (7.9)	904 (80.4)	220 (19.6)
2005	15,887	1.370 (8.6)	1,083 (79.1)	287 (20.9)

※ 전체 일반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임
출처: 통계청

한편 한부모가구의 통계치는 일반가구가 아닌 '혈연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달라진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일반가구를 혈연가구, 비혈연가구(5인 이하), 1인가구로 나누는데, 그중 가구이기는 하지만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혈연가구만을 기준으로 하면 비율은 달라진다. 즉 2005년에 혈연가구는 12,491,000가구이고, 그중 핵가족이 82.8%, 직계가족이 6.9%, 기타가족이 10.4%이다. 핵가족은 다시 부부가족이 전체의 18.1%,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53.7%,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11.0%이다. 혈연가구 중에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995년에 8.6%에서, 2000년에 9.4%, 2005년에 11.0%로 점차 증가되었다(통계청, 2006: 188).

2005년 당시 혈연가구에서 사는 총가구원수는 42,019,000명이고, 그중 핵가족에서 사는 가구원수는 33,231,000명, 직계가족에서 사는 가구원수는 4,049,000명, 기타가족에 사는 가구원수는 4,740,000명이다. 핵가족에서 사는 가구원수 중에서 부부가족의 가구원수는 4,518,000명, 부부와 미혼자녀의 가구원수는 25,220,000명,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사는 가구원수는 3,493,000명이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수는 1995년 2,650,000명에서, 2000년 2,953,000명, 2005년 3,493,000명으로 지난 10년간 843,000명이 증가되었다. 2005년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374,000 가구인 것에 비춰볼 때, 한부모가구에서 사는 미혼자녀는 2,119,000명으로 보인다(통계청, 2006: 188-189).

한부모가구 형성요인을 보면 2005년 당시 사별이 36.6%(501,000가구)로 가장 높았으며, 이혼이 29.1%(399,000가구), 미혼이 10.4%(142천가구)이며, 유배우 한부모가구도 전체의 23.9%(328,000가구)이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구조가 한부모가구라도 “유배우자”를 한부모가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배우자를 제외한 한부모가구만을 산출하면, 2005년에 한부모가구는 1,042,000가구이고, 그 형성요인을 보면 사별이 48.1%, 이혼이 38.3%, 미혼이 13.6%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배우 한부모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구의 형성요인에서 사별의 비중이 줄고 이혼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1985년에는 74.6%에서 2005년에는 48.1%로 20년만에 26.5% 포인트 감소되었다. 반면에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형성은 1985년 8.4%에서 2005년 38.3%로 급증하였다.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형성은 지난 20년간 29.9%포인트나 증가했고, 그 비율이 4.6배가 증가한 셈이다.

<표 Ⅱ-2> 한부모가구 형성요인

(단위 : 1,000가구, %)

연도	총 가구수	한 부 모 가 구					한부모 가구비율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1985	9,571	254(30.0)	443(52.2)	50(5.9)	101(11.9)	848(100)	8.9
			74.6	8.4	17.0	594(100)	6.2
1990	11,355	227(25.5)	498(56.0)	79(8.9)	85(9.6)	889(100)	7.8
			75.2	11.9	12.8	662(100)	5.8
1995	12,958	216(225)	526(54.8)	124(12.9)	94(9.8)	960(100)	7.4
			70.7	16.7	12.6	744(100)	5.7
2000	14,312	252(22.5)	502(44.7)	245(21.9)	122(10.9)	1,124(100)	7.9
			57.6	28.1	14.0	872(100)	6.1
2005	15,887	328(23.9)	501(36.6)	399(29.1)	142(10.4)	1,370(100)	8.6
			48.1	38.3	13.6	1,042(100)	6.6

출처: 통계청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사는 가구”를 한부모가구로 분류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일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있는 한부모가구의 수는 위의 통계치보다 줄어들 것이고, 한부모가구의 형성요인도 사별이 줄고 이혼이 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한 해동안 345,592쌍이 결혼을 하고, 124,590쌍이 이혼을 하여 당해연도 결혼대비 이혼율이 36.1%에 이르고, 그 이혼율이 2005년 40.6%, 2006년 37.6%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의 형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60-61).

한부모가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체 가구도 증가하고 있기에 한부모가구의 증가 그 자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부모가구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책은 절실하다.

<표 Ⅱ-3>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전체)

(단위 : 세대, 명)

연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109,039	294,648	88,179	238,341	20,860	56,307
2005	123,666	334,066	99,671	268,975	23,995	65,091
2006	140,188	374,094	112,347	299,430	27,841	74,664
2007	147,947	395,335	118,074	315,220	29,873	80,115

※전체: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 국가보훈법 대상
출처: 통계청

<표 Ⅱ-4>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2007년말 기준)

(단위 : 세대, 명)

구 분		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국민기초 수급대상	국가보훈 대 상
			소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계	세대	147,947	73,471	72,632	839	74,409	67
	인원	395,335	190,303	188,040	2,263	204,882	150
모자 가족	세대	118,074	57,924	57,085	839	60,108	42
	인원	315,220	148,919	146,656	2,263	166,202	99
부자 가족	세대	29,873	15,547	15,547	-	14,301	25
	인원	80,115	41,384	41,384	-	38,680	51

출처: 통계청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47,947가구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범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인 가족,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중 가족 유형을 보면 모자가족이 118,074가구(79.8%)이고, 부자가족이 28,873가구(20.2%)로 모자가족이 부자가족보다 4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을 중심으로 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123,666가구는 전체 한부모가구 1,370,000가구의 9.0%에 해당되고, 유배우자를 뺀 한부모가구 1,042,000가구의 11.9%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한부모가족 중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약 12%이지만,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현재는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Ⅱ-5>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단위 : 세대, 명)

연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47,405	123,461	38,993	101,165	8,412	22,296
2005	56,903	146,056	46,013	117,162	10,890	28,894
2006	66,163	170,530	53,120	135,728	13,043	34,802
2007	73,305	189,854	57,757	148,462	15,548	41,392

출처: 통계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바탕을 두면서, 점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2007년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73,305세대 189,854명이다. 이는 2004년 47,405세대 123,461명에 비교하여 세대기준 54.6%, 세대원 기준 53.8% 증가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증가되었기도 하지만, 국가가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수급자 중심에서 점차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이상~120% 이하)으로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책임을 국가가 가정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인구가 189,854명이고, 이를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보훈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이 395,335명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중 약 0.8%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이유로 지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한편 한부모가족의 욕구가 경제적인 문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자녀교육, 적합한 주거마련, 가족관계의 증진 등과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경제적 지원에서 자녀교육비의 지원 등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그 지원이 여전히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욕구에 대한 파악이 주로 경제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발생요인 중에서 이혼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혼시 자녀의 양육을 누가할 것인지를 지정하고, 이혼후 양육비의 분담, 그리고 가족관계의 유지와 갈등관리 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양육비의 확보와 함께 교육적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점에서 2009년 5월 8일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으로 2009년 8월 9일부터 '협의이혼에 있어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협의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협의이혼시에 자녀양육비의 부담을 합의하였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시행으로 별도의 소송없이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2009월 5월 8일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으로 2009년 8월 9일부터 협의이혼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이혼과정에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각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친권 및 양육권이 없어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라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 책임은 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소송상 이혼에 있어서는 보통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관건이 되고, 따라서 이혼판결에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지만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 협의이혼 전에 쌍방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을지라도 임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에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

다. 즉 위와 같이 종래에는 협의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부담협의가 있었더라도 협의이혼 후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양육비 지급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협의이혼에 있어서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소되게 된 것이다.

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의 경우는 가사재판부)은 협의상 이혼절차에 있어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는 그에 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고, 양육비 부담조서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당일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게 되며, 양육비 부담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할 때에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명에 제공하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기재례가 바뀌어 앞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 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법원 및 사건번호가 기재되게 된다. 양육비 부담조서 원본은 법원에서 영구 보존하게 되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기록은 종전에는 1년간만 보존하였으나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의 도입에 따라 향후 분쟁가능성을 대비하여 보존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2009년 11월 9일부터는 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즉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관하여 양육비직접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조서상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http://cafe.daum.net/minuss69).

2)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조손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995년에 35,194가구이던 것이 2000년에 45,224가구, 2005년에는 58,101가구까지 증가하였고 2007년 12월말 당시 전국 노인인구 486만 명 중 174,960명 정도의 노인이 조손가정 조부모로 추정된다. 조손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평균 7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조손가족이 신빈곤층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여성부, 2007)

조손가정은 부모가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부모가 생존한 경우가 더 많다. 2004년 당시 전라남도의 자료를 볼 때, 부모가 없는 세대는 1,236세대로 전체 조손가정의 24.7%이고, 부모가 생존한 세대는 75.3%이다. 조손가정의 약 3/4은 아동에게 부모가 있고, 1/4은 아동에게 부모가 없는 셈이다. 이는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부모 중 어느 일방의 사망, 부모의 이혼, 별거, 사업실패 등으로 부득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에게 부모가 생존한 경우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가 없는 1,236세대의 경제적 수준은 수급자가 84.1%이고, 차상위 계층이 6.1%, 일반은 9.9%이다. 한편 부모가 있는 3,767세대의 경제적 수준은 수급자가 43.2%이고, 차상위계층은 15.4%, 일반은 41.4%이다.

현재 조손가정에 대한 관리는 주로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손가정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에 따른 제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세대차가 크기 때문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학습지도를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안경순, 2007: 191).

조손가정의 아동은 학교에 취학하기 전에는 사실상 방임되기 쉽고, 초등학교에 취학한 이후에도 방과후에는 방임되기 쉬워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에는 조손가정의 아동이 학습지도, 생활지도, 그리고 간식을 제공받지만, 이러한 비물질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아

동센터가 많지 않아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

국가는 조손가정의 일부를 소년가장세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최근에는 가정위탁지원사업으로 연계시키지만, 조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비경제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손가정 아동은 사실상 방임되기 쉽다. 빈곤한 조부모가 자신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에서 손자녀 양육을 맡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손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면서, 조손가정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10601)

1)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다 늘리고자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은 부양자에 대한 부양 능력 유무만을 보고 있다. 따라서 함께 살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상당한 재산과 소득이 있더라도 현재 부양자의 부양능력이 낮으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다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용 대상자로 책정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비록 최저생계비보다 높더라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와 고교생학비 지원이 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0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2007년에는 만6세 미만에게 주었고, 2008년에는 만 8세 미만, 2009년은 만 10세 미만에게 주고 있다. 고교생학비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대출대상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타 기관과의 중복융자 불가)이다. 자금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009년에 3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대여기준과 조건은 1인당 대여한도액은 2,000만원 이내이고, 대여이율은 연리 3%의 고정금리이며, 대여기간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은 2009년도의 경우에 2인 가구는 월 1,086,490원, 3인 가구는 1,405,540원, 4인 가구는 1,724,590원, 5인 가구는 2,043,640원, 6인 가구는 2,362,690원,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19,050원씩 증가하여, 7인가구 2,681,740원이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별 지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모·부자보호시설 등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수는

2009년 6월 현재 107개소이다. 그중 모자보호시설 41개소, 부자보호시설 1개소, 모자자립시설 3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4개소, 미혼모자시설 27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9개소, 미혼모공동생활가정 2개소이다.

현재 한국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는 모두 7가지이지만, 그 시설의 이용자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면 크게 3가지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모·부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이다. 모·부자보호시설은 주거가 마땅히 없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생활하는 시설이고, 이곳에서 일정기간 거주를 한 후에도 자립하기 어려운 가족은 모자자립시설을 이용한다. 이 유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실제 이용자수가 가장 많다.

첫 번째 유형에서 대표적인 시설인 모자보호시설을 보면, 입소대상자는 보호자,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녀자가 보호해야 할 18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이다. 여기에는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도 포함된다. 보호기간은 입소일 기준으로 3년이고,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는 2년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다.

이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면·읍 사무소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 입소 신청 → 시설 관할(시·군·구)로 입소의뢰 → 신청인에게 입소 통보 → 모자보호시설 입소의뢰 → 시설장과 상담 후 입소결정 등의 순이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 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및 주택무료제공,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비지원, 의료급여 등이 제공된다. 또한 방과후 초·중·고등학생 학습지도, 복지자금 융자 지원,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퇴소시 자립정착금(2년 이상 기거 후 세대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두 번째 유형은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이다. 이 시설은 첫 번째 유형의 시설로 입소하기 전에 이용되었

는데, 최근에는 아내학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미혼모와 그 자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새롭게 강조된 시설이다. 처음에는 미혼모시설로 개설되었다가 점차 미혼모자시설로 변화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와 입양보다는 가정형 보호와 양육미혼모의 지원이 강조되면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이 증설되었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기존 미혼모보호시설을 개축하거나 미혼모자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신축한 경우가 많다. 2009년 7월 10일에 준공한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인 '경기도 천사의 집'을 예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기북부시민신문, 2009. 7. 14)

경기도 천사의 집은 기존건물이 1960년에 만들어져 노후되고 미혼모자가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2008년에 신축을 계획하고 2009년 7월에 완공을 하게 되었으며 기존 5세대보다 정원이 증가되어 현재 14세대까지 입소가 가능하다.

신축된 '경기도 천사의 집'은 3층 건물로 지행역도 가깝고, 바로 앞에 공원도 위치해 있어 편리함과 정서적인 면을 두루 갖추었으며 교육실 및 현대식 보육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어 미혼모자의 생활의 질적 향상 및 자립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현행 12개 유형의 복지시설을 5개 유형으로 재정리한다. 즉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정리하려고 한다.

또한 노후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개보수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의 증·개축 등 환경개선으로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표 Ⅱ-6>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개소 수 및 개요

(2008. 12. 31)

번호	시 설 별	시설 수	대상	지원 내용	보호 기간 (연장 가능 기간)	입소 정원
1	모자 보호시설	4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 (2년)	1,062 세대
2	부자 보호시설	1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 (2년)	20세대
3	모자 자립시설	3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 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주택편의 제공	3년 (2년)	41명
4	모자일시 보호시설	14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숙식, 의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	6월 (3월)	491명
5	미혼모자 시설	27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분만 의료 지원, 인성교육및 상담, 자립지원	1년 (1년)	703명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19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양육교육	1년 (1년)	236명
7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	2	출산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보호를 요하는 여성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2년 (6월)	26명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4)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양육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미혼모자시설과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출산 직후 미혼모에 대한 자녀 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주로 재가 미혼모·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미혼모·부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자녀양육 및 경제자립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별 거점기관은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라남도)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었다.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은 임신 초기부터 온-오프라인 상담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 자녀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 등 지원, 미혼모·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미혼모·부간 자립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5)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가족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지 및 자원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저소득 여성가장, 가족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부자,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국 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 사하구, 안산, 천안, 광양, 포항)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과 욕구 충족을 도모한다. 취약가족의 취업, 자녀, 주거문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후원단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발굴 지원을 수행한다.

(6)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

최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복지시설의 운영과 경제적 지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업무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소송 지원(유전자 검사 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등) 등이다.

(7) 관련부처 및 부서와 연계 협력사업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하고 시·도와 시·군·구가 협력하여 수행된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다른 부서와 협력하는 사업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의 협력을 받아서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 우선 입주 및 공급물량 확대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노동부의 협력을 받아서,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강화를 수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와 협조하여 지역건강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직원의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을 통하여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향후 사업방향을 모색한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9) 한부모가족 관련 예산

보건복지가족부가 책정한 2009년도 '한부모가족 예산'을 보면 54,693백만원으로 2008년도의 44,833백만원에 비해 22.0%가 증액되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이

다.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주는 예산은 2009년에 29,482백만원으로 2008년의 21,820백만원보다 7,662백만원이 증액되었다.

<표 Ⅱ-7>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단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사업량	예 산	사업량	예 산	
합계			44,833 [2,000]		54,693 [2,000]	
○ 한부모가정복지시설 기능보강비		44	3,483	39	2,786	
- 신축비	개소	1	165	1	65	
- 증·개축비	개소	7	2,734	3	1,548	
- 개·보수비	개소	25	474	17	649	
- 기자재 구입비	개소	11	110	18	524	
○ 한부모가정 자녀양육·교육비지원		72,345	40,656	90,320	50,656	
- 고등학생	명	29,542	21,820	42,064	29,482	
- 아동양육비	명	42,803	18,836	48,256	21,174	
○ 한부모가정 복지단체 지원	개소		33		30	
○ 저소득한부모가정 복지자금	세대	133	[2,000]	200	[3,000]	
○ 저소득한부모가정 보증보험료 지원			171		171	
○ 저소득한부모가정 이차보전			165		288	
○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325		325	
○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				6	160	
○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5	277	

※ [ ]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은 조금 감소되었고, 저소득한부모가족 보증보험료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등은 작년 예산과 동일하다. 2009년도 예산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운영과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이다. 아직 예산은

소액에 불과하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산이 한부모가족시설의 운영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과 교육비 지원에서 점차 취약가정 역량강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한부모가족 정책의 발전방안

한부모가족 정책은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 있어서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세대가 늘어나고, 각 가족이 받은 실질적인 서비스의 내용도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현재 한부모가족 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보다 현실적으로 넓혀야 한다. 현재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모든 한부모가족이 아니라,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이다. 여기에서 저소득한부모가족이라 함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130%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한정되고, 그 대상이 확장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라는 점에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는 그 대상을 상당히 확장시킨 것이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부모가족의 범위에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아닌, "18세미만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한부모가족이 18세미만인 아동과 18세 이상(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인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자녀 중 일부가 18세 이상이 되면 그 자녀만을 보호대상자에게 제외시키고, 18세 미만의 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만약, 자녀가 18세가 되어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반영시키면 될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녀 중에 18세 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하지 않다는 것은 입법의 취지에도 벗어난 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서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등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이고,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하므로 비록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취지에 맞게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을 넓혀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가 제공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는 대가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자금의 대여, 고용의 촉진, 고용지원 연계 등은 복지급여와 달리 저리로 대출하거나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촉진시키려는 사업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가없이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복지자금의 대여’와 같이 향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사업은 그 적용의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경우만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자금의 대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지자금의 대여도

받을 수 있지만, 130%를 넘는 가구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상황과 최저생계비의 130%를 넘지만 150%이하인 세대는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복지자금의 대여는 그 적용대상자를 조금 넓히고, 최저생계비 130%~150%인 세대에게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등과 같이 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은 모자가족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부자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대표적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모자보호시설은 2009년 현재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이곳에 모자가족 1,062세대가 살고 있지만, 부자보호시설은 전국에 1개소이고 수용 능력이 20세대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모·부자복지법에서 유래했고, 이는 다시 모자복지법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모자·부자보호시설 42개소 중에서 부자보호시설이 1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단히 성차별적인 정책이다.

그렇다고 부자가족을 위해서 부자보호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부자가족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사업인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의 우선 입주자로 '부자가족'을 우대하고, 공급물량의 일부를 부자가족에게 우선 할당을 하면 부자가족의 주거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모자·부자가족간의 성차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과 자녀양육·교육비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자립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2009년 현재 정부가 확보한 한부모가족지원 예산 54,693백만원 중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2,786백만원(전체 예산의 5.1%)이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이 50,656백만원(전체 예산의 92.6%)이다. 즉 한부모가족복지 예산의 97.7%가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주거나 복지시설의 기능보강비로 활용된다는 것은 한부모가족에게 복지자금을 대여하고,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고용지원 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에는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경제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충분하지 않다. 경제적 지원을 펴주는 수준의 복지를 넘어서서 한부모와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전직 등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첫째 자녀가 18세될 때까지 자녀 양육·교육비를 지원하다가 첫째 자녀가 18세가 되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인데, 이는 한부모가족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부모가족이 실질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이들은 국가에 좀 더 부담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맞는 자립계획과 계획에 맞는 자립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부모가족의 빈곤 탈출을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출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주거비이다. 그중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는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지만, 모자·부자보호시설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거주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은 주거비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의 총량을 늘려서 한부모가족에게 안정된 주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총량을 늘려서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채 건립할 예정인데, 그중 분양주택이 70만 가구, 10년간 임대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 주택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임대주택은 50만 가구밖에 되지 않아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총량은 별로 많지 않게 된다(한겨레, 2009년 10월 12일). 선진국의 경우 주택 총량

의 약 20%가량이 공공임대주택임 점에 비교할 때 공공임대주택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은 공공임대주택의 총량을 늘리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2)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현재 국내에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체계는 없으며, 경제적인 공공부조 측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조손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의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위탁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제도가 있다.

사회보험 측면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 상의 경로연금을 대체할 기초노령연금 등이 있다. 비경제적인 지원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조손가정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옛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가구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시・군・구청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되지 못하면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제공한다.

생계급여는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

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이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490,845원이라면 현금급여기준은 405,881원이고,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081,186원이고 현금급여기준액은 900,048원이다.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이다. 급여액은 1인가구 현물급여 8,000원, 3인가구 현물급여 18,000원 등이다.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9,000/인), 학용품비(45,000/인)이고, 중학생은 부교재비(33,000/인), 학용품비(45,000/1인) 등이다. 해산급여는 출산시 500,000원이고, 장제급여는 사망자 1인당 400,000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0,000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한다.

2009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90,845원, 2인가구 835,763원, 3인가구 1,081,186원, 4인가구 1,326,609원, 5인가구 1,572,031원, 6인가구 1,817,454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가구: 2,062,877원)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다. 부양자가 있어도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이거나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의 딸)에 대한 친정부모의 경우의 부양의무는 소득기준의 상한선이 없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조손가정은 흔히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다. 즉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

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다. 법적으로 부양의무자인 부모(혹은 부나 모)가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자녀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 전체를 수급자로 책정하지 않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에 한정시켜서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에 속할 수 있다.

그중 의료급여 특례는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교육급여 특례는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자활급여 특례는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조손가정의 가구 소득 분포가 대부분 월 1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조손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해당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의료비나 교육비 및 타법 지원액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의료비나 교육비 및 타법 지원액과 수급자 자신의 인정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의 총합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는 조손가정만의 문제가 아

니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한계임을 지적할 수 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다. 이밖에도 국가유공자와 가족,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다.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수준 등에 따라 1종 의료급여 대상자와 2종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다.

따라서 조손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조손가정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각종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보험료 면제 조항에 따르면, '대학 이하의 각급 학교에의 재학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경감토록 되어 있다. 농어촌이나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의 경우도 일정부분 보험료 경감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조손가정은 결국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치료비 혹은 요양비의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의료비 부담은 조손가정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일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출 등으로 함께 살지 않지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는 그 부모(혹은 부나 모)의 건강보험료까지 조손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3) 가정위탁

가정위탁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해체적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경우 아동의 양육을 조부 또는 조모에게 위탁하여 아동의 양육위기를 해소하려는 정책이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와 문제에 대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 등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등이 있으며, 이중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이므로 조손가정의 가족 형태로 볼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사업은 부모의 사망, 재혼 등으로 부모와 함께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표 Ⅱ-8> 가정위탁보호 현황

연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합계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05	5,078	7,552	2,966	4,007	772	1,003	8,816	12,562
2006	6,152	9,062	3,097	4,160	1,004	1,243	10,253	14,465
2007	6,975	10,112	3,651	4,850	996	1,238	11,622	16,200
2008	7,488	10,709	3,436	4,519	990	1,226	11,914	16,454

가정위탁보호 현황은 2000년 1,772명에서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 2003년 7,565명, 2004년 10,198명을 거쳐 2008년 16,454명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새로운 보호양식으로 정착되었다.

가정위탁아동은 신청, 조사, 결정・통보, 사후지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위탁보호를 원하는 사람이나 보호자는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청(또는 시・도)에 신청을 한다.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을 조사한다.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일반가정위탁시에 위탁가정을 연계하여 추천한다. 시・군・구청(또는 시・도)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탁보호를 결정한다. 시・군・구청(또는 시・도)은 신청인 및 대상아동(아동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포함)에 통보한다. 위탁보호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또는 시・도)는 아동카드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가정위탁지원사업은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이 핵심이고, 이밖에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국토해양부) 등을 지원한다. 양육보조금은 아동 1인당 월 70,000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기에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월 70,00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위탁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수급자로 책정되어 소정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을 제공받는다.

가정위탁아동의 안전과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보험료는 1인당 년 80,000원 이내이다.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가정이 전세자금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고,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한다.

(4) 입양제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또 하나의 서비스는 입양이다. 국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국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

입양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와 달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게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입양 관련 주요사업은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과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국내입양우선추진제는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동인수 후 5개월간 국내입양만을 추진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려는 것이다.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국내입양시에 과거 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주었던 입양수수료(2,200,000원)를 국가가 지원하고, 양부모에게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입양양육수당을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며, 의료급여 1종(2007년 시행)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18세까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월 551,000원)과 의료비(연 2,520,000원)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입양가능한 양부모의 자격을 확대하였다.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고, 연령제한을 완화시켰다. 즉, 아동과의 연령차이를 45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상향시켰고, 자녀수 제한(5명 이내)규정을 삭제하였다. 아직은 공무원에게만 시행하고 있지만 입양을 할 때 입양휴가제(14일)를 도입했다.

아울러, 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모국방문 해외입양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쉼터를 지원한다. 2008년 한 해동안 지원실적을 보면, 한국어 교육 장학금 260명 지원, 쉼터 연인원 500명에게 14,365박을 지원했다. 뿌리찾기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국방문단 및 고충상담 등을 지원하고,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해외입양인연대 등 2개 단체에 22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국내입양을 하려면, 아동상담소 등은 아동인수 후 아동의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병원 등)를 한다. 전원기관에서는 수용의뢰(시・군・구청장) 및 입양절차를 시작한다. 수용보호의뢰(입양기관・시

설의 장 → 시·군·구청장), 후견인 지정신청 및 승인(입양기관·시설의 장 → 시·군·구청장),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등(입양기관·시설의 장이 신청, 시·군·구청장),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 입양대상확인서 발급 의뢰, 입양동의(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등으로 이루어진다.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즉 신청서 접수 및 상담, 양부모의 입양상담 및 아동양육교육(5~6회), 가정조사(2~3회;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 양부모에 아동의 기록·소유물품 등 인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야 입양효력이 발생된다.

<표 Ⅱ-9> 국내외입양 현황

(단위 : 명, %)

	국내입양		국외입양		합계
	수	백분율	수	백분율	
2003년 이전	64,505	29.7	152,786	70.3	217,291
2004	1,641	42.2	2,258	52.8	3,889
2005	1,461	41.0	2,101	59.0	3,562
2006	1,332	41.2	1,899	58.8	3,231
2007	1,388	52.3	1,264	47.7	2,652
2008	1,306	51.0	1,250	49.0	2,556

조손가정과 국내입양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되기 쉽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는 입양보다는 가정위탁이 일반적이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속에서 연령대에 따라 영아는 입양 혹은 시설보호, 가정집에서 성장했던 아동은 가정위탁과 시설보호로 보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건강가정지원 제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이나 부부갈등으로 인한 위기가족 등 가족문제 전반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족해체의 위기를 막아보려는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조손가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업무는 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업이 중심이고, 조손가족만을 위한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

예컨대, 익산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조손가정 자녀들을 위해 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아이들의 학업을 돌보아 주고 있으며, 멘토링 사업을 통해 조손가정의 다양한 문제들을 전담전문가가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부모 교육을 통해 조부모들이 손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영유아 육아방법 및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시에 참여하는 집단상담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 간에 서로 터놓고 말하지 못해 생기는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여행을 하거나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조손간의 거리감을 줄이고, 서로가 가족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일률적인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조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조손가정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손가정 문제를 위한 전문기관이라기보다는 가족해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탓에 조손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참여 가족에 대해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현실적으로 조손가정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조손가정에 대한 정책의 발전방안

조손가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련 법은 조손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조손가정에 대한 대책은 한부모가족 정책의 하나로 설계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조손가정과 연계하여 각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대책은 수급자의 책정에서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지만, 이 규정을 조손가정에 적용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조손가정의 상당수는 보호자가 법적 행정적으로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혹은 부양을 방임한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기에는 부양의무자가 전혀 없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부양능력을 충분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이 많다. 만약, 조손가정 전체를 수급자로 책정하기 어렵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특례가 있듯이, 조손가정의 아동만을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손가정은 고령의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므로 자활능력을 상실한 가구란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보호지원이어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빈곤 가족의 자활을 지원하고, 자활능력을 북돋아주는 것을 법의 기본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조손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조금 긴 안목에서 보면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손자가 성장하여 자립능력을 갖출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조손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생활지도, 교육적 선도와 같은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로 경제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각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혹은 시・군・구차원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혹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같은 지지가 절실하다.

둘째, 최근 정부는 과거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을 대체하여 가정위탁을 활성화시켰고,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대리위탁을 장려하였다. 하지만 대리위탁은 혈연이 있는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인간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세대차이가 큰 노인이 아동을 양육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손자녀가 성장할수록 아동・청소년에게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절실한데, 현재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소홀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지만, 주로 시・도청 소재지에 있고, 아동・청소년의 생활권에는 없기 때문에 지원센터와 위탁가정간에 접근성이 매우 약하다. 이점에서 전국에 있는 230여개소의 아동양육시설을 소규모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아동양육시설에 가정위탁 지원업무를 부과하여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위탁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교육, 지지의 기능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대리위탁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너무 연로한 경우에는 위탁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매년 평가를 하여, 대리위탁을 종료하여 친인척위탁이나 일반위탁으로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이 위탁가정에 대한 상담, 교육,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청소년을 위탁가정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위탁가정에서 부적응한 아동・청소년을 다시 양육시설로 입소시키는 것과 같은 연계서비스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되면 초기단계에서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은 주로 국내·국외로 입양되고, 입양되지 않은 아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가정해체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개입단계에서 아동양육시설의 정원은 많고 현원이 적은 시·군·구는 시설입소를 권장하고, 그렇지 않는 시·군·구에서는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양식이 무엇인지를 판별하여 그 아동에 맞는 보호양식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원가정이나 원가정과 매우 유사한 대안 가정 혹은 소규모 시설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을 장려하고, 대규모 시설을 폐지하여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늘려야 할 것이다. 기존 대규모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만을 아동공동생활의 설치에 활용해도 기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아동양육시설이 가정위탁의 지원에 개입하게 되면, 가정위탁, 아동공동생활, 양육시설이 각기 장단점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입양제도를 크게 개편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가까운 장래에 국외입양을 중단하며, 성장한 입양인에 대한 대책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입양정책은 가정위탁과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국내 입양에 대한 수요가 높기에 영아뿐만 아니라 성장한 아동도 국내에서 입양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의 입양제도는 초기에 혼혈아, 고아, 그리고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으로 변화되었는데, 이제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도 국내입양이 가능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부모가 입양을 한 사실을 공개하는 개방입양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입양홍보회 등의 노력으로 신생아의 입양은 널리 확산되었지만, 이제는 부모가 없는 아동에게 양부모를 맺어주는 국내입양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양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18세 미만 입양인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했듯이 고등학교까지 교육급여를 실

시하고, 수급자인 대학생에게 주는 미래로 장학금을 입양인에게도 주면 국내입양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넷째, 조손가정을 양육하는 (외)조부모에게 실질적인 액수의 아동양육수당을 제공한다. 현재는 (외)조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거나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외)조부모는 손자녀를 양육해야 할 부양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부모의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조손가정에게는 아동양육수당을 제공한다.

현재 한부모가족에게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0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아동양육수당으로 바꾸고 그 액수를 아동 1인당 월 15만원선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15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490,845원이기에 그 1/3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다섯째, 조손가정을 포함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이 전국 어디에서나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등 표준화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상담, 교육, 지지 등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아동・청소년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표준화된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을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취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개정된 아동청소년복지법이 제정되어 복지 인프라가 전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에서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1)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시·군·구 단위에서 0세(임산부)~만 12세의 저소득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드림스타트는 지역사회자원 연계·개발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대상 아동은 기초수급 가정와 차상위층 가정의 출신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대리양육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 2008년 32개 지역 22천명(아동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9년 75개 지역 52천명(아동 및 가족)에게 확대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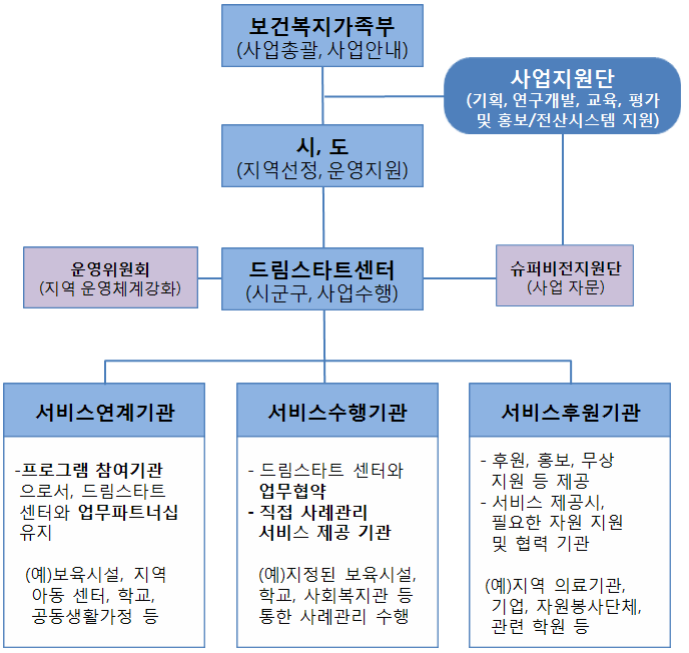

[그림 Ⅱ-1]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체계

시·군·구에 있는 드림스타트 센터에는 전담공무원 3명과 민간전문인력 3명이 함께 일한다. 전담공무원(팀장 포함 3인 이상)은 사회복지, 간호, 행정 분야 각 1인 이상 공무원을 확보하고(지자체 자체 예산 부담 공무원) 팀장

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전문인력(3인)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채용(계약직)하여 인프라 미비지역에 대해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사업비 내 집행가능 - 3인인건비 계상)한다. 한 센터당 연간 예산은 3억원인데, 지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서울은 예산의 2/3를 국비로 지원한다. 드림스타트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설계와 서비스 전달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서비스 기관과 차별화된다.

(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 혹은 조손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16개 시·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 120여개소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989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개소되었다가, 2006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개칭되었다. 이 센터는 당초 청소년의 고충상담, 여가지도, 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가 청소년의 욕구가 상담에 집중됨에 따라 청소년상담실로 바뀌었다. 그후 2004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보충하였고 2005년부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기능을 심리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청소년상담연구에서 점차 학교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업무로 확장시켰다.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http://www.kycc.or.kr)를 예시하여 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면, 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이다. 주요 상담방법은 전화상담, 개인상담, 심리검사, 사이버상담, 이메일상담, 편지상담 등으로 청소년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하고, 집단상담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하는 공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 사회위기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과 연계가 되어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주고 있다. 동반자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주는 서비스; 한 번의 연결, 총체적

연계; 아날로그적 관계, 유비쿼터스적 지원을 프로그램의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주는 서비스는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동반자가 직접 찾아가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동반자가 찾아서 연결해 주는 것이다. 한 번의 연결, 총체적 연결은 청소년이 동반자와 한번 연결되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의 전체적인 정보와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날로그적 관계, 유비쿼터스적 지원은 지속적인 만남과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동반자 사이에 끊임이 없는 아날로그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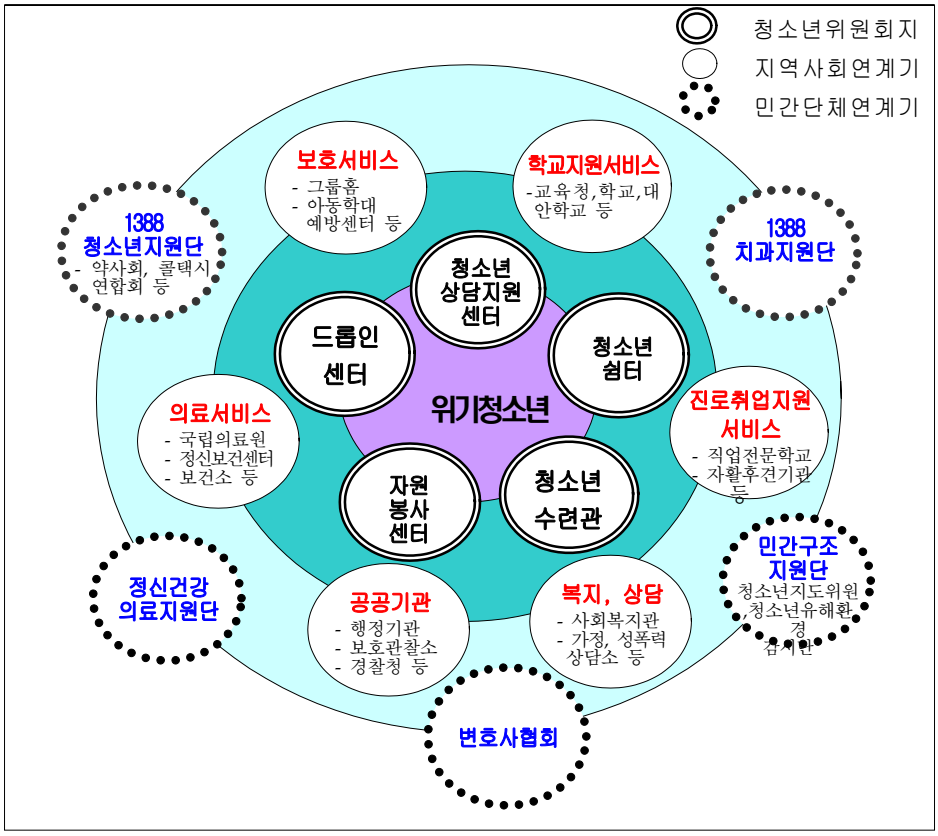

※ CYS-net 체계도 내 기관들은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참여기관

[그림 Ⅱ-2] 청소년동반자사업 체계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위하여 서비스 영역을 경제적 지원, 학습지원, 진로취업, 사회적 보호, 여가문화, 심리지원, 법률자문, 의료 건강, 약물남용 등 9개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아동을 포함한 24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혹은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고충이 있는 청소년이 일차적으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고, 2차적으로 면접상담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자사업을 받을 수 있기에 안정망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들이 주로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비교할 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상담을 일차적으로 제공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층 진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확대 설치될 것이다.

(3)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3,000여개가 넘고, 87,000여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35,972명(남 17,871명, 여 18,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33,163명(남 16,230명, 여 16,933명), 중학생 11,380(남 5,721명, 여 5,659명), 미취학아동 4,858명(남 2,391명, 여 2,19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10> 시도별 신고정원 및 이용아동 수

(단위 : 명)

지역	센터수 (개소)	신고정원 (명)	이용아동 수		
			남	여	전체
서울	302	9,373	4,314	4,296	8,610
부산	155	4,639	1,996	1,974	3,970
대구	75	2,430	1,040	994	2,034
인천	157	5,212	2,367	2,376	4,743
광주	164	4,887	2,374	2,442	4,816
대전	133	5,249	2,345	2,240	4,585
울산	51	1,533	658	719	1,377
경기	601	19,955	9,018	9,029	18,047
강원	139	3,924	2,038	2,050	4,088
충북	156	4,684	2,283	2,351	4,634
충남	151	4,573	2,147	2,167	4,314
전북	212	6,191	2,791	2,883	5,674
전남	307	9,169	4,544	4,579	9,123
경북	164	4,867	2,302	2,358	4,660
경남	189	5,628	2,388	2,544	4,932
제주	57	1,555	792	892	1,684
합계	3,013	93,869	43,397	43,894	87,291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9)

<표 Ⅱ-11> 학년별 이용아동 수

(단위 : 명)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 학생		탈학교		기타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391	2,194	17,871	18,101	16,230	16,933	5,721	5,659	988	874	76	57	120	76	87,291
4,585		35,972		33,163		11,380		1,862		133		196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9)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수급자가 27,698명(31.7%), 차상위계층이 26,797명(30.7%), 중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14,461명(16.6%), 일반아동이 18,335명(21.0%)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12> 상황별 이용아동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아동수
경제상황별	수급권아동	27,698(31.7)
	차상위아동	26,797(30.7)
	중식지원아동	14,461(16.6)
	일반아동	18,335(21.0)
	전체	87,291(100.0)
가정형태별	양부모가정	54,950(63.0)
	부자가정	13,644(15.6)
	모자가정	8,751(10.0)
	조손가정	6,282(7.2)
	소년소녀가정	584(0.7)
	기타친척 및 시설위탁	3,080(3.5)
	전체	87,291(100.0)
양육자의 경제활동	양부모 모두 경제활동	27,630(38.0)
	아버지만 경제활동	26,675(36.7)
	어머니만 경제활동	15,989(22.0)
	조부모만 경제활동	2,350(3.3)
	전체	72,644(100.0)
특별관리 아동	장애아동	1,519(35.0)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1,771(40.9)
	재혼가정 아동	1,045(24.1)
	전체	4,335(100.0)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2009)

가정형태별로는 양부모가정 54.950명(63.0%), 부자가정 13,644명(15.6%), 모자가정 8,751명(10.0%), 조손가정 6,282명(7.2%), 소년소녀가장 584명(0.7%), 기타 친척이나 시설에 위탁 3,080명(3.5%)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양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27,630명(38.0%)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아버지만 경제활동 26,675명(36.7%), 어머니만 경제활동 15,989명(22.0%)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별관리아동은 장애아동이 1,519명,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이 1,771명, 재혼가정아동이 1,045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이용 아동・청소년에게 생활지원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며,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킨다. 그중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은 지역사회내 방임아동 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등이다. 이용자 사례관리는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하기 등이고,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은 지역내 인적 자원 확보와 관리, 물적 자원 확보와 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 등이다.

(4)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발전방안

지역사회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소개하였다. 각 사업은 조금씩 그 양태가 다른데,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빈곤 아동에 대한 긍정적 차별을 강조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강조한다. 각 사업은 현재 의욕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드림스타트는 현재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데,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설치되어야 전국의 아동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림스타트센터는 시・군・구청 소재지에 있는데, 센터의 이용반경이 읍소재지의 중심부에 한정되기에 읍의 변두리와 면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드림스타트 분소를 만들거나 이동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모든 시・도에 1개소씩 있지만, 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의 120여 곳 시・군・구에만 소재하여, 나머지 110여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은 청소년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인접 지역의 시・군・구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의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3,000개 이상이 설치되어, 드림스타트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비교하여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법적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이용자의 대부분은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은 별로 많지 않기에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전체 아동·청소년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 아동·청소년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같이 지역아동·청소년센터로 개칭하고, 시·군·구청이 시설에 대한 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800미터 안에 다른 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하려는 사회복지사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10월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인접 지역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시·군·구청이 요건을 갖춘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것은 아동복지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시·군·구청은 신고제의 의미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국가가 기대하는 수치보다 많다면, 아동복지법상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영유아보육시설처럼 이용아동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부담을 차등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유아보육시설의 이용아동이 100만 명을 넘고 그중 80%의 영유아가 국가로부터 전액 혹은 일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그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용 아동수가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유료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에 무료제도를 유지하면서 신고요건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넷째,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최근 다양화되고,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정책이 널리 확장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빈곤 등에 한정되어 있고, 보편적 서비스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선진국의 아동·청소년 서비스는 대부분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보편

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속에서도 빈곤, 장애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도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이다. 이점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Ⅲ. 외국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정책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Ⅲ. 외국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정책

외국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반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빈곤문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도 같은 문제양상을 보이며, 이에 대한 빈곤탈피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외국의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중 우리나라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큰 영국, 미국, 일본의 국가정책을 선별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1. 영국[10)]

영국은 지난 30여 년간에 걸쳐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경험하였던 가족구조의 변화양상을 예외없이 경험하였다.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아동인구의 감소라는 보편적 인구동태의 변화와 함께 1인 가구 및 한부모가정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주, 2001).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은 감소한 반면, 부양아동을 가진 한부모가정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외출산아동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정의 지원문제는 주요한 사회정책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2005년 현재 아동인구 중 혼외출생아동의 비율은 1964년 7.2%에서 1996년 36%, 2001년 40%, 2005년 43%로 여섯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용주, 200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8).

2008년 현재 190만 가구의 한부모가정이 존재하며, 310만 명의 아동이 한부모가정 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아동인구수는 전체 아동 중 24%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24%에 달하는 한부모가정 아동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동기 동안 한부모가정을 경

10) 이 부분은 이상균 교수(가톨릭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한부모로서 아동양육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Hales et al., 2000).

또한 한부모가정 중 8-11%정도만이 남성가구주로 이루어져 있고, 한부모가정의 대부분은 여성가구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은 여성과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층의 특성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임금노동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56.3%에 불과하고,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한부모가정이 상대적 빈곤에 처할 위험가능성은 56%에 달하고 있다(HM Treasury, 2008). 이는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에서 경험하는 빈곤은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발달산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쉽다. 학업실패, 학교중도탈락, 비행, 십대임신 등의 문제와 빈곤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취업을 힘들게 하여 빈곤이 세습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Minoff, 2006). 그렇기에 “아동은 현재 인구의 20%이지만 미래의 100%이다”라고 강조되는 바와 같이 빈곤의 위험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사회적 지원은 미래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우선적인 순위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보장을(work for those who can, security for those who can’t)’이라는 구호아래 과거 소득이전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유급근로를 통한 자활을 강조하는 정책과 함께 아동・청소년 자녀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자가정에 대해 전통적인 아동양육자로서의 관점보다 생계활동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당정부는 1997년 8개 시범지역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준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부모가정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s, 이하 NDLP)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구직상담, 취업훈련 기회제공, 아동보육지원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NDLP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자활과 근로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빈곤화 가능성을 줄이고, 아동·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영국에서 한부모가정의 빈곤탈피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대표적 지원정책인 NDLP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자녀의 발달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지원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영국의 한부모가정 현황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lone parent family)은 배우자,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한부모를 의미한다. 또 부양아동(dependent child)은 16세 미만의 아동자녀 또는 전일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16-18세 아동자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과 사회보장 급여의 대상으로 상정되는 한부모가정은 부양아동과 한부모로 구성된 가정을 뜻하게 된다.

2001년 현재 영국의 한부모가정의 경우, 편부 4%, 별거 또는 이혼가정 41%, 미혼모가정 24%, 동거상태에서 별거한 가족 28%, 유족가족 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강욱모, 2004).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구성형태는 여성가구주의 생계문제와 한부모가정의 문제를 동일시하게 만들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여성가구주의 35%는 30대이고, 3%는 10대 여성으로 이들 여성 한부모의 57%는 이혼 또는 별거상태이고, 38%는 결혼한 적이 없으며, 5%는 사별여성이다(신용주, 2001; DSS, 2000).

한편, 최근 영국통계청의 자료(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7)에 기반해 1996년에서 2006년까지 가족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가족 수는 10년 동안 약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동거형태에 따른 가족구조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법정혼인가족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동거가족과 모자가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1996년과 2006년 사이에 법정혼인가족 수는 4%(50만명)의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동거가정형태는 60%가 증가한 230만명으로 늘어났다. 부양아동 자녀와 비부양아동 자녀 모두를 포함한 모자가정의 수는 11%가 증가한 23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거주하기보다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 현재 한부모가정 중 90% 가량이 모자가정이고, 부자가정의 비율은 한부모가정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6년 이후 전체가정에서의 비중은 변화없이 2% 내외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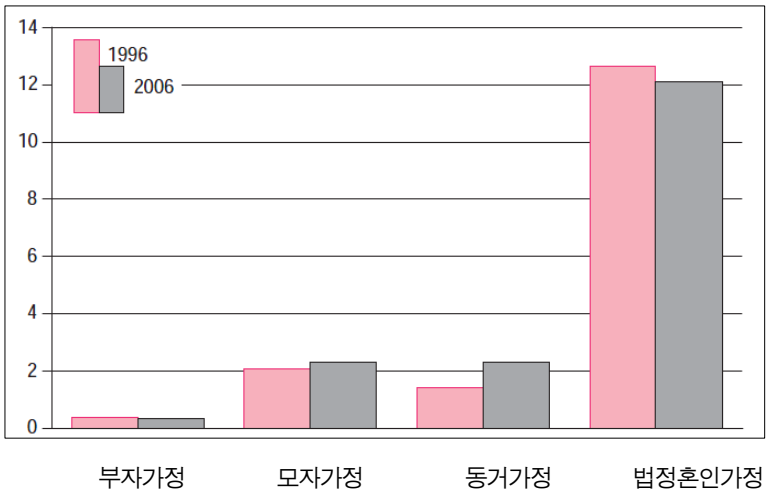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7).

[그림 Ⅲ-1] 1996년과 2006년의 영국 가족구조 현황(단위: 백만명)

가정유형별 자녀동거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2001년 총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영국내 전체가정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가정의 비율은 41%정도이며, 16세 이상의 비부양아동 자녀와 동거하는 가정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동거가정은 법정혼인가정에 비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유형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부양아동과 동거하는 비율은 각각 37.2%로 법정혼인가정의 39.3%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1> 자녀유형별 가정구조 현황

가정구조	가구수(%)
전체가정	16,545,777 (100.0)
자녀부재 가정	6,796,057 (41.1)
부양아동자녀 가정	7,220,594 (43.6)
비부양아동자녀 가정	2,529,126 (15.3)
법정혼인가정	11,641,007 (100.0)
자녀부재 가정	5,504,332 (47.3)
부양아동자녀 가정	4,559,060 (39.3)
비부양아동자녀 가정	1,577,615 (13.4)
계부모혼인가정	502,150 (100.0)
부양아동자녀가정	377,333 (75.1)
비부양아동자녀가정	124,817 (24.9)
동거가정	2,191,165 (100.0)
자녀부재 가정	1,291,725 (58.9)
부양아동자녀 가정	814,939 (37.2)
비부양아동자녀 가정	84,501 (3.9)
계부모동거가정	373,902 (100.0)
부양아동자녀가정	313,329 (83.8)
비부양아동자녀가정	60,574 (16.2)
모자 한부모가정	2,342,966 (100.0)
부양아동자녀 가정	1,664,081 (71.2)
비부양아동자녀 가정	678,885 (28.8)
부자 한부모가정	370,639 (100.0)
부양아동자녀 가정	182,514 (49.2)
비부양아동자녀 가정	188,125 (50.8)

주: 부양아동=16세미만 아동 및 16-18세의 전일제 교육참여 아동; 비부양아동자녀=16세 이상으로 배우자, 아동자녀가 없는 자녀.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7). 2001 Census 자료.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구성된 가정이므로 자녀부재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자 한부모가정과 부자 한부모가정은 부양아동자녀 가정의 비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자 한부모가정 중 부양아동가정의 비율은 7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자 한부모가정 중 부양아동가정의 비율은 49.2%에 그치고 있다. 부자 한부모가정의 경우, 비부양아동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통계로 볼 때, 한부모가정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대부분이고, 모자 한부모가정 중 71%가 16세미만의 부양아동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가정구조유형별 아동자녀 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부부동거가정의 경우 1972년의 경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 아동자녀가 있는 전체 가정 중 41%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2007년 현재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부동거가정의 비중은 22%로 감소하였다. 대신 2명의 자녀와 생활하는 가정이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2> 가정구조 유형별 아동비율 (단위: %)

년도	1972	1981	1997	2001	2007
부부동거가정					
아동자녀 1명	16	18	17	17	18
아동자녀 2명	35	41	37	37	36
아동자녀 3명 이상	41	29	25	24	22
모자 한부모가정					
아동자녀 1명	2	3	6	6	7
아동자녀 2명	2	4	7	8	8
아동자녀 3명 이상	2	3	6	6	6
부자 한부모가정					
아동자녀 1명	..	1	1	1	1
아동자녀 2명 이상	1	1	1	1	1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8). Social Trends 38: 2008.

모자 한부모가정의 경우 1972년에는 아동자녀가 있는 전체가정 중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했지만, 2007년 현재 21%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아동자녀가 1명 있는 모자 한부모가정이 7%, 2명의 아동자녀가 있는 모자가정은 8%, 3명 이상의 아동자녀가 있는 모자가정은 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앞에서 확인한 통계결과와 유사하게 부자가정의 비율은 1972년부터 2007년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 자녀의 현황

2006년 현재 영국 내 부양아동과 동거하는 가정의 수는 740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 가정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전일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16-18세 아동의 수는 대략 1,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1.8명의 부양아동이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6년 현재 전체 부양아동 중 65%에 달하는 대다수 아동자녀는 법정혼인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양아동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00만 명 정도는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1972년 14명 중 1명이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 가정구조유형에 따른 요부양아동 수

가정구조유형	아동수(단위: 천)	비율
법정혼인가정	8,420	65
동거가정	1,492	12
모자 한부모가정	2,812	22
부자 한부모가정	238	2
요부양아동 전체수	12,963	100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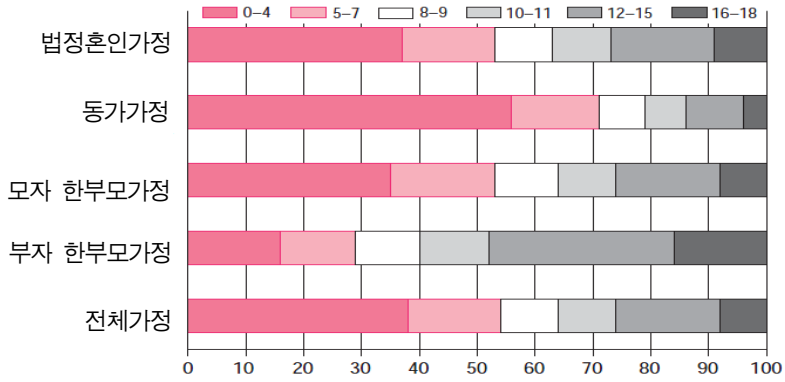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7); 2001 census.

[그림 Ⅲ-2] 가정구조 유형별 부양아동의 연령현황

가정구조의 유형에 따라 부양아동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2001년 총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7), 부자가정의 경우 다른 가정구조유형과 비교할 때 동거하는 부양아동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현재 부자가정의 부양아동 중 60% 이상이 1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자 한부모가정의 경우, 12-15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자녀와 16-18세의 전일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혼인가정과 모자가정유형의 경우 10세 이상 아동자녀의 비율은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모자가정 중 60%가 넘는 가정이 10세 미만의 아동자녀와 동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정의 범주 하에서도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아동자녀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자가정의 경우, 부양아동의 연령대가 주로 10대 청소년기에 집중된 반면, 모자가정은 주로 아동기 초·중기에 해당하는 부양아동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해당가정들의 욕구의 차이와 서비스의 차별성에 대해 정책수립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모자가정이 부자가정에 비해 아동양육의 부담이 보다 많고,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활동이 힘들어 빈곤탈피가 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

에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양질의 아동보육서비스가 경제적 활동참여 지원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문제를 다루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한부모가정전국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One Parent Families, 2007)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절반 이상이 혼인한 경험이 없으며,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연령중앙값은 36세이다. 한부모가정 가구주 중 10대의 연령비율은 매우 적으며, 한부모가정 가구주 중 13%가 25세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부부동거가정에 비해 장애를 가진 가족성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27%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아동의 18%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42%는 우울, 불안진단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26%는 위생상태가 불결한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31%는 주당 200파운드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어 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인 소득보충급여(Income Support)에 의존하는 한부모가정의 수는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59%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부모가정이 가지는 특징인 장기간동안 급여에 의존적인 채로 남아있을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기간 증가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Hales et al., 2000). 또한 소득보충급여에 대한 의존은 일반가정들이 누리는 필수품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은 영양, 의복, 난방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교통수단이용의 제한, 보험 및 저축 등 자산형성의 부족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부모가정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의 노동시장참여율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현재 한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41%로 감소하였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1%로 증가하였다.

저소득 가정에 관한 종단연구들(McKay & Marsh, 1994, Finlayson & Marsh, 1998)에서는, 학력이 낮고 직업관련 기술이 부족하고, 자녀가 어리며, 생계비가 없고, 공공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장기간의 소득보충수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의 소유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아동·청소년 자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요인은 빈곤이라 할 수 있다. 만성적 빈곤은 아동·청소년자녀에게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 산물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이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 빈곤은 가구주의 실직과 경제적 비활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강도가 가장 높은 빈곤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빈곤율은 중위소득 60%미만으로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명의 부모와 1명의 아동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2004년 상대적 빈곤선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은 주거비용 공제전 소득 11,232파운드($ 19,919), 주거비용 공제후 소득 9,464파운드($16,784)이다. 2004년 미국의 3인가구 빈곤선은 15,219불로 나타났다(Minoff, 2006).

영국의 아동빈곤율을 살펴보면 [그림 III-3]과 같다(HM Treasury,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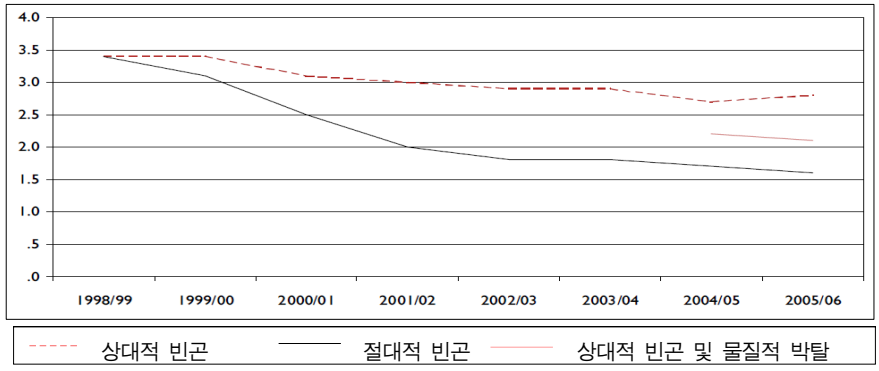

[그림 Ⅲ-3] 영국의 빈곤아동 추이(단위: 백만명)

주: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의 60%미만; 물질적 박탈= 아동에게 필요한 필수품 및 활동의 결핍

출처: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7). Household Below Average Income.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아동의 1/3에 해당하는 410만 명이 중위소득 60%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1998-99년에는 약 340만 명으로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아동빈곤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1999년 영국정부는 2020년까지 한 세대안에 아동빈곤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아동빈곤율 퇴치의 일환으로 NDLP를 추진하였으며, 빈곤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장급여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2005-06년 현재 60만 명의 아동이 상대적 빈곤에서 이탈하였으며, 빈곤율은 26%에서 2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절대적 빈곤상태에 처해 있던 아동의 수는 34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절반 이상의 감소를 보였다.

아울러 중위소득 70%이하에 처해 있으며, 아동발달에 필요한 필수품과 활동의 결핍을 의미하는 물질적 박탈(material deprivation)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2004-05년에 비해 10만명이 감소한 2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주요한 상대적 빈곤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M Treasury, 2008).

첫째, 한부모가정 하의 빈곤아동수가 20만명 정도 감소하였고, 빈곤에 처할 위험가능성 또한 46%에서 35%로 감소하였다.

둘째, 부양아동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빈곤아동은 60만 명이 감소하였고, 빈곤위험율은 40%에서 30%로 감소하였다.

셋째, 5세 미만 아동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빈곤아동은 50만 명이 감소하여, 빈곤위험율 또한 31%에서 23%로 감소하였다.

빈곤아동의 주요한 원인은 가구주의 실직 또는 미취업이다. 영국의 한부모 집단의 취업률은 44%로 배우자가 있는 어머니들의 취업률 68%보다 낮으며, 5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의 취업률은 55%로 배우자가 있는 어머니들의 취업률 75%보다 모두 20%이상 낮다(DSS, 2000; 송인주, 2001). 또한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취업률은 프랑스의 82%, 미국의 60%와 비교해도 낮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한부모가정의 낮은 취업률은 해당가정의

빈곤과 직결될 수 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인구수는 2008년 현재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10여년 전의 220만 명과 비교할 때 감소한 것이지만, 2004년 이후로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림 III-4]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의 가정구조유형별 아동인구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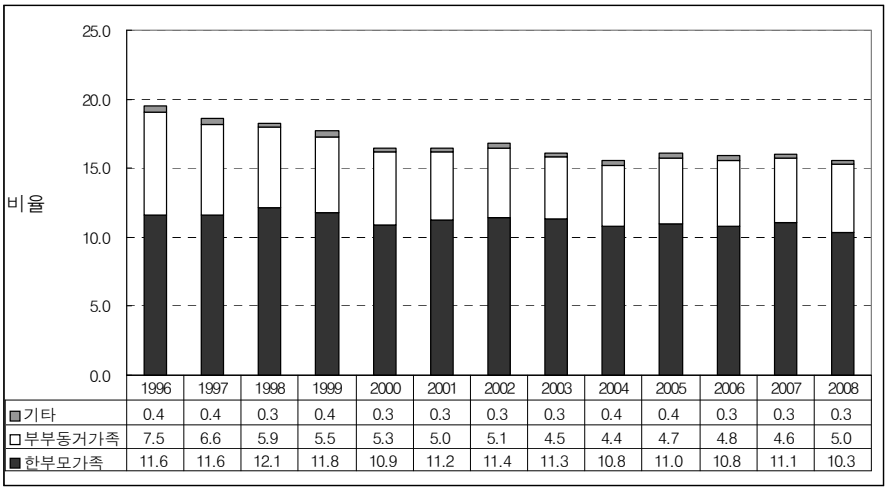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타	0.4	0.4	0.3	0.4	0.3	0.3	0.3	0.3	0.4	0.4	0.3	0.3	0.3
□부부동거가족	7.5	6.6	5.9	5.5	5.3	5.0	5.1	4.5	4.4	4.7	4.8	4.6	5.0
■한부모가족	11.6	11.6	12.1	11.8	10.9	11.2	11.4	11.3	10.8	11.0	10.8	11.1	10.3

출처: Labour Force Survey, ONS. 2009.

[그림 Ⅲ-4] 가정구조유형별 비근로가정의 아동인구 비율

그림에서처럼 비근로활동 가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전체 아동인구수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비율은 1996년 11.6%에서 2008년 10.3%로 1.3% 감소하였다. 그러나 비근로활동 가구의 아동 중 2/3는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119만명에 이르며, 이는 한부모가정의 아동 중 절반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동거가정 중 비근로활동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의 비율이 1/5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한부모가정은 상대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가구주가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가정구조유형별 저소득층인구의 비율을 지난 10년간 비교한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5]에서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전체가구 구성원 중 절반이 빈곤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0년전 한부모가정의 가구구성원 중 62%가 빈곤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다소 개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양아동이 있는 부부동거가정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은 여전히 한부모가정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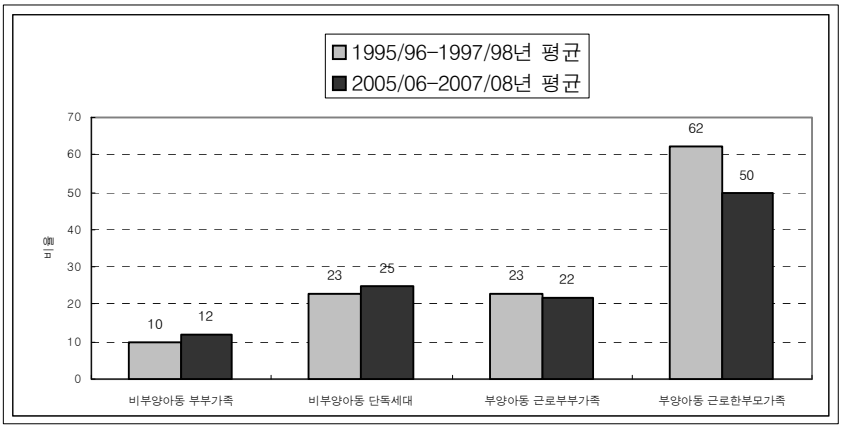

출처: DWP(2009).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그림 Ⅲ-5] 가정유형별 저소득층 인구의 비율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들의 경우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가정들과는 다소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부동거가정과 한부모가정 간에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III-6]과 같다.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부동거가정이 빈곤에 처할 위험율은 64%이고, 한부모가정이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율은 56%이다. 대략 140만 명의 아동이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빈곤아동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가구주와 보호자의 근로활동이 아동빈곤의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이들 가정들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가정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5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며,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가정으로 인한 돌봄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성인가구주의 장애는 상당히 높은 빈곤위험율을 보이고 있으며, 빈곤아동 중 70만 명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근로연계복지를 중심으로 한 아동빈곤탈피가 현실적으로 힘든 빈곤가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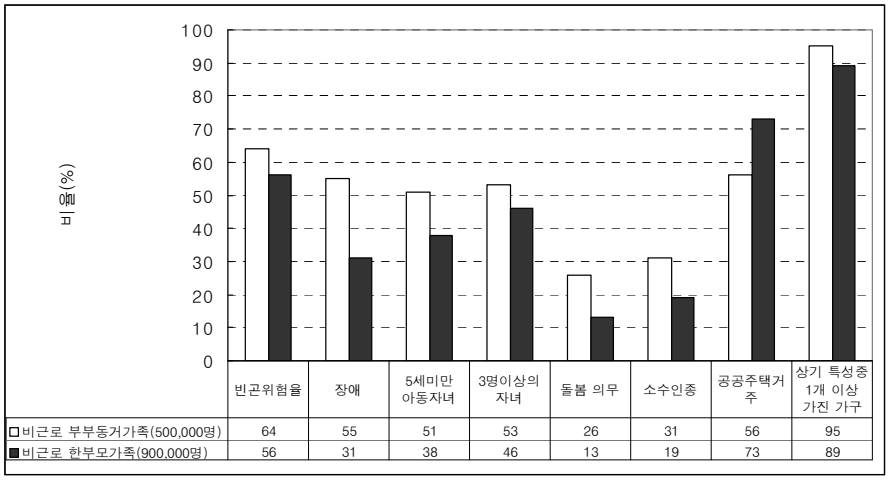

	빈곤위험율	장애	5세미만 아동자녀	3명이상의 자녀	돌봄 의무	소수인종	공공주택거주	상기 특성중 1개 이상 가진 가구
□비근로 부부동거가족(500,000명)	64	55	51	53	26	31	56	95
■비근로 한부모가족(900,000명)	56	31	38	46	13	19	73	89

출처: HM Treasury(2008); Child poverty Unit analysis of HABI data 2005-2006

[그림 Ⅲ-6] 근로활동 비참여 가정의 빈곤위험율 및 가구특성

그럼에도 가정의 근로활동은 해당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빈곤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사실이다. 가정의 근로형태별로 아동의 빈곤위험율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III-7]이다.

그림에서처럼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실직상태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빈곤에 처할 위험율은 90%에 달하고, 만성질환, 장애, 한부모가정 등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가정의 경우 아동빈곤 위험율은 74%이다. 반면 전일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아동빈곤위험율은 7%에 불과하며, 시간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아동빈곤위험율은 34%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가정의 경우 비근로활동가정에 비해 월등히 낮은 아동빈곤위험율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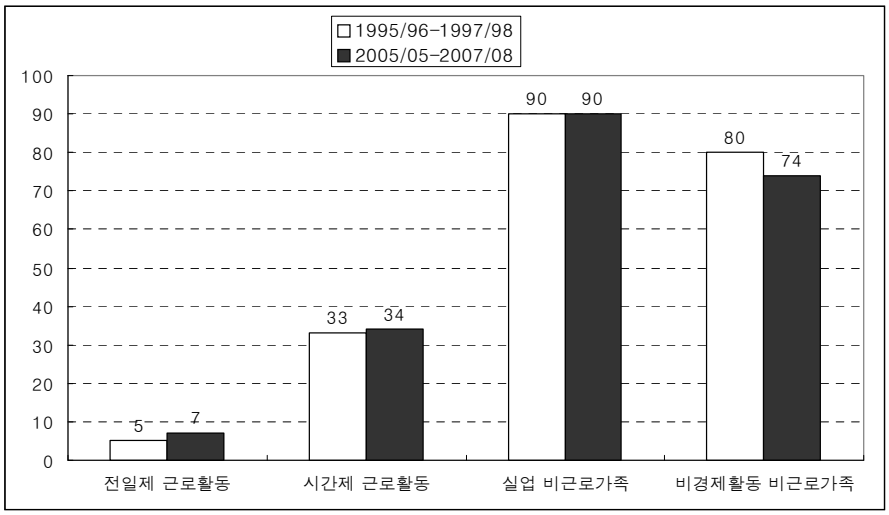

출처: DWP(2009).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그림 Ⅲ-7] 근로형태별 가정의 아동빈곤 위험율

결국 한부모가정의 아동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영국정부의 지원정책은 근로연계복지의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NDLP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부모가정이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라 할 수 있는 NDLP 프로그램과 한부모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정책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아동빈곤율을 5%대로 낮추기 위해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정에 대해 일차적으로 근로활동 참여동기를 촉진시키고, 취업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irsch,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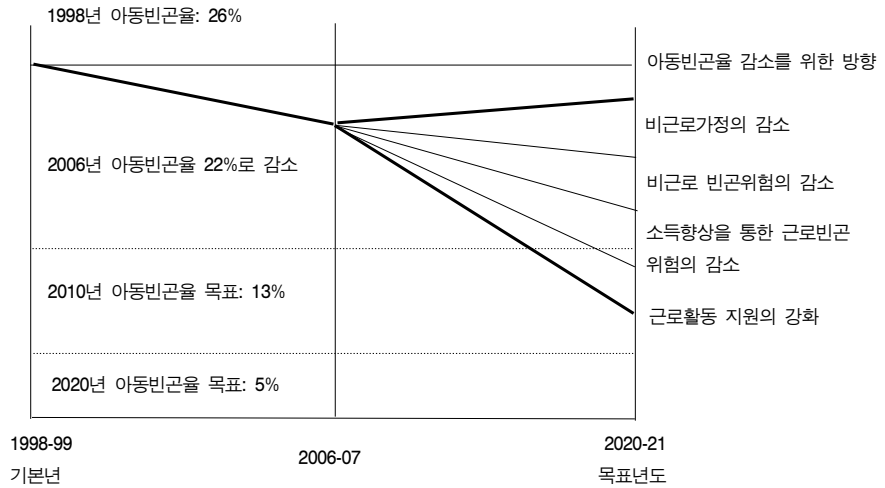

출처: Hirsch(2008: 5).

[그림 Ⅲ-8] 영국의 아동빈곤율 퇴치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그림에서와 같이 1998년의 아동빈곤율 26%를 2020년에 5%내외, 즉 60만 명선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시간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자녀 5명중 1명은 여전히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 이에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정내에 존재하는 비근로활동 가정을 감소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에게 근로활동 동기부여와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을 보다 많이 근로활동에 참여시키는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1998년의 아동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일차적인 기여를 했지만, 2020년까지 5%의 아동빈곤율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비근로 한부모

가정의 경우 빈곤아동감소율은 10%에 그쳤기 때문이다(Hirsch, 2008). 아울러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정을 근로활동에 참여시키더라도 급여 및 세액공제혜택의 증가율은 평균소득의 증가율보다 느리기에 아동빈곤율이 대폭 감소하기는 힘들다.

또한 비근로활동가정의 경우에도 아동자녀가 빈곤에 처할 위험율은 여전히 높다. 이에 근로활동에 원천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한부모가정이 가질 수 있는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비근로활동 한부모가정의 아동빈곤율은 64%에서 58%로 감소하였지만 기본적인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비근로활동 한부모가정이 빈곤으로부터 이탈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에 사회보장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위험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구내 모든 성인이 근로활동을 하는 가정의 아동자녀가 빈곤상태에 놓일 위험율은 8%이지만, 한명의 성인만이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가정의 아동빈곤위험율은 29%에 달한다. 이러한 위험율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근로활동을 수행하는 가정의 빈곤탈피를 위해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보육의 부담이나 가정내 장애 및 질환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임금보장과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활용을 통해 참여가능한 근로활동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성인가구주의 근로활동참여는 아동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가 빈곤탈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정책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방향아래 영국정부는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정의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빈곤가정의 원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소득이전정책을 지양하고, 근로동기부여, 취업지원확대, 최저임금제 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소득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세액공제급여(Tax Credit)를 통해 근로소득과 함께 총소득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활동에 참여할 경우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인해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삭감을 두려워할 수 있다. 이는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정들의 근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근로활동 관련 세액공제급여를 통해 근로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공제하고, 아동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전체적인 소득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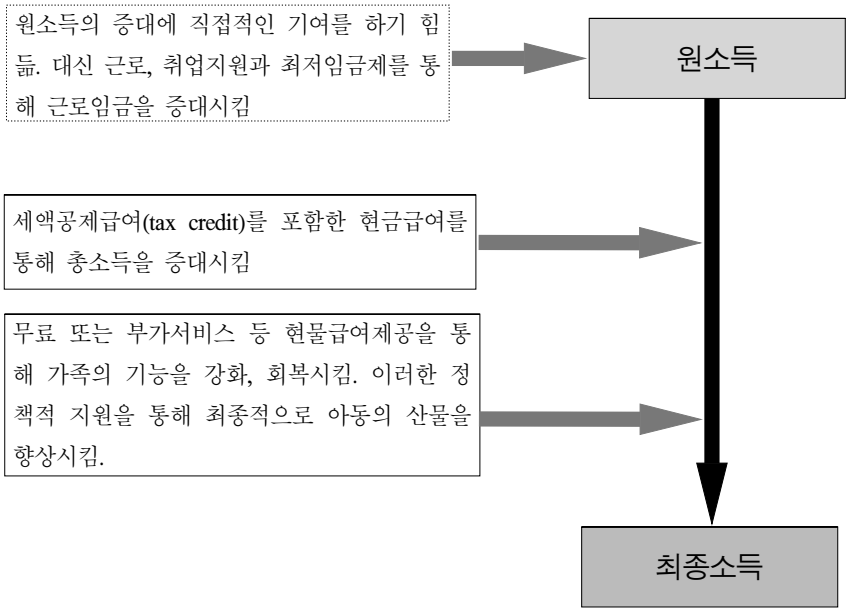

출처: HM Treasury. (2008).

[그림 Ⅲ-9] 아동가족의 소득증대를 위한 개입전략

마지막으로 다양한 무료, 부가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복시켜줌으로써 빈곤가족의 아동들이 부정적인 발달산물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근로활동참여로 인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과 정서적 지지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빈곤가족의 소득이 향상되고 아동・청소년자녀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실제 한부모가족과 같은 빈곤가족은 단순히 부모의 근로활동참여를 통해 빈곤탈피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한부모가족과 빈곤가족에는 부족할 수 있다. 이에 [그림 III-9]에서와 같이 근로활동지원과 고용을 위한 지원 이외에 아동·청소년자녀의 발달산물 강화를 위한 교육, 보건, 가족체계에 대한 지원, 주거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상태의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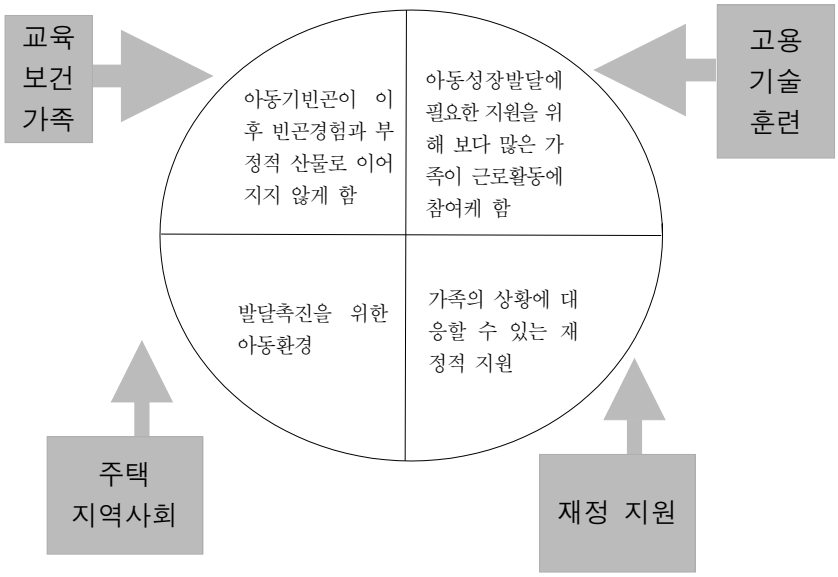

출처: Child Poverty Unit(2009).

[그림 Ⅲ-10] 2020년 아동빈곤퇴치를 위한 기본전략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정의 아동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주요한 전략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Minoff, 2006).

첫째, '일할 수 있는 자에게 일을(work for those who can)'이라는 전략을 통해 부모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가족대상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장 많이 필요한 가족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박탈의 악순환을 깰 수 있도록 뛰어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부모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요한 인생전환점에서 자녀에 대한 유용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한 영국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정을 위한 소득지원정책

한부모가정은 전통적인 소득보충급여(Income Support, IS)를 수급받아 생활해왔다. 소득보충급여(IS)는 주당 16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을 하는 성인이 수급받는 보충급여이다. 1999년 현재, 170만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929,000명의 한부모가 소득보충급여의 수혜자였다(신용주, 2001).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비취업 한부모는 소득보조수당과 함께 주거급여(Housing Benefit)와 지방세 세액공제급여(Council Tax Credit)를 받는다.

그런데 1980년대 초와 90년대 초에 이르는 경기 침체기 동안에 한부모들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소득보충급여를 받는 모든 가정의 약 2/3는 한부모가정이었다. 한부모 중에서도 20세에서 34세의 연령층이 소득보충급여에 의존할 확률이 높았고, 특히 20세 이하 연령층에서 소득보충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자녀를 가진 비취업 한부모의 경우 2000년 현재 주당 52.20 파운드의 소득보충급여와 27.55 파운드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기에 이것만으로는 빈곤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영국정부는 아동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가장 지속가능한 방법이 부모의 근로활동참여이며, 이는 아동이 미래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HM Treasury, 2004).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활동과 연계된 사회적 급여체계를 개선하였다. 근로세액공제급여(Working Tax Credit, WTC) 및 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Childcare Tax Credit)가 이러한 사회보장급여체계 개선의 산물이다.

근로세액공제급여(WTC)는 근로가족세액공제급여(Working Family Tax Credit)를 2003년부터 대체한 것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충하는 것이다. 원래 근로가족세액공제급여는 과거 1988년부터 도입되어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족에게 지급되어온 가족급여(Family Credit)를 1999년부터 대체해 온 것이다. 이는 16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정 중 최소한 한 명이 취업하여 주당 16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 가정에게 주어진다. 근로가족세액공제급여의 도입은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한부모 관련 정책이 여성의 임금취업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로 평가된다(신용주, 2001).

근로가족세액공제를 제공하면서 영국정부는 한부모들에게 몇가지 선택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복지급여를 일부 받으면서 주당 16시간 이하로 일하거나, 마지막으로 주당 16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근로가족면세급부를 받는 것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2003년 근로가족세액공제급여(WFTC)는 장애 또는 부양아동이 없는 저소득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급자격을 바꾸면서 근로세액공제급여(WTC)로 전환되었다. 근로세액공제급여는 장애근로자, 아동보육, '30시간 근로', 기초성인, 부부 및 한부모 요건 등의 몇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근로자와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이 주당 16시간의 노동을 한다면 근로세액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대상자들이 전일제 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최소 30시간 이상

의 근로활동을 할 경우 '30시간 근로'요건이 급여에 추가된다. 부양아동과 장애가 없는 25세 이상의 성인근로자는 주당 30시간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세액공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05-06년도에 빈곤선 이하의 개인 또는 부부가 최대 수급가능한 급여액은 기본성인요건으로 1년에 1,620파운드($ 2,866), 30시간 근로요건으로 년간 1,595파운드($ 2,282), 한부모 요건으로 년간 1,595파운드($ 2,822)로 나타났다(Minoff, 2006). 만약 근로세액공제급여를 받는 가족이 기준선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1파운당 37펜스씩 세액공제급여가 삭감된다. 하지만 기준선이하의 소득증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소득증대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세액공제급여의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Childcare Tax Credit, CTC)는 주당 16시간 근로활동을 하는 부모 또는 한부모에게 아동보육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5/06년도에 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CTC)는 2명 이상의 아동자녀가 있는 경우 주당 300파운드($ 532), 1명의 아동자녀에 대해서는 주당 175파운드($ 310)씩 소요되는 아동양육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결국 2명 이상의 아동자녀가 있는 가정이 받는 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는 최대 주당 210파운드($ 373), 1명의 아동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최대 122.5파운드($ 217)이다(Minoff, 2006). 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되지만, 수급가정의 소득이 빈곤선 이상이 될 때까지는 지속된다.

최저임금제(minimum wage) 또한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정의 취업을 지원하는 주요한 정책이다. 실제 노동당정부 이전까지 영국은 최저임금제를 가지지 못했다. 1999년 수립된 최저임금제는 22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 시간당 최저 3.60파운드($ 6.40)에서 시작해 2006년 현재 시간당 5.05파운드($ 9.0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근로활동관련 세액공제급여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수혜대상가구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III-11]은 세액공제급여 수급가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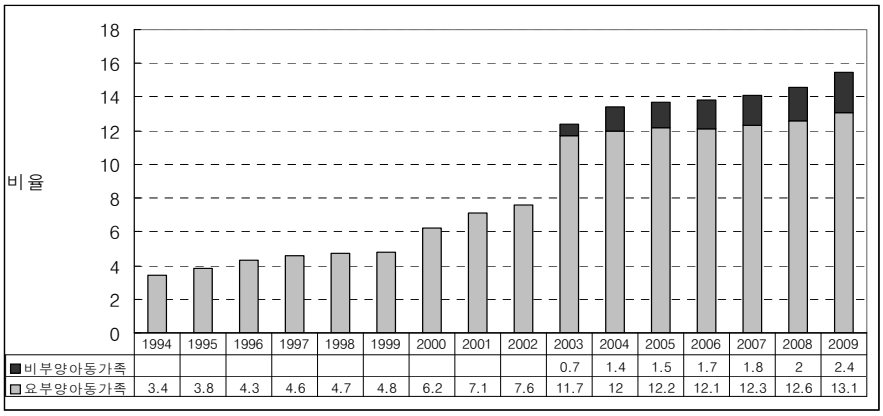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부양아동가족										0.7	1.4	1.5	1.7	1.8	2	2.4
□요부양아동가족	3.4	3.8	4.3	4.6	4.7	4.8	6.2	7.1	7.6	11.7	12	12.2	12.1	12.3	12.6	13.1

출처: Information Analysis Directorate, DWP(1999년까지); Geographic Analyses, HM Revenue & Customs(2000년 이후)

[그림 Ⅲ-11] 근로연령 가구중 세액공제급여 수급가구의 비율

그림에서처럼 근로연령가구 중 세액공제급여 수급가구의 비율 역시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영국정부가 근로활동과 관련한 사회보장급여 및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취업동기를 강화하고 근로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음을 의미한다.

2009년 현재 근로연령 가구 중 290만 명이 아동세액공제급여(Child Tax Credit)를 포함한 세액공제급여를 수급받고 있다. 이는 2000년의 수급규모에 비해 3배정도 증가한 것이며, 모든 근로연령 가구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의 이유는 2003년 종전의 근로가족세액공제급여(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대체한 근로 및 아동세액공제급여(Working and Child Tax Credits)가 수급자격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세액공제급여 증가세의 3/4은 부양아동을 가진 성인에 대한 보다 관대한 수급자격기준 완화로 설명되며, 나머지 1/4은 부양아동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도 수급자격을 개방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3월이전까지 세액공제급여는 오직 부양아동이 있는 성인에게만 가능하였다.

세액공제급여(tax credit)를 통해 아동빈곤의 탈피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III-12]와 같다. 그림에서처럼, 세액공제급여를 통해 현금급여를 받아

빈곤을 이탈한 아동수는 1994/95년의 20만명에서 시작하여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08년에 빈곤을 탈피한 아동수는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1994/95년에 세액공제급여의 혜택을 받아 빈곤을 이탈한 아동수인 20만 명보다 8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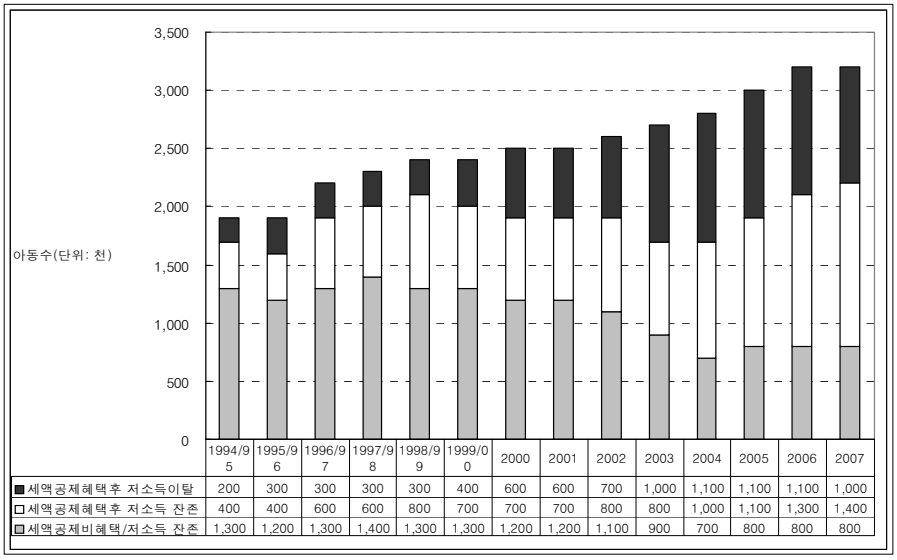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세액공제혜택후 저소득이탈	200	300	300	300	300	400	600	600	700	1,000	1,100	1,100	1,100	1,000
□세액공제혜택후 저소득 잔존	400	400	600	600	800	700	700	700	800	800	1,000	1,100	1,300	1,400
▨세액공제비혜택/저소득 잔존	1,300	1,200	1,300	1,400	1,300	1,300	1,200	1,200	1,100	900	700	800	800	800

출처: DWP(2009).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그림 Ⅲ-12] 세액공제급여 혜택을 통한 빈곤이탈 아동수

하지만 세액공제급여 수혜가 필요한 빈곤가구의 아동수는 1998/99년의 240만 명보다 증가하여 2007/08년 현재 310만여 명에 달하다. 이는 저소득 근로빈곤가구의 아동수가 세액공제급여제도 도입 후에도 여전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액공제급여를 받은 가구의 아동 중 1/4에 해당하는 100만 명의 아동이 빈곤을 탈피하였다. 이는 세액공제급여가 한부모가정 아동들이 빈곤을 탈피하는데 유용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세액공제급여의 혜택을 통해 빈곤이탈이 가능했던 아동비율을 살펴보면, 세액공제급여의 혜택이 주로 한부모가정에게 유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한부모가정 세액공제급여 수혜아동 중 62.0%가 빈곤을 탈피한 반면, 부부동거가정의 경우 빈곤을 탈피한 아동 은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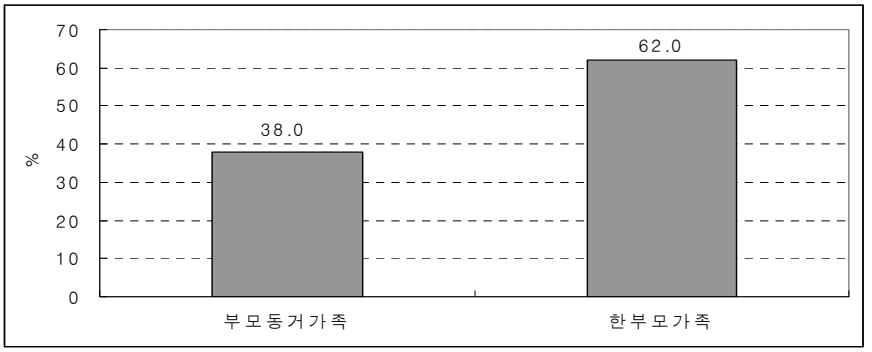

출처: DWP(2009).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2005/06 -2007/08 평균.

[그림 Ⅲ-13] 세액공제혜택으로 인해 빈곤이탈이 가능하였던 아동의 가구유형별 비율

(2) 한부모가정을 위한 고용지원정책

영국정부는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정들에게 취업과 자립을 촉구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한부모가정은 영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전략 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대상집단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는 한부모가 근로활동 참여비율을 2010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정책이 중요한 것은 영국정부가 2020년까지 아동빈곤을 5%대로 감소시키겠다는 내건 목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자녀를 가진 부부동거가정들은 대부분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부양아동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 중에서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부모가정이다. 이에 한부모가정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인 근로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는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최우선의 복지정책으로 근로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상정하였고, 그 결과 보다 많은 한부모들이 실질적인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고용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노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고려된다(Hales et al., 2000). 첫 번째 접근방법은 '근로최우선(work first)'전략이다. 이는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개입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다. 이 경우 중요한 개입방법은 가능한 빨리 직업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접근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초기 투자보다는 구직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비록 일자리가 개인의 욕구와 맞지 않아도, 노동을 시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신 근로활동의 참여가 출발점이 되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접근은 노동시장참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근로최우선전략은 상대적으로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근로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직관련 상담사라는 최소한의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근로최우선전략은 참여자들이 계속 근로활동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렵다. 반면 인적자본투자전략은 정책집행 초기에서부터 보다 많은 자원투자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기술습득이 가능하도록 상대적으로 심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전략은 참여자의 구직가능성과 노동유지가능성 모두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경우, 근로최우선전략과 인적자본투자전략이 혼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로최우선전략이 강조되는 구직활동지원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정부가 근로활동강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입전략이 뉴딜전략이다. 가장 어린 아동자녀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며, 주당 16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을 하는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을 위한 뉴딜프로그램(New Deal for lone parents, 이하 NLDP)'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비용, 교통비,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재정문제를 상담해주는 대인상담사(personal adviser)와 접촉할 수 있다. 대인상담사는 근로활동이 가져다 줄 소득향상분을 계산하고, 참여희망 직업의 상담, 구직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수립, 구직활동 지원, 훈련기회 탐

색, 아동보육지원, 구직활동중 발생할 비용문제 지원, 근로이후 수급가능한 급여설명, 근로활동 이후의 지원 및 자문제공 등을 수행한다.

1997년 시범사업의 형태로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한부모들이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입초기에는 가정 내 가장 어린 자녀가 학교에 가는 연령이 된 한부모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2000/2001년에는 막내 자녀가 3-4세인 한부모에게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2000년 10월부터는 근로초점면접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한부모와의 면접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결정하게 되는 대인상담사의 역할이 특징이다. 대인상담사는 인터뷰를 통하여 구직, 보육, 교육, 훈련 및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총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한부모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한다. 2001년부터는 근로초점면접 후에 훈련을 받는 한부모에게 15파운드의 훈련참여급여를 제공하며, 취업시에는 소득보조수당에 별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NDLP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한부모는 대인상담사(Personal Adviser)와 언제라도 접촉가능하다. 대인상담사와의 면접은 NDLP정책의 가장 주요한 전달기제로 평가된다. 대인상담사는 구직준비가 되어있는 한부들에게 구직탐색정보 제공, 한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기술 확인, 직업교육과 훈련을 받을 기회의 제공, 근로참여시 수급받을 수 있는 급여정보 제공, 아동보육에 대한 정보와 실질적 지원 제공, 근로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주나 다른 기관과의 연계활동 등을 수행한다.

NDLP는 부양아동이 16세 이하인 모든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초 도입때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적어도 5세 3개월인 한부모들을 표적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표적집단은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적어도 3세 이상이고 소득보충급여(IS)를 수급받는 한부모로 확대되었고, 2001년 12월부터는 일하지 않는 한부모들과 주당 16시간 이하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한부모로 확대되었다.

한부모를 위한 근로초점면담서비스(Work Focused Interviews, WFIs)는 한부모가정과 부양아동가정의 배우자들에게 대인상담가와 근로활동 참여를 통한 혜택을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2008년까지 소득보충급여(Income Supprot)를 수급받고 있는 모든 한부모들은 6개월마다 근로초점면담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2008년 10월부터는 소득보충급여 자격이 상실되는 마지막 해에는 4개월마다 한번씩 면담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2008년 4월부터는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 신청자의 배우자 역시 매 6개월마다 면담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부모를 위한 뉴딜플러스(New Deal Plus for Lone Parents) 프로그램은 한부모를 위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인상담가의 지원, 근로활동급여(In Work Credit, IWC), 근로활동응급재량기금(In Work Emergency Discretion Fund, IWEDF) 등이 제공된다. 이 중 근로활동급여(In Work Credit)는 근로활동에 복귀한 첫 해 동안 한부모에게 매주 40파운드의 급여를 지불한다. 이는 임금노동에 참여하여 얻는 재정적 이득을 증대시키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취업전 지원서비스(pre-employment support)에는 직장체험기간을 3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근로활동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한부모가 고용주와의 구직면접을 구직지원센터(Jobcentre Plus)가 보장하는 구직면담보장제(Job Interview Gurantee), 기초적인 취업기술 및 고용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기술 습득을 위한 취업준비훈련(pre-work training)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근로활동에 참여중인 부모에 대해서는 근로활동급여(IWC)를 확대하고, 근로활동 중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부모가 근로활동을 시작하며 부딪히는 예상치 못했던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활동응급재량기금(IWEDF)을 운영하고 있다.

NDLP 프로그램의 주요한 서비스전달과 운영은 구직센터(Jobcentre Plus)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조직은 근로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산하의 정부기구로 근로연령 성인에 대해서는 취업 및 훈련을 위한

원조와 상담을 제공하고, 근로가 불가능한 성인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NDLP 프로그램의 수행에서 중요한 특징은 근로초점면담서비스(WFIs)와 같이 구직에 관한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인상담사(personal adviser)를 통해 한부모가정에게 필요한 구직활동과 아동보육에 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은 한부모가정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Evans, Eyre, Millar, & Sarre, 2003). 아울러 이러한 유형의 개입전략은 소요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에 비용대비효과에 대한 외부의 강력한 요구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

NDLP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간동안의 성과를 측정하기는 힘들다. 구직활동과 과련된 지원을 받은 참여자들이 곧바로 노동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장기간에 걸친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최우선전략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최초근로활동의 참여가 점차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한부모가정이 구직활동과 관련한 상담과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충분한 노동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들은 NDLP와 같은 공적인 지원 없이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반면, 자녀들이 건강상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노동시장으로의 참여가 당장에 힘든 한부모들도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대인상담사들이 개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참여가 힘든 참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장 적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Hales et al., 2000; Evans et al., 2003).

NDLP 프로그램은 도입초기부터 참여자의 자발성(voluntarism)에 기반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참여를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급여의 승인과 병행하여 사용되면서 자발성 보다는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변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변화는 NDLP 프로그램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동시키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데 일조하고 있다(Evans et al., 2003).

하지만 근로최우선전략에 기반한 한부모가정을 위한 고용지원정책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모성을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틀은 유지한 채 여성의 자립을 위한 취업 역시 강력하게 권장하는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강욱모, 2004; 신용주, 2001).

한부모들에게 주당 16시간의 시간제 근로로는 생활유지가 어렵고, 전일제 취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아동보육이 제공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과 고숙련 직업기술훈련에 대한 지원부족은 나은 일자리보다는 저임금노동에 잔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강욱모, 2004; 신용주, 2001). 이에 한부모들이 근로활동참여에 필요한 아동보육지원이 충분하고, 근로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한, 시간제 취업보다는 기존의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성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3)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지원정책

영국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전일제 취업과 근로활동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육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보육에 관한 국가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을 통해 14세까지의 아동·청소년에게 집근처에서 양질의 보육 및 양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설계하고 있다(DfEE, 1998). 여기에는 방과후학교와 학교밖에서 아동보호 서비스가 포함된다. 하지만 부모의 근로시간과 아동의 학교수업시간간의 불일치는 한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벽이다. 이에 다양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우선, 한부모를 포함하여 부양아동이 있는 부모들에 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flexible working)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주는 16세 미만의 부양아동이 있는 근로자가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받아들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법정모성양육휴가(statutory Maternity leave)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유·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2007년 26주에서 39주로 확대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부성양육휴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영국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비동거부모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청구하여 제공하는 아동생활유지(child maintenance)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동양육비 수준을 2008년 말까지 주당 20파운드로 상향하고, 2010년에는 주당 40파운드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지원청(Child Support Agency, CSA)은 비동거 부모로부터 부양아동의 양육비를 받아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한부모에게 비동거 부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동지원청에 등록하여 알리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소득보충급여가 감액된다. 즉, 이 제도는 별거하고 있는 아버지의 급여에서 자녀양육비를 공제하고, 어머니에게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한부모 양쪽이 모두 불만족스럽게 느껴 비협조적이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욱모, 2004). 그 결과, 1999년 현재 922,000명의 한부모가 아동지원청으로부터 아동지원을 위한 양육비 사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00년 현재 소득보충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70%이상이 아동지원청에 신청하지 않고 있다(강욱모, 2004).

(4) 한부모가정지원과 관련된 보편적 급여 및 긴급지원제도

근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정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활동의 참여가 장기간 불가능한 한부모가정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한부모가정에게는 근로동기의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소득향상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급여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M Treasury, 2008; Minoff, 2006). 우선, 아동양육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소득과 근로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수당인 아동수당(Child Benefit)이 있으며, 아동세액공제급여(Child Tax Credit)는 부양아동이 있는 부모와 양육자에게 제공되는 자산조사기반의 수당이다. 이는 부모의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부모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원천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에게 제공하는 급여이다. 대략 90%정도의 가족에게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보편적 급여형태로 2005/06년 현재 58,000파운드 미만의 가구소득 기준이 부여되며, 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66,000파운드로 조정된다. 아동세액공제급여는 소득관련 지원제도의 체계 안에 통합되어 있으며, 일차적 양육제공자에게 지불된다(Minoff, 2006).

아동세액공제급여는 2005/06년 현재 수급자격이 있는 가족에 대해 매년 545파운드($ 967)씩 지불되며, 신생아를 출산한 해는 두 배로 지불된다. 또 아동 1인당 년간 1,690파운드($ 3,000)씩 지불된다. 600여만 가족과 1,000만 여명 정도의 아동들이 아동세액공제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Minoff, 2006).

아동수당(Child Benefit)는 1977년 도입된 보편주의적 수당제도로 아동수에 따라 수급급액은 차이가 난다. 2005년 현재 한 가족 당 첫째 아동에 대해 년간 884파운드($ 1,540)씩 지불되며, 두 번째 아동부터는 년간 595파운드($ 1,033)씩 지불된다. 첫 번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은 1997년 대비 25% 증가된 금액이다(Minoff, 2006). 또한 적극적 구직활동과 근로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실업인구에 대해 제공하는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이 있다.

보편적 급여 이외에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정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대출하는 재정지원제도가 있다. 우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영국정부는 1억2천만 파운드를 재정통합기금(Financial Inclusion Fund)에 사용하였다. 이 기금은 부채와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울러 사회기금(Social

Fund)은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무리한 부채를 피할 수 있도록 무이자대출과 위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금전관리생활기술 프로그램(Skills for Life Financial Literacy)을 통해 성인들이 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기금(Family Fund)은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제도이다. 2006-2007년의 경우, 38,857건의 재정보조신청에 대해 평균 549파운드의 재정보조를 제공하였다. 현재는 16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만 제공하지만, 향후 18세 장애아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5)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의 발달 및 교육지원프로그램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에 대한 소득이전, 고용지원, 재정지원 이외에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한부모가정을 포함하여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주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M Treasury, 2008; Minoff, 2006).

슈어스타트 지역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es, SSLPs)은 지역에 기반하여 아동의 보건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수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운영되며, 조기개입, 아동보육, 보건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원스톱형 지원프로그램이다.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욕구에 맞추어 기획되고 제공되어 다양한 범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은 비근로가구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은 NDLP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근로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과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은 해당지역에 설치된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아동센터는 5세 미만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형 서비스의 중심축기능을 수행한다. 아동센터는 가족보건, 방문부모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아웃리치 서비스, 통합적인 조기교육 및 아동보육, 훈련 및 취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190만명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500개의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전 지역에 개소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아동양육법(Childcare Act)은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부모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를 위해 이용하기 편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3-4세 아동은 년간 38주 동안 매주 12.5시간의 무료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0년에는 모든 아동들이 주당 15시간의 무료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1억 파운드의 예산이 3년간에 걸쳐 무료조기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투자될 계획이며, 낙후지역에 2세 아동을 위한 아동보육시설을 20,000여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50,000명의 비근로활동 부모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7,500만 파운드의 예산이 무료 아동보육 서비스 제공에 할당되었다.

아동기금(Children's Fund)은 5-13세 아동의 교육성취를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된다. 아동기금은 부모의 올바른 양육행동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상담, 가족지지, 보건인식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은 사후대처적 개입보다는 예방적 개입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방과후 학교(extended school)는 지역사회의 민간기관 또는 일선학교에서 학습지원서비스, 아동보육서비스, 청소년을 위한 휴식 및 보호공간제공, 부모 및 가족지원서비스, 보건서비스, 지역사회 성인학습을 위한 시설활용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체 학교의 2/5에 해당하는 9,500여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커넥션(Connexions) 프로그램은 13-19세 청소년들을 표적으로 하며, 성인기로의 원만한 전환을 도와주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진로상담을 넘어 가족관계, 약물남용 등 다양한 문제영역에 대한 개입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학교중도탈락, 직업훈련프로그램 미참여, 실업상태 등에 놓여 있는 16-18세 청소년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회정서적 학습(Social and Emotional Aspects of Learning)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80%와 중등학교 20%가 학교차원의 접근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대인관계, 사회적 기술, 정서적 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이다.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of Child, School, and Families, DCSF)은 다양한 아동에게 무료도서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신탁(Booktrust)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바우처를 통해 신선한 과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 지방정부는 무료급식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급식신탁기금(School Food Trust)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교・가족부는 2011년까지 6억5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6년에 제정된 교육 및 평가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은 저소득층 아동이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학교선택의 기회가 제한당하지 않도록 무료통학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학교・가족부(DCSF)는 2008년부터 장기간 지속가능한 성취를 위해 2,700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자된 청소년개발기금(Youth Sector Development Fund)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약물남용, 십대 임신, 노숙 등의 문제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저소득층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자산조성 및 재정보조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HM Treasury, 2008; Minoff, 2006).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은 저소득층가정의 청소년들이 16세 이후 교육 및 훈련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18세때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은 200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보편주의에 기반하여 모든 아동들이 18세에 이를 때까지 재정적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가족들이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신생아들에게 정부는 7세 때까지 가족과 공동으로 매년 250파운드씩 기금을 조성하고, 아동세액공제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250파운드를 부가적으로 제공하여 총 500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 기금은 아동이 18세에 이를 때까지 접근이 불가능하며,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저축의 길(Saving Gateway)' 시범사업은 선정지역에 거주하는 빈곤가정의 저축계좌와 대응하여 제공되는 기금사업이다. 2002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1 파운드 이상의 돈으로 계좌를 열 수 있고, 한달에 최대 25파운드씩 저축할 수 있고, 최대계좌한도는 375파운드이다. 18개월 약정으로 실시되었으며, 저축계좌의 금액에 대해 정부가 1대1의 금액으로 대응제공한다.

한편,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개입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비용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다. 이에 영국에서는 다양한 조기개입 및 예방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HM Treasury, 2004). [그림 III-14]는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시한 것이다. 우선, 청소년통합지원단(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s, YISP)은 8-13세 위기아동 및 청소년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주요한 서비스제공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기금이 현재 92개 YISP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13-16세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청소년통합사업(Youth Inclusion Projects)이 있다. 문제행동의 고위험군에 속하거나 이미 범죄행위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스포츠활동이나, 약물, 보건, 교육, 취업 등에 대

한 구조화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2004년 현재 70개의 청소년통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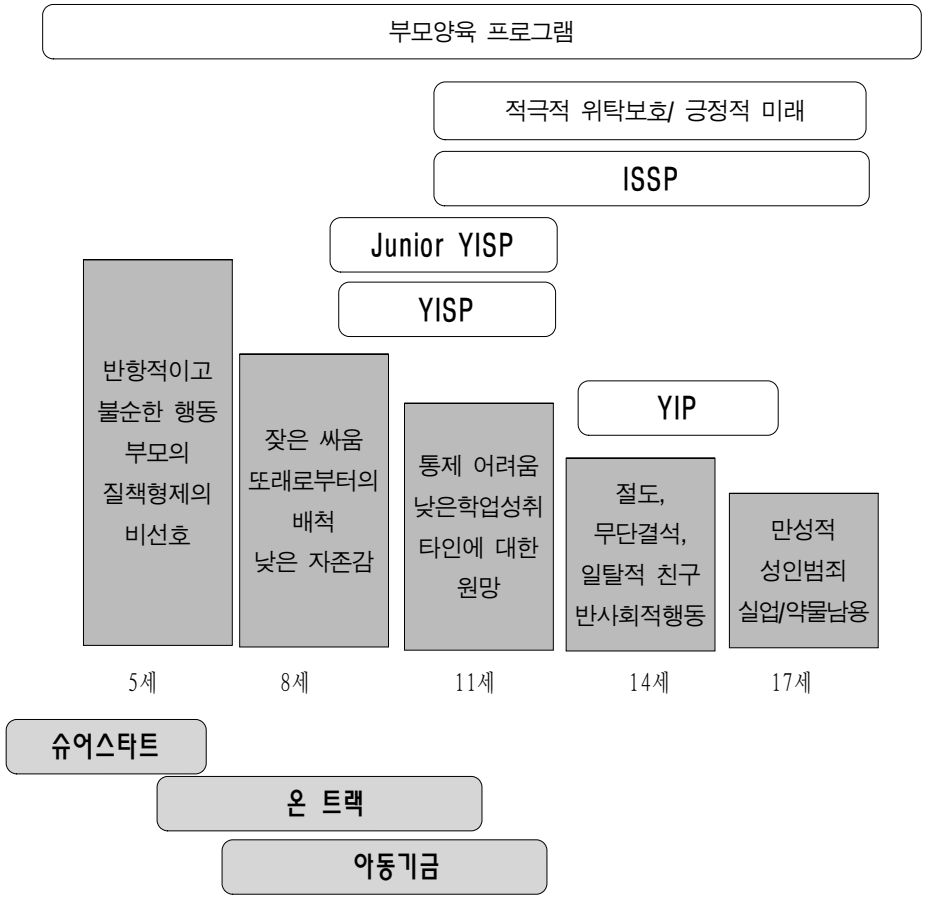

출처: HM Treasury(2004). *Child Poverty Review.*

[그림 Ⅲ-14]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기개입 및 예방프로그램

집중적 지도감독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Programme, ISSP)은 10-17세의 만성적인 비행행동청소년집단에 대한 대안적 보호관찰제도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만성적 비행집단이 가장 많은 수의 범죄행

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이들 고위험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영국정부는 만성적 범죄청소년집단의 생활양식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긍정적 미래(Positive Future)사업은 전국적인 규모로 관리되는 스포츠활동 중심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낙후지역에서 성장하는 10-19세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통해 긍정적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트랙(On Track)' 사업은 4-12세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예방프로그램으로, 비행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처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다수의 온트랙 프로그램은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교사가 잠재적 문제행동을 확인하면 필요한 개입서비스가 제공된다.

4)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을 위한 시사점

영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지원강화를 통한 자활중심의 복지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소득이전정책은 한부모가정이 처해있는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의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추진되는 NDLP프로그램은 한부모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보육의 비용과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득증대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장을 알선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근로활동참여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아동보육지원과 탄력적 근무제도가 필수적이다. 한부모가정의 대부분이 여성가구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양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그 수가 많다는 점은 여성가구주의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이다. 이에 한부모가정의 취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가구주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료아동조기교육프로그램과 아동보육세액공제급여(childcare tax credit)은 한부모가정이 안고 있는 아동보육부담을 경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부양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보육의 문제가 근로활동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질 때, 기대했던 한부모가정의 근로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부모가정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정의 모두가 근로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동양육의 부담, 만성적 질환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근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저소득직종에 제한적인 취업만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근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만성적인 빈곤상태에서 탈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근로활동참여 촉진과 함께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한부모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정의 대다수는 여성가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점차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증대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한부모가정에서 남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8%-11%내외이다.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가 경험하는 아동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상황은 상이할 수 있다. 남성가구주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양아동의 연령이 청소년기에 해당될 경우가 많아 여성 한부모가정에 비해 아동보육의 부담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지도감독 제공이 어려워 청소년자녀의 부적응문제를 보다 많이 경

험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활동비율이 남성 한부모가정에서 보다 높기에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은 여성 한부모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한부모가정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서비스 욕구를 고려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자녀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소득이전중심의 정책과 근로활동중심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으로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위기상황들에 대해 올바른 대처방법과 해결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원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아동초기부터 청소년기 후기까지 발달단계의 연속성에 따라 지속적이고 연계된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및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양육의 결핍으로 인한 기초능력의 부족, 부정적인 인성개발의 결과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 진학하여서 학업성취의 실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상급학교의 진학 또는 진로의 탐색과 관련하여 유용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아동초기부터 적극적인 조기개입 및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나 학교를 기반으로 한 온트랙 프로그램, 낙후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청소년통합지원단 등은 유용한 지원방법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부처의 공동운영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미국[11)]

미국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아동수당 등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은 미국의 복지정책의 일부분이며, 특히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설보호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아동과 청소년중심의 국가개입주의를 거쳐서, 현재는 가족중심의 가족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가족보호 정책이란 생물학적 가정은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유지하여야 하다는 것이다. 대리보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대리보호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분리된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특히, 미국은 가족해체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중의 하나이지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과 관련한 지원정책은 관련 법률과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Title XIX of the Social Security Act),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 조정법(PPWORA)과 그에 따른 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책보조금제도(TANF), 식품교환권(Food Stamps), 근로소득보전세재(EITC), 헤드 스타트(Head Start) 등이 주요한 관련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현황과 지원정책을 개관하고, 가장 대표적인 정책내용으로 정책보조금제도(TANF)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지원정책이 우리나라 위기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고찰한다.

1) 미국의 위기가정 현황

미국의 한부모가정의 수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1970년부터 1993년 사이에 미국의 편모여성의 수는 11.5%에서 25.9%로 약 2.5

11) 이 부분은 천정웅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가 집필하였음.

배 증가하였다. 2000년도의 미국의 한부모가정 비율은 전체 가정들 중에서 12.7%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6.2%, 이탈리아의 3.1%보다 두세배 높은 수치이다(OECD, 2000). 또한 2002년에는 약 350만이 남편이 없는 저소득 여성가구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03).

한부모가정의 증가와 함께 편모와 같이 동거하는 아동들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60년대에는 18세 미만 아동들 중에서 약 8%가 편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18%로 증가했으며, 1998년에는 약 23%로 높아졌다. 이 중에서 미혼모와 동거하는 아동들의 규모는 1998년 약 9%를 차지했는데, 이는 1960년대의 0.4%, 1980년대의 2.9%와 비교하여 각각 20배 또는 세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Greenbook, 1996, 김학주, 2004 재인용)

미국의 한부모가정의 빈곤비율도 상당히 높게 보고되고 있다. 2001년 통계에 의하면 약 28.6%가 빈곤선 아래 소득수준에 있으며, 이는 양부모가정의 평균 빈곤율이 9.9%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세배 이상으로 높은 것이다(김학주, 2004). 또한 빈곤율의 증가추이도 한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미국 전체의 가정 빈곤은 약 1.2% 증가했으며, 양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약 1.0%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모자가정 빈곤률은 두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ishel, Bernstein, & Allegretto, 2005).

2002년 9월에는 약 1,900만명이 식품교환권(Food Stamps)의 수급자격이 있었는데, 이는 2000년 9월 보다 거의 300만명이 증가된 것이었다. 특히, 이들 중 성인근로자가 없는 편모가정의 경우 70.2%, 편부가정의 경우에는 48%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김학주, 2004). 이와 같은 일련의 자료는 미국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증가되는 것을 말해 주는 동시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특히 편모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미국의 조손가정은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Fuller-Thompson & Minkler, 2000; Hayslip & Kminiski, 2005). 자료는 미국 전체에 약 240만 가구가 조손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1970년과 2000년

사이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수는 76% 증가하였다. 1990년과 2000년도 사이에는 약 30%의 증가가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조부모들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의 수는 약 560만명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Fields, 2003). 2003년도의 경우 미국내에 살고 있는 전체 아동·청소년중에 약 8.4%가 240만 조손가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1970년에는 3.2%, 1980년에는 3.6%, 1997년에는 약 5.5% 였으며, 2000년에는 6.3%였던 것도 비교된다.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부모들이 이러한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의 내용적 측면에는 새로운 것이 많다.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들이 손자녀들의 양육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Toledo & Brown, 1995).

첫째, 매년 약 100만명의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다. 그리고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나 의붓자녀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재혼을 한다. 둘째, 10대 임신률이 증가되고 있으며 매년 50만명 이상의 자녀들이 10대 부모로부터 태어난다. 셋째, 수감자들의 약 80%는 자녀가 있다. 넷째, 아동 방임과 학대사례는 1970년 이래 약 300%이상 증가하였다. 다섯째, 여성 중에서 약물사용을 경험한 사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375,000명의 자녀들이 약물경험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조부모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들의 양육을 맡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조부모들은 거의 예외없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재정적 지원, 정보 그리고 법적, 보건보호 및 아동지도와 관련된 지원도 필요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러한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부모들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조부모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문제상황에 봉착하고 또 독자적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 왔다. 자신들의 자원과 강점, 그리고 기술에 기반하여 나름대로 부모의 역할을 다시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조부모들은 다른 사람들도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의 관심을 끌게되었으며, 그 결과 지지적 집단들이 형성되고 조부모들의 손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보다 나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도입되었다. 새로운 가정구조 상황이 겪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 단체들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2) 정책동향 개관

미국의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지원법률체계, 복지서비스의 내용, 전달체계의 3가지 측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법률체계의 경우는 체계적으로 제정되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그리고 지역의 주정부의 실정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본법이 없고 주별로 다양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을 보면, 전체 아동이나 청소년보다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정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책보조금제도(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전의 아동부양세대보조(Aid ot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와 긴급부조제도(Emergency Assistance)를 1996년 이후에 통합한 것이다.

전달체계를 보면, 연방정부의 보건과 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의 아동가정행정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은 전체 50개 주를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무소는 각 지역별 해당 주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민간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정적 역할을 한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등과 관련된 법률로서는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사회보장법(Title XIX of the 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수급자

격이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법은 조기 및 주기적 선별·진단·처치 프로그램(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is, and Treatment Program: EPSDT)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는 한부모를 둔 경우를 비롯한 임산부와 어린 아동들에게 비용 효율적인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이다. 이 법을 통해 AFDC가 TANF로 대체되었다.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노동의무조건을 따라야 하며, 일생동안 최대 60개월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TANF는 각 주로 하여금 최대 20%의 수급자까지만 노동의무조건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각 주들은 더 엄격한 노동의무조건을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미국의 드림 다운페이먼트 법에 있는 조손부모지원조항이 있다. 흔히 LEGACY법으로 불리며, LEGACY(Living Equitably: Grandparents Aiding Children and Youth Act) Provision in the American Dream Downpayment Act로 알려져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조부모나 친척을 위해 주거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 직접적으로 한부모가정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아동과 청소년관련 법들이 직·간접적, 부분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컨대 사회보장법 Title XX(Omnibus Reconciliation Act로 1981년 개정)는 연방정부의 총괄보조금(block grants)을 각 주별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나름의 상황에 맞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에 제정된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은 특히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많은 경우가 저소득가정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은 의미를 갖는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위기가정을 위한 복지지원정책은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되어왔다. 사실, 미국 내에서 국민을

각종 사회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대공항(Great Depression)이후 부터로 볼 수 있다. 대공항으로 인해 미국 내 빈곤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안정을 위한 빈곤문제의 해결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35년 절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35년에 도입한 유자녀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위한 소득보조제도인 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1964년 도입한 빈곤층의 영양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권 제도(Food Stamps), 그리고 1974년에 도입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조제도인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등은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을 위한 복지지원정책도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미국의 공공부조정책의 일반현황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Ⅲ-4> 미국의 공공부조 정책

구분	세부정책제도	주요내용	담당기관
현금지원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SS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사회보장부
	빈곤가구 일시부조 (TANF)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보건 및 복지서비스부/ 주정부
	일반부조(GA)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현금(현물)급여	주정부
현물지원	식품권제도 (Food Stamps)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	농림부
	의료부조(Medicaid)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건 및 복지서비스

자료: 박대식, 2008에서 재구성

미국은 공공부조의 지출비용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의 하나이며, 공공부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10여종의 공공부조의 종류가 있으며, 이들 각각을 운영하는 기관과 선정기준이 다르면서 각 제도마다 연방과 주의 권한이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정책과 관련한 미국 공공부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제시된다(Wiseman, 2001).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해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동이 있는 부모, 특히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TANF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연방정부가 뼈대를 제공하고, 주와 지역정부가 바탕을 제공하는 형태로 공공부조가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SSI와 EITC의 경우에는 연방 기준에 의해 단일하게 운영되지만, 주에 의해 보완될 수 있고, 많은 주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완하고 있다. TANF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커다란 지침만을 제시할 뿐 선정기준이나 급여액은 주에 의해서 결정된다. 셋째로 급여가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청년층에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급여는 없다. TANF의 경우에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SSI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네 번째는 주 차원에서 중요한 기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공공부조제도로서 한부모, 조손가정을 위한 지원정책도 이러한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특히, 위기가정 지원정책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피부양 아동과 청소년을 가진 빈곤여성가구주에 대한 아동부양세대보조(AFDC)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책보조금(TANF)제도는 아동부양세대보조(AFDC) 정책이 다른 두가지 프로그램과 합쳐져서 대체된 것이다.

이 밖에 식품교환권(Food Stamps), 근로소득보전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보육(day care) 프로그램과 헤드 스타트(Head Start)사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식품교환권은 소득과 자신을 기준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

해서 식품교환권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정으로 하여금 생활에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단순히 소득세 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피부양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빈곤층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저소득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빈곤가정의 부모들에게는 종종 받을 수 없는 교육, 사회화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양육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특히 헤드 스타트의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부모들을 이 프로그램의 보조교사로 참여시켜 취업을 시키고, 부모로 하여금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동양육법에 대해 상담도 제공한다. 저소득 빈곤층 자녀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이지만,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경우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3) 주요 지원정책 분석

미국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위기 가정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의 주요 동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책보조금제도(TANF)는 현재 시행중인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식품교환권(Food Stamps) 또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하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빈곤계층을 위한 의료부조인 메디케이드(Medicaid), 각 주에서 운영하는 일반 부조(General Assistance)제도가 주요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특히, 조세를 통한 지원제도인 EITC가 있어서 간접적인 소득보장의 효과를 갖게해 주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위기가정 지원정책으로서 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책보조금(TANF)제도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

제도로서 EITC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어서 그 밖에 중요한 지원정책으로 식품교환권(Food Stamps)제도, SSI제도, Head Start 프로그램 등 위기가정의 소득보장과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특히,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유사제도들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1) 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책보조금 (TANF)

미국의 한부모가정과 그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국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TANF 제도이다. 이는 1990년대 이전의 요구호아동 가족부조프로그램인 AFDC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JOBS(Job Opportunitis and Basic Skill Training)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당초 AFDC는 수혜대상이 여성가구주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피부양아동이 있는 빈곤한 양부모가정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AFDC 수혜가정이 점차 증가하였고, 국가적 재정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빈자들이 복지수혜에 의존하여 자활의 노력을 포기한다든가 혼외 자녀를 양산한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AFDC 수혜를 받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근로를 하도록 유인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왔다.

이에 노동이 최선의 빈곤퇴치 방안이라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1967년에는 이른바 WIN(Work Incentive Now) 프로그램을 통해 합당한 이유없이 직업훈련에 참가하지않는 AFDC 수혜 부모와 16세 이상의 자녀들은 AFDC 수혜자 명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 정부에 부여하였다. 뒤 이어 1971년 부터는 WIN II 프로그램을 통해, AFDC 수혜자 중에서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을 제외한 모든 수혜자는 노동 혹은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했으며, 미등록 수혜자가 많은 주 정부는 연방 기금을 상실하도록 한 바 있다. 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책보조금(TANF) 제도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도화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TANF의 대부배경으로서의 PRWORA의 법제화과정을 살펴보고, TANF의 기본 성격을 고찰한다. 이어 TANF의 주요 내용을 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전달체계와 관련한 특징으로 복지와 고용서비스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① TANF의 대두: PRWORA의 법제화 과정

TANF를 비롯한 한부모가정의 개혁적 복지지원 정책이 본격화 된 것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클린턴이 복지 종식(end welfare as we know it) 공약을 제시하면서 부터였다. 저소득 가구 아동에 대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당시 피부양아동 원조(Aid to Dependent Children)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약 60여년간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다(김환준, 2003).

1996년 8월 클린턴 행정부는 빈곤감소정책 차원에서 각 부처정책을 종합하여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혹은 복지개혁법 PRWORA: The Pre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여 기존의 AFDC를 폐지하고 TANF를 대체도입하였다. TANF의 도입으로 미국은 1935년 이후 시행되어온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TANF는 빈곤계층의 복지수급권(entitlements)을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만 급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AFDC와는 본질적으로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제도이다.

1996년 PRWORA의 도입은 각 주에 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들을 이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권한이양이 완결된다는 성격도 갖는다. PRWORA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방식에 있어 주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연방정부의 지원규모가 증가하는 이전의 상응보조금(matching fund)제에서 정해진 항목에 대해 일정한 액수만을 지급하는 정액 총괄보조금(block grant)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세부항목의 지출규모를 결정하고 저

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별도의 현금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각 주정부에게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한이양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김학수, 2004).

<표 Ⅲ-5> 미국의 PRWORA와 과제 제도의 비교

구분	과거제도	PRWORA
AFDC, EA JOBS 에서 Block Grants 로	AFDC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현금급여를 제공. JOBS는 AFDC 수혜자엑 고용서비스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EA(Emergency Assistance)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단기긴급서비스를 제공. 연방정부는 AFDC와 EA의 수혜요건과 JOBS의 지침을 선정. 각 주는 급여수준을 결정.	AFDC, FA, JOBS를 TANF로 통합하고, 연방정부는 각 주에 정액보조(Block Grants)를제공, 각주는 이 보조금과 각 주의 재원을 이용해서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여 운용함.
수급권	AFDC하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에 대해 각 주가 설정한 급여의 수급권을 가짐	수급권을 부여되지 않으며, 각 주는 수급자격 결정 및 급여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게 됨
수급 기간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기간에 제한이 없음	연방정부 지원에 의한 현금급여는 평생 5년으로 제한됨. 각 주는 수급가구의 20%범위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근로 요건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인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아야 하고, 보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임	한부모가구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당 20시간도 인정. 양부모 가구의 경우 주당 35시간
개인별 의무 계획	JOBS에서는 고용계획을 마련함	각 주는 최초에 각 수급자의 숙련수준을 평가해야 함. 주는 개인별 의무계획(Individual Responsibility Plan)을 요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아동 보조	각 주는 아버지 의무부과 및 AFDC, 의료부조, IV-E(위탁 및 입양) 수급자 등에 대해 아동보조를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함	각 주는 가족부조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방기준에 맞는 아동보조 강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10대 부모 조항	AFDC는 18세 미만의 어머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미혼 저연령 부모는 어른이나, 어른이 감독하는 주거시설에서 같이 거주해야 하며, 교육 혹은 훈련에 참여해야 함.

자료: 황덕순, 이바르 뢰드멜, 하더 크릭카, 2002에서 재구성

PRWORA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① 요보호 아동이 부모 또는 친척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② 직업에 대한 준비, 노동 및 결혼을 촉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정부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없애고, ③ 혼인 외의 임신을 예방, 감소시키며 이를 위해 연방 및 주정부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④ 양부모 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장려한다는 등의 네가지로 명시하고 있다(PRWORA Section 410(a).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안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액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권한을 주정부로 대폭 이양한다. 둘째, 평생 수급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셋째, 모든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며, 훈련이나 교육보다 직접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강조하는 것, 넷째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불참에 대한 강제를 강화하는 것, 다섯째, 취업을 위해 아동보육 및 아버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황덕순, 이바르 뢰드멜, 히더 트릭커, 2002).

PRWORA를 통한 연방정부의 복지개혁안은 주 정부의 공공부조 정책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전체 공공부조 예산은 복지개혁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출항목에 있어서 현금급여에 사용되는 부분이 절반이하로 줄어든 반면 편모 근로자들의 아동보호 서비스와 직업교육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출은 평균 두배이상 늘어나게 된다(Pavetti, 2000, 김학수, 2004 재인용).

② TANF의 기본 성격

TANF는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내용은 (1) 일정기간(5년)동안 근로를 조건으로 각종 복지지원혜택을 제공하며 (2) 연방정부중심의 복지정책을 각 주정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보조금만 지원하고 평가기능만 갖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AFDC를 수급하는 부모에게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하던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과 요보호가정에 대한 긴급부조제도(Emergency Assistance)가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TANF에 의해서 모든 주는 2002년까지 복지수혜자의 50%를 일하게 하거나 복지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해야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는 2005년까지 해당 주의 복지수혜자의 수를 어느 수준까지 감소할 것인가를 정하고 이를 수치화한 연간 목표량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수급자격 조건은 기존의 AFDC 조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법정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이 주에서 정한 표준 생계비의 185% 이하여야 하며 재산액이 1,5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일단 수혜자로 선택되면 주당 20-35시간을 노동해야 하는데, 한부모의 경우 첫해 동안은 주당 20시간을 그리고 2000년까지는 30시간을 노동해야한다. 다만 6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이 있으면서 적절한 아동 양육서비스를 찾지못하거나, 1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을 가진 한부모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미혼모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또는 성인의 감독이 가능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TANF의 재정은 연방정부의 정액 총괄보조금(Block Grant)과 주정부의 재원(Maintenance-of-efforts)으로 운영되는데, AFDC의 경우에서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1인당 평균소득에 따라 전체 재정의 50-80%를 차등지원하였다. TANF가 미국 연방정부 보건 및 대인서비스부(DHHS)의 아동가족행정청(ACF) 예산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서는 매년 일정액의 기본액(basic-level Block Grants)을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수급자의 증감에 대한 부담은 주정부에서 추가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에서는 다음의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Supplemental Grants)을 지원한다. 첫째는 빈곤율 및 인구증가율이 일정수준이상, 일정기한내 사생아의 수를 감소하는 경우, 둘째, 성공적으로 TANF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셋째, 가장 최근 분기동안 실업률이 6.5%이거나 실업률이 이전 2년동

안의 동일분기 실업률 보다 10%가 높은 주 등이다.

<표 III-6> 연방정부의 공공부조 수급자격 조건, 과거와 현재

구분	AFDC	TANF
재정이전체계	범주적 보조금 방식	포괄적 정액 총괄보조금 방식
연방정부재정	수급권리 인정: 주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빈곤가정에 대한 부조를 보장하기 위한 개방형 재정	수급권리 부정: 1992-94 회계연도에 기초하여 매년 고정된 액수의 재정을 편성하고 이에 더하여 20억 달러의 예비자금을 현성
주정부재정	주정부는 대응자금을 확보해야 함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함
수급자	의무적 수용: 주정부가 정한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가족은 모두 부조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함	의무적 배제: 주정부는 근로요건과 급여기간 제한규정을 어긴 가족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 함. 요건어긴 빈곤가정에 부조제한가능
서비스전달	주차원과 지방차원의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전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간과의 계약통한 서비스 전달 중 선택가능
급여기간제한	없음	있음. 생애 전체에서 5년 기한.
근로요건	있음. WIN과 JOBS에 의해 훈련프로그램 제공	있음. 수급자가 된 지 2년 이내에 근로 또는 “근로관련활동” 참가
급여 단일성	있음. 주 전체적으로 급여기준이 통일될 것을 요구함	없음. 주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비용소요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가족규모상한	없음	있음
재정전용	금지됨	가능함. 부조재원의 30%는 아동보육이나 사회서비스로 전용가능
적법절차보호	보호됨. 클라이언트에게 “청문절차”를 제기할 권리 부여	보호함.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추상적인 용어로 서술되어 있음

자료: Gilbert & Terrell, 2005에서 재구성

TANF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연방정부의 ACF에서 관할하며, 실질적인 운영은 주 정부의 OFA(Office of Family Assistanc)에서 담당한다. 주 정부는 자산기준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등 제도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갖게 되었으나 보조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운영지침을 준수해야한다. 즉, 연방정부는 근로연계복지제도 확대를 위해 주정부에 일정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 정부는 한부모 수급자 가구 중 근로참여 비율을 1997년 시행초기 25%에서 매년 5%씩 증가시켜 수혜가구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TANF의 주요 특징

이제, 이러한 기본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TANF의 주요 특성을 몇가지로 정리하기로 한다(김학주, 2004; 김환준, 2003; 황덕순 외, 2002; Gilbert & Terrell, 2005). 첫째로 정액 총괄보조금(Block Grant) 제도의 도입이다. 과거에는 AFDC와 긴급부조(Emergency Assistance),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등에 의해 주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PRWORA에 의해 TANF가 시행됨으로써 주정부의 공공부조 지출액에 관계없이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 대해 정해진 액수를 일괄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

과거에는 AFDC와 EA에 대해 연방정부가 수급자격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제 각 주는 이 정액보조금을 이용해서 연방정부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아동이 있는 빈민 가구에 대한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 차원에서 수행되는 TANF 정책의 세부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근로의무 부과시한 및 수급기간 제한, 시한적용 면제조항, 평생시한 연장조항, 주의 근로의무 면제조항, 수급자격 결정 및 급여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조항, 주별 개인개발계정(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등에서 주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가급적 현금급여를 지양하고 평생수급기간을 제한한 것이다. 과거의 AFDC하에서 연방정부가 설정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빈곤가구는 주에 대해 수급권(entitlements)을 갖고 있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현금급여 수급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

나 이제 누구에게도 수급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주가 설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현금급여 대상자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많이 성공한 주들에 대해서는 보너스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한다. 연방정부가 설정한 시한은 평생 60개월(5년)이며, 각 주는 이보다 더 짧게 수급기간을 제한 할 수는 있다. 주에 따라서는 60개월 이상으로 수급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에서 재원을 부담해야만 한다. 다만, 수급자 가운데 20%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한 자금을 이용해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되었다.

각 주별 TANF 시한의 차이를 보면, 38개 주에서 60개월로 평생시한을 설정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뉴욕 등 4개 주는 성인에 대해서만 60개월로 설정하고 있고, 아칸소, 인디애나 등 4개 주는 24개월 이하의 평생 시한을 설정하였다. 다만 인디애나 주의 경우에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델라웨어, 조지아 등 4개 주는 36-48개월의 평생시한을 적용한다. 평생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주도 일부 있다(메사추세츠, 미시건, 애리조나, 오리건, 버몬트 등). 이러한 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한 적용이 면제되거나 시한을 연장하는 제도 등이 있다. 각 주가 설정한 시한 적용면제 조항을 보면, 부모나 보호자가 고령인 경우(21개 주), 부모나 보호자가 장애인인 경우(34개 주), 장애가구원을 돌보는 경우(27개 주),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22개 주), 저연령아동을 보호하는 경우(21개 주), 임신중인 경우(9개 주) 등이 있다.

셋째, 근로조건부 수급을 강화하고 근로활동의 참여를 강제한다. TANF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가 의무화된다는 점과 근로관련 활동가운데 빠른 시간내에 직접 노동시장에서 취업하는 것을 가장 강조한다는 것이다. 근로조건부는 1988년 제정된 가족지원법에서 이미 도입되었으나 TANF를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더욱 제한하고, 근로조건부를 더욱 엄격히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수급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였다. 한부모가정은 주당 20시간 이상,

그리고 양부모가정은 주당 35시간 이상을 취업하거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on-the-job-training), 근로경험 습득활동(work experience), 지역사회 봉사활동(community service), 12개월을 상한으로 하는 직업훈련(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탁아봉사(provision of child care),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되는 구직활동(job search) 등에 참여해야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가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지침에 의한 면제기준은 아주 엄격해서 한부모인 경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고 보육시설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데 따르는 제제를 받지 않을 수 있고, 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활동 참여가 면제된다. 그러나 주별로는 아동의 연령기준 이외에 다양한 경우에 대해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면제하고 있다. 예컨대, 35개 주는 장애나 일시적인 질병, 근로 무능력상태를 인정하는 경우이며, 29개 주에서는 장애가구원을 돌보는 경우, 28개 주는 연령이 많은 경우, 25개 주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근로활동 참여를 면제하고 있다. 이 밖에 보육시설을 구할수 없는 경우가 22개 주, 임신중인 경우 20개 주, 기타 조항을 가진 경우가 26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로 취업우선이며 취업유인의 강화이다. TANF의 많은 규정들이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EITC를 확충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정책이 병행되었다. 전체적으로 TANF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특성이 강하고, EITC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취업유인정책은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ITC제도는 세액공제를 통한 저소득가정 소득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TANF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클린턴은 OBRA(Omnibus Bedget Reconciliation Act, 1993)을 통해 EITC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주 차원에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제도를 강화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개발계정(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을 도입하여 소

득 가운데 일부를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이를 수급자격 판정이나 급여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에 따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격 판정이나 급여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은 주에서 도입하고 있다. 특히, 개인개발계정은 수급자의 장기적인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저축계정이다. 현재 28개 주에서 개인개발계정을 도입하였고, 이 가운데 14개 주에서는 개인의 저축분에 더해서 추가적인 매칭펀드를 지원하기도 한다. 개인개발계정을 통한 저축은 일정한 목적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등 수준 이상의 교육(26개조) 및 사업자금(25개주)이며, 최초의 주거구입에 대해서 22개주,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4개 주가 인정하고 있고, 12개 주는 훈련을 비롯한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TANF제도의 한부모가정과 관련된 특징중의 다른 하나는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동시에 '부성 프로그램' 실시를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든 성인 복지수급자의 약 90%가 미혼여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문제는 젊은 남성들에게 까지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많은 수의 '부성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관계를 돈독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ANF제도는 모든 복지 급여 신청자들로 하여금 자녀의 친부를 밝히게 요구함과 동시에 법정 아동양육비 징수를 강화시킴으로써 부재 친부(absent father)로 하여금 아동양육비를 지불하게 하려는 주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법은 고용주에 대해서 모든 신규 직원의 신원을 해당 지역의 아동지원당국에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문제 부모를 찾아낼 수 있게 했다. 사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친자확인 통계치가 거의 세배나 늘면서 아버지가 자녀양육비를 지불하게 했고 자신의 친자식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④ 주정부별 TANF 적용 사례

TANF제도는 주정부가 장기간의 연방정부 통제로부터 벗어나 수급자격, 급여수준, 급여기간을 통제하도록 만들었다. TANF는 워싱턴과 주정부 간의 변화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연방정부의 행정적인 감독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했다(Gilbert & Terrell, 2005). 다음은 TANF가 주정부별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미시간주는 아이를 가진 후, 6주내에 어머니가 유급이든 무급이든 직업을 갖지 않을 경우 복지급여를 상실한다. 미시간주의 복지프로그램은 또한 수급자가 근로, 직업훈련, 일반교육, 혹은 사회봉사활동 일부를 조합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중 한 형태에는 '면허불이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법정 아동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나 기타 전문자격증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18세 이하의 미혼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박탈당한다. 가족이 추가로 아이를 낳는 경우, '가족 제한'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박탈한다. 생후 6개월 내에 친지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한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복지혜택 수급자는 근로활동을 통해 '개인개발계정(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에 저축할 것이 권장되며,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입하거나 교육, 직업교육, 혹은 가족 긴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만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다.

버몬트 주는 한부모에게 근로를 요구하면서도 빈곤한 근로자에게는 관대한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원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거의 전면적인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2년 6개월의 복지 수급기간이 경과한 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한다. 수급자가 사적 영역에서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 주가 10개월간의 공공 혹은 NGO 단체에서의 고용을 지원한다. 버몬트 주는 TANF에서 제시된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제한을 거부한 몇 안되는 주정부 가운데 하나이며, 버몬트 주는 스스로 그들의 접근방법

을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운” 형태의 복지개혁이라고 부른다.

미시시피 주의 경우 근로우선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수급자가 제공받은 일자리를 반드시 수락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급여를 박탈당한다. 복지 급여 수급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시간당 3.50달러의 TANF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1시간당 1달러를 더 지불해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지원이 급여보조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위스톤신 주에서는 ‘전환(diversion)’이라는 엄격한 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 수급자의 수를 80%나 줄였다. 이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수급자들이 자신의 급여액에 따른 근로를 해야하며, 복지급여를 삭감 혹은 박탈시키는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위스콘신은 복지급여를 수급해 온 사람 중 75%가 현재는 탈복지하여 사적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자들은 이들 중 대부분이 과거보다 더 가난하며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다. 위스콘신은 보육, 의료, 급여보조, 직업훈련 등의 사적 지원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한다.

한편, 일부 주의 경우에는 학교 출석률과 연계된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주의 경우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거나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 가족의 복지급여가 박탈된다. 다른 주의 경우 십대 부모가 학업을 계속하거나 졸업을 하면 수당이 올라가고 학교를 중간에 그만둘 경우 수당이 줄어든다.

⑤ TANF도입에 따른 업무행정의 변화

TANF를 통해 모든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공공부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및 복지와 고용서비스 연계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과거에는 단순히 급여신청자의 자격여부만을 판단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eligibility specialist: 수급자격판정관)였으나 저소득층의 노동활동 참여를 통한 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생활환경, 행동양태 및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행정실무자 또는 복지상담원의 업무는 과거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 기능을 넘어서 수급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공공부조 전달업무는 물론 노동, 교육, 민간기업,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전문적인 사례관리자(case manager)로 변화된 경우가 많다. 각 주별로 구체적 역할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기 상담에서부터, 수급자격 판정, 고용 및 보육서비스 연계, TANF와 연관된 메디케이드(Medicaid) 등에 대한 안내, 복지탈출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Lurie, 2001).

TANF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생각할 또 하나의 주제는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것이다. 제도의 운영이 각 주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준화된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 연구는 복지사무소(welfare office)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주로 좌우된다. 많은 주들이 공공부조 담당기관의 명칭을 복지사무소에서 노동센터(work center)로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사무소가 고용관련 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직접 제공할 수 있고, 복지 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완전히 통합해서 고용서비스를 전달하는 원스톱경력센터(one-stop career center)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사무소가 고용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제공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 및 직업준비 훈련이 복지사무소에 의해서 제공될 것이다. 한편 통합형에서는 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가 모두 원스톱경력센터(one-stop career center)에 의해 운영된다. 수급신청자는 이 센터에서 수급신청을 하고 동시에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하고, TANF에 대한 안내는 보건복지 관련 부서로부터 받게 된다.

고용서비스 전달에 참여하는 다양한 중계기관들에 대한 논의도 있다. 중계기관이란 TANF 수급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복지사무소에서 중개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구직활동 지원 및 사례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구직활동 만을 위탁하거나 전혀 위탁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례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까지 포괄적인 업무위탁이 이루어졌다. 이때 복지사무소의 역할은 과거

제도와 마찬가지로 수급자격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사례관리와 구직활동 지원이 위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복지사무소 직원의 업무 영역을 확장해서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고용관련 서비스들은 대부분 중계기관에 위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덕순 외, 2002).

중계기관을 담당하는 단체들은 대부분이 비영리기관이다. 전체의 67%가 비영리기관이며, 영리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이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실제 거의 모든 주들이 TANF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는 서비스를 비정부 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원된 연방정부의 TANF 보조금과 주 정부의 재정은 2001년 1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액수는 서비스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지출한 TANF 예산의 13%에 달하는 규모이다. 비정부 조직과의 계약 중에서 88%가 전국조직, 종교관련 조직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 등과 같은 비영리 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이다.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매입되는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는 교육과 훈련, 직업배치, 취업 및 취업 유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등이다(Gilbert & Terrell, 2005).

(2) 조세를 통한 이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세계 최초의 조세를 통한 이전(Tax transfer)방식인 EITC제도는 미국정부가 1975년 근로빈곤층을 위하여 도입하여, 약 4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규모나 수혜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로 성장하였고, 미국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어 2008년 소득부터 처음 적용되었다. 미국에서 EITC는 단순히 저소득가구의 소득보전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 등 다른 목적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은 EITC 제도가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으로 갖는 의미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① EITC 제도의 발전과 특성

미국 EITC 제도의 모태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도입논쟁과 관련된다. 부의 소득세는 특정 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소득보장 수준에 미달될 때 그 차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정부가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즉, 최소소득보장을 상회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의 소득세(Positive Income Tax)가 발생하여 조세를 부담하지만, 최소소득보장 주순이하의 소득을 획득한 가구에는 부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정부로부터 소득보조를 받게 된다.

부의 소득세 도입에 관한 주장은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많은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공공부조제도가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를 통한 소득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다(김재진, 2009).

EITC제도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대상으로 한 근로유인책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소득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미칠 경우, 환급해 줌으로써 빈곤가정의 소득을 보충하는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공공부조제도의 현금급여를 받는 가구의 경우에도 EITC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 근로의지를 가진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히 편모가정에게 중요한 소득원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참여 근로가정의 규모도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학주, 2004).

EITC는 면제점 부근에서 근로에 대한 경제적 역유인을 제공했던 이전의 공공부조제도와는 달리,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득환급액에 있어 평탄구간의 추가와 점감구간 내 기울기의 완만함은 기존 공적부조제도와 비교할 때 근로의욕의 감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EITC는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히 1993년 이후 “취업이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도록(making work pay)”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가장 많은 급

여수준 인상이 이루어졌다. 즉, 클린턴 대통령(1993-2002) 집권이후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급여증가율을 19.5%에서 40%로, 1인 자녀가 있는 경우, 18.5%에서 34%로 대폭 인상하였고, 그 결과 수령 가능한 최대 급여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김학주, 2004).

<표 III-7> 미국 행정부별 EITC제도 변화

행정부	년도	주요내용
닉슨 (공화당)	1972	부의 소득세를 기반으로 가구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
포드 (공화당)	1975	EITC 제도 최초 도입 - 부양세대를 가진 가구의 0-4,000달러의 근로소득에 대해 10%의 환급액 지급 - 점증/점감구간만 존재
카터 (민주당)	1978	평탄구간이 추가되어 3구간 모델이이후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 - 소득세법체계내에 흡수됨
레이건 (공화당)	1986	EITC 지급액 확대 - 점증율 11%에서 14%로 확대
부시 (공화당)	1990	2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각 구간의 소득금액, 점증률, 점감률을 달리 적용하는 모델 채택
클린턴 (민주당)	1993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EITC 적용
부시 (공화당)	2002	독신가구(single)와 맞벌이 가구(joint) 구분하여 지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가능한 최대소득 금액을 1,000달러로 확대함

자료: 김재진, 2009에서 재구성

제도 도입 이후 30여년간 EITC 제도는 양적·질적 성장을 이룩했으며, 그 결과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자 자신은 물론 가족의 실질 생활향상에 기여하였다. EITC제도는 또 세금신고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국민의 납세의식함양에도 이바지 하였다. 그 결과 2006년 기준으로 최대급여액은 400달러(1975년)에서 4,536달러(2006)로 약 11.3

배 증가하였고, 적용한도소득은 8,000달러에서 36,345달러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신청가구수는 621만 가구에서 2,300만 가구로 약 3.8배 증가하였고 가구당 평균세액공제액은 201달러에서 1,926달러로 약 9.6배 증가하였다 (김재진, 2009).

EITC에는 보장소득 프로그램의 주된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 EITC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득지원을 제공한다. EITC는 세법의 적용을 받는 제도로서 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 지원액을 어떻게 줄일지를 결정하기위해 특별한 보조금 산정공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EITC는 일부 인구집단(저소득 임금근로자 가정과 같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장 소득 프로그램과 다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EITC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ITC는 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EITC는 근로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임금보조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적어도 일정 수준까지는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역소득세나 보장소득 프로그램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갖는다. 이에 따라 각종 소득세 감면 조치들과 함께 EITC는 상당 수준의 소득지원을 가능케 하는 기제를 제공해 주며 특히 저소득 근로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만약 EITC가 좀 더 다양해지고 가족 구성원의 수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다면 미국사회의 빈곤퇴치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Gilbert & Terrell, 2005).

② 아동지원 및 자산형성 제도의 제안들

한편, 비록 법률로 제정된 것은 아직 없으나 EITC외의 다양한 소득 지원 방안들이 지난 십년간 많은 주목을 받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선, 1974년 오자와가 제안한 아동 수당제도를 들 수 있다. 각 아동에 대해 매월 60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60달러는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기타 어떤 조건과도 무관하게 제공되는 것이다. 오자와가 제안한 아동수당에서 아동수당으로 받은 소득은 과세대상소득으로 간주되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수가 같은 가구는 똑 같은 액수의 아동수당을 받게되지만, 소득 수준

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진 세율의 연방정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가구는 자신들의 소득 수준(아동수당으로 받은 급여 포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는 결국 최초에 받은 아동수당급여를 세금으로 다시 돌려주게 되고,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가구는 아동수당으로 받은 급여 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핑클(Garfinkel)과 엘우드(Ellwood)같은 학자들의 경우 빈곤퇴치 방안의 하나로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소득지원을 목표로 하는 아동지원보증(Child Support Assurance)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한쪽 부모 (대체로 자녀의 아버지)가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으므로 정부가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해 연간 2,000-2,500달러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아동지원보증 제도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자녀양육비를 연방정부(재무부)가 매달 지급보증수표의 발행을 통해 미리 지급하고, 그후 연방정부는 주 정부와 공조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한 쪽 부모로부터 그가 원래 부담했어야 할 자녀양육비를 추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자녀와 동거하는 한쪽 부모(대개는 어미니이며 가난하다)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아내느라 들이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그러면서도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노력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Blank, 1997).

또 다른 제안은 액커만(Ackerman)과 엘스토트(Alstott)가 1999년에 출판한 그들의 저서 '지분보유자 사회(The Stakeholder Society)'에서 제안한 것으로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혹은 21세가 될 때 8만 달러의 공공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현금지원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보았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현금지원 - 그들은 이를 '사회적 지분(stake)'라 부른다 - 은 특히 빈곤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며,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했다. 이들은 소요될 비용은 부유세(wealth tax)로 충당하며, 이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18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2%의 세율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세금을 부유세로 부과하면, 상위 12%에 속하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납부하는 부유세가 부유세 총액의 40%에 달한다고 본다(Ackerman & Alstott, 1999).

이와 유사한 정책안으로서 마이클 세러덴(Michael Sherraden)은 아동저축계좌(Children's Saving Accounts)를 제안하고 있다. 아동저축계좌의 기본구상은, 연방정부가 빈곤아동들을 위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 계좌에 예금을 정기적으로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해 줌으로써 나중에 이 아동들이 대학 진학이나 주택마련과 같은 용도에 이 목돈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지분제도나 아동저축계좌와 같은 사회투자 전략은 단순한 소득보장보다는 자산형성(asset building)에 중점을 둔다. 자산형성은 특히 아동빈곤문제를 완화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동저축계좌는 빈곤 아동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 보편주의적인 제도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연방정부는 모든 아동에 대해 각 아동의 저축계좌에 불입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해 주고 가능한 경우에는 아동의 부모도 그 계좌에 불입금을 납입케 하며 부모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Curley & Sherraden, 1998).

이러한 몇가지 제안들은 아동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960년대와 1970년에 시도되었던 아동 수당 도입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새로운 접근 방법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지원보증이 단기적인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사회적 지분제도나 아동저축계좌와 같은 자산형성 전략은 장기적인 목적의 달성에 더 중점을 둔다. 자산형성 전략이 아주 큰 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이들 전략 특히 그 중에서도 기존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산형성 전략은 입법화의 대상으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Gilbert & Terrell, 2005).

(3) 그 밖의 위기가정 지원 프로그램

근로유인을 내재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인 TANF와 EITC제도가 미국에서 많은 호응을 받는 배경에는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편모들이 많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생활하는 이들 한부모가정을 근로촉진 보조금을 통해 일하게 함으로써 줄여보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제도 이외에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포함한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다.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제도, 식품교환권(Food Stamps), Head Start 프로그램 등은 TANF나 EITC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주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정책제도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김학주, 2004).

SSI는 고용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연방정부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1974년 전국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기준을 단일화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것이다. SSI 제도에 의한 급여방식은 보충급여이다. 수급자는 개인 또는 부부에 따라 정해지는 표준급여수준과 순 소득간의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연방급여제도에 비해 기준의 적용에 다소 융통성이 있다.

식품교환권(Food Stamps)는 빈곤선 아래의 개인과 가족들이 기본적 영양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료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AFDC 또는 TANF제도의 급여혜택을 받는 한부모가정은 자동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주별로 현금급여의 수준이 빈약한 경우에는 이 제도에 의한 쿠폰은 빈곤가정의 소득보호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쿠폰사용자에 대한 낙인(stigma)의 우려로 인해 최근에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크기의 직불카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Head Start 프로그램은 1964년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래 현재 보건과 대인서비스 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의 감독하에 있는 5세 이하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아동발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

았다. 빈민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아기 교육을 통해 이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결손 문제를 보충함으로써 긍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영리기관 또는 공립학교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수급자격은 연방정부의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족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아, 5세 까지의 아동에게 식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인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심각한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에 대한 정서적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지원 프로그램(Family Support Program), 주 정부 지원중심의 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인 SCHIP(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등이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2003년도 부터 아동세금환급공제(CTC: Child Tax Credit)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소득 존재여부와 별도로 17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 직접 환급혜택을 주고 있다.

4) 시사점

미국에서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모자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아동복지와 가정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규정된 빈곤아동부조 ADC(Aid Dependence Children)를 기점으로 요호보아동에 대한 공적부조는 제도상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 차례의 복지개혁을 이루며 변화해왔다. 그 결과 1960년대 초반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needy children)과 가정생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요부양아동가정부조 AFDC(Aid Family with Denedence Children)이 입법화 되었다.

그러나, 수급자 수가 급증하는 등의 여러 요인으로 AFDC를 전면 수정한 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책보조금, 즉,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가 새롭게 발효됨으로써, 직업촉진을 통한 경제적인 자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PRWORA의 법제화를 통해 도입된 TANF제도로 인해 각 주정부는 수혜자 가운데 노동이 가능한 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직업훈련, 직업소개, 공공부분에의 취업을 통해 공적부조에서 탈피하여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비부양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여성가구주에 대한 지원은 그 기간도 대폭 줄고 조건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는 거의 모든 한부모들이 교육과 훈련이 아닌 노동을 해야한다. 이는 당초 AFDC에서 구상했던 의도 즉, 양육할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의 어머니들로 하여금 아동보호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통해 소득세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환급해 줌으로써 빈곤가정의 소득을 보충하는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제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ITC는 근로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임금보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이 일할수록 일정 수준까지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 밖에 SSI제도와 식품교환권(Food Stamps), 그리고 헤드 스타트(Head Start)사업 등도 위기가정 관련 제도로 논의되었다. 특히 1997년에 저소득층 한부모 근로자들의 노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아동의료보험제도인 SCHIP는 편모 또는 편부가 근로를 할 경우 빈곤아동에게까지 의료보험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미국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언을 하면서 글을 맺기로 한다.

첫째, 미국의 위기가정, 즉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현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인구 대비 위기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소득수준 또한 일반가정이나 양부모가정 등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국가적 복지재정의 부담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손가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빈곤층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 이혼율이 다른 서구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으며 혼인외 출산 비율도 30%가 넘는 실정에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발생율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정 형성요인에서 사별로 인한 가구의 비율보다 이혼으로 인한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위기가정의 수적 증가추이와 형성요인의 양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그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빈곤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에 따른 제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위기가정의 현황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유사성은 위기가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우리나라에서 지원정책을 모색하는데, 미국의 사례가 매우 유용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복지정책은 근로유인을 위한 강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충적인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근로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 만큼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공제액이 낮고 대상이 장애인, 학생, 자활사업 참여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근로보다는 여가를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TANF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 볼 수 있다. TANF는 현금급여를 지급하되 그 기간을 제한하고, 기간 내에 취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노동중심적 복지개혁의 기조를 따르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특히 모자가정에게도 변화의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시작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급여의 대가로 자활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역시 과거의 일방적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활을 해야하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활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김환준, 2003). 한부모가정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이 직업재활 중심으로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이 서로 연관성없이 독립적이고 단편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를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더욱이 이들 한부모가정을 위한 자활노력을 누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대답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네째,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유사한 정책들이 있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지원정책이 많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보건 및 복지서비스 부(DHHS)를 중심으로 노동부, 교육부 등이 관련되고 있으며, 소득보장제도와 아동양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진 제도와 사업프로그램 들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족복지 서비스들 간의 일관된 체계가 존재하고 있지않고 각각의 고유한 체계와 목표, 기준들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식품교환권(Food Stamps) 등 빈곤가정의 식량지원제도는 농림부, 가족휴가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는 법무부, EITC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데 있어 유의해야할 점이

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부 등의 한두 부서에만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노인은 물론, 교육, 문화, 근로, 세제 등과 관련한 여러 정부부서가 연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EITC제도를 근간으로 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6년 8월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고 동년 12월 세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2008년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김재진, 2009). 2009년 9월에 최초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방식의 근로소득공제제도는 많은 저소득 위기가정의 경우,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저소득 양부모 가정들과 소득격차를 심화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경기불황시기에는 저임금 노동공급 과잉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도의 혜택을 볼수 없다는 점에서 본인의 근로의지와 무관하게 취업하기 어려운 위기가정의 편모, 편부, 조부모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층간의 소득격차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ITC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근로 빈곤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환급혜택을 함께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김학주, 2004).

이 밖에 한부모가정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고,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동들을 맡길수 있는 영아보육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TANF의 도입에 따라 복지사무소와 복지상담원의 역할이 변화되어왔다는 것도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민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은 정책의 실천현장에서의 관리제도, 인력의 역할 등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외국의 경험을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노력은 성공적인 위기가정 대책마련을 위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6년 이래 TANF 실시 이후 미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부조 현금수급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당초 이 제도 도입시에는 복지수급자들이 취업할 만한 충분한 일자리가 경제 내에서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수가 기대만큼 줄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복지수급자들이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숙련 편향적인 경제구조의 변화와 국제화 때문에 하위 임금계층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아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Haveman, 1997; Blank, 1997).

그러나 13여년이 지난 오늘날 수급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TANF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TANF의 연례 보고서에서는 남아있는 수급자들 가운데 취업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취업자들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반적인 빈곤율 및 아동 빈곤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이러한 성과의 많은 부분이 근로를 강조한 복지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매우 신중한 평가를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 TANF 시행 후 그 성과를 논의한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빈곤율의 감소에는 호경기와 EITC의 기여가 중요했으며, TANF 수급자의 감소는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수 감소의 상당 부분이 강도 높은 제제에 의해 수혜로부터 탈락했기 때문에 수급자수 감소를 보고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위기가정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은 이제 새로운 체계적인 검토와 전환이 필요하다. 종전의 대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정의 수적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낮은 소득수준을 올리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TANF를 비롯한 EITC, 식품교환권, Head Start등의 정책적 경험은 이러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위기가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의미있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아동 청소년, 그리고 위기가정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기대해본다.

3. 일본[12)]

일본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을 보면 한부모가정을 다양한 가족유형의 하나로 인식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해 다양한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랜 관습에 의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라 생각하면서 나머지 소수의 가족유형을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있는 세대를 보편적인 가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전형적인 가정에 적합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소수인 한부모가정은 편견과 차별로 고통을 받으며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은 오늘날 다양하게 출현하는 여러 가족유형의 하나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족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의식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결손가정 혹은 편모·부라고 부르며, 낙인적인 호칭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라는 인식하에 한부모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田澤.あけみ・福知栄子・林浩康, 2002: 123).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정이 되면 그 모 또는 부에게는 가족을 유지해야하는 책임이 집중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정은 사회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양부모가 있는 가정에 비하여 일상생활상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특히 자녀 양육기에 있는 한부모가정은 그 경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일본의 한부모가정복지 정책은 이러한 책임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담하고 개개 가정 및 가정에 속한 개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山縣文治,2005:151). 또한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12) 이 부분은 정일교 교수(가톨릭상지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정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정의 현황과 정책 동향

(1) 한부모가정의 정의

한부모가정이란 모와 20세미만의 자녀 (「모자및과부복지법」 제6조 제2항)로 구성된 모자가정과 부와 20세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정의 총칭으로써 사용되는 용어이다. 양부모가 있는 것을 이상형으로 하는 가치관에서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은 「결손가정」으로써 차별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양부모가 있는 가정에 대치시켜 중립적으로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아직도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1980년대부터 행정창구 등은 한부모가정을 사용하고 있다(千葉茂明, 2007: 192).

모자가정이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현재 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모자및과부복지법」 제6조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란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와 사별한 여성으로 현재 혼인하고 있지 않은 자」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것에 준하는 자로서 a. 이혼한 여성으로 현재 혼인하고 있지 않은 자 b. 배우자의 생사가 명확하지 않은 자. c.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d. 배우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e.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잃어버린 여성 f. 전 각호에 준하는 여성으로 정령에서 정해진 자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령(政令)에 정해진 자」란 배우자가 장기적으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과 혼인에 의하지 않고 모가 된 미혼의 모 또는 비혼의 모라 불리는 자이다.

부자가정은 사별・이별・기타 이유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65세미만의 남성이 현재 20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西館有沙・德田克己・高玉和子編著, 2009 : 84).

(2) 한부모가정의 현황

① 한부모가정의 원인과 현황

2006년도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전국모자세대등조사」에 의하면 모자세대가 된 원인조사에서 이혼이 1983년도에 49.1%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79.7%로 증가하였다. 사별은 1983년도에 36.1%로 나타났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도에는 9.7%를 나타내고 있다. 부자세대도 이혼이 1983년에는 54.2% 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74.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사별은 1983년도에 40.0%이었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도에는 22.1%로 감소하였다. 즉, 현재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원인은 이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8> 모자세대가 된 원인별 구성비율 추이

조사연도	총수	사별	생별					
			총수	이혼	미혼모	유기	행방불명	기타
1983	(100.0)	(36.1)	(63.9)	(49.1)	(5.3)	0	0	(9.5)
1988	(100.0)	(29.7)	(70.3)	(62.3)	(3.6)	0	0	(4.4)
1993	(100.0)	(24.6)	(73.2)	(64.3)	(4.7)	0	0	(4.2)
1998	(100.0)	(18.7)	(79.9)	(68.4)	(7.3)	0	0	(4.2)
2003	(100.0)	(12.0)	(87.8)	(79.9)	(5.8)	(0.4)	(0.6)	(4.2)
2006	1,517 (100.0)	147 (9.7)	1,359 (89.6)	1,209 (79.7)	102 (6.7)	2 (0.1)	11 (0.7)	35 (2.3)

출처: 후생노동성「2006년도 전국모자세대등 조사결과보고」

<표 Ⅲ-9> 부자세대가 된 원인별 구성비율 추이

조사연도	총수	사별	생별					
			총수	이혼	-	유기	행방불명	기타
1983	(100.0)	(40.0)	(60.1)	(54.2)	-	0	0	(5.8)
1988	(100.0)	(35.9)	(64.1)	(55.4)	-	0	0	(8.7)
1993	(100.0)	(32.2)	(65.6)	(62.6)	-	0	0	(2.9)
1998	(100.0)	(32.8)	(64.9)	(57.1)	-	0	0	(7.8)
2003	(100.0)	(19.2)	(80.2)	(74.2)	-	(0.5)	(0.5)	(4.9)
2006	1,517 (100.0)	44 (22.1)	154 (77.4)	148 (74.4)	-	-	1(0.5)	5 (2.5)

출처: 후생노동성「2006년도 전국모자세대등 조사결과보고」

모자세대가 된 때의 모의 평균연령은 31.8세, 부자세대가 된 때의 부의 평균연령은 37.4세로 모두 30~39세가 가장 많고 전회의 조사(2003년) 보다 연령이 낮아졌다. 유자녀 이혼이 많고 자녀의 연령을 보면 모자세대에서는 초등학생이 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생이 19%이다. 부자세대도 같은 결과이었다.

<표 Ⅲ-10> 전국모자세대 조사에서 본 모자세대 취업・소득상황

	1998년도 조사	2003년도 조사	2006년도 조사
취업율	84.9%	83.0%	84.5%
평균연소득(아동부양수당・생활보호비 포함)	229만엔	212만엔	213만엔
일반세대의 평균소득	657.7만엔	589.3만엔	563.8만엔

주) 1) 평균년수 평균취업수입은 조사의 전년의 수치, 일반세대의 평균소득은 「국민생활기초조사」의 수치.
2) 「전국모자세대조사」는 각 연도의 후생노동성 조사
출처 :『朝日新聞』2007년 10월 22일 참고로 작성(古川孝順・田澤あけみ, 2008 : 92 재인용)

모자가정의 2005년 평균 연수입은 213만엔으로 전회조사와 변화가 없었다(2003년 조사에서는 212만엔). 부자가정은 421만엔이며 전회조사(2003년)의 390만엔 보다 약간 증가하였다(후생노동성, 2008: 123). 이것은 2006년 조사시 경제가 상승하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세대의 평균수입 563만 8천엔과 비교하면 모자가정은 일반세대의 38%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가정도 수입이 낮다.

한부모가정의 취업상황에 대해 「2006년도 전국모자세대 등 조사」를 보면, 모자가정의 모는 85.4%, 부자가정의 부는 97.5%로 모두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 중 상용고용자의 비율은 모자가정의 모가 42.5%, 부자가정의 부는 72.2%이며 모자가정의 모의 취업형태의 43.6%가 임시・시간제 취업으로 나타나 정규고용의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Ⅲ-11> 모의 취업상황

구분	총수	취업중	지위						비취업
			사업주	상용 고용자	임시・ 파트	파견 사원	가족 종사자	기타	
2003년 총수	천세대 1,225.4 (100.0)	1,017.3 (83.0) (100.0)	43.2 (4.2)	398.5 (39.2)	498.1 (49.0)	45.0 (4.4)	14.0 (1.5)	17.6 (1.7)	204.5 (16.7)
2006년 총수	천세대 1,517 (100.0)	1,282 (84.5) (100.0)	51 (4.0)	545 (42.5)	559 (43.6)	66.0 (5.1)	16.0 (1.2)	45 (3.5)	221 (14.0)
사별	천세대 147 (100.0)	112 (76.2) (100.0)	6 (5.4)	43 (38.4)	53 (47.3)	4 (3.6)	1 (0.9)	5 (4.5)	33 (22.4)
생별	천세대 1,359 (100.0)	1,160 (85.4) (100.0)	44 (3.8)	500 (43.1)	502 (43.3)	62 (5.3)	15 (1.3)	37 (3.2)	188 (13.8)

출처: 후생노동성 「2006년도 전국모자세대등 조사결과보고」

<표 Ⅲ-12> 부의 취업상황

구분	총수	취업중	지위						비취업
			사업주	상용 고용자	임시・파트	파견 사원	가족 종사자	기타	
2003년 총수	천세대 173.8 (100.0)	158.5 (91.2) (100.0)	23.9 (15.1)	120.3 (75.9)	2.9 (1.8)	2.9 (1.8)	5.7 (3.6)	2.9 (1.8)	14.3 (8.2)
2006년 총수	천세대 199 (100.0)	1945 (97.5) (100.0)	32 (16.5)	140 (72.2)	7 (3.6)	5 (2.6)	6 (3.1)	4 (2.1)	5 (2.5)

출처: 후생노동성 「2006년도 전국모자세대등 조사결과보고」

② 한부모가족의 생활 문제

2006년 모자가정의 생활상의 문제로 모친의 약 과반수는 생활비(46.3%)의 문제를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18.1%), 주거(12.8%)의 순이다. 부자가정의 부친은 생활비(40.0%), 가사(27.4%), 일(12.6%)을 들고 있으며 가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서 모자가정과 상이하다.

<표 Ⅲ-13> 한부모본인의 고민내용

	총수	생활비	일	주거	자신의 건강	친족의 건강・개호	가사	기타
모자 세대	2003년 (100.0)	(43.7)	(22.5)	(17.4)	(10.0)	(0.0)	(1.1)	(5.2)
	2006년 1,172 (100.0)	543 (46.3)	212 (18.1)	150 (12.8)	124 (10.0)	59 (5.0)	22 (1.9)	62 (5.3)
부자 세대	2003년 (100.0)	(31.5)	(14.2)	(5.5)	(8.7)	(0.0)	(34.6)	(5.5)
	2006년 135 (100.0)	54 (40.0)	17 (12.6)	10 (7.4)	8 (5.9)	0 (0.0)	37 (27.4)	9 (6.7)

출처: 후생노동성 「2006년도 전국모자세대등 조사결과보고」

자녀에 대한 고민의 내용에 대해 <표 III-14>를 보면 모자가정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진학」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예절」이다. 부자가정에서는 남아의 경우는 「교육·진학」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식사·영양」이며, 여아의 경우는 「교육·진학」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절」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자녀의 「교육·진학」이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가장 큰 문제이지만, 부자가정의 남아는 「식사·영양」을 다음 순위로 들고 있어 식사와 같은 가사문제도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Ⅲ-14> 자녀에 대한 고민내용

		교육 진학	예절	취업	건강	비행	식사 영양	결혼 문제	의복 신변정리	기타
모자 세대	2003년									
	남자	(50.3)	(21.8)	(11.0)	(4.9)	(3.7)	(3.3)	(0.1)	(0.3)	(4.6)
	여자	(55.9)	(17.1)	(8.9)	(7.3)	(2.0)	(2.3)	(1.9)	(0.5)	(4.2)
	2006년									
	남자	(55.8)	(18.9)	(10.3)	(5.3)	(1.8)	(2.3)	(0.5)	(0.9)	(4.2)
	여자	(56.9)	(19.0)	(5.5)	(5.2)	(2.1)	(2.6)	(1.9)	(1.5)	(5.3)
부자 세대	2003년									
	남자	(40.9)	(16.1)	(9.7)	(5.4)	(1.1)	(21.5)	(3.2)	(2.2)	(-)
	여자	(25.8)	(28.8)	(12.1)	(15.2)	(3.0)	(10.6)	(-)	(1.5)	(3.0)
	2006년									
	남자	(53.2)	(8.5)	(8.5)	(6.4)	(1.1)	(10.6)	(5.3)	(-)	(6.4)
	여자	(47.1)	(18.6)	(2.9)	(10.0)	(2.9)	(5.7)	(1.4)	(8.6)	(2.9)

출처: 후생노동성 「2006년도 전국모자세대등 조사결과보고」 재구성.

상담상대 유무에 대해서 <표 III-15>를 보면 모자가정에서는 76.9%, 부자가정에서는 59.4%가 상담상대가 있다고 답하고 있어 모자가정에 비하여 부자가정의 경우가 상담상대가 있는 비율이 낮았다.

<표 Ⅲ-15> 상담상대의 유무

	총수	상담상대 있음	상담상대 없음
모자세대	2003년 (100.0)	(80.7)	(19.3)
	2006년 1,470 (100.0)	1,130 (76.9)	340 (23.1)
부자세대	2003년 (100.0)	(50.6)	(49.4)
	2006년 197 (100.0)	117 (59.4)	80 (40.6)

출처: 후생노동성 「2006년도 전국모자세대등 조사결과보고」 재구성.

(3)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동향

한부모가정복지정책은 「모자및과부복지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자립지원은 단순히 복지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취업의 안정화와 금전 급부 등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내용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가 상이하다.

복지서비스는 대부분이 시정촌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모자생활지원시설 및 모자자립지도원은 복지사무소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취업관계의 정책도 도도부현을 창구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모자및과부복지법은 모자가정 및 과부의 자립을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할 목적으로 도도부현 및 복지사무소설치시정촌에 모자가정및과부자립촉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특화된 법률이 없으며, 행정수준의 추진체제도 거의 없는 현실이다(山縣文治, 2005: 153).

이하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정책을 모자가정 정책의 동향, 부자가정 정책의 동향, 모자및과부복지법개정 이후의 동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모자가정 정책의 동향

한부모가정 정책은 모자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1937년에 공포된 「모자보호법」은 13세 이하 자녀의 빈곤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부조, 교육부조, 생업부조, 의료부조를 정한 것으로 당시 불황속에서 많이 발생한 모자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한편 동년에 공포된 「군사부조법」은 군인의 가족과 유족(다수는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부조를 실시한 것이며 「모자보호법」의 빈곤의 요건보다는 완화되고 부조의 내용은 좋아졌다.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면 그렇지 않은 모자가정보다도 조금이지만 더 좋은 부조를 제공받았다. 모자생활지원시설의 전신인 모자료는 모자보호법과 군사부조법에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군사부조법의 모자료 쪽이 더 좋았다.

1945년 패전직후 전쟁재해자 및 귀환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은 비참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1946년에 재정된 구생활보호법의 제정으로 구호법과 모자보호법, 군사부조법은 폐지되고 모자료는 1947년에 재정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에게 복지는 있을 수 없다」라는 「모자일체의 원칙」때문이다. 남성 조차 일하기 어려운 시기에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일을 찾는 것은 극히 어려웠다. 패전후의 혼란기에 모자가정이 생존하기 위한 자금을 저금리・장기로 빌려주는 법률의 제정이 급하여 1952년에는 모자복지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모자상담원(현재의 모자자립지원원)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1959년에는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점에서 모자가정의 여성(다수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을 위한 무기여모자연금이 실시되었다(1986년에 폐지). 1961년에 생별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부양수당법이 제정되어 모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실시되었다.

1964년에 모자가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모자복지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흡수되었지만 모자료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채로 남았다. 현행의 모자및과부복지법으로 개정된 것은 1982년이며 과부를 법의 대상으로 포함하는데 18년의 세월이 걸렸다(千葉茂明, 2007: 195-196).

② 부자가정 정책의 동향

부자가정 정책은 모자가정 정책보다 그 수도 적었으며,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가 1977년에 실시한 부자가정실태조사가 일본 최초의 부자가정 실태조사이며, 이 조사에서 부자가정의 심각한 상태가 부각되어, 1979년에 「부자복지대책요강」이 공표되었다.

1982년에는 부자가정 부의 질병 시 헬퍼를 파견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1985년에는 자녀의 질병 시, 1989년부터는 동거하고 있는 조부모의 질병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1995년부터는 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96년에는 부자가정 등 지원사업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대학생이 부자가정의 자녀를 방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아동방문원조사업과 부자가정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보교환과 상담을 할 수 있는 파견가정상담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2002년 모자및과부복지법 개정에 있어서 법의 대상이 「모자가정등및과부」로 되어 「모자가정등」에 부자가정이 포함되어 마침내 부자가정에 대한 원조가 명기되었다(千葉茂明, 2007: 196).

③ 「모자및과부복지법」 개정 이후의 동향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생별모자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부양수당제도에 「workfare(근로연계복지)」 원칙(모의 취업에 의한 자립촉진우선)의 적극적인 적용과 생활보호에서 「모자가산」의 삭감은 모자세대 아동의 생활의 질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古川孝順・田澤あけみ, 2008: 92).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모자가정의 급증 등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에 「모자및과부복지법」 등이 개정되었고(2003년 4월부터 시행), 2003년 7월에는 「모가가정의모의취업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2003년 법률 제126호. 이하「특별조치법」이라 칭함)이 제정되었다(동년 8월부터 시행되지만 5년간의 시한).

<표 Ⅲ-16> 모자가산폐지의 경과(아동 1명의 경우, 금액은 1급의 경우)

	중졸전의 자녀가 있는 세대	중졸・고졸전의 아동이 있는 세대
2004년도	23,260엔	23,260엔
2005년도	상동	15,510엔
2006년도	상동	7,750엔
2007년도	15,510엔	0엔(폐지)
2008년도(계획)	7,750엔	상동
2009년도(계획)	0엔(폐지)	상동

출처 :『공적부조연구』제206호, 2007년 9월, 공적부조연구회, p.6.(古川孝順・田澤あけみ, 2008: 93 재인용)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① 자녀양육 단기지원사업, 일상생활 지원사업 등의 「자녀양육・생활지원책」, ② 모자가정 등 취업・자립지원센터사업, 모자가정자립지원 급부금 등의 「취업지원책」, ③ 양육비상담지원센터사업의 설치 등 「양육비 확보책」, ④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모자과부복지대부금의 대부 등의 「경제적지원책」과 관련된 종합적 자립지원책이 실시되고 있다.

2003년에는 개정 모자및과부복지법에 기반하여 「모자가정 및 과부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2003년후생성노동성고시 102호, 이하「기본 방침」이라 칭함)을 수립하고, 모자가정 및 과부의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상황을 정하고,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기본 방침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또한 「기본 방침」의 대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에는 새로운 「기본 방침」을 정하였다(内閣府, 2009: 143).

이러한 변화 속에 소득제한의 강화, 「정당한 이유없이 구직활동, 기타 후생성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립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수당 지급정지 및 삭감(아동부양수당법 제14조)과 수당 전액을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또는 수급자격발생 후 7년간 경과까지로 한정되었다(동법 13조의 2)(古川孝順・田澤あけみ, 2008: 92-93).

2005년부터 복지사무소에 자립지원프로그램 책정원(策定員)을 배치하고 모자자립지원원(自立支援員)과 연계하여, 아동부양수당지급자에 대하여 개

별로 면접·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생활상황,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취득활동 등에 대한 상황파악을 하여, 개개 사례에 따른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아동부양수당지급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등 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책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内閣府, 2009: 143).

2007년 12월에는 「성장력향상전략」의 하나인 취업지원전략으로서 「『복지부터 고용』추진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内閣府, 2008).

2008년부터는 「모자가정등사업・자립지원센터사업」에 「재가취업지원사업(在宅ワーク)」을 추가하였다. 재가취업지원사업은 모자가정의 모를 대상으로 가정내 근로 및 기술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후생노동성, 2008: 123). 또한 「일반시 등(지정도시, 중핵도시 제외) 취업・자립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 모자가정의 모에게 자원봉사활동 참가를 촉진하여 취업의욕의 각성을 돕는 「취업준비지원코스」를 운영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08: 123).

2009년 2월부터 「고등기능훈련촉진비」의 지급기간 연장 등 모자가정의 모의 취업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内閣府, 2009: 143). 「고등기능훈련촉진비」는 간호사나 개호복지사와 같이 경제적 자립에 효과적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강기간 중 생활비 부담의 경감 등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입학시 인센티브로서 입학부담금을 수료후 지급하는 「입학지원수료일시금」등이 포함되어 있다(후생노동성, 2008: 122-123).

2)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1) 자녀양육・생활지원정책

한부모가정이 안심하고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각종 자녀양육·생활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주로 「모자가정등일상생활지원사업」, 「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 「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첫째 「모자가정등일상생활지원사업」으로 1975년에 시작한 「모자가정 개호파견사업」은 모자가정의 모친이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개호인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1982년부터 부자가정도 대상이 되었다.

이 사업은 2002년의 「모자가정과부및부자가정 개호인파견사업」으로 개정되었는데 제17조에 모자가정등 일상생활지원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33조에는 과부 일상생활지원사업이 규정되었다.

이것은 한부모가정의 부모나 과부가 수학(修學)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및 질병, 생활환경의 변천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할 수 없을 때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 가정생활지도원을 파견하는 것이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부담하며 저소득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생활원조와 자녀양육지원의 2종류가 있으며, ① 영유아보육 ② 아동의 생활지도 ③ 식사돌봄 ④ 주거청소 ⑤ 신변돌보기 ⑥ 생활필수품의 장보기 ⑦ 의료기관 등과의 연락 ⑧ 기타 필요한 용무의 8가지 중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또한 생활원조지도원은 방문개호인(홈헬퍼) 3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자녀양육지원의 지도원은 보육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다. 이 사업의 실시주체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다.

둘째로 「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은 부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2002년부터 모자가정에게도 확대되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생계유지라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진 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등 생활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생활기반의 안정을 돕는 것이다.

지원내용으로는 ①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강좌개설, 상담지원, ② 개개가정의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등의 지원, ③ 휴일・야간의 전화상담, ④ 한부모가정 자녀의 정신적 지원, ⑤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을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실시되므로 시정촌에 따라서는 실시되지 않는 곳도 있다.

셋째로 「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제6조의 2, 3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직장에서의 잔업과 질병 등으로 자녀를 아동양호시설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단기입소생활원조사업(ショートステイ)과 야간보호사업(トワイライトステイ)이 있으며 이 사업의 주체는 시정촌이다.

단기입소생활원조사업(ショートステイ)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보호자가 질병 등의 사회적 사유에 의해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와 모자가 부의 폭력에 의해 긴급일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아동양호시설, 유아원, 보육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양육·보호함에 따라 아동 및 그 가정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야간보호사업(トワイライトステイ)은 아동을 양육을 하고 있는 부자가정 등이 일 등의 사유로 귀가가 항상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생활지도와 가사 등에서 곤란한 경우에 그 자녀를 아동복지시설 등에 통원·통소시켜 생활지도, 석식의 제공 등으로 부자가정 등의 생활의 안정, 아동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네째로 「기타지원사업」은 모자및과부복지법 제27조에 공영주택의 공급에 관한 특별한 배려를 규정하고 있다.

공영주택은 일반적으로 집세가 저렴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우선거주와 집세의 감면 등 특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거주에 대해서는 이혼상태 등의 조건 등이 정해진 곳도 많지만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도 있다(千葉茂明, 2007: 200-202).

보육시설에서는 11시간의 통상보육에 더하여 연장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영유아건강지원일시보육(병아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는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가정적 보육사업,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과 패밀리서포트센터사업 등도 제도화되어 있다(山縣文治, 2005: 152- 153).

(2) 취업지원정책

「모자가정등취업・자립지원센터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공공직업안정소의 취업정보의 제공과는 별도로 모자가정의 모에게 취업상담, 취업지원강습회, 취업정보의 제공 등 개개 가정의 사정에 따라 일관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千葉茂明, 2007: 199). 취업강습회에서는 취직이 될 확률이 높은 내용에 대한 강습, 구직활동과 창업의 노하우에 대한 연습, 수강생을 위한 보육서비스제공,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여성취업원조센터 등의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무직자 등에 대한 직장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山縣文治, 2005: 154).

「특정사업추진모델사업」은 2003년부터 개시되었다. 이것은 모자가정의 새로운 취업기회의 창출등 지역의 실정에 따른 선구적인 사업을 모델로 실시하고 평가검토를 한 후 추천해야 할 사례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전국적인 보급을 목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이다. 실시주체는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및 시정촌)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2씩 부담하고 있다(千葉茂明, 2007: 199-200).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재가취업과 기술향상을 지원하는 재가취업추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과 시, 복지사무소설치정촌(町村)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자가정자립지원급부금사업은 고용보험의 교육훈련급부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정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 경비일부를 부담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西館有沙・德田克己・高玉和子 編著, 2009 : 87).

구체적으로 모자가정의 모의 주체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교육훈련급부의 수급자격을 갖지 않은 자가 지정교육강좌를 수강하고, 수료한 경우 경비의 40%(8,000엔이상에서 20만원을 상한)를 지급하는 「모자가정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금」과 모자가정의 모가 간호사와 개호복지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년이상 양성기관 등에서 수료한 경우에 수업기간의 1/3에 상응하는 기간의 비용을 월액 10만 3,000엔(12개월 상한)을 지급하는 「모자가정자립지원고등기능훈련촉진비」가 있다(千葉茂明, 2007: 199-200).

복지사무소에서 모자가정과 상담을 하는 「모자상담원」은 2000년 개정 「모자자립지원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모자상담원의 업무에 모자가정의 모친의 직업능력 향상과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다. 또한 여성취업원조센터와 과부직업상담원을 설치하고 고용대책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西館有沙・德田克己・高玉和子 編著, 2009 : 87).

(3) 양육비확보정책

이혼모자가정은 부친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6년의 전국 모자세대조사에서 모자가정의 양육비 수급상황을 보면 「현재도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에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60%로 나타나 이혼한 부친의 다수가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비 확보를 위해 2002년 개정된 「모자및과부복지법」 제5조 「부양의무의 이행」의 규정은 모자가정의 부모는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2007년에는 「양육비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양육비에 관한 정보제공과 곤란사례의 지원, 양육비상담자의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 확보향상을 목표로 모자가정 등 취업・자립지원센터에 양육비 전문상담원을 설치하고 있다(西館有沙・德田克己・高玉和子 編著, 2009 : 88).

(4) 경제적지원정책

① 아동부양수당

모자가정 생활의 안정과 자립촉진, 자녀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1961년에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다. 이 아동수당도 이혼에 의한 모자가정 및 모자가정과 같은 세대의 모에게 아동의 심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a. 부모가 이혼을 한 아동
b. 부가 사망한 아동
c. 부가 중도의 장애인(국민연금법의 장해정도 1, 2급 정도)
d. 부가 생사불명인 아동
e. 1년 이상 계속 부에게 유기된 아동
f. 1년 이상 계속 부가 법령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아동
g. 모가 혼인에 의하지 않고 임신한 아동
h. g에 해당한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아동(千葉茂明, 2007: 198).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수당의 수급권자의 수는 1975년에 25만 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96만 명으로 약 3.7배 증가하였다. 아동부양수당법은 발족 이래 개정을 반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2002년 법 개정에 의해 수급기간이 약 5년을 경과한 자에 대해 2008년 4월부터 수당을 삭감하고 있지만, 삭감 동결이 정책과제로 제기된 결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거나 취업의욕이 보이지 않는 자만을 대상으로 수당액을 1/2로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수당삭감의 제외 사유로는 '취업하고 있다', '구직활동중이다', '신체상・정신상 장애가 있다', '부상・질병에 의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양육하는 자녀와 친척이 장애, 부상, 질병, 요개호상태 등에 있어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 등이 있다(西館有沙・德田克己・高玉和子 編著, 2009 : 89).

② 모자과부복지자금 대부제도

모자및과부복지법 제13조에 모자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모자복지자금」의 대부, 제32조에 과부의 자립을 목적으로 「과부복지자금」의 대부가 규정되어 있다. 과부복지자금의 대상은 과부로, 4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지만 소득제한(연간 203만 6천엔)이 있다. 제도가 개시될 당시에는 7종의 급부가 있었지만 급부제한액의 인상과 상환기간의 연장 등의 변경을 거쳐 2008년부터 12종이 되었다.

<표 Ⅲ-17> 2008년도 모자과부복지자금 대부금의 개요

자금 종류	급부대상		급부한도액	급부 기간	거치 기간	상환 기간	이율
사업 개시 자금	모자가정의 모 모자가정 단체 과부	사업(예: 양제, 경음식, 문구판매, 과자소매업, 정령(政令)에서 정한 모자단체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집기, 기계 등의 구입자금	2,830,000엔 단체 4,260,000엔		1년	7년 이내	무이자
자금 사업 계속	모자가정의 모 모자가정 단체 과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모자복지단체는 정령에 정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 재료등을 구입하는 운전자금	1,420,000엔 단체 1,420,000엔		6개월	7년 이내	무이자
수학 자금	모자가정 부양자녀 부모없는 아동 과부부양 자녀	고등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수업료, 책값, 교통비 등에 필요한 자금	고교 전수학교 (고등과정) - 사립 한도액 (30,000엔) (자택) 월액 45,000엔 (35,000엔) (자택외) 월액 52,500엔 대학, 도등전문학교, 전수학교 (전문과정) - 사립의 한도액 (54,000엔) (자택) 월액 81,000엔 (64,000엔) (자택외) 월액 96,000엔 전수학교(일반	취학 기간중	해당 학교 졸업후 6개월 내	20년 이내 전수 학교 (일반 과정 5년 이내)	무이자

			과정) (29,000엔) (자택) 월액 43,500엔				
기능습득자금	모자가정의 모 과부	스스로 사업의 개시 또는 회사 등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일반】 월액 50,000엔 【특별】 (일괄 600,000엔) (12개월상당) 운전면허 460,000엔	지식기능습득기간 중 3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식기능습득 후 1년	20년 이내	무이자
수업자금	모자가정 부양자녀 부모없는 아동 과부부양자녀	사업을 개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월액 50,000엔 (특별 460,000엔)	지식기능습득기간 중 3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식기능습득 후 1년	6년 이내	무이자
취업준비자금	모자가정 부양자녀 부모없는 아동 과부부양자녀	취업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의복, 준비물, 통근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금	일반 100,000엔 특별 320,000엔		1년	6년 이내	무이자
의료개호자금	모자가정의 부양자녀(개호의 경우는 아동을 제외) 과부	의료 또는 개호(해당 의료 또는 개호를 받는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 한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	【의료】 340,000엔 특별 480,000엔 【개호】 500,000엔		6개월	5년 이내	무이자
생활자금	모자가정의 모 과부	지식기능을 습득하고 있는 기간, 의료 또는 개호를 받고 있는 기간, 7년미만의 모자가정 생활안정기간, 실업중의 생활을 안정하기	【일반】 월액 130,000엔 【기능】 월액 141,000엔	・지식기능을 습득하는 기간중 3년이내 ・의료, 개호를	지식습득 후 의료 또는 개호 종료 후	기능습득 20년 이내 의료 또는 개호	연 3% (의료 또는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위해 필요한 생활 보충자금		받고 있는 기간 중 1년이내 · 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또는 생활안정기간의 대부 또는 실업중의 대부기간 만료후 6개월	5년이내 생활안정 대부 8년이내 실업 5년이내	및 지식습득 기간 중 대부는 무이자)
주택 자금	모자가정의 모 과부	주택을 건설, 구입, 보수, 보존, 개축, 또는 증축하는데 필요한 자금	1,500,000엔 (특별 2,000,000엔)		6개월	6년이내 특별 7년이내	연 3%
임대 자금	모자가정의 모 과부	주택을 이전하기 위해 주택임대시 필요한 자금	260,000엔		6개월	3년이내	연 3%
취학 준비 자금	모자가정 부양자녀 부모없는 아동 과부부양 자녀	취학, 수업에 필요한 의복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초등학교 39,000엔 중학교 46,100엔 공립도등학교 85,000엔 수업시설 등 100,000엔 사립고등학교 420,000엔 국공립대학 · 단기대학 380,000엔 사립대학 · 단기대학 590,000엔		6개월	취학은 20년 이내 수업 5년이내	무이자
결혼 자금	모자가정의 모 과부	모자가정의 모가 부양하는 아동, 과부가 부양하는 20세 이상의 자녀에 혼인에 필요한 자금	3000,000엔		6개월	5년 이내	연 3%

출처 : 후생노동성고용균등 · 아동가정국 조사(西館有沙 · 德田克己 · 高玉和子 編著, 2009 : 90-91 재구성)

③ 기타복지대책

모자와 과부를 위한 복지시설로서 「모자생활지원시설」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정해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이다.

이 시설은 모자가정의 보호와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모자가 거주하는 방 이외에 거실·학습실 등이 있고 모자지도원, 아동지도원 등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시설이지만 외관은 아파트나 맨션과 같이 보인다.

1997년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모자료」라 불리었다. 2002년의 개정으로 모자생활지원시설의 입소방식은 조치제도의 변경으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설을 스스로 선택하고 도도부현과 계약하는 제도로 변화되었다.

또한「배우자로부터폭력방지및피해자의보호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일시보호의 가정폭력피해당사자를 받고, 동시에 그 자녀를 받는 곳도 있다.

2003년부터는 소규모분원형(サテライト형)모자생활지원시설의 운영사업이 창설되었다. 이것은 모자생활지원시설에서 사회로 나가기 전 일정기간, 지역사회 소규모시설에서 생활해 봄으로써 시설퇴소 후 유연하게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모자복지센터」는 모자및과부복지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자복지시설의 하나이다. 이 모자복지센터에서는 모자가정의 자녀양육, 생활전반의 고민과 아동부양수당, 취업 등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다.

「모자휴양홈」은 모자및과부복지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자복지시설이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모자가정이 레크리에이션·휴양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실제로는 단독시설이 아니라 공공의 보양(保養)시설 등이 모자휴양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용시에는 복지사무소에서 이용권을 발행받아야 한다(千葉茂明, 2007: 202-203).

한편 세제상의 우대조치로 소득세와 지방세에는 과부공제가 있다. 소득세는 27만엔, 개인주민세 26만엔의 공제가 인정된다(西館有沙・德田克己・高玉和子 編著, 2009 : 89).

그리고 사별모자세대의 경우는 국민연금법에 기반한 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부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유족후생연금과 유족후생연금도 지급되고 있다(山縣文治, 2005: 155).

3)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사례(오사카시)[13]

일본의 오사카시는 한부모가정이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라는 관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하면서 생기있고 풍요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불어 그 가족상황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녀의 행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오사카시 건강복지국, 2009: 38).

오사카시가 지향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지원관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권존중의 관점」, 「자립을 지원하는 관점」, 「아동의 관점」, 「종합성의 관점」이 있다.

「인권존중의 관점」은 오랜 일본적 관습에 의한 편견과 사회의 이해부족으로 차별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인권존중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사카시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의 규정 :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을 목표로 삶의 보람이 있는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자유・평등에 따른 공정한 사회실현”」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한부모가정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립을 지원하는 관점」은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지역의 여러 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생활양식과 목표를 선택하고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립생활」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안심하고 자녀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며, 특히 안정

13)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 한부모가정의 급증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11월에 「모자및과부복지법」 등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종합적 자립지원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 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적인 생활을 위해서 취업의 확보가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녀양육・생활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축으로 한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부모 스스로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의 관점」은 「아동권리조약」에 기초하여 아동의 기본적 인권존중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존중을 위해 사회전체가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그 가정상황으로 차별받지 않고 기본 인권이 존중됨과 더불어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관점에서 아동의 이익과 아동 자신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성의 관점」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정이 가진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급여와 복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교육, 노동, 주택, 생활환경이란 폭넓은 관점에서 그 정책을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행정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당사자단체 등 여러 단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체제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사카시 한부모가정 등 자립촉진계획(2009.3.6)」을 통하여 이러한 관점에 따른 한부모가정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녀양육・생활지원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과 취업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우선입소,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의 추진,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모자가정 일상생활지원사업의 추진 등으로 자녀양육과 생활면의 양 측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영주택의 우선입소와 모자생활지원시설 기능의 충실 등과 같이 생활장소의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여러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상담기능의 충실, 아동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대책강화 등 아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① 자녀양육지원책의 추진

가. 보육시설의 우선입소

2003년 4월에 개정시행된 모자및과부복지법에서는 보육시설의 입소시 한부모가정을 우선적으로 입소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국통지(國通知)[14]에서 이혼 직후에 있는 자로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완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입소시킬 것, 또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는 경우는 취업하고 있는 경우와 동등의 사정으로서 우선적으로 다룰 것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한부모가정의 취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개정의 취지에 기반하여 우선적 입소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나. 보육시설의 계획적인 정비

대기아동의 해소를 위하여 자녀양육가정의 욕구를 파악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의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다. 연장보육사업, 야간보육사업, 휴일보육사업, 일시보육사업

사회상황의 변화와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교대제근무와 토·일요일의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이 많아져 한부모가정의 취업지 선택에 따른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보호자의 개개욕구에 세심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장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라. 영유아건강지원서비스사업

질병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에서 집단보육이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보육시설·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녀를 맡아주는 영유아 건강지원 주간보호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 아동 단기입소생활원조사업

취학전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질병과 육아불안 등으로 자녀의 양육이 곤란할 때 1주간이내를 원칙으로 숙박을 포함하여 아동을 맡아주는 야간보호

14) 通知는 각 관할청(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으로부터 도도부현 및 시정촌 등의 각 행정단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지도상의 기준이다. 법령은 아니지만 법령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子どもと保育總合研究所, 2007 : 233).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 유치원의 종일보육사업의 추진

사립유치원에서 보호자의 취업욕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종일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의 양육의 장」으로서의 유치원의 자녀양육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사. 보육시설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사업

자녀양육에 불안과 부담을 갖고 있는 보호자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기능을 활용하여 전임 보육교사에 의한 자녀양육 노하우의 제공과 상담을 실시하는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 육아지원가정방문사업

출산직후 가정과 운둔형외톨이(ひきこもり)문제 등 가정양육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양육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아동의 전전육성과 아동학대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산파 등의 전문직에 의한 육아지도와 자녀가정지도원에 의한 육아상담, 헬퍼에 의한 가사지원 등 세심한 방문형자녀양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 패밀리서포트센터사업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에는 지역사회의 한부모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자녀양육에 대한 시민의 상호원조활동을 지원하는 패밀리서포트센터사업을 확충하고 있다.

차. 모임 광장사업

자녀양육중의 부모와 자녀가 가벼운 마음으로 모여 상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단체와 NPO법인과 함께 연계를 통하여 모임광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카. 지역사회의 자녀양육활동의 지원

지역사회의 주임아동위원 등이 중심이 되어 자녀양육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녀양육지원교실과 자녀양육중의 부모들이 모여 교류·정보교환을 하는 서클활동 등 시민의 다양한 자녀양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타.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의 추진

한부모가정의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에게 방과후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놀이와 교류의 장·활동거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방과후사업을 제공하여 부모부재아동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② 생활지원책의 추진

가. 모자가정등일상생활지원사업의 충실

한부모가정 등이 일시적으로 생활원조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가정생활지도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모자가정 등 일상생활지원사업에 대한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지도원의 양성과 유자격자의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160명의 가정생활지도원의 신규등록을 추진하는 등 제도의 이용촉진을 위해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나. 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강습회와 정보교환회, 한부모가정의 교류회 등을 갖는 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실정과 젊은 한부모가정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 모자생활지원시설 기능의 충실

모자생활지원시설에서 모자가정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모자가정의 모에 대한 취업상담과 생활지도, 자녀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시설내 보육을 실시하는 등 모자가정의 취업자립을 위하여 시설 기능의 충실을 꾀하고 있다.

③ 생활장소의 안정

가. 시영주택의 우선입주

시영주택의 우선입주를 추진하며 앞으로 대상을 모자가정에서 부자가정

을 추가한 한부모가정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나. 주택입주와 관련된 과제 검토 등

민간임대주택입주시 공적인 집세보증제도의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주택입주와 관련된 여러 과제에 대해 검토를 추진하고 주택복지시책의 충실을 꾀하고 있다.

④ 자녀에 대한 지원

가. 상담기능의 충실

한부모가정의 부모, 자녀가 겪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센터, 가정아동상담실,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상담창구의 충실과 더불어 전문적 상담기관으로서 중앙아동상담소, 자녀양육상담센터 기능의 충실을 꾀하고 있다.

또한 교육센터에서 아동자신의 고민을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아동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나. 학교상담사의 배치

「왕따」, 「부등교」, 「폭력행위」와 같은 학교교육의 긴급한 과제에 대응하고, 상담・지도체제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의 미면방지와 조기발견・조기해결을 위하여 학교상담사를 전 중학교에 배치하고 아동들의 마음 상담을 하고 있다.

다. 마음의 친구(メンタルフレンド)방문원조사업

운둔형외톨이・부등교아동등의 가정에 형・동생세대의 대학생 등을 마음의 친구로서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놀이와 대화를 통하여 정서의 안정을 꾀함과 더불어 자주성과 사회성의 신장을 원조하고 있다.

라. 부등교아동 심리치료사업

주로 중학교의 부등교청소년을 등원하게 하여 심리치료를 하고 청소년과 그 가족의 성장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 아동학대방지 대책의 추진

각구(各區)에 있는 아동학대방지의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더불어 지역수준

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대응, 사후케어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이 곤란한 아동학대사례에 대하여 중앙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직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케에메니지먼트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과 자녀양육가정, 관련 여러 기관에 적극적인 아동학대방지캠페인을 실시하고 행정과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아동을 지키고 자녀양육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취업지원

모자가정 및 과부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효과적인 직업소개, 취업기회의 창출 등 취업면에서의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과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일하기 쉬운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행정부와 기업, 단체 등에 대한 계몽활동·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① 효과적인 취업상담・직업소개

가. 모자가정등 취업・자립지원센터사업

모자가정의 모 등에 대한 취업상담, 취직정보의 제공, 취업지원강습회, 무료직업소개 등 일관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취업・자립지원센터에서 개개의 사정에 따른 세밀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원의 상담기술을 향상하고, 효과적인 직업소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취업상담원과 보건복지센터의 모자자립지원원의 모자가정취업지원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자립지원센터와 보건복지센터의 모자자립지원원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무료직업소개소사업과 오사카인재고용개발인권센터(C-STEP), 오사카지역취업지원센터사업 등 취업에 관한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센터의 취업상담

각 구에 있는 보건복지센터 지역보건복지센터에서 취직, 전직, 기능습득, 취업에 관련된 여러 상담에 응하고, 취직정보의 제공과 취직활동의 원조 등 자립을 위한 계속적·계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자가정등취업·자립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상담을 실시함과 더불어 공공직업안정소등의 관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구에 있는 보건복지센터지원운영과에서 생활보호를 수급하는 모자가정의 모에게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조기자립을 위한 취업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피보호모자세대의 자립조장, 취업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지원프로그램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② 안정된 취업을 위한 능력의 개발

가. 취업지도강습회의 실시

모자가정 및 과부에 대한 취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술·자격취득을 위한 취업지원강습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직자 등이 취업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취직준비·이직과 전직세미나의 실시

취업지원강습회수강자를 대상으로 모자가정의 모에 대한 지원제도의 정보와 취직·전직에 대한 기초지식과 취직정보를 제공하는 취직준비·이직과 전직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다. 모자가정자립지원급부금(모자가정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금, 모자가정고등기능훈련촉진비)사업

모자가정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금을 통하여 지정된 교육훈련급부강좌를 수료한 모자가정의 모에게 수강비용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모자가정의 모가 개호복지사 등 경제적 자립에 효과적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수업을 하는 경우 취업 또는 육아와 수학(修學)의 양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비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모자가정고등기능훈련촉진비가 지급

되고 있다.

라. 모자 및 과부복지자금(기능습득자금 및 생활자금)

모자가정의 모 및 과부가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비용과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에서 기능습득기간 중 생활비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모자과부복지자금의 기능습득자금과 생활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③ 취업기회의 창출

가. 모자가정자립지원급부금(상용고용전환장려금)사업의 실시

모자가정의 모를 신규로 비상근으로 채용하고, 직장내연수(OJT)를 실시한 후 상용고용노동자로 고용전환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상용고용전환장려금의 활용을 위해 경제단체 등에 이 제도에 대해 알리고 있다.

나. 모자가정의 모 고용 촉진

오사카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모자가정 및 과부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시와 오사카시의 관리단체 등이 비상근직원을 고용할 때, 취업・자립지원센터사업의 무료직업소개에 구인등록을 하고, 모자가정의 모 및 과부의 고용촉진을 꾀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모자가정의 모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조성하여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과 모자가정의 모를 일정기간 시행고용할 때 지급되는 시행고용장려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며 기업이 모자가정 및 과부를 고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다. 종합평가입찰제도의 실시

입찰의 평가항목으로서 종래의 가격평가에 더하여 기술적 평가・공공성 평가를 설정하고 가격만이 아니라 종합평가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입찰제도를 활용하고 모자가정 모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라. 모자과부복지단체 등의 우선적인 사업발주

매점의 우선허가의 보급과 오사카시와 오사카시의 관리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위탁 등, 모자과부복지단체에 대한 우선적인 사업발주를 꾀하고 있다.

마. 모자과부복지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급부

모자과부복지단체가 모자가정의 모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사회복지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 노동자파견사업, 신용보증업)을 실시할 경우 모자복지자금을 급여한다.

바.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창업지원

모자가정 및 과부가 새롭게 사업을 창업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창업할 경우에 모자 과부복지자금을 급부한다. 또한 오사카시 산업창조관이 설치한 창업희망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창구를 활용하여 한부모가정 등의 창업상담 등을 하고 있다.

사. 지역사회 비즈니스(CB)의 시민계몽

시민이 스스로 인재와 노하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즈니스의 창업촉진과 지역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관점에서 CB입문, 세미나 실시 등으로 모자가정의 모 스스로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고용에 관한 계몽・정보제공의 추진

가. 계몽활동의 추진

모자가정 취업지원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경제단체에 모자가정의 모 및 과부의 취업촉진을 위한 연수회 등을 활용하여 고용을 계몽하고 있다. 나아가 한부모가정의 부모 등의 취업시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일자리를 계몽하고 있다.

나. 기업의 남녀공동 참가 추진 지원사업

남녀공동참가 추진의 일환으로써 한부모가정과 자녀양육 중인 부모도 포함하여 근로자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표창을 하고 있다.

⑤ 다양한 일자리의 실현

가. 고용환경의 정비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오사카부와 연계하여 이용하기 쉬운 육아휴업제도와 단시간 근무제도 등의 제도를 각 기업에 알림과 더불어 한부모가정에 대해 여러 제도를 알리고 있다.

나. 다양한 취업형태의 실현

사회 전체의 취업형태를 개선하여 근무시간과 생활시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취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외노동의 축소와 연차유급휴가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재가근무(テレワーク) 등 다양한 취업형태의 도입과 노동조건의 정비에 대해 국가・오사카부・관계단체와 연계하여 각 기업에 계몽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3) 양육비지원

상담체제의 충실로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비확보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양육비에 대한 약속과 지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계몽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① 홍보・계몽활동의 추진

양육비의 부담은 자녀의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지만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자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양육비에 관한 강좌의 개최와 리플렛의 작성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② 상담・정보제공체제의 실현

가. 보건복지센터에서 상담・정보 제공

한부모가정의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센터의 모자자립지도원을 대상으로 양육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상담기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부양수당현황계 제출 때와 같은 다양한 기회

를 통하여 양육비 취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전문상담의 실시

양육비의 실질적 지급확대에 있어서 복잡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모자가정 등 취업·자립지원센터상의 상담사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서로 양육비 결정방법 등 이혼시 필요한 지식의 취득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클레오오사카의 상담기능과 연계하고 있다.

(4) 경제적 지원

아동부양수당제도와 모자과부복지자금대부금제도가 모자가정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관계직원에 대한 연수의 충실 등, 경제면에서의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부조사업의 실시에 따라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① 경제적 원조의 실시

가.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모자가정 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해 아동부양수당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추진함과 더불어 관계직원에 대한 연수를 충실히 하고 있다.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아동부양수당의 급부대상자가 되도록 계속 국가에 요청하고 있다.

나. 모자과부복지자금대부금사업의 실시

가까운 상담창구인 각 구 보건복지센터에서 모자가정 모의 자립촉진을 위해 대부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계직원에 대한 연수와 대부사무취급 매뉴얼의 작성으로 적정한 대부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업무시 취업과 자립을 위한 상담을 하고 차용인의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② 경제적 부담의 경감

가. 의료비 조성제도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의 촉진・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보험진료에 드는 의료비의 자기부담금 일부를 조성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비조성제도 및 영유아의료비조성제도를 실시하고 비용부담의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나. 공공요금의 복지감세・복지할인

수도요금・하도수사용료의 복지감세 실시, 시영교통의 복지할인, 주차장 이용요금의 할인 등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 자녀의 교육・진학원조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학장려사업, 수업료의 감액・면제를 하는 시립고등학교의 수업료감면제도, 경제적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아동의 취학을 위해 학용품비 등의 원조를 하는 취학원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에 취원시키고 있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립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사업・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라. 정보제공의 추진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제도에 대해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5) 지원체제의 충실

한부모가정 등 그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도록 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를 위하여 교육・계몽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 등이 겪고 있는 여러 고민과 과제에 대하여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정보제공체제의 확충 및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한부모가정 부모와 자녀의 생활을 지켜주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주민의 협동으로 지원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①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이해와 인권존중

가. 인권계몽을 위한 노력

한부모가정이 사회에서 가족형태의 하나로서 이해되고 개인으로서도 존중되어 개성과 의욕, 능력을 살려가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 부모와 자녀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교육·계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의 인권존중 의식고양과 함께 오사카부(府)는 기관연계를 통하여 기업에 공정한 채용선발에 관한 계몽과 집주인과 건물임대업자의 편견에 의한 입주거부 문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인권상담기능의 충실

인권에 관련된 여러 상담을 하는 각 구청의 인권상담 창구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 상담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에 시민욕구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하고 인권상담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인권상담 네트워크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② 상담·정보제공기능의 충실

가. 정보제공의 충실

필요할 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정보제공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각종 제도·창구 등의 홍보를 널리 하고 있다.

나. 모자자립지원원 등에 의한 상담·정보제공

보건사가 효과적인 상담·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자립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이 가볍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연수로 모자과부복지상담소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각 구 보건복지센터의 모자자립지원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다. 자녀양육 상담센터의 상담・정보제공

자녀양육과 육아에 대하여 친근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 고립감과 불안감을 가지는 한부모가정을 비롯하여 자녀양육가정의 여러 고민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지원의 중핵시설로서 IT를 활용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트화를 추진하면서 상담・정보발신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라. 한부모가정관계기관의 연계강화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市)수준에서 「오사카시한부모가정등 취업・자립지원연락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의 연락조정, 정보교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區)수준에서 한부모가정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공적 시설 등이 참가하는 회의를 설치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연락조정, 사례검토회 등을 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지역 지원체제의 충실

가.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

「오사카시지역복지계획」에 기반하여 지역의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부모가정과 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는 가정 등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욕구를 발견・보호・지원으로 연결되는 서포트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에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주임아동위원과 아동위원, 당사자단체, NPO법인,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등 측면으로부터 지원하고 있다. 사회전체에서 자녀양육이 수월한 환경만들기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지의 발행과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고 자녀양육서클에 대한 지원・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나. 당사자참가 추진

각 구의 지역복지계획행동만들기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사업에 당사자의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다. 당사자 활동에 대한 지원

부모자녀의 마음의 안정과 자립·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정간의 상호원조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당사자단체와 그룹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4) 한국정책에의 시사점

일본의 한부모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다. 즉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인하여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정규직 취업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저소득 문제, 한부모가정의 주요 원인인 이혼 후 가족의 정신적 불균형문제, 부자가정의 경우 가사와 자녀양육의 문제, 사회에서의 차별문제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문제에 대한 일본의 한부모가정지원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다양한 가족유형의 하나로서 한부모가정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양육·생활지원정책」, 「취업지원정책」, 「양육비확보정책」, 「경제적 지원정책」, 「기타복지대책」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한부모가정지원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고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즉 한부모가정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한부모가정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을 다양한 가족유형의 하나로 인식하고 사회에서 받고 있는 차별을 줄이며, 한부모가정이 사회 속에서 일반가정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

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돕기 위한 인권교육과 인권상담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한부모가정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한부모가정이 된 초기의 대응으로서 다양한 상담체제가 정비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빈곤가정이 될 경향이 높으므로 다양한 생활지원정책,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아동부양수당의 급여를 확대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급여의 조건을 강화하는 등 빈곤가정에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가정의 문제에 대한 예방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부모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다. 지역사회에서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민생위원, 아동위원, 주임아동위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단체, 자녀양육서클 등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연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개별 한부모가정의 특수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서의 정책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부모가정은 그 가정이 처해있는 다양한 경제적, 자녀양육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욕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개별가정상황에 맞는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과 취업이 양립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환경의 다양성, 단시간 근무제도의 확대, 시간외노동의 축소, 연차유급휴가, 다양한 취업형태의 도입과 노동조건의 정비, 취업지도강습회 등 여러

제도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맞는 다양한 취업형태의 개발과 훈련,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Ⅳ.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욕구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결과
2.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Ⅳ.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욕구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가정유형	일반가정	305(38.0)
	모자가정	188(23.4)
	부자가정	157(19.6)
	조손가정	152(19.0)
성별	남자	342(42.6)
	여자	460(57.4)
교급	초등학교	520(64.8)
	중학교	282(35.2)
도시유형	대도시	217(27.1)
	중소도시	351(43.8)
	농산어촌	234(29.2)
전체		802(100.0)

가정유형을 보면, '일반가정'이 '38%', '모자가정'이 '23.4%', '부자가정'이 '19.6%', '조손가정'이 '19%'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청소년'이 '42.6%', '여자청소년'이 '57.4%'를 차지하였다.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64.8%', '중학생'이 '35.2%'를 차지하였다.

도시유형별로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27.1%',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3.8%',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29.2%'를 차지하였다.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표 Ⅳ-2> 가정형편

		매우 못사는편	못사는편	보통	잘사는편	매우 잘사는편	전체
1) 가정유형	일반가정	1.3	13.0	60.8	19.6	5.3	100.0(301)
	모자가정	4.3	21.7	59.8	10.3	3.8	100.0(184)
	부자가정	5.8	25.8	56.1	11.0	1.3	100.0(155)
	조손가정	6.7	27.3	46.7	15.3	4.0	100.0(150)
2) 성별	남자	3.0	17.3	53.9	19.3	6.5	100.0(336)
	여자	4.6	22.5	59.3	11.7	2.0	100.0(454)
3) 교급	초등학교	2.5	14.1	59.0	19.3	5.1	100.0(512)
	중학교	6.5	31.7	53.2	6.8	1.8	100.0(278)
전체		3.9	20.3	57.0	14.9	3.9	100.0(790)

1) x^2=40.443*** 2) x^2=22.767*** 3) x^2=59.479***

‘자신의 가정형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의 ‘57%’가 ‘보통’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4.2%’가 ‘못사는 편’, ‘18.8%’가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못산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5.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잘사는 편’에 ‘일반가정청소년(24.9%)’, ‘조손가정청소년(19.3%)’, ‘모자가정청소년(14.1%)’, ‘부자가정청소년(12.3%)’ 순으로 응답하였고, ‘보통’에 ‘일반가정청소년(60,8%)’, ‘모자가정청소년(59.8%)’, ‘부자가정청소년(56.1%)’, ‘조손가정청소년(46.7%)’ 순으로 응답하였고, ‘못사는 편’에 ‘일반가정청소년(14.3%)’, ‘모자가정청소년(26%)’, ‘부자가정청소년(31.6%)’, ‘조손가정청소년(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결과로 일반가정청소년과 모자가정청소년에 비해 부자가정청소년과 조손가정청소년이 자신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가정형편이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남자청소년(20.3%)이 여자청소년(27.1%)보다 낮게 나타나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가정형편이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초등학생(16.6%)이 중학생(38.2%)보다 낮게 나타나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자신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가정형편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남자청소년, 일반가정청소년, 모자가정청소년이 중학생, 여자청소년, 부자가정청소년, 조손가정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3> 현재 부모님의 결혼상태

		결혼 또는 재혼	이혼	별거	사별	모름	전체
1) 가정 유형	일반가정	80.0	1.3	.7	.0	18.0	100.0(300)
	모자가정	22.3	42.9	10.9	6.5	17.4	100.0(184)
	부자가정	13.6	57.1	11.7	2.6	14.9	100.0(154)
	조손가정	20.0	43.3	5.3	4.7	26.7	100.0(150)
2) 교급	초등학교	41.3	26.9	5.1	2.2	24.6	100.0(509)
	중학교	43.7	35.5	7.9	4.3	8.6	100.0(279)
전체		42.1	29.9	6.1	2.9	18.9	100.0(788)

1) x^2=360.246*** 2) x^2=34.053***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청소년의 '42.1%'가 '결혼 또는 재혼', '29.9%'가 '이혼', '18.9%'가 '모름', '6.1%'가 '별거', '2.9%'가 '사별'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 보면, 부자가정이 '이혼(57.1%)'과 '별거(11.7%)'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자가정의 경우는 '사별(6.5%)' 율이 이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보면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대해 잘 모르는 '초등학생(24.6%)'이 '중학생(8,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국어성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전체
1) 성별	남자	5.4	15.2	45.7	25.4	8.4	100.0(335)
	여자	3.8	7.6	48.8	29.4	10.5	100.0(449)
2) 교급	초등학교	3.2	7.7	47.1	30.8	11.2	100.0(507)
	중학교	6.9	16.6	48.0	22.0	6.5	100.0(277)
전체		4.5	10.8	47.4	27.7	9.6	100.0(784)

1) x^2=13.848** 2) x^2=27.828***

국어성적의 경우 전체청소년 중 '47.4%'가 '중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잘하는 수준(27.7%)', '못하는 수준(10.8%)', '매우 잘하는 수준(9.6%)', '매우 못하는 수준(4.5%)'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청소년 '37.3%'의 국어성적이 '중간보다 잘하는 수준'인 것으로 '15.3%'가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국어를 잘 하는 청소년이 못하는 청소년보다 2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39.9%)'이 '남자청소년(33.8%)'보다 국어성적이 '중간보다 잘하는 수준'의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간보다 잘하는 수준'의 '초등학생'이 '42%', '중학생'이 '28.5%'로 국어성적이 좋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영어성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전체
1) 가정 유형	일반가정	15.4	23.5	34.2	15.4	11.4	100.0(298)
	모자가정	21.3	28.4	33.9	9.8	6.6	100.0(183)
	부자가정	21.7	37.5	27.0	11.2	2.6	100.0(152)
	조손가정	18.9	32.4	29.7	11.5	7.4	100.0(148)
2) 교급	초등학교	16.5	25.0	35.5	14.5	8.5	100.0(504)
	중학교	22.7	36.5	25.3	9.0	6.5	100.0(277)
전체		18.7	29.1	31.9	12.5	7.8	100.0(781)

1) x^2=26.693** 2) x^2=22.922***

영어성적의 경우 전체청소년 중 '31.9%'가 '중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못하는 수준(29.1%)', '매우 못하는 수준(18.7)', '잘하는 수준(12.5%)', '매우 잘하는 수준(7.8%)'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청소년 '47.8%'의 영어성적이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20.3%'가 '중간보다 잘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청소년이 잘하는 청소년보다 27.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59.2%)', '조손가정청소년(51.3%)', '모자가정청소년(49.7%)', '일반가정청소년(38.9%)', 순으로 영어성적이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인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의 '초등학생'이 '41.5%', '중학생'이 '59.2%'로 영어성적이 낮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수학성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전체
1) 성별	남자	8.7	21.3	33.5	21.3	15.3	100.0(334)
	여자	17.8	26.5	31.2	16.7	7.8	100.0(449)
2) 교급	초등학교	10.7	18.1	34.5	23.1	13.6	100.0(507)
	중학교	19.9	35.5	27.9	10.5	6.2	100.0(276)
전체		13.9	24.3	32.2	18.6	11.0	100.0(783)

1) x^2=25.854*** 2) x^2=59.853***

수학성적의 경우 전체청소년 중 '32.2%'가 '중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못하는 수준(24.3%)', '잘하는 수준(18.6%)', '매우 못하는 수준(13.9%)', '매우 잘하는 수준(11.0%)'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청소년 '38.2%'의 수학성적이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29.6%'가 '중간보다 잘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청소년이 잘하는 청소년보다 8.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44.3)'이 '남자청소년(30%)'보다 수학성적이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인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의 '초등학생'이 '28.8%', '중학생'이 '55.4%'로 수학성적이 낮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26.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사회성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전체
1) 성별	남자	9.3	19.4	39.7	21.2	10.4	100.0(335)
	여자	10.7	27.5	39.4	13.6	8.7	100.0(447)
2) 교급	초등학교	8.7	20.0	43.0	17.4	10.9	100.0(505)
	중학교	12.6	31.4	33.2	15.9	6.9	100.0(277)
전체		10.1	24..0	39.5	16.9	9.5	100.0(782)

1) x^2=12.730* 2) x^2=20.042***

사회성적의 경우 전체청소년 중 '39.5%'가 '중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못하는 수준(24.0%)', '잘하는 수준(16.9%)', '매우 못하는 수준(10.1%)', '매우 잘하는 수준(9.5%)'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청소년 '34.1%'의 사회성적이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26.4%'가 '중간보다 잘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회를 못하는 청소년이 잘하는 청소년보다 7.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의 '여자청소년'이 '38.2%', '남자청소년'이 '28.7%'로 사회성적이 낮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1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의 '초등학생'이 '28.7%', '중학생'이 44%' 로 수학성적이 낮은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15.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과학성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전체
1) 성별	남자	6.3	14.9	37.3	23.9	17.6	100.0(335)
	여자	8.1	22.7	40.7	19.3	9.2	100.0(445)
2) 교급	초등학교	6.8	13.7	39.0	24.7	15.9	100.0(503)
	중학교	8.3	29.6	39.7	15.2	7.2	100.0(277)
전체		7.3	19.4	39.2	21.3	12.8	100.0(780)

1) x^2=19.758** 2) x^2=41.958***

과학성적의 경우 전체청소년 중 '39.2%'가 '중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잘하는 수준(21.3%)', '못하는 수준(19.4%)', '매우 잘하는 수준(12.8%)', '매우 못하는 수준(7.3%)'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청소년의 '34.1%'가 과학성적이 '중간보다 잘하는 수준'인 것으로 '26.7%'가 '중간보다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학을 잘 하는 청소년이 못하는

청소년보다 7.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중간보다 잘하는 수준'의 '여자청소년'이 '28.5%', '남자청소년'이 '41.5%'로 과학성적이 높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13%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간보다 잘하는 수준'의 '초등학생'이 '40.6%', '중학생'이 '22.4%'로 과학성적이 높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18.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정유형별 차이

구분		가정유형				F
		일반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자아존중감	M	29.94	29.48	29.51	20.96	0.791
	SD	5.504	5.397	4.935	5.952	
우울	M	17.85	18.06	19.12	21.47	0.075
	SD	6.246	6.213	7.144	7.097	
불안	M	21.21	21.40	21.64	21.93	0.749
	SD	6.845	6.330	6.928	7.028	
공격성	M	20.96	21.74	21.68	21.89	0.335
	SD	5.952	6.008	6.348	5.862	

<표 Ⅳ-10>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성별/교급별 차이

구분		성별		T	교급		T
		남	여		초등학교	중학교	
자아존중감	M	29.49	29.86	-.938	29.60	29.89	-.713
	SD	5.111	5.661		5.555	5.216	
우울	M	17.41	19.16	-3.652***	18.09	19.01	-1.875
	SD	6.530	6.848		6.481	6.795	
불안	M	20.45	22.22	-3.624***	20.77	22.77	-3.988***
	SD	6.403	6.848		6.677	6.754	
공격성	M	22.57	20.63	4.433***	21.16	22.02	-1.915
	SD	6.403	5.599		5.955	6.132	

'자아존중감'의 경우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성별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자(M=19.16)'가 '남자(M=17.4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의 경우는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M=22.22)'가 '남자(M=20.45)'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M=22.77)'이 '초등학생(M=20.77)'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남자(M=22.57)'가 '여자(M=20.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1> 가정 생활의 어려움 1

		부모 안 계심	부모 불화	자나친 간섭	부모 무관심	부모 실직	부모 음주	가족 질병	식구 가출	경제 적어려움	가족 폭력	기타	없음	전체
1) 가정유형	일반가정	9.2	8.0	13.5	3.2	1.6	8.4	10.0	1.2	15.9	2.4	6.8	19.9	(251) 100.0
	모자가정	11.4	7.2	15.6	2.4	3.6	3.0	7.2	2.4	19.2	3.0	9.6	15.6	(167) 100.0
	부자가정	18.8	5.5	11.7	5.5	3.1	11.7	6.3	2.3	14.8	1.6	6.3	12.5	(128) 100.0
	조손가정	30.8	8.3	14.3	8.3	1.5	5.3	6.0	.8	11.3	.8	4.5	8.3	(133) 100.0
2) 성별	남자	20.1	7.8	14.5	2.1	3.5	7.8	6.7	1.1	10.6	1.4	8.1	16.3	(283) 100.0
	여자	12.6	7.1	13.4	6.1	1.5	6.6	8.6	2.0	19.2	2.5	6.1	14.4	(396) 100.0
3) 교급	초등학교	17.6	6.6	10.6	5.0	2.3	7.0	7.9	1.1	14.5	2.7	7.0	17.6	(442) 100.0
	중학교	12.3	8.5	20.0	3.4	2.6	7.2	7.2	2.6	17.9	.9	6.8	10.6	(235) 100.0
전체		15.8	7.4	13.8	4.4	2.4	7.1	7.8	1.6	15.6	2.1	6.9	15.2	(679) 100.0

1) x2=70.247*** 2) x2=27.034** 3) x2=24.827**

가정문제 1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은 가정유형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반가정 청소년들은 문제가 '없다(19.9%)', '경제적 어려움(15.9%)', '지나친 간섭(13.5%)', '가족질병(10.0%)' 순으로 응답했으며, 모자가정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19.2%)', '없다(15.6%)', '지나친 간섭(15.6%)', '부모 안계심(11.4%)' 순으로 응답했다. 부자가정 청소년들은 '부모 안계심(18.8%)' '경제적 어려움(14.8%)', '없다(12.5%)', '지나친 간섭(11.7%)', '부모음주(11.7%)' 순으로 응답했으며, 조손가정 청소년들은 '부모 안계심(30.8%)', '지나친 간섭(14.3%)', '경제적 어려움(11.3%)', '부모불화(8.3%)', '없다(8.3%)', '부모무관심(8.3%)' 순으로 응답했다.

일반가정과 모자가정 청소년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가정에서의 일차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고, 부자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부모 안계심',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이 가정에서의 일차적인 문제로 느껴지고 있었다. 특히 다른 가정유형의 청소년들과 달리 부자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음주'를 일차적 가정문제로 11.7%나 응답하였다.

성별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들은 '부모 안계심(20.1%)', '없다(16.3%)', '지나친 간섭(14.5%)', '경제적 어려움(10.6%)' 순으로 응답한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19.2%)', '없다(14.4%)', '지나친 간섭(13.4%)', '부모 안계심(12.6%)' 순으로 응답하여 가장 많은 남자청소년들이 부모가 안계신 것을 가장 큰 가정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가장 큰 가정문제로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들이 '부모 안계심(17.6%)', '없다(17.6%)', '경제적 어려움(14.5%)' '지나친 간섭(10.6%)', 순으로 응답한 반면, 중학생들은 '지나친 간섭(20.0%)', '경제적 어려움(17.9%)', '부모 안계심(12.3%)', '없다(10.6%)' 순으로 응답하여 부모가 안 계신 것을 가장 큰 가정문제로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반면 중학생들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가장 큰 가정문제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IV-12> 가정 생활의 어려움 2

		부모 안 계심	부모 불화	지나친 간섭	부모 무관심	부모 실직	부모 음주	가족 질병	식구 가출	경제적 어려움	가족 폭력	기타	없음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1.0	2.4	5.8	3.9	2.9	6.3	7.7	1.0	20.8	7.7	13.0	27.5	(207) 100.0
	모자가정	1.5	2.9	5.1	4.4	.7	5.9	6.6	.7	30.9	4.4	12.5	24.3	(136) 100.0
	부자가정	1.8	1.8	4.4	6.1	.9	7.9	5.3	1.8	30.7	8.8	15.8	14.9	(114) 100.0
	조손가정	4.3	4.3	3.4	6.0	.9	4.3	6.9	3.4	37.1	6.0	12.9	10.3	(116) 100.0
성별	남자	2.5	2.1	3.3	5.4	2.1	7.9	7.1	.8	25.8	9.2	12.9	20.8	(240) 100.0
	여자	1.5	3.3	6.0	4.5	1.2	4.8	6.6	2.1	30.3	5.1	13.8	20.7	(333) 100.0
교급	초등학교	2.9	2.4	4.5	4.8	2.4	6.4	6.4	2.1	23.1	8.0	13.0	23.9	(376) 100.0
	중학교	.0	3.6	5.6	5.1	.0	5.6	7.7	.5	37.9	4.6	14.4	14.9	(195) 100.0
전체		1.9	2.8	4.9	4.9	1.6	6.1	6.8	1.6	28.4	6.8	13.4	20.8	(573) 100.0

가정문제 2는 가정유형, 성별, 교급별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 모두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두 번째의 가정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가정폭력 중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몽둥이로 맞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74.1%인 4분의3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발에 차이거나 주먹 혹은 몽둥이로 맞은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했으며, 16.5%의 청소년이 '6개월에 1-2번 정도', 6.0%의 청소년이 '1달에 1-2번 정도', 3.4%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Ⅳ-13> 1)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혹은 주먹으로 맞거나) 몽둥이로 맞았다.

		전혀없었다.	6개월에 1-2번정도	1달에 1-2번정도	일주일에 1-2번정도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76.3	15.8	4.6	3.3	100.0(304)
	모자가정	71.1	17.1	8.0	3.7	100.0(187)
	부자가정	67.5	23.6	7.0	1.9	100.0(157)
	조손가정	80.1	9.9	5.3	4.6	100.0(151)
성별	남자	70.1	18.5	7.0	4.4	100.0(341)
	여자	77.1	15.1	5.2	2.6	100.0(458)
교급	초등학교	72.9	16.7	6.8	3.7	100.0(516)
	중학교	76.1	16.4	4.6	2.9	100.0(280)
전체		74.1	16.5	6.0	3.4	100.0(799)

<표 Ⅳ-14> 2) 부모님이 위험한 도구로 나를 위협했다.

		전혀없었다.	6개월에 1-2번정도	1달에 1-2번정도	일주일에 1-2번정도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96.1	2.6	.7	.7	100.0(304)
	모자가정	97.3	.5	1.1	1.1	100.0(186)
	부자가정	91.1	5.7	1.3	1.9	100.0(157)
	조손가정	97.3	.7	.7	1.3	100.0(150)
성별	남자	93.8	2.9	1.8	1.5	100.0(339)
	여자	96.9	2.0	.2	.9	100.0(458)
교급	초등학교	96.1	2.1	1.2	.6	100.0(514)
	중학교	94.6	2.9	.4	2.1	100.0(280)
전체		95.6	2.4	.9	1.1	100.0(797)

가정폭력 중 '부모님이 위험한 도구로 나를 위협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95.6%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위험한 도구로 나를 위협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했으며, 2.4%의 청소년이 '6개월에 1-2번 정도', 0.9%의 청소년이 '1달에 1-2번 정도', 1.1%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15> 3)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욕을 한 적이 있다.

		전혀없었다.	6개월에 1-2번정도	1달에 1-2번정도	일주일에 1-2번정도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83.6	9.5	3..3	3.6	100.0(304)
	모자가정	82.2	11.4	3.8	2.7	100.0(185)
	부자가정	79.5	9.0	9.0	2.6	100.0(156)
	조손가정	82.7	7.3	6.0	4.0	100.0(150)
성별	남자	81.1	9.5	5.3	4.1	100.0(338)
	여자	83.2	9.4	4.8	2.6	100.0(457)
교급	초등학교	82.5	9.9	4.3	3.3	100.0(513)
	중학교	81.7	8.6	6.5	3.2	100.0(279)
전체		82.3	9.4	5.0	3.3	100.0(795)

가정폭력 중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욕을 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82.3%의 청소년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욕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했으며, 9.4%의 청소년이 '6개월에 1-2번 정도', 5.0%의 청소년이 '1달에 1-2번 정도', 3.3%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Ⅳ-16> 4)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 와 같은 말을 하셨다.

		전혀없었다.	6개월에 1-2번정도	1달에 1-2번정도	일주일에 1-2번정도	전체
가정유형[1]	일반가정	84.2	11.9	2.3	1.7	100.0(303)
	모자가정	72.4	16.2	5.9	5.4	100.0(185)
	부자가정	79.0	11.5	3.8	5.7	100.0(157)
	조손가정	76.7	10.7	6.7	6.0	100.0(150)
성별	남자	80.2	10.9	4.7	4.1	100.0(338)
	여자	78.1	13.8	3.9	4.2	100.0(457)
교급	초등학교	79.5	12.7	3.5	4.3	100.0(512)
	중학교	77.9	12.5	5.7	3.9	100.0(280)
전체		79.0	12.6	4.3	4.2	100.0(795)

1) x^2=18.261*

가정폭력 중 '부모님이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라고 폭언을 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79.0%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했으며, 12.6%의 청소년이 '6개월에 1-2번 정도', 4.3%의 청소년이 '1달에 1-2번 정도', 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폭언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한 일반가정청소년들이 '84.2%', 부자가정청소년이 '79.0%', 조손가정청소년이 '76.7%', 모자가정청소년이 '72.4%'로 나타나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이와 같은 폭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53.8%의 청소년들만이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했으며, 22.6%의 청소년이 '6개월에 1-2번 정도', 11.0%의 청소년이 '1달에 1-2번 정도', 12.6%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혼자 집을 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5)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전혀없었다.	6개월에 1-2번정도	1달에 1-2번정도	일주일에 1-2번정도	전체
가정유형 1)	일반가정	59.9	23.8	7.0	9.3	100.0(302)
	모자가정	44.6	17.7	19.4	18.3	100.0(186)
	부자가정	51.0	24.2	12.7	12.1	100.0(157)
	조손가정	56.1	24.3	6.8	12.8	100.0(148)
성별	남자	52.2	22.0	11.6	14.2	100.0(337)
	여자	55.0	23.0	10.5	11.4	100.0(456)
교급	초등학교	53.4	22.3	11.0	13.3	100.0(511)
	중학교	55.2	22.6	11.1	11.1	100.0(279)
전체		53.8	22.6	11.0	12.6	100.0(793)

1) x^2=34.573***

가정유형별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한 일반가정청소년들이 '59.9%', 조손가정청소년이 '56.1%', 부자가정청소년이 '51.0%', 모자가정청소년이 '44.6%'로 나타나 일반가정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혼자 집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92.4%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했으며, 5.1%의 청소년이 '6개월에 1-2번 정도', 1.3%의 청소년이 '1달에 1-2번 정도', 1.3%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1-2번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들이 '6개월에 1-2번 정도(3.1%)', '1달에 1-2번 정도(1.1%)', '일주일에 1-2번 정도(0.4%)'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자청소년들은 '6개월에 1-2번 정도(7.8%)', '1달에 1-2번 정도(1.5%)', '일주일에 1-2번 정도(2.4%)'로 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8> 6) 나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전혀없었다.	6개월에 1-2번정도	1달에 1-2번정도	일주일에 1-2번정도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94.4	3.7	1.0	1.0	100.0(301)
	모자가정	92.9	5.4	.5	1.1	100.0(184)
	부자가정	86.5	8.3	2.6	2.6	100.0(156)
	조손가정	94.0	4.0	1.3	.7	100.0(150)
성별 1)	남자	88.4	7.8	1.5	2.4	100.0(335)
	여자	95.4	3.1	1.1	.4	100.0(456)
교급	초등학교	92.8	5.1	1.4	.8	100.0(513)
	중학교	91.6	5.1	1.1	2.2	100.0(275)
전체		92.4	5.1	1.3	1.3	100.0(791)

1) x^2=15.484**

<표 Ⅳ-19>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92.8	4.9	1.0	1.3	100.0(304)
	모자가정	88.8	5.9	2.1	3.2	100.0(187)
	부자가정	87.9	8.9	.6	2.5	100.0(157)
	조손가정	87.4	8.6	.7	3.3	100.0(151)
1) 성별	남자	85.9	10.0	.9	3.2	100.0(340)
	여자	92.8	4.1	1.3	1.7	100.0(459)
2) 교급	초등학교	93.4	6.0	.6	.0	100.0(517)
	중학교	83.2	7.9	2.2	6.8	100.0(279)
전체		89.9	6.6	1.1	2.4	100.0(799)

1) x^2=13.299** 2) x^2=42.259***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89.9%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6.6%의 청소년이 ‘1-2번’, 1.1%의 청소년이 ‘3-4번’, 2.4%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들이 ‘1-2번(4.1%)’, ‘3-4번(1.3%)’, ‘5번 이상(1.7%)’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자청소년들은 ‘1-2번(10.0%)’, ‘3-4번(0.9%)’, ‘5번 이상(3.2%)’로 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들이 ‘1-2번(6.0%)’, ‘3-4번(0.6%)’, ‘5번 이상(0%)’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학생들은 ‘1-2번(7.9%)’, ‘3-4번(2.2%)’, ‘5번 이상(6.8%)’로 10% 이상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1) 가정유형	일반가정	79.3	15.4	3.0	2.3	100.0(305)
	모자가정	69.5	20.9	7.0	2.7	100.0(187)
	부자가정	68.2	24.8	3.2	3.8	100.0(157)
	조손가정	72.2	20.5	2.0	5.3	100.0(151)
성별	남자	71.5	21.2	3.8	3.5	100.0(340)
	여자	75.0	18.3	3.7	3.0	100.0(460)
2) 교급	초등학교	75.4	19.3	3.5	1.7	100.0(517)
	중학교	70.0	19.6	4.3	6.1	100.0(280)
전체		73.5	19.5	3.8	3.3	100.0(800)

1) x^2=17.809* 2) x^2=11.492**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73.5%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19.5%의 청소년이 ‘1-2번’, 3.8%의 청소년이 ‘3-4번’, 3.3%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일반가정청소년(79.3%), 조손가정청소년(72.2%), 모자가정청소년(69,5%), 부자가정청소년(68.2%) 순으로 ‘술을 마신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부자가정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들이 ‘1-2번(19.3%)’, ‘3-4번(3.5%)’, ‘5번 이상(1.7%)’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학생들은 ‘1-2번(19.6%)’, ‘3-4번(4.3%)’, ‘5번 이상(6.1%)’로 5.4% 이상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89.5	8.2	.7	1.6	100.0(305)
	모자가정	81.8	15.5	2.1	.5	100.0(187)
	부자가정	80.8	16.0	1.3	1.9	100.0(156)
	조손가정	85.4	11.3	2.0	1.3	100.0(151)
1) 성별	남자	80.2	15.6	1.5	2.7	100.0(339)
	여자	88.9	9.3	1.3	.4	100.0(460)
2) 교급	초등학교	88.0	10.5	.8	.8	100.0(516)
	중학교	80.0	15.0	2.5	2.5	100.0(280)
전체		85.2	12.0	1.4	1.4	100.0(790)

1) x^2=15.172** 2) x^2=12.269**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85.2%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12%의 청소년이 ‘1-2번’, 1.4%의 청소년이 ‘3-4번’, 1.4%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들이 ‘1-2번(9.3%)’, ‘3-4번(1.3%)’, ‘5번 이상(0.4%)’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자청소년들은 ‘1-2번(15.6%)’, ‘3-4번(1.5%)’, ‘5번 이상(2.7%)’로 더 많이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들이 ‘1-2번(10.5%)’, ‘3-4번(0.8%)’, ‘5번 이상(0.8%)’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학생들은 ‘1-2번(15.0%)’, ‘3-4번(2.5%)’, ‘5번 이상(2.5%)’로 8%의 중학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80.0	15.4	2.3	2.3	100.0(305)
	모자가정	80.5	13.5	2.2	3.8	100.0(185)
	부자가정	70.7	21.7	3.2	4.5	100.0(157)
	조손가정	72.8	19.9	4.0	3.3	100.0(151)
1) 성별	남자	66.4	23.9	4.1	5.6	100.0(339)
	여자	84.7	12.0	1.7	1.5	100.0(459)
교급	초등학교	75.4	18.4	2.9	3.3	100.0(516)
	중학교	79.6	14.7	2.5	3.2	100.0(279)
전체		76.9	17.0	2.8	3.3	100.0(798)

1) x^2=38.782***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76.9%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17%의 청소년이 ‘1-2번’, 2.8%의 청소년이 ‘3-4번’, 3.3%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들이 ‘1-2번(12.0%)’, ‘3-4번(1.7%)’, ‘5번 이상(1.5%)’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자청소년들은 ‘1-2번(23.9%)’, ‘3-4번(4.1%)’, ‘5번 이상(5.6%)’으로 더 많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94.4	3.6	.7	1.3	100.0(303)
	모자가정	92.5	7.0	.0	.5	100.0(187)
	부자가정	89.7	7.7	1.3	1.3	100.0(156)
	조손가정	90.1	8.6	.0	1.3	100.0(151)
성별	남자	89.9	7.7	.6	1.8	100.0(338)
	여자	93.9	5.0	.4	.7	100.0(459)
1) 교급	초등학교	95.3	3.5	.6	.4	100.0(514)
	중학교	86.4	11.1	.4	2.1	100.0(280)
전체		92.2	6.1	.5	1.1	100.0(797)

1) x^2=22.459***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92.2%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6.1%의 청소년이 ‘1-2번’, 0.5%의 청소년이 ‘3-4번’, 1.1%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들이 ‘1-2번(3.5%)’, ‘3-4번(0.6%)’, ‘5번 이상(0.4%)’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학생들은 ‘1-2번(11.1%)’,

‘3-4번(0.4%)’, ‘5번 이상(2.1%)’로 9% 정도의 중학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1) 가정유형	일반가정	96.4	2.3	.7	.7	100.0(305)
	모자가정	93.6	4.8	1.1	.5	100.0(187)
	부자가정	87.9	8.3	2.5	1.3	100.0(157)
	조손가정	97.4	1.3	.0	1.3	100.0(151)
성별	남자	93.8	4.4	.9	.9	100.0(340)
	여자	94.6	3.5	1.1	.9	100.0(460)
교급	초등학교	95.4	3.5	.6	.6	100.0(517)
	중학교	92.5	4.3	1.8	1.4	100.0(280)
전체		94.3	3.9	1.0	.9	100.0(800)

1) x^2=20.461*

‘학교를 이유 없이 마음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94.3%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3.9%의 청소년이 ‘1-2번’, 1.0%의 청소년이 ‘3-4번’, 0.9%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조손가정청소년(97.4%), 일반가정청소년(96.4%), 모자가정청소년(93.6%), 부자가정청소년(87.9%) 순으로 ‘학교를 이유 없이 마음대로 결석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여 부자가정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무단결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을 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92.5%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5.5%의 청소년이 ‘1-2번’, 0.9%의 청소

년이 '3-4번', 1.1%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Ⅳ-25>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93.1	5.3	.7	1.0	100.0(304)
	모자가정	92.0	7.5	.5	.0	100.0(187)
	부자가정	91.7	5.1	.6	2.6	100.0(156)
	조손가정	92.7	4.0	2.0	1.3	100.0(151)
성별	남자	91.7	5.0	1.5	1.8	100.0(338)
	여자	93.0	5.9	.4	.7	100.0(460)
교급	초등학교	93.6	4.7	1.0	.8	100.0(515)
	중학교	90.4	7.1	.7	1.8	100.0(280)
전체		92.5	5.5	.9	1.1	100.0(798)

<표 Ⅳ-26> 8)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35.4	38.0	9.8	16.7	100.0(305)
	모자가정	32.6	32.1	7.0	28.3	100.0(187)
	부자가정	33.8	36.3	13.4	16.6	100.0(157)
	조손가정	33.1	37.7	9.3	19.9	100.0(151)
1) 성별	남자	36.8	29.7	11.2	22.4	100.0(340)
	여자	32.0	41.1	8.7	18.3	100.0(460)
2) 교급	초등학교	36.8	36.0	10.6	16.6	100.0(517)
	중학교	28.6	36.8	8.2	26.4	100.0(280)
전체		34.0	36.3	9.8	20.0	100.0(800)

1) x^2=11.186* 2) x^2=13.389**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34.0%의 청소년들만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36.3%의 청소년이 ‘1-2번’, 9.8%의 청소년이 ‘3-4번’, 20.0%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66%의 청소년들이 거짓말이나 남을 속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들이 ‘1-2번(41.1%)’, ‘3-4번(8.7%)’, ‘5번 이상(18.3%)’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자청소년들은 ‘1-2번(29.7%)’, ‘3-4번(11.2%)’, ‘5번 이상(22.4%)’로 더 적은 남자청소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횟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들이 ‘1-2번(36.0%)’, ‘3-4번(10.6%)’, ‘5번 이상(16.6%)’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학생들은 ‘1-2번(36.8%)’, ‘3-4번(8.2%)’, ‘5번 이상(26.4%)’로 8% 정도의 중학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9)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32.9	26.0	9.5	31.6	100.0(304)
	모자가정	26.2	24.1	5.3	44.4	100.0(187)
	부자가정	32.5	25.5	8.9	33.1	100.0(157)
	조손가정	22.0	30.7	11.3	36.0	100.0(150)
성별	남자	31.9	23.6	8.3	36.3	100.0(339)
	여자	27.2	28.3	9.2	35.3	100.0(459)
1) 교급	초등학교	31.4	30.4	8.7	29.5	100.0(516)
	중학교	24.7	18.6	9.0	47.7	100.0(279)
전체		29.2	26.3	8.8	35.7	100.0(798)

1) x^2=29.108***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29.2%의 청소년들만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26.3%의 청소년이 ‘1-2번’, 8.8%의 청소년이 ‘3-4번’, 35.7%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 적이 있으며 35.7%의 청소년은 자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들이 ‘1-2번(30.4%)’, ‘3-4번(8.7%)’, ‘5번 이상(29.5%)’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학생들은 ‘1-2번(18.6%)’, ‘3-4번(9.0%)’, ‘5번 이상(47.7%)’로 18% 정도의 중학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8> 10)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91.4	6.3	2.0	.3	100.0(304)
	모자가정	88.8	7.5	.0	3.7	100.0(187)
	부자가정	87.3	8.3	1.3	3.2	100.0(157)
	조손가정	86.7	10.7	.7	2.0	100.0(150)
1) 성별	남자	82.0	12.7	2.4	2.9	100.0(339)
	여자	94.3	4.1	.2	1.3	100.0(459)
2) 교급	초등학교	94.2	4.9	.6	.4	100.0(515)
	중학교	79.6	13.2	2.1	5.0	100.0(280)
전체		89.1	7.8	1.1	2.0	100.0(798)

1) x^2=32.208*** 2) x^2=43.624***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89.1%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7.8%의 청소년이 ‘1-2번’, 1.1%의 청소년이 ‘3-4번’, 2.0%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10% 정도의 청소년만이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들이 '1-2번(4.1%)', '3-4번(0.2%)', '5번 이상(1.3%)'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남자청소년들은 '1-2번(12.7%)', '3-4번(2.4%)', '5번 이상(2.9%)'로 12% 이상의 남자청소년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들이 '1-2번(4.9%)', '3-4번(0.6%)', '5번 이상(0.4%)'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학생들은 '1-2번(13.2%)', '3-4번(2.1%)', '5번 이상(5.0%)'로 14% 이상의 중학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9> 11) 남을 따돌림 시킨 적이 있다.

		전혀없음	1-2번	3-4번	5번이상	전체
1) 가정유형	일반가정	63.6	31.1	1.6	3.6	100.0(305)
	모자가정	62.0	28.3	6.4	3.2	100.0(187)
	부자가정	63.1	24.2	7.6	5.1	100.0(157)
	조손가정	57.0	29.8	6.0	7.3	100.0(151)
2) 성별	남자	67.6	21.5	5.0	5.9	100.0(340)
	여자	57.6	34.3	4.6	3.5	100.0(460)
3) 교급	초등학교	58.6	31.1	6.0	4.3	100.0(517)
	중학교	67.5	25.0	2.5	5.0	100.0(280)
전체		61.9	28.9	4.8	4.5	100.0(800)

1) x^2=17.070* 2) x^2=17.000** 3) x^2=9.569*

'남을 따돌림 시킨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61.9%의 청소년들이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28.9%의 청소년이 '1-2번', 4.8%의 청소년이 '3-4번', 4.5%의 청소년이 '5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일반가정청소년(63.6%), 부자가정청소년(63.1%), 모자가정청소년(62.0%), 조손가정청소년(57.0%) 순으로 '남을 따돌림 시킨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여 조손가정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남을 따돌림 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들이 '1-2번(34.3%)', '3-4번(4.6%)', '5번 이상(3.5%)'로 '1-2번(21.5%)', '3-4번(5.0%)', '5번 이상(5.9%)'라고 응답한 남자청소년에 비해 10% 더 많이 남을 따돌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청소년들이 더 자주 남을 따돌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초등학생들이 '1-2번(31.1%)', '3-4번(6.0%)', '5번 이상(4.3%)'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학생들은 '1-2번(25.0%)', '3-4번(2.5%)', '5번 이상(5.0%)'로 9% 정도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남을 따돌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생존욕구

<표 Ⅳ-30> 최근 앓은 질병

		없음	감기 독감	안과 질환	충치잇 몸질환	위장 내장 질환	피부 질환	성관련 질환	만성 질환	각종 사고	전체
가족유형	일반가정	35.9	51.0	8.2	22.7	4.6	11.8	.7	.3	3.6	38.0 (304)
	모자가정	37.4	52.9	3.7	19.8	2.7	12.8	.5	.5	2.1	23.4 (187)
	부자가정	40.1	47.8	6.4	17.2	2.5	19.1	.6	.6	3.2	19.6 (157)
	조손가정	34.2	50.7	6.6	18.4	2.0	15.8	.7	.7	5.3	19.0 (152)
성별	남자	39.9	47.5	4.1	14.1	2.6	12.3	.0	.3	5.0	42.6 (341)
	여자	34.4	53.2	8.3	24.6	3.7	15.7	1.1	.7	2.4	57.4 (459)
교급	초등학교	38.5	48.6	6.2	21.8	2.3	14.1	.4	.4	2.9	64.9 (519)
	중학교	33.5	54.8	7.1	17.1	5.0	14.6	1.1	.7	4.6	35.1 (281)
전체		(294) 36.8	(406) 50.8	(52) 6.5	(161) 20.1	(26) 3.3	(114) 14.3	(5) 0.6	(4) 0.5	(28) 3.5	(800) 100.0

‘최근 앓은 질병’을 묻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50.8%’가 ‘감기독감’, ‘없음(36.8%)’, ‘충치・잇몸질환(20.1%)’, ‘피부질환(14.3%)’. ‘안과질환(6.5%)’, ‘각종사고(3.5%)’, ‘위장・내장질환(3.3%)’, 성관련질환(0.6%). ‘만성질환(0.5%)’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각종 사고’를 제외하고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모든 질병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교급별로는 ‘충치・잇몸질환’을 제외하고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모든 질병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표 Ⅳ-31> 현재 함께 방을 쓰고 있는 사람

		혼자	형제	부모님	온가족	기타	전체
1) 가정 유형	일반가정	25.0	42.1	13.5	14.8	4.6	100.0(304)
	모자가정	32.1	32.1	16.6	16.0	3.2	100.0(187)
	부자가정	16.1	43.9	16.1	12.9	11.0	100.0(155)
	조손가정	23.3	33.3	9.3	12.0	22.0	100.0(150)
2) 교급	초등학교	20.6	38.4	15.9	15.9	9.1	100.0(515)
	중학교	32.0	38.5	10.1	11.2	8.3	100.0(278)
전체		24.6	38.5	13.9	14.2	8.8	100.0(793)

1) x^2=62.416*** 2) x^2=17.083**

‘현재 누구와 방을 쓰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38.5%’가 ‘형제’, ‘24.6%’가 ‘혼자’, ‘14.2%’가 ‘온가족’, ‘13.9%’가 ‘부모님’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혼자’가 ‘모자가정청소년(32.1%)’, ‘일반가정청소년(25.0)’, ‘조손가정청소년(23.3%)’, ‘부자가정청소년(16.1%)’ 순으로 나타나 부자가정청소년이 가정 적게 혼자서 방을 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32%)이 초등학생(20.6%)보다 혼자 방을 쓰는 비율이 11% 정도 높았고, 초등학생(31.8%)은 중학생(21.3%)에 비해 부모님이나 온가족이 함께 방을 쓰는 비율이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Ⅳ-32> 공부하기 원하는 장소

		사설 독서실	공공독서실, 구시립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공부방	학교교실, 도서관	집	기타	전체
1) 가정유형	일반가정	10.6	10.9	32.3	10.2	31.0	5.0	100.0(303)
	모자가정	7.0	7.0	31.2	12.9	37.1	4.8	100.0(186)
	부자가정	4.5	4.5	44.2	14.3	29.9	2.6	100.0(154)
	조손가정	7.9	5.3	42.1	13.8	24.3	6.6	100.0(152)
2) 교급	초등학교	7.2	5.3	39.4	12.3	32.0	3.9	100.0(513)
	중학교	9.7	12.2	30.1	12.2	29.4	6.5	100.0(279)
전체		8.1	7.7	36.2	12.3	30.9	4.8	100.0(795)

1) x^2=27.935*** 2) x^2=19.747**

‘공부장소’를 묻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36.2%’가 ‘지역아동센터/방과후공부방’, ‘30.9%’가 ‘집’, ‘12.3%’가 ‘학교교실/도서관’, ‘8.1%’가 ‘사설독서실’, ‘7.7%’가 ‘공공독서실/구・시립도서관’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방과후공부방’을 ‘부자가정청소년(44.2%)’과 ‘조손가정청소년(42.1%)’이 ‘모자가정청소년(31.2%)’, ‘일반가정청소년(32.3%)’보다 많이 공부장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모자가정청소년’은 다른 가정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집(37.1%)’을 공부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일반가정청소년’은 ‘공공독서실/구·시립도서관(10.9%)’과 ‘사설독서실(10.6%)’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학교교실/도서관’의 경우는 ‘부자가정청소년’과 ‘조손가정청소년’이 ‘일반가정청소년’과 ‘모자가정청소년’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가정청소년’과 ‘모자가정청소년’은 집이나 비용이 들지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많이 공부장소로 이용하고 있었고, '부자가정청소년'과 '조손가정청소년'은 공적 지원을 받고, 그룹 단위로 공부하는 공공기관을 공부장소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방과후공부방'과 '집'을 초등학생(39.4%, 32%)이 중학생(30.1%, 29.4%)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공공독서실/구시립도서관'과 '사설독서실'의 경우는 중학생(12.2%, 9.7%)이 초등학생(5.3%, 7.2%)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학생'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많이 공부장소로 이용하고 있었고, '초등학생'은 그룹 단위로 학습지도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공부장소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3> 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 1

		화장실 보수 개조	샤워 시설 설치	혼자 쓸수 있는방	좁은 실내 공간	온수 시설 없음	부엌 개조	기타	없음	전체
1) 성별	남자	23.1	7.5	35.8	12.1	.7	3.6	9.8	7.5	100.0(307)
	여자	15.2	9.2	48.5	10.2	.0	3.5	7.9	5.5	100.0(433)
전체		18.5	8.5	43.2	10.9	.3	3.5	8.6	6.4	100.0(740)

1) x^2=18.596*

'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43.2%'가 '혼자 쓸 수 있는 방', '18.5%'가 '화장실 보수/개조', '10.9%'가 '좁은 실내공간', '8.5%'가 '샤워시설 설치', '3.5%'가 '부엌개조'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48.5%)이 남자청소년(35.8%)보다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더 많이 원하고 있었고, 남자청소년(23.1%)은 여자청소년(15.2%)보다 '화장실 보수/개조'를 더 원하고 있었다.

'집에서 두 번째로 개선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24.5%'가 '좁은 실내공간', '20.5%'가 '부엌개조', '17.7%'가 '혼자 쓸 수 있

는 방', '5.7%'가 '화장실 보수/개조', '5.1%'가 '샤워시설 설치'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청소년들은 '혼자 쓸 수 있는 방'과 '넓은 실내공간', '화장실 보수/개조', '부엌 개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 2

		화장실 보수 개조	샤워 시설 설치	혼자 쓸수 있는방	좁은 실내 공간	온수 시설 없음	부엌 개조	기타	없음	전체
1) 성별	남자	7.5	6.7	17.9	19.8	4.0	18.3	11.5	14.3	100.0(252)
	여자	4.5	4.0	17.6	27.7	1.6	22.1	11.4	11.2	100.0(376)
전체		5.7	5.1	17.7	24.5	2.5	20.5	11.5	12.4	100.0(628)

<표 Ⅳ-35> 용돈이 여유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매우 넉넉한편	약간 넉넉한편	적당	부족한편	매우 부족한편	전체
1) 가정유형	일반가정	28.3	14.7	32.0	17.3	7.7	100.0(272)
	모자가정	24.5	9.2	36.2	19.6	10.4	100.0(163)
	부자가정	22.4	12.6	30.1	19.6	15.4	100.0(143)
	조손가정	36.2	6.2	25.4	18.5	13.8	100.0(130)
2) 교급	초등학교	33.4	11.3	27.4	17.3	10.5	100.0(467)
	중학교	16.8	11.3	39.5	20.6	11.8	100.0(238)
전체		27.7	11.4	31.4	18.5	11.0	100.0(708)

1) x^2=21.415* 2) x^2=24.070***

'용돈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39.1%'가 '넉넉한 편', '31.4%'가 '적당', '29.5%'가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70% 정도가 용돈 액수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부족한 편'에 '부자가정청소년(35%)', '조손가정청소년(32.3%), '모자가정청소년(30%), '일반가정청소년(25%)' 순으로 응답하여 '부자가정청소년'과 '조손가정청소년'이 '일반가정청소년'과 '모자가정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매우 넉넉한 편'이라는 응답에 초등학생(33.4%)이 중학생(16.8%)보다 월등히 많이 응답하였고, '적당하다'와 '부족한 편'에 중학생(39.5%, 20.6%)이 초등학생(27.4%, 17.3%)보다 많이 응답하여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용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6> 용돈이 넉넉하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의복비	문화 교양비	교제비	오락비	외식비	기타	없음	전체
1) 성별	남자	16.1	16.4	12.0	14.4	16.1	24.4	.7	(299)100.0
	여자	48.4	13.0	13.0	.3	12.0	13.0	.3	(399)100.0
2) 교급	초등학교	29.8	15.0	12.2	6.8	16.6	19.2	.4	(459)100.0
	중학교	43.6	13.6	13.6	5.5	7.6	15.7	.4	(236)100.0
전체		34.5	14.5	12.6	6.3	13.8	17.9	.4	(698)100.0

1) x^2=122.376*** 2) x^2=19.683**

'용돈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무엇에 쓰고 싶은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3분의1이 넘는 '34.5%'가 '의복비'에 쓰겠다고 응답했고, '14.5%'가 '문화교양비', '13.8%'가 '외식비', '12.6%'가 '교제비', '6.3%'가 '오락비'라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이 '의복비(48.4%)', '문화교양비(13%)', '교제비(13%)', '외식비(12%)'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자청소년은 '문화교양비(16.4%)', '의복비(16.1%)', '외식비(16.1%)', '오락비(14.4%)', '교제비(12%)'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이

‘의복비’에 용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많은 반면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락비’에 용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43.6%)이 초등학생(29.8%)보다 ‘의복비’에 많이 응답한 반면, 초등학생(16.6%)은 중학생(7.6%)보다 ‘외식비’에 많은 용돈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응답하여 ‘의복비’와 ‘외식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Ⅳ-37>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예	아니오	전체
1) 가정유형	일반가정	8.6	91.4	100.0(304)
	모자가정	5.4	94.6	100.0(186)
	부자가정	14.1	85.9	100.0(156)
	조손가정	6.6	93.4	100.0(151)
2) 교급	초등학교	6.6	93.4	100.0(516)
	중학교	11.8	88.2	100.0(279)
전체		8.5	91.5	100.0(797)

1) x^2=9.282* 2) x^2=6.440*

‘아르바이트로 돈을 번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91.5%’가 ‘아니오’라고 응답했으며, ‘8.5%’만이 ‘예’라고 응답하였다.

가정형태와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형태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14.1)’, ‘일반가정청소년(8.6%)’, ‘조손가정청소년(6.6%)’, ‘모자가정청소년(5.4%)’ 순으로 ‘예’라고 응답하여 ‘부자가정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11.8%)’이 ‘초등학생(6.6%)’보다 두 배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8>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

		용돈 필요	학교등록금 학원비	생활비	친구들과 즐기기위해	기타	없음	전체
교급	초등학교	2.4	.0	.8	.6	1.8	94.5	100.0(507)
	중학교	4.7	.4	.7	2.5	2.9	88.8	100.0(277)
전체		3.2	.1	.8	1.3	2.2	92.5	100.0(784)

1) x^2=11.787*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92.5%'가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3.2%'가 '용돈이 필요해서', '1.3%'가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0.8%'가 '생활비를 위해', '0.1%'가 '학교등록금/학원비를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두 배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를 응답하였는데, '용돈이 필요해서(4.7%)'와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2.5%)'에 주로 응답하였다.

<표 Ⅳ-39> 결식 유무

		예	아니오	전체
교급	초등학교	35.7	64.3	100.0(518)
	중학교	42.1	57.9	100.0(280)
전체		38.0	62.0	100.0(798)

'지난 한 달 동안 식사를 거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62%'가 '아니오'라고, '38%'가 '예'라고 응답하여 5분의2 정도의 청소년이 지난 한 달 동안 식사를 거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0> 결식 이유

		시간이 없어서	챙겨주는사람이 없어서	좋아하는음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기타	없음	전체
1) 가정 유형	일반 가정	16.5	2.3	3.6	1.0	10.9	65.7	(303) 100.0
	모자 가정	18.1	5.5	2.2	.0	13.7	60.4	(182) 100.0
	부자 가정	16.1	7.7	1.9	.6	11.6	61.9	(155) 100.0
	조손 가정	12.0	2.7	8.0	1.3	15.3	60.7	(150) 100.0
2) 성별	남자	15.5	6.6	6.9	1.2	10.1	59.7	(335) 100.0
	여자	16.3	2.4	1.5	.4	14.3	65.1	(455) 100.0
전체		15.9	4.2	3.8	.8	12.5	62.8	(790) 100.0

1) x^2=25.395* 2) x^2=27.400***

‘식사를 거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62.8%’가 ‘없다’, ‘15.9%’가 ‘시간이 없어서’, ‘4.2%’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3.8%’가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0.8%’가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7.7%)’이 다른 가정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식사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6.6%, 2.4%)’,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6.9%, 1.5%)’ 식사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관계욕구

<표 Ⅳ-4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가정유형별 지지 차이

구분		가정유형				F
		일반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가정지지	M	13.17	13.13	12.47	12.28	4.349**
	SD	2.966	2.701	3.134	3.263	
또래지지	M	11.94	11.89	11.79	11.86	0.096
	SD	3.108	2.862	2.964	3.065	
학교지지	M	11.67	11.38	11.58	11.52	0.302
	SD	3.329	3.434	3.168	3.189	
지역 사회지지	M	12.49	12.61	12.58	12.56	0.074
	SD	2.923	3.037	2.995	3.022	

<표 Ⅳ-4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성별/교급별 지지 차이

구분		성별		T	교급		T
		남	여		초등학교	중학교	
가정지지	M	12.82	12.89	-0.333	12.93	12.72	-0.965
	SD	3.057	2.992		3.106	2.850	
또래지지	M	11.53	12.51	-2.894**	11.57	12.47	-4.220***
	SD	3.165	2.865		3.132	2.678	
학교지지	M	11.51	11.59	-0.363	11.74	11.22	2.125**
	SD	3.420	3.200		3.315	3.231	
지역 사회지지	M	12.48	12.59	-0.539	12.56	12.52	0.239
	SD	3.017	2.950		3.110	2.725	

‘가정지지’의 경우 가정유형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반가정청소년(M=13.17)’, ‘모자가정청소년(M=13.13)’, ‘부자가정청소년(12.47)’, ‘조손가정청소년(M=12.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래지지’의 경우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의 경우,

여자(M=12.51)가 남자(M=11.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의 경우는 '중학생(M=12.47)'이 '초등학생(M=1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지지'의 경우는 교급별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등학생(M=11.74)'이 '중학생(M=1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지지'의 경우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Ⅳ-43> 주말이나 휴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혼자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척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지역 아동 센터 선생님	친구	기타	전체
1) 가정유형	일반 가정	6.6	5.3	19.1	24.1	1.7	1.7	2.3	23.8	15.5	(303) 100.0
	모자 가정	11.4	.5	24.3	22.7	1.1	0.5	4.3	24.3	10.8	(185) 100.0
	부자 가정	10.3	18.6	3.8	24.4	1.9	5.1	5.1	20.5	10.3	(156) 100.0
	조손 가정	11.3	6.0	4.0	13.2	1.3	27.2	2.0	29.8	5.3	(151) 100.0
2) 교급	초등학교	7.2	8.0	15.7	20.6	2.1	7.8	1.9	22.7	14.0	(515) 100.0
	중학교	13.0	5.1	12.3	24.2	.4	5.4	5.4	27.4	6.9	(277) 100.0
전체		9.3	6.9	14.5	21.8	1.5	6.9	3.3	24.4	11.4	(795) 100.0

1) x^2=223.887*** 2) x^2=33.004***

'주말이나 휴일에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24.4%가 '친구' 라고 응답했으며, 21.8%가 '형제자매', 14.5%가 '어머니', 9.3%가 '혼자', 6.9%가 '아버지', '할머니・할아버지'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우선 모든 가정유형의 청소년 20% 이상이 '친구'나 '형제자매'와 함께 주말이나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조손가정청소년만이 형제자매와 함께 보내는 비율이 13.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정유형에 따라 일반가정청소년은 '어머니(19.1%)', 모자가정청소년은 '어머니(24.3%)', 조손가정청소년은 '할머니할아버지(27.2%)', 부자가정청소년은 '아버지(18.6%)'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가정청소년들은 다른 가정유형의 청소년들(10-11% 정도)에 비해 '혼자(6.6%)'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청소년들 역시 다른 가정유형의 청소년들(22-24% 정도)에 비해 '형제자매(13.2%)'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친구(27.4%)', '형제자매(24.2%)', '혼자(13.0%)' 보내는 시간이 초등학생이 '친구(22.7%)', '형제자매(20.6%)', '혼자(7.2%)' 보내는 시간보다 많았다. 반면 초등학생은 '아버지(8.0%)', '어머니(15.7%)', '할머니/할아버지(7.8%)'와 보내는 시간이 중학생이 '아버지(5.1%)', '어머니(12.3%)', '할머니/할아버지(5.4%)'와 보내는 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44> 무료지원 프로그램 참여

		참여하겠다	참여하지않겠다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71.4	28.6	100.0(301)
	모자가정	68.8	31.2	100.0(186)
	부자가정	64.5	35.5	100.0(155)
	조손가정	62.0	38.0	100.0(150)
1) 교급	초등학교	72.9	27.1	100.0(512)
	중학교	58.1	41.9	100.0(277)
전체		67.7	32.3	100.0(792)

1) x^2=17.827***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겠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67.7%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32.3%의 청소년이 '참여하지않겠다'고 응답하여 3분의2 정도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72.9%)이 중학생(58.1%)보다 월등히 많이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5>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공연이나 콘서트 관람	가족만의 단기여행	가족캠프, 야유회	레포츠 스포츠 활동	기타	없음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7.4	13.4	21.1	13.1	13.4	2.7	28.9	100.0(298)
	모자가정	3.3	18.8	22.7	11.6	9.4	2.8	31.5	100.0(181)
	부자가정	8.6	13.8	14.5	11.2	13.8	2.0	36.2	100.0(152)
	조손가정	10.1	13.5	12.8	8.8	10.8	5.4	38.5	100.0(148)
1) 성별	남자	7.3	10.0	15.4	8.5	20.8	2.4	35.6	100.0(331)
	여자	7.1	18.3	21.0	13.8	5.6	3.6	30.6	100.0(448)
2) 교급	초등학교	7.9	13.0	19.4	14.4	14.0	3.8	27.5	100.0(506)
	중학교	5.2	18.1	17.4	6.3	8.5	1.9	42.6	(270) 100.0
전체		7.2	14.8	18.6	11.6	12.1	3.1	32.7	(779) 100.0

1) x^2=55.986*** 2) x^2=34.144***

'부모와 함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종류'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18.6%가 '가족만의 단기여행' 이라고 응답했으며, 14.8%가 '공연이나 콘서트관람', 12.1%가 '레포츠・스포츠활동', 11.6%가 '가족캠프야유회',

7.2%가 '교육및상담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가족만의 단기여행', '공연이나 콘서트 관람', '가족캠프 야유회' 프로그램을 여자청소년(21.0%, 18.3%, 13.8%)이 남자청소년(15.4%, 10.0%, 8.5%)보다 더 선호하고 있었으며, '레포츠·스포츠활동'은 남자청소년(20.8%)이 여자청소년(5.6%)보다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없음(42.6%)'과 '공연이나 콘서트 관람(18.1%)'을 초등학생(27.5%, 13%)보다 많이 선택하였고, 그 외의 '가족만의 단기여행' '레포츠·스포츠활동', '가족캠프야유회', '교육및상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다.

<표 Ⅳ-46>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흥미가 없어서	부모님이 바빠서	부담 되어서	내용식상 할까봐	참가비용 부담	기타	없음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12.8	9.4	1.0	.7	.7	.7	74.7	100.0(288)
	모자가정	12.6	11.5	1.6	.0	.0	3.8	70.3	100.0(182)
	부자가정	14.0	13.3	3.3	.7	.0	2.0	66.7	100.0(150)
	조손가정	16.4	7.1	4.3	.7	1.4	4.3	65.7	100.0(140)
1) 교급	초등학교	10.5	9.3	1.6	.4	.8	2.2	75.2	100.0(495)
	중학교	19.5	12.2	3.4	.8	.0	2.7	61.5	100.0(262)
전체		13.7	10.3	2.2	.5	.5	2.4	70.4	100.0(760)

1) x^2=21.301**

'부모와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70.4%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13.7%가 '흥미가 없어서', 10.3%가 '부모님이 바빠서', 2.2%가 '부담이 되어서', 0.5%가 '내용이 식상할까봐', '참가비용이 부담되서'라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없음'이라고 응답한 초등학생(75.2%)이 중학생(61.5%)보다 13.7% 많은 반면 '흥미가 없어서', '부모님이 바빠서', '부담이 되어서', '내용이 식상할까봐' 등 다른 응답항에서는 모두 중학생(19.5%, 12.2%, 3.4%, 0.8%)이 초등학생(10.5%, 9.3%, 1.6%, 0.4%)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님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다양한 이유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Ⅳ-47> 1)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가정 유형	일반가정	4.6	11.2	48.2	36.0	100.0(197)
	모자가정	2.8	17.0	37.6	42.6	100.0(141)
	부자가정	5.1	9.3	46.6	39.0	100.0(118)
	조손가정	2.4	14.5	41.1	41.9	100.0(124)
성별	남자	4.7	14.8	42.8	37.7	100.0(236)
	여자	3.2	11.6	44.5	40.7	100.0(344)
1) 교급	초등학교	5.1	14.8	40.1	40.1	100.0(372)
	중학교	1.5	9.7	50.5	38.3	100.0(206)
전체		3.8	12.9	43.8	39.5	100.0(580)

1) x^2=10.670*

지역사회기관의 지원에 대해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83.3%'이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6.7%'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기관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초등학생(19.9%)이 중학생(11.2%)보다 8.7%나 높게 나타나 초등학생들은 중학생에 비해 지역사회기관의 도움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48> 2)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가정 유형	일반가정	35.9	47.0	13.1	4.0	100.0(198)
	모자가정	31.4	42.9	21.4	4.3	100.0(140)
	부자가정	34.2	38.6	21.9	5.3	100.0(114)
	조손가정	33.1	42.7	16.9	7.3	100.0(124)
성별	남자	37.3	36.9	19.7	6.0	100.0(233)
	여자	31.5	47.8	16.3	4.4	100.0(343)
1) 교급	초등학교	40.4	39.8	15.2	4.6	100.0(369)
	중학교	22.0	49.8	22.4	5.9	100.0(205)
전체		33.9	43.4	17.7	5.0	100.0(576)

1) x^2=20.548***

<표 Ⅳ-49> 3)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가정 유형	일반가정	43.4	41.8	10.7	4.1	100.0(196)
	모자가정	42.1	43.6	10.7	3.6	100.0(140)
	부자가정	50.0	35.1	12.3	2.6	100.0(114)
	조손가정	41.5	35.0	17.9	5.7	100.0(123)
1) 성별	남자	41.4	33.6	18.1	6.9	100.0(232)
	여자	45.7	43.4	8.8	2.1	100.0(341)
교급	초등학교	46.9	37.3	11.7	4.1	100.0(367)
	중학교	38.7	43.1	14.2	3.9	100.0(204)
전체		44.0	39.4	12.6	4.0	100.0(573)

1) x^2=21.533***

지역사회기관의 지원에 대해 '도움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2.7%'이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7.3%’로 나타나 4분의3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기관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중학생 (28.3%)이 초등학생(19.8%)보다 8.5%나 높게 나타나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 비해 지역사회기관의 도움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기관의 지원에 대해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6.6%’이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3.4%’로 나타나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기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남자청소년(25.0%)이 여자청소년(10.9%)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지역사회기관의 도움을 더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0> 4) 나도 언젠가는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가정 유형	일반가정	4.1	12.2	42.6	41.1	100.0(197)
	모자가정	2.1	9.9	41.8	46.1	100.0(141)
	부자가정	6.1	7.9	48.2	37.7	100.0(114)
	조손가정	1.6	8.2	40.2	50.0	100.0(122)
성별	남자	5.2	10.8	43.5	40.5	100.0(232)
	여자	2.3	9.4	42.7	45.6	100.0(341)
1) 교급	초등학교	3.8	11.1	39.1	45.9	100.0(368)
	중학교	2.5	7.8	50.0	39.7	100.0(204)
전체		3.5	9.9	43.0	43.6	100.0(574)

1) x^2=6.923*

‘나도 언젠가는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의 ‘86.6%’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13.4%’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

여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중학생 (89.7%)이 초등학생(75.0%)보다 14.7%나 높게 나타나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 비해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성장욕구

<표 Ⅳ-51> 희망 진로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기타	전체
가정 유형	일반가정	58.1	24.0	5.7	12.2	100.0(296)
	모자가정	60.4	27.5	4.4	7.7	100.0(182)
	부자가정	54.2	28.4	4.5	12.9	100.0(155)
	조손가정	62.4	20.8	10.1	6.7	100.0(149)
1) 성별	남자	54.3	26.6	8.7	10.4	100.0(335)
	여자	62.0	23.9	4.0	10.1	100.0(447)
2) 교급	초등학교	57.8	23.2	7.9	11.1	100.0(505)
	중학교	60.2	28.5	2.6	8.8	100.0(274)
전체		58.7	25.1	6.0	10.2	100.0()

1) x^2=9.289* 2) x^2=11.583**

'중학교 졸업 후 어떤 진로를 택하고 싶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들은 '일반계고등학교(58.7%)'를 과반수 이상이 선택했으며, '실업계고등학교(25.1%)', '취업(6.0%)', '기타(1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62.0%)이 남자청소년(54.3%)보다 '일반계고등학교'를 8%정도 더 많이 선택했으며,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실업계고등학교(26.6%, 23.9%)'와 '취업(8.7%, 4.0%)'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60.2%, 28.5%)이 초등학생(57.8%, 23.2%)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를 더 많이 선택했으며, 초등학생들(7.9%)은 중학생(2.6%)에 비해 '취업'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2> 진로선택 이유

		취업유리	경제적인 이유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 성적부진	적성에 맞아서	기타	없음	전체
가정 유형	일반 가정	9.0	6.5	33.6	7.2	32.1	10.8	.7	(277) 100.0
	모자 가정	6.1	6.1	36.9	10.6	29.6	9.5	1.1	(179) 100.0
	부자 가정	13.5	5.4	27.0	5.4	32.4	16.2	.0	(148) 100.0
	조손 가정	11.3	2.8	33.8	9.2	28.9	13.4	.7	(142) 100.0
1) 성별	남자	13.2	6.3	27.8	7.6	31.5	13.2	.3	(317) 100.0
	여자	7.0	4.9	37.1	8.4	30.5	11.2	.9	(429) 100.0
교급	초등 학교	8.3	5.8	32.6	6.7	34.1	11.6	.8	(481) 100.0
	중학 교	12.2	5.0	34.0	10.7	24.8	13.0	.4	(262) 100.0
전체		9.7	5.5	33.1	8.0	31.0	12.1	.7	(746) 100.0

1) x^2=14.710*

'중학교 졸업 후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들은 '대학진학(33.1%)'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적성에 맞아서(31.0%)', '취업에유리(9.7%)', '학업성적부진(8.0%)', '경제적 이유(5.5%)'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37.1%)이 남자청소년(27.8%)보다 '대학진학을위해'를 9%정도 더 많이 선택했는데 이는 중학교 졸업 후의

진로선택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8% 정도 더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택한 것과 부합하고 있다. 또한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취업유리(13.2%, 7.0%)'와 '경제적인이유(6.3%, 4.9%)'를 더 많이 주된 이유로 선택했는데 이 역시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실업계고등학교(26.6%, 23.9%)'와 '취업(8.7%, 4.0%)'을 더 많이 선택한 것과 부합하고 있다.

<표 Ⅳ-53> 희망 학력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전체
가정 유형	일반가정	2.3	15.4	63.5	18.8	100.0(260)
	모자가정	.6	17.2	66.9	15.4	100.0(169)
	부자가정	5.0	15.1	62.6	17.3	100.0(139)
	조손가정	2.5	14.8	58.2	24.6	100.0(122)
성별	남자	2.5	17.6	63.0	16.9	100.0(284)
	여자	2.5	14.3	63.3	20.0	100.0(406)
1) 교급	초등학교	3.4	15.8	60.1	20.6	100.0(436)
	중학교	.8	15.1	68.5	15.5	100.0(251)
전체		2.5	15.7	63.2	18.7	100.0(690)

1) x^2=8.551*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들은 '대학교졸업(63.2%)', '대학원이상(18.7%)', '고등학교졸업(15.7%)', '중학교졸업(2.5%)' 순으로 응답하여 82%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68.5%)이 초등학생(60.1%)보다 '대학교졸업'을 더 많이 선택했으며, 초등학생들(20.6%)은 중학생(15.5%)에 비해 '대학원이상'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4> 대학 진학 가능성

		예	아니오	전체
1) 가정 유형	일반가정	73.2	26.8	100.0(299)
	모자가정	62.3	37.7	100.0(183)
	부자가정	60.5	39.5	100.0(152)
	조손가정	62.3	37.7	100.0(151)
성별	남자	66.2	33.8	100.0(337)
	여자	66.1	33.9	100.0(448)
교급	초등학교	68.4	31.6	100.0(503)
	중학교	62.0	38.0	100.0(279)
전체		66.1	33.9	100.0(785)

1) x^2=11.100*

‘자신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66.1%가 ‘예’ 라고 응답했으며, 33.9%의 청소년이 ‘아니오’ 라고 응답하여 3분의2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일반가정청소년(73.2%), 모자가정청소년(62.3%), 조손가정청소년(62.3%), 부자가정청소년(60.5%) 순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부자가정청소년들이 가장 적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67%가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24.5%의 청소년이 ‘성적이 안 좋아서’, 5%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일반가정청소년(73.7%), 조손가정청소년(63.5%), 모자가정청소년(63.3%), 부자가정청소년(61.3%) 순으로 ‘없다’고 응답하여 부자가정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5>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이유

		성적이 안좋아서	경제적인 이유	부모 무관심	필요 없어서	기타	없음	전체
1) 가정 유형	일반가정	20.9	2.4	1.0	1.7	.3	73.7	(297) 100.0
	모자가정	25.6	7.2	.0	2.2	1.7	63.3	(180) 100.0
	부자가정	27.3	6.7	2.0	.0	2.7	61.3	(150) 100.0
	조손가정	27.7	6.1	.0	.7	2.0	63.5	(148) 100.0
성별	남자	25.2	4.2	.9	1.2	1.5	67.0	(333) 100.0
	여자	24.0	5.7	.7	1.4	1.4	67.0	(442) 100.0
교급	초등학교	22.4	4.6	1.2	1.2	1.4	69.1	(499) 100.0
	중학교	28.6	5.9	.0	1.1	1.5	63.0	(273) 100.0
전체		24.5	5.0	.8	1.3	1.4	67.0	(775) 100.0

1) x^2=27.365*

<표 Ⅳ-56> 학습향상 위해 필요한 것

		지역아동 센터사업	장학금 지급	개인학습 지도	참고서 지급	학원무료 수강	학습공간 제공	기타	없음	전체
1) 성별	남자	25.1	24.8	7.3	6.9	17.2	7.3	7.6	3.9	(331) 100.0
	여자	20.5	25.6	9.4	9.8	18.9	11.0	4.1	.7	(438) 100.0
2) 교급	초등학교	26.1	26.1	7.7	6.7	18.2	9.1	4.0	2.2	(495) 100.0
	중학교	15.9	23.2	10.0	12.2	18.5	10.0	8.5	1.8	(271) 100.0
전체		22.5	25.1	8.5	8.6	18.3	9.4	5.6	2.1	(766) 100.0

1) x^2=21.169** 2) x^2=22.344**

‘학습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들은 ‘장학금지급(25.1%)’, ‘지역아동센터사업(22.5%)’, ‘학원무료수강(18.3%)’, ‘학습공간제공(9.4%)’, ‘참고서지급(8.6%)’, ‘개인학습지도(8.5%)’ 순으로 응답하여 장학금지급을 가장 많이 원하고,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사업에 호의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들이 ‘장학금지급(25.6%, 24.8%)’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지역아동센터사업’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25.1%)이 여자청소년(20.5%)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원무료수강, 학습공간제공, 참고서지급, 개인학습지도’에서는 여자청소년(18.9%, 11.0%, 9.8%, 9.4%)이 남자청소년(17.2%, 7.3%, 6.9%, 7.3%)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지역아동센터사업, 장학금지급’에서는 초등학생(26.1%, 26.1%)이 중학생(15.9%, 23.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학원무료수강, 학습공간제공, 참고서지급, 개인학습지도’에서는 중학생(18.5%, 10.0%, 12.2%, 10.0%)이 초등학생(18.2%, 9.1%, 6,7%, 7.7%)보다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7> 학원/개인지도 못 받은 경험

		있다	없다	전체
1) 성별	남자	18.2	81.8	100.0(335)
	여자	30.2	69.8	100.0(454)
2) 교급	초등학교	20.5	79.5	100.0(508)
	중학교	33.5	66.5	100.0(278)
전체		25.1	74.9	100.0(789)

1) x^2=14.686*** 2) x^2=16.120***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이나 개인지도를 못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25.1%의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74.9%의

청소년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전체청소년의 25%만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이나 개인지도를 못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들이 '있다(30.2%)', '없다(69.8%)'로 '있다(18.2%)', '없다(81.8%)'라고 응답한 남자청소년에 비해 12% 더 많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이나 개인지도를 못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는 중학생들이 '있다(33.5%)', '없다(66.5%)'로 '있다(20.5%)', '없다(79.5%)'라고 응답한 초등학생에 비해 13% 더 많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이나 개인지도를 못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58> 현재 개인지도 받고 있는 것

		가정교사	학습지구독	속셈주산부기	컴퓨터	체육관	입시학원	영어학원	지역사회복지관	피아노	지역아동센터	없음	방과후활동	기타	전체
1) 가정유형	일반가정	5.0	11.9	3.0	5.0	10.9	2.3	10.3	6.3	12.6	62.6	14.6	27.2	6.0	38.0 (302)
	모자가정	4..8	12.3	1.6	5.3	9.6	2.1	5.3	3.7	4.8	63.6	16.6	16.6	3.7	23.6 (187)
	부자가정	8.4	7.1	.6	2.6	13.6	2.6	3.2	6.5	9.7	54.5	19.5	14.9	8.4	19.4 (154)
	조손가정	6.6	3.3	4.0	7.3	11.3	2.0	9.3	4.6	6.0	58.9.	17.9	21.9	9.3	19.0 (151)
2) 성별	남자	6.5	7.7	2.4	5.3	16.2	2.9	6.8	6.5	4.4	55.2	17.7	19.2	8.0	42.7 (339)
	여자	5.5	10.8	2.4	4.8	7.5	1.8	8.1	4.6	12.3	64.6	15.8	22.9	5.5	57.3 (455)
3) 교급	초등학교	7.4	11.4	2.5	7.0	13.6	2.5	9.9	6.6	11.0	61.2	14.1	22.1	6.2	65.0 (516)
	중학교	3.2	5.8	2.2	1.4	6.8	1.8	3.2	3.2	5.0	59.4	21.2	19.8	7.2	35.0 (278)
전체		(47) 5.9	(75) 9.4	(19) 2.4	(40) 5.0	(89) 11.2	(18) 2.3	(60) 7.6	(43) 5.4	(71) 8.9	(481) 60.6	(132) 16.6	(169) 21.3	(52) 6.5	(794) 100.0

개인지도'를 받고 있는지에 다중 응답한 전체청소년의 '60.6%'가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방과후활동(21.3%)', '없음(16.6)', '체육관(11.2)', '학습지구독(9.4)', '피아노(8.9)', '영어(7.6%)', '기타(6.5%)', '가정교사(5.9%)', '지역사회복지관(5.4%)', '컴퓨터(5.0%)', '속셈·주산·부기학원(2.4%)', '입시학원(2.3%)'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청소년들이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100%의 청소년이 응답했어야 되고, '없음'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말아야 했는데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청소년들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가정유형별로는 '학습지구독'율에서 '일반가정청소년(11.9%)'과 '모자가정청소년(12.3%)'이 '부자가정청소년(7.1%)'과 '조손가정청소년(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학원'의 경우에는 '일반가정청소년(10.3%)'과 '조손가정청소년(9.3%)'이 '모자가정청소년(5.3%)'이나 '부자가정청소년(3.2%)'보다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자가정청소년(13.8%)'이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체육관'에 많이 다니고 있었다,

성별의 경우, '학습지구독', '영어학원', '피아노'는 '여자청소년(10.8%, 8,1%, 12.3%)'이 '남자청소년(7.7%, 6.8%, 4.4%)'보다 높게 나타나고, '체육관'은 '남자청소년(16.2%)'이 '여자청소년(7.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모든 활동에 있어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거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다중응답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33.2%'가 '체육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피아노(22.8%)', '컴퓨터(20.1%)', '영어학원(16.9%)', '없음(15.3%)', '가정교사(14.8%)', '지역사회복지관(13.8%)', '기타(13.2%)', '지역아동센터(10.2%)', '입시학원(6.5%)', '학습지 구독(6.3%)', '속셈・주산・부기(5.6%)', '방과후 활동(4.9%)'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는 '가정교사'가 '일반가정청소년(17.4%)'과 '모자가정청소년(16.5%)'이 '부자가정청소년(11.0%)'과 '조손가정청소년(1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육관(45.8%)'과 '입시학원(11.2%)'은 '조손가정청소년'이 다른 가정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9> 앞으로 배우거나 하고 싶은 것

		가정교사	학습지구독	속셈주산부기	컴퓨터	체육관	입시학원	영어학원	지역사회복지관	피아노	지역아동센터	없음	방과후활동	기타	전체
1) 가정유형	일반가정	17.4	6.0	5.0	17.9	31.2	5.5	17.0	16.5	22.0	8.7	18.8	4.6	11.0	38.4 (218)
	모자가정	16.5	7.5	4.5	20.3	27.1	6.8	18.8.	11.3	21.8	15.8	14.3	6.8	14.3	23.5 (133)
	부자가정	11.0	6.4	4.6	22.0	32.1	3.7	19.3	14.7	24.8	10.1	14.7	3.7	14.7	19.2 (109)
	조손가정	11.2	5.6	9.3	22.4	45.8	11.2	12.1	10.3	23.4	6.5	10.3	4.7	15.0	18.9 (107)
2) 성별	남자	11.4	5.7	7.1	29.4	38.4	7.6	13.3	12.8	10.0	5.7	20.9	3.8	15.6	37.2 (221)
	여자	16.9	6.7	4.8	14.6	30.1	5.9	19.1	14.3	30.3	12.9	12.1	5.6	11.8	62.8 (356)
3) 교급	초등학교	12.7	6.6	5.0	21.0	37.8	6.6	14.9	15.2	20.2	10.2	18.0	5.0	12.7	63.8 (516)
	중학교	18.5	5.9	6.8	18.5	24.9	6.3	20.5	11.2	27.3	10.2	10.7	4.9	14.1	36.2 (278)
전체		(84) 14.8	(36) 6.3	(32) 5.6	(114) 20.1	(188) 33.2	(37) 6.5	(96) 16.9	(78) 13.8	(129) 22.8	(58) 10.2	(87) 15.3	(28) 4.9	(75) 13.2	(567) 100.0

성별의 경우, '학습지구독', '영어학원', '피아노'를 제외한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가정교사', '속셈/주산/부기', '영어학원', '피아노학원'을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0> 현재 갖고 있는 것

		휴대폰	MP3	컴퓨터	없음	전체
가족유형	일반가정	60.5	32.6	80.6	8.6	38.2(304)
	모자가정	71.4	40.5	84.3	3.8	23.3(185)
	부자가정	64.7	32.7	75.6	8.3	19.6(156)
	조손가정	54.0	30.0	75.3	8.0	18.9(150)
1) 성별	남자	57.9	30.6	78.5	7.6	42.8(340)
	여자	66.2	36.5	80.2	7.0	57.2(455)
2) 교급	초등학교	52.4	29.0	77.8	9.4	64.5(513)
	중학교	81.2	42.9	82.6	3.5	35.5(282)
전체		62.6	34.0	79.5	7.3	100.0(795)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묻는 다중응답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79.5%’가 ‘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휴대폰(62.6%)’, ‘MP3(34.0%)’, ‘없음(7.3%)’ 순으로 응답하였다. 휴대폰, MP3, 컴퓨터 모두를 갖추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모자가정청소년(71.4%, 40.5%, 84.3%)’이 전자기기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손가정청소년(54.0%, 30.0%, 75.3%)’이 제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66.2%, 36.5%, 80.2%)’이 ‘남자청소년(57.9%, 30.6%, 78.5%)’에 비해 전자기기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81.2%, 42.9%, 82.6%)’이 ‘초등학생(52.4%, 29.0%, 77.8%)’에 비해 전자기기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1>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

		교사	교수	과학자	공무원	정치인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약사	간호사	농·축·수산업자	자영업자	사업 가경영	회사원	기술자	건축가	파일럿
가족 유형	일반 가정	18.0	4.7	6.1	6.1	2.0	6.4	7.8	5.4	1.0	1.4	3.4	3.7	5.4	2.7	2.0
	모자 가정	15.4	1.1	3.8	8.2	1.1	6.0	7.7	3.8	1.1	.5	1.6	4.4	4.4	3.3	1.1
	부자 가정	12.3	2.6	7.1	8.4	.6	5.2	7.1	4.5	.6	.0	1.3	2.6	3.9	3.2	1.9
	조손 가정	22.1	4.0	4.0	7.4	2.7	4.0	6.0	6.0	.7	1.3	.7	8.1	3.4	1.3	2.0
1) 성별	남자	5.8	4.6	10.3	8.8	2.7	7.6	7.6	.0	1.8	1.8	2.7	6.7	8.8	4.6	3.3
	여자	25.7	2.4	1.8	6.2	.9	4.2	7.1	8.6	.2	.2	1.6	2.9	1.3	1.3	.7
교급	초등 학교	17.1	3.8	6.5	6.3	1.8	6.2	8.3	4.4	1.0	.4	1.0	4.2	4.0	2.2	2.6
	중학 교	17.8	2.5	3.3	9.1	1.4	4.7	5.4	6.2	.7	1.8	4.0	5.1	5.4	3.6	.4
전체		(135) 17.3	(26) 3.3	(42) 5.4	(57) 7.3	(13) 1.7	(44) 5.6	(57) 7.3	(39) 5.0	(7) .9	(7) .9	(16) 2.1	(35) 4.5	(35) 4.5	(21) 2.7	(14) 1.8

<표 Ⅳ-61>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

		스튜어디스	경찰	군인	방송관계자	만화가	컴퓨터프로그래머	의상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연예인	영화감독	운동선수	사회복지사	성직자	요리사	기타	전체
가족유형	일반가정	1.4	6.4	.7	8.5	6.1	4.4	9.5	6.8	21.4	.7	12.2	5.4	2.4	14.9	14.9	37.8 (295)
	모자가정	2.7	6.6	1.1	6.0	9.3	7.1	10.4	7.1	20.3	.5	11.5	6.0	.5	18.1	20.3	23.3 (182)
	부자가정	1.3	9.1	5.2	3.9	8.4	7.1	10.4	9.7	19.5	1.3	14.9	3.2	.6	20.1	14.9	19.7 (154)
	조손가정	.7	8.1	2.7	7.4	3.4	6.7	7.4	8.7	20.1	.7	14.8	6.0	2.7	20.1	12.1	19.1 (149)
성별	남자	.0	12.2	4.3	3.6	7.0	13.1	.9	.6	12.5	.9	25.2	3.6	3.6	13.1	14.3	42.2 (329)
	여자	2.7	3.8	.4	9.1	6.7	.9	15.7	13.1	26.4	.7	4.2	6.4	.2	21.1	16.6	57.8 (451)
교급	초등학교	1.0	7.9	2.2	6.0	7.1	5.8	10.7	7.7	22.6	.8	15.3	3.4	1.2	18.1	13.5	64.6 (504)
	중학교	2.5	6.2	1.8	8.3	6.2	6.5	7.2	8.0	16.7	.7	9.1	8.7	2.5	17.0	19.6	35.4 (276)
전체		(12) 1.5	(57) 7.3	(16) 2.1	(53) 6.8	(53) 6.8	(47) 6.0	(74) 9.5	(61) 7.8	(160) 20.5	(6) .8	(102) 13.1	(41) 5.3	(13) 1.7	(138) 17.7	(122) 15.6	(780) 100.0

‘희망직업’을 묻는 다중응답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0.5%’로 가장 많았으며 ‘요리사(17.7%)’, ‘교사(17.3%)’, ‘기타(15.6%)’, ‘운동선수(13.1%)’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상디자이너(9.5%)’, ‘헤어디자이너(7.8%)’, ‘공무원(7.3%)’, ‘의사·약사(7.3%)’,‘경찰(7.3%)’, ‘방송관계자(6.8%)’, ‘만화가(6.8%)’, ‘컴퓨터프로그래머(6.0%)’, ‘판사·변호사·검사(5.6%)’, ‘과학자(5.4%)’, ‘사회복지사(5.3%)’, ‘간호사(5.0%)’, ‘회사원(4.5%)’, ‘기술자(4.5%)’, ‘교수(3.3%)’, ‘건축가(2.7%)’, ‘사업가·경영(2.1%)’, ‘군인(2.1%)’ ‘파일럿(1.8%)’, ‘정치인(1.7%)’ ‘성직자(1.7%)’, ‘스튜어디스(1.5%)’, ‘농·축·수산업자(0.9%)’, ‘자영업자(0.9%)’, ‘영화감독(0.8%)’ 순으

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교사', '간호사', '의상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연예인', '요리사'가 되기를 '여자청소년(25.7%, 8.6%, 15.7%, 13.1%, 26.4%, 21.2%)'이 '남자청소년(5.8%, 0%, 0.9%, 0.6%, 12.5%, 13.1%)'보다 더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경찰', '군인', '컴퓨터프로그래머', '운동선수'가 되기를 '남자청소년(10.3%, 8.8%, 4.6%, 12.2%, 4.3%, 13.1%, 25.2%)'이 '여자청소년(1.8%, 1.3%, 1.3%, 3.8%, 0.4%, 0.9%, 4.2%)'보다 더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교급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예인'과 '운동선수'에서만 '초등학생(22.6%, 15.3%)'이 '중학생(16.7%, 9.1%)'보다 5%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Ⅳ-62> 자유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집안일돕기	집에서휴식	독서	TV시청	음악영화감상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친구만나기	인터넷컴퓨터게임	아르바이트	종교활동	동아리활동	개인학습활동	여행	쇼핑하기	자원봉사	산책	기타	전체
1) 가족유형	일반가정	27.1	44.1	13.6	53.2	11.9	6.8	8.1	34.6	53.6	1.0	12.5	3.	7.1	1.7	5.4	1.7	7.5	6.1	38.3 (295)
	모자가정	27.5	34.1	12.1	54.4	17.0	4.4	6.0	37.4	53.3	.0	8.8	4.9	9.9	2.2	4.4	1.6	11.5	7.1	23.6 (182)
	부자가정	36.9	30.9	10.7	51.7	11.4	2.7	8.7	34.2	51.7	2.7	10.1	.0	8.1	4.7	3.4	1.3	6.7	11.4	19.3 (149)
	조손가정	17.9	37.2	10.3	56.6	13.1	4.1	11.0	36.6	52.4	4.1	9.7	4.1	9.7	2.8	4.1	.7	13.8	7.6	18.8 (145)
2) 성별	남자	20.6	35.2	8.7	54.5	10.9	2.2	15.0	32.7	68.8	2.5	10.0	2.2	4.0	3.4	1.6	.9	11.8	7.8	41.6 (221)
	여자	32.2	39.8	14.4	53.3	14.9	6.9	3.6	37.6	41.6	1.1	11.1	2.0	11.6	2.0	6.7	1.8	7.8	7.6	58.4 (356)
3) 교급	초등학교	27.2	36.5	14.7	56.3	10.5	5.4	8.9	35.5	49.8	1.2	8.5	1.0	9.5	2.8	6.0	1.4	10.5	8.7	64.3 (516)
	중학교	27.6	40.4	7.3	49.5	18.2	4.0	7.3	35.6	58.5	2.5	14.5	4.0	6.5	2.2	1.8	1.5	7.6	5.8	35.7 (278)
전체		(211) 27.4	(292) 37.9	(93) 12.1	(415) 53.8	(102) 13.2	(38) 4.9	(64) 8.3	(274) 35.5	(408) 52.9	(13) 1.7	(82) 10.6	(16) 2.1	(65) 8.4	(20) 2.6	(35) 4.5	(11) 1.4	(73) 9.5	(59) 7.7	(567) 100.0

<표 Ⅳ-63>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집안일돕기	집에서휴식	독서	TV시청	음악영화감상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친구만나기	인터넷컴퓨터게임	아르바이트	종교활동	동아리활동	개인학습활동	여행	쇼핑하기	자원봉사	산책	기타	전체
1) 가족유형	일반가정	6.4	10.2	8.0	12.9	22.0	16.3	16.7	25.4	18.9	16.7	1.5	9.8	9.8	44.3	35.6	12.1	20.1	7.6	38.4 (264)
	모자가정	6.6	15.6	6.0	16.8	27.5	15.6	15.0	25.1	25.1	14.4	2.4	8.4	8.4	44.3	28.1	7.2	18.0	9.0	24.3 (167)
	부자가정	13.7	16.0	6.9	11.5	28.2	13.0	20.6	21.4	29.0	9.9	2.3	10.7	6.1	45.8	33.6	5.3	9.2	9.9	19.0 (131)
	조손가정	7.9	10.3	10.3	10.3	22.2	14.3	20.6	23.8	22.2	20.6	1.6	9.5	11.1	44.4	28.6	8.7	17.5	8.7	18.3 (126)
2) 성별	남자	9.4	15.6	8.3	19.2	22.8	9.8	26.8	22.1	34.8	14.1	1.8	6.9	8.3	45.3	10.9	8.7	15.9	10.9	40.1 (276)
	여자	7.3	10.7	7.3	9.0	25.7	18.7	11.7	25.7	15.0	16.5	1.9	11.4	9.5	44.2	46.4	9..2	17.7	7.0	59.9 (412)
3) 교급	초등학교	9.1	11.1	8.0	15.4	22.0	14.9	19.2	24.5	24.1	12.2	1.8	10.2	9.4	45.4	30.1	8.7	18.0	9.1	65.3 (449)
	중학교	6.3	15.5	7.1	8.8	29.3	15.5	15.1	23.8	20.9	21.8	2.1	8.4	8.4	43.1	36.0	9.6	15.1	7.5	34.7 (239)
전체		(56) 8.1	(87) 12.6	(53) 7.7	(90) 13.1	(169) 24.6	(104) 15.1	(122) 17.7	(167) 24.3	(158) 23.0	(107) 15.6	(13) 1.9	(66) 9.6	(62) 9.0	(307) 44.6	(86) 38.9	(62) 9.0	(117) 17.0	(59) 8.6	(688) 100.0

‘자유시간에 하는 활동’에 대한 다중응답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53.8%가 ‘TV시청’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인터넷컴퓨터게임(52.9%)’, ‘집에서휴식(37.9%)’, ‘친구만나기(35.5%)’, ‘집안일돕기(27.4%)’, ‘음악영화감상(13.2%)’, ‘독서(12.1%)’, ‘종교활동(10.6%)’, ‘산책(9.5%)’, ‘개인학습활동(8.4%)’, ‘스포츠(8.3%)’, ‘기타(7.7%)’, ‘예술활동(4.9%)’, ‘쇼핑하기(4.5%)’, ‘여행(2.6%)’, ‘동아리활동(2.1%)’, ‘아르바이트(1.7%)’, ‘자원봉사(1.4%)’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이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집안일돕기(36.9%)’에 많이 응답하였고, ‘집에서휴식(30.9%)’에 적게 응답하였다. ‘모자

가정청소년'이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음악영화감상(17%)'에 많이 응답했으며, '일반가정청소년'은 '집에서휴식(44.1%)'에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들의 응답율이 높은 '스포츠활동(15.0%)', '인터넷컴퓨터게임(68.8%)'을 제외하고는 '집안일돕기(32.2%)', '독서(14.4%)', '음악영화감상(14.9%)', '개인학습활동(11.6%)', '쇼핑하기(6.7%)' 등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의 응답율이 높았다.

교급별로는 '독서(14.7%)', 'TV시청(56.3%)'에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이 응답하였고, '음악영화감상(18.2%)', '인터넷게임(58.5%)', '종교활동(14.5%)'에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많이 응답하였다.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묻는 다중응답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44.6%'가 '여행'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쇼핑하기(38.9%)', '음악영화감상(24.6%)', '친구만나기(24.3%)', '인터넷컴퓨터게임(23%)', '스포츠(17.7%)', '산책(17%)', '아르바이트(15.6%)', '예술활동(15.1%)', 'TV(13.1%)', '집에서휴식(12.6%)', '동아리활동(9.6%)', '개인학습활동(9%)', '자원봉사(9%)', '기타(8.6%)', '집안일돕기(8.1%)', '독서(7.7%)', '종교활동(1.9%)'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이 '집안일돕기(13.7)'에 다른 가정유형 청소년에 비해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TV시청', '스포츠활동', '인터넷컴퓨터게임'에서 '남자청소년(19.2%, 26.8%, 34.8%)'이 '여자청소년(9.0%, 11.7%, 15.0%)'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예술활동', '쇼핑하기', '동아리활동' 경우, '여자청소년(18.7%, 11.4%, 46.4%)'이 '남자청소년(9.8%, 6.9%, 10.9%)'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교급별로는 '음악영화감상', '아르바이트', '쇼핑하기'에서 '중학생(29.3%, 21.8%, 36.0%)'이 '초등학생(22.0%, 12.2%, 30.1%)'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TV시청', '스포츠활동', '인터넷컴퓨터게임'에서는 '초등학생(15.4%, 19.2%, 24.1%)'이 '중학생(8.8%, 15.1%, 20.9%)'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표 Ⅳ-64>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

		시간부족	비용부담	함께 할사람없음	적절한 장소 시설부족	정보부족	프로그램 부족	기타	없음	전체
가정 유형	일반 가정	44.5	17.8	6.5	11.0	5.1	4.5	3.8	6.8	(292) 100.0
	모자 가정	38.5	25.8	9.3	4.9	7.1	2.7	7.1	4.4	(182) 100.0
	부자 가정	38.9	27.1	9.0	4.2	5.6	2.1	6.9	6.3	(144) 100.0
	조손 가정	39.4	23.9	8.5	9.2	7.7	2.1	2.8	6.3	(142) 100.0
1) 성별	남자	39.2	17.7	11.4	7.6	6.6	3.5	6.0	7.9	(316) 100.0
	여자	42.3	26.1	5.6	8.1	5.9	2.9	4.3	4.7	(444) 100.0
2) 교급	초등 학교	44.5	17.1	9.2	8.2	5.7	3.7	4.5	7.1	(490) 100.0
	중학 교	34.8	32.6	5.9	7.4	7.0	2.2	5.9	4.1	(270) 100.0
전체		41.1	22.6	8.0	7.9	6.2	3.2	5.0	6.1	(760) 100.0

1) x^2=18.454* 2) x^2=29.837***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가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청소년 중 41.1%가 ‘시간부족’이라고 응답했으며, 22.6%가 ‘비용이 부담되서’, 8.0%가 ‘함께 할 사람이 없음’, 7.9%가 ‘적절한 장소 및 시설 부족’, 3.2%가 ‘프로그램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시간부족’, ‘비용이 부담되서’, ‘적절한 장소 및 시설 부족’에 여자청소년(42.3%, 26.1%, 8.1%)이 남자청소년(39.2%, 17.7%, 7.6%)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함께 할 사람이 없음’, ‘정보부족’, ‘프로그램 부족’, ‘장애요인 없음’에서는 남자청소년(11.4%, 6.6%, 3.5%, 7.9%)이 여자청소년(5.6%, 5.9%, 2.9%, 4.7%)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는 '시간부족', '함께 할 사람 없음', '적절한 장소 및 시설 부족', '프로그램 부족'에 초등학생(44.5%, 9.2%, 8.2%, 3.7%)이 중학생(34.8%, 5.9%, 7.4%, 2.2%)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비용 부담', '정보부족'에서는 중학생(32.6%, 7.0%)이 초등학생(17.1%, 5.7%)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32.6%의 중학생과 26.1%의 여자청소년이 '비용부담'을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Ⅳ-65> 주로 읽은 독서 분야 1

		교양 서적	정보 서적	만화책	소설책	잡지	시에세이	기타	없음	전체
1) 가정 유형	일반 가정	27.7	4.0	48.9	11.3	2.2	.4	2.6	2.9	(274) 100.0
	모자 가정	20.7	7.5	44.8	17.2	3.4	.0	1.7	4.6	(174) 100.0
	부자 가정	11.8	8.3	47.9	18.1	3.5	.0	2.8	7.6	(144) 100.0
	조손 가정	16.5	12.0	49.6	14.3	2.3	.0	2.3	3.0	(133) 100.0
2) 성별	남자	23.7	10.2	46.4	9.5	2.7	.0	2.4	5.1	(295) 100.0
	여자	18.8	5.1	48.8	18.1	2.8	.2	2.3	3.7	(430) 100.0
3) 교급	초등 학교	23.7	7.1	50.0	9.5	3.2	.2	3.2	3.0	(464) 100.0
	중학 교	15.7	7.3	44.1	23.8	1.9	.0	.8	6.5	(261) 100.0
전체		20.8	7.2	47.9	14.6	2.8	.1	2.3	4.3	(725) 100.0

1) x^2=34.725* 2) x^2=18.852** 3) x^2=40.361***

청소년들이 첫 번째로 즐겨 읽는 분야의 책으로는 전체청소년 중 47.9%라는 월등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만화책'이라고 응답했으며, 20.8%가

‘교양서적’, 14.6%가 ‘소설책(무협지, 환타지, 추리, 로맨스)’, 7.2%가 ‘정보서적’, 2.8%가 ‘잡지’라고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정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가정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50%에 가깝게 ‘만화책’을 즐겨 읽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양서적’, ‘정보서적’, ‘소설책(무협지, 환타지, 추리, 로맨스)’에서는 가정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교양서적’은 ‘일반가정청소년(27.7%)’, ‘모자가정청소년(20.7%)’, ‘조손가정청소년(16.5%)’, ‘부자가정청소년(11.8%)’ 순으로 응답했고, ‘정보서적(컴퓨터, 외국어, 취미 등)’은 ‘조손가정청소년(12.0%)’, ‘부자가정청소년(8.3%)’, ‘모자가정청소년(7.5%)’, ‘일반가정청소년(4.0%)’ 순이었으며, ‘소설책’은 ‘부자가정청소년(18.1%)’, ‘모자가정청소년(17.2%)’, ‘조손가정청소년(14.3%)’, ‘일반가정청소년(11.3%)’ 순이였으며, ‘잡지’도 ‘부자가정청소년(3.5%)’, ‘모자가정청소년(3.4%)’, ‘조손가정청소년(2.3%)’, ‘일반가정청소년(2.2%)’ 순으로 응답했다. ‘시/에세이’는 ‘0.4%’의 ‘일반가정청소년’만이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만화책’, ‘소설책’을 여자청소년(48.8%, 18.1%)이 남자청소년(46.4%, 9.5%)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교양서적’과 ‘정보서적’을 남자청소년(23.7%, 10.2%)이 여자청소년(18.8%, 5.1%)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세이’는 ‘0.2%’의 ‘여자청소년’만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교양서적’, ‘만화책’, ‘잡지’에 초등학생(23.7%, 50.0%, 3.2%)이 중학생(15.7%, 44.1%, 1.9%)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정보서적’과 ‘소설책’에서는 중학생(7.3%, 23.8%)이 초등학생(7.1%, 9.5%)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시/에세이’는 ‘0.2%’의 ‘초등학생’만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두 번째로 즐겨 읽는 분야의 책으로는 전체청소년 중 41.0%가 ‘소설책’이라고 응답했으며, 21.4%가 ‘만화책’, 13.3%가 ‘잡지’, 5.5%가 ‘정보서적’, 5.1%가 ‘교양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소설책’, ‘잡지’, ‘시/에세이’를 여자청소년(46.9%, 14.9%, 2.4%)이 남자청소년(31.1%, 10.7%, 0.4%)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만화책'과 '교양서적'을 남자청소년(30.2%, 7.1%)이 여자청소년(16.2%, 4.0%)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6> 주로 읽은 독서 분야 2

		교양서적	정보서적	만화책	소설책	잡지	시에세이	기타	없음	전체
가정유형	일반가정	5.2	7.8	22.4	41.8	11.2	1.7	6.5	3.4	(232) 100.0
	모자가정	5.4	5.4	22.1	38.9	14.8	2.0	5.4	6.0	(149) 100.0
	부자가정	7.9	2.6	17.5	37.7	12.3	2.6	9.6	9.6	(114) 100.0
	조손가정	1.9	3.7	22.4	45.8	16.8	.0	5.6	3.7	(107) 100.0
1) 성별	남자	7.1	5.8	30.2	31.1	10.7	.4	7.6	7.1	(225) 100.0
	여자	4.0	5.3	16.2	46.9	14.9	2.4	6.1	4.2	(377) 100.0
교급	초등학교	5.6	6.2	21.8	38.7	13.6	2.3	7.9	3.8	(390) 100.0
	중학교	4.2	4.2	20.8	45.3	12.7	.5	4.2	8.0	(212) 100.0
전체		5.1	5.5	21.4	41.0	13.3	1.7	6.6	5.3	(602) 100.0

1) x^2=32.011***

첫 번째로 즐겨 읽는 책의 1위는 만화책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되었고, 2위는 중학생과 부자가정청소년의 경우 소설책으로 응답되었고, 다른 가정유형과 초등학생, 남자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양서적으로 응답되었다. 시/에세이는 일반가정청소년, 여자청소년, 초등학생만이 첫 번째로 즐겨 읽는 책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즐겨 읽는 책으로 모든 유형의 청소년이 1위는 소설책, 2위는 만화책을 응답하였다. 즉 조사대상 청소년은 만

화책, 소설책, 교양서적을 즐겨 읽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자가정청소년과 중학생의 경우 교양서적을 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묻는 다중응답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66.3%'가 '급식지원・밑반찬제공'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학습지도(5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37.9%)', '식사준비 및 취사(32.7%)', '사회교육(29.6%)', '청소년캠프(29.4%)', '개인상담・정서적지원(27.7%)', '무료진료(27.2%)', '음주・흡연교육(26.8%)', '현금지원(생활비, 장학금)(25.3%)',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십)(22.1%)', '동아리활동(22.1)', '이・미용서비스(21.6%)', '친구와 좋은관계맺기(21.6%)',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21.3%)', '멘토링(21.1%)', '진로지도(21.1%)', '가족프로그램(19.40%)', '세탁서비스(17.1%)', '주거환경개선사업(15.6%)',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13.3%)', '아르바이트알선(7.1%)'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묻는 다중응답 질문에 전체청소년의 '59.5%'가 '사회교육(검퓨터, 수영, 피아노)'을 가장 많이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57.9%)', '현금지원(생활비, 장학금)(57.3%)', '가족프로그램(55.8%)',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53.9%)', '무료진료(53.7%)', '주거환경개선사업(52.0%)', '친구와좋은관계맺기(51.6%)', '청소년캠프(51.3%)', '아르바이트알선(51.0%)', '동아리활동(47.2%)',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십)(46.3%)', '이・미용서비스(45.5%)', '진로지도(44.6%)', '세탁서비스(43.9%)', '개인상담·정서적지원(43.1%)', '멘토링(42.5%)', '학습지도(39.3%)', '기초생활보장수급자(37.8%)', '식사준비 및 취사(35.7%)', '음주・흡연교육(34.8%)', '급식지원・밑반찬제공(29.8)',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유형별로 보면 '일반가정청소년'들이 다른 가정유형의 청소년보다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청소년'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원의가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7>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세탁서비스	급식지원및반찬제공	식사준비및취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미용서비스	운동지도및기구대여	무료진료	음주흡연교육	기초생활장수급자	현금지원(생활비, 장학금)	아르바이트알선	가족프로그램	친구와좋은관계맺기	멘토링	개인상담서적지원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십)	사회교육	동아리활동	청소년캠프	학습지도	진로지도	직업훈련및취업소개	전체
1) 가족유형	일반가정	18.9	61.8	33.0	16.0	25.9	24.5	20.8	31.1	28.8	22.6	8.5	25.9	27.8	21.2	29.7	25.5	33.0	22.2	27.8	54.7	24.5	15.6	36.7 (218)
	모자가정	14.2	66.0	32.6	13.5	19.1	17.0	20.6	18.4	34.8	19.1	4.3	17.0	15.6	18.4	22.0	17.0	28.4	22.0	26.2	51.1	18.4	8.5	24.4 (133)
	부자가정	12.4	70.8	30.1	12.4	17.7	24.8	34.5	22.1	42.5	26.5	6.2	12.4	14.2	18.6	28.3	18.6	22.1	22.1	38.1	48.7	19.5	11.5	19.6 (109)
	조손가정	22.3	70.5	34.8	20.5	20.5	17.0	40.2	33.9	54.5	36.6	8.9	17.0	25.0	26.8	30.4	25.9	32.1	22.3	27.7	48.2	19.6	17.0	19.4 (107)
2) 성별	남자	17.4	62.3	35.6	16.5	21.6	28.0	31.8	28.8	35.6	30.1	8.5	24.2	27.1	26.3	31.8	27.1	35.6	28.0	33.9	53.8	21.6	18.2	40.8 (221)
	여자	17.0	69.0	30.7	14.9	21.6	16.7	24.0	25.4	39.5	21.9	6.1	16.1	17.8	17.5	24.9	18.7	25.4	18.1	26.3	49.7	20.8	9.9	59.2 (356)
3) 교급	초등학교	18.0	64.8	35.0	17.8	24.0	26.2	29.8	31.4	32.5	23.5	9.0	25.1	25.7	23.2	32.2	26.5	35.5	21.9	31.1	55.2	22.7	14.8	63.3 (516)
	중학교	15.6	68.9	28.8	11.8	17.5	12.7	22.6	18.9	47.2	28.3	3.8	9.4	14.6	17.5	19.8	14.6	19.3	22.6	26.4	44.8	18.4	10.8	36.7 (278)
전체		(99) 17.1	(383) 66.3	(189) 32.7	(90) 15.6	(125) 21.6	(123) 21.3	(157) 27.2	(155) 26.8	(219) 37.9	(146) 25.3	(41) 7.1	(112) 19.4	(125) 21.6	(122) 21.1	(160) 27.7	(128) 22.1	(171) 29.6	(128) 22.1	(170) 29.4	(297) 51.4	(122) 21.1	(77) 13.3	(567) 100.0

<표 IV-68> 앞으로 이용 희망하는 서비스

		세탁서비스	급식지원및반찬제공	식사준비및취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미용서비스	운동지도및기구대여	무료진료	음주흡연교육	기초생활장수급자	현금지원(생활비, 장학금)	아르바이트알선	가족프로그램	친구와좋은관계맺기	멘토링	개인상담서적지원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십)	사회교육	동아리활동	청소년캠프	학습지도	진로지도	직업훈련및취업소개	전체
1) 가족유형	일반가정	46.7	31.0	38.0	53.7	47.1	59.6	61.6	39.6	41.6	58.4	51.0	62.7	58.4	45.1	49.0	54.1	65.5	53.7	55.7	43.5	49.4	57.3	38.6 (255)
	모자가정	35.1	23.6	33.1	48.0	41.2	60.1	50.7	32.4	38.5	60.8	50.0	54.7	47.3	45.3	39.9	41.9	57.4	46.6	50.0	37.2	43.9	56.1	22.4 (148)
	부자가정	46.1	32.8	34.4	46.9	46.1	57.0	52.3	33.6	35.2	57.8	48.4	54.7	49.2	39.1	36.7	39.8	54.7	39.1	44.5	33.6	37.5	53.1	19.4 (128)
	조손가정	46.2	31.5	35.4	58.5	46.9	53.1	43.1	29.2	32.3	50.8	54.6	44.6	45.4	37.7	41.5	42.3	54.6	43.1	50.8	39.2	43.1	45.4	19.7 (130)
2) 성별	남자	47.1	32.6	38.8	52.2	45.3	56.9	54.0	37.7	40.9	56.9	51.8	52.5	47.8	43.5	39.5	44.9	52.5	42.4	48.9	37.7	42.8	55.8	41.8 (276)
	여자	41.6	27.8	33.5	51.9	45.7	58.7	53.5	32.7	35.6	57.7	50.4	58.2	54.3	41.8	45.7	47.3	64.4	50.6	53.0	40.5	46.0	52.5	58.2 (385)
3) 교급	초등학교	45.4	28.3	36.1	51.2	44.4	56.0	50.8	35.8	39.9	55.6	48.1	54.9	50.3	40.4	39.5	46.5	57.6	47.2	50.3	35.6	40.8	50.1	66.7 (516)
	중학교	40.9	32.7	35.0	53.6	47.7	61.8	59.5	32.7	33.6	60.9	56.8	57.7	54.1	46.8	50.5	45.9	63.2	47.3	53.2	46.8	52.3	61.4	33.3 (278)
전체		(290) 43.9	(197) 29.8	(236) 35.7	(344) 52.0	(301) 45.5	(383) 57.9	(355) 53.7	(230) 34.8	(250) 37.8	(379) 57.3	(377) 51.0	(369) 55.8	(341) 51.6	(281) 42.5	(285) 43.1	(306) 46.3	(393) 59.5	(312) 47.2	(339) 51.3	(260) 39.3	(295) 44.6	(356) 53.9	(661) 100.0

성별로는 '세탁서비스', '급식지원·밑반찬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에서 '남자청소년(47.1%, 32.6%, 55.8%)'이 '여자청소년(41.6%, 27.8%, 52.5%)'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가족프로그램', '친구와좋은관계맺기', '개인상담・정서적지원', '사회교육', '동아리활동', '진로지도'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교급별로는 '세탁서비스', '식사준비 및 취사', '음주・흡연교육',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십)'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서비스를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약 및 결론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첫째, 가정형편: 조사대상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형편에 대해 4분의1 정도만이 못사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 남자청소년, 일반가정청소년, 모자가정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결혼상태: 조사대상청소년 가정의 결혼상태는 부자가정이 이혼(57.1%)과 별거(11.7%)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자가정의 경우는 사별(6.5%) 비율이 높았다. 또한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대해 잘 모르는 초등학생(24.6%)이 중학생(8,6%)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적: 수학, 영어, 사회성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반면, 국어와 과학성적은 중간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국어와 영어성적이, 남자청소년의 경우 사회, 수학, 과학성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는 모든 과목에서 초등학생보다 자신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사회정서발달: '자아존중감'의 경우 가정유형별, 성별, 교급별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문제: 일반가정과 모자가정 청소년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가정에서의 일차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고, 부자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부모 안계심',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이 가정에서의 일차적인 문제로 느껴지고 있었다. 특히 다른 가정유형의 청소년들과 달리 부자가정청소년들은 '부모음주'를 일차적 가정문제로 11.7%나 응답하였다. 남자청소년들이 부모가 안계신 것을 가장 큰 가정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가장 큰 가정문제로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가 안 계신 것을 가장 큰 가정문제로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반면 중학생들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가장 큰 가정문제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여섯째, 가정폭력: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 몽둥이로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5% 정도였으며, 3.4%의 청소년만이 부모로부터 위험한 도구로 위협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7%의 청소년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로부터 욕을 들은 경험이 있었고,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라고 폭언을 당한 청소년은 21%나 되었다. 특히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이와 같은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6.2%나 되었다.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은 7.6%의 청소년만이 갖고 있었는데 남자청소년이 좀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비행: 10%의 청소년이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었는데 남자청소년과 중학생이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26.5%의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험이 있었고, 부자가정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8%의 청소년이 절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과 중학생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1%의 청소년이 폭행경험이 있었으며 남자청소년이 더 많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8%의 청소년이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 정도의 중학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8%에 불과했는데, 부자가정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무단결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5%의 청소년이 가출경험이 있었다. 66%의 청소년들이 거짓말이나 남을 속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짓말을 1-2번 한 여자청소년이 많은 반면, 남자청소년들은 거짓말 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 적이 있으며, 중학생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정도의 청소년이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청소년과 중학생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38% 정도의 청소년들이 남을 따돌림 시킨 경험이 있었고, 조손가정청소년, 여자청소년, 초등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생존욕구

첫째, 질병: 감기독감(50.8%), 충치・잇몸질환(20.1%), 피부질환(14.3%). 안과질환(6.5%), 각종사고(3.5%), 위장・내장질환(3.3%), 성관련질환(0.6%), 만성질환(0.5%) 순으로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상태: 형제(38.5%), 혼자(24.6%), 온가족(14.2%), 부모님(13.9%) 순으로 함께 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자가정청소년이 가정 적게 혼자서 방을 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방과후공부방(36.2%), 집(30.96%), 학교교실/도서관(12.3%), 사설독서실(8.1%), 공공독서실/구시립도서관(7.7%)을 공부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일반가정청소년과 모자가정청소년은 집이나 비용이 들지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많이 공부장소로 이용하고 있었고, 부자가정청소년과 조손가정청소년은 공적 지원을 받고, 그룹 단위로 공부하는 공공기관을 공부장소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많이 공부장소로 이용하고 있었고, 초등학생은 그룹 단위로 학습지도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공부장소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대상청소년들은 '혼자 쓸 수 있는 방'과 '넓은 실내공간', '화장실 보수/개조', '부엌 개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용돈: 조사대상청소년의 70% 정도가 용돈 액수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정청소년과 조손가정청소년이 일반가정청소년과 모자가정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용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의 사용처에 대해 의복비(34.5%), 문화교양비(14.5%), 외식비(13.8%), 교제비(12.6%), 오락비(6.3%)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여자청소년이 의복비에 용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많은 반면 남자청소년은 오락비에 용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의복비에 초등학생은 외식비에 더 많이 용돈을 사용하고자 했다.

넷째, 아르바이트: 8.5% 만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는데 부자가정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두 배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용돈이 필요해서(3.2%),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1.3%), 생활비를 위해(0.8%), 학교등록금/학원비를 위해(0.1%)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식생활: 38%가 지난 한 달 동안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거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15.9%),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4.2%),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3.8%), 돈이 없어서(0.8%)라고 응답하였다. 7.7%의 부자가정청소년이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식사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청소년이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6.6%),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6.9%) 식사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관계욕구

첫째, 사회적 지지: '가정지지'의 경우 일반가정청소년(M=13.17), 모자가정청소년(M=13.13), 부자가정청소년M=12.47), 조손가정청소년(M=17.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래지지'의 경우 여자(M=12.51)가 남자(M=11.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M=12.47)이 초등학생(M=1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지지'의 경우는 초등학생(M=11.74)이 중학생(M=1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가활동 상대: 친구(24.4%), 형제자매(21.8%), 어머니(14.5%), 혼자(9.3%), 아버지(6.9%), '할머니할아버지(6.9%)와 함께 주말이나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가정유형의 청소년 45% 정도가 친구나 형제자매와 함께 주말이나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조손가정청소년만이 형제자매와 함께 보내는 비율이 13.2%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모와의 활동: 부모와의 활동에 3분의2 정도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72.9%)이 중학생(58.1%)보다 월등히 많이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하고 싶은 활동으로 18.6%가 가족만의 단기여행 이라고 응답했으며, 14.8%가 공연이나 콘서트관람, 12.1%가 레포츠스포츠활동, 11.6%가 가족캠프야유회, 7.2%가 교육및상담프로그램을 들었다. 부모와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13.7%가 흥미가 없어서, 10.3%가 부모님이 바빠서, 2.2%가 부담이 되어서, 0.5%가 내용이 식상할까봐, 응답하였다. 중학생이 다양한 이유로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지역사회기관 지원: 83.3%의 조사대상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더 긍정적 이었다. 그러나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 비해 지역사회기관의 도움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기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이 지역사회기관의 도움을 더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6.6%의 청소년이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 비해 자신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성장욕구

첫째, 중학교 졸업 후 진로: 조사대상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일반계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며, 실업계고등학교(25.1%), 취업(6.0%), 기타(1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자청소년이 일반계고등학교를 8%정도 더 많이 선택했으며, 남자청소년들은 실업계고등학교와 취업을 더 많이 선택했다. 중학교 졸업 후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대상청소년들은 대학진학(33.1%), 적성에 맞아서(31.0%), 취업에 유리(9.7%), 학업성적부진(8.0%), 경제적 이유(5.5%)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자청소년이 대학진학을 위해를 9%정도 더 많이 선택했는데 이는 중학교 졸업 후의 진로선택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8% 정도 더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택한 것과 부합하고 있다. 또한 남자청소년들은 취업유리와 경제적인이유를 더 많이 주된 이유로 선택했는데 이 역시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실업계고등학교와 취업을 더 많이 선택한 것과 부합하고 있다.

둘째, 최종 학력: 82%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3분의2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정청소년들이 가장 적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4.5%의 청소년이 성적이 안 좋아서, 5%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문항 역시 부자가정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향상: 학습향상을 위해 조사대상청소년들은 장학금지급과 학원무료수강을 많이 원하고,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사업에 호의를 보이고 있었다. 학원무료수강, 학습공간제공, 참고서지급, 개인학습지도를 중학생과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원하고 있었다.

넷째, 개인(집단)지도' : '배우거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체육관(33.2%), 피아노(22.8%), 컴퓨터(20.1%), 영어학원(16.9%), 없음(15.3%), 가정교사(14.8%), 지역사회복지관(13.8%), 기타(13.2%), 지역아동센터(1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가정청소년(17.4%)과 모자가정청소년(16.5%)은 가정

교사를 조손가정청소년은 체육관(45.8%)과 입시학원(11.2%)을 더 많이 원하고 있었다.

다섯째, 전자기기: 조사대상청소년의 79.5%가 컴퓨터를 갖고 있었고, 휴대폰(62.6%), MP3(34.0%), 휴대폰・MP3・컴퓨터 모두를 갖추고 있지 않은 청소년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청소년, 여자청소년, 중학생이 전자기기를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희망직업: 연예인(20.5%), 요리사(17.7%), 교사(17.3%), 기타(15.6%), 운동선수(13.1%), 의상디자이너(9.5%), 헤어디자이너(7.8%), 공무원(7.3%), 의사・약사(7.3%), 경찰(7.3%), 방송관계자(6.8%), 만화가(6.8%), 컴퓨터프로그래머(6.0%), 판사・변호사・검사(5.6%), 과학자(5.4%), 사회복지사(5.3%), 간호사(5.0%), 회사원(4.5%), 기술자(4.5%), 교수(3.3%), 건축가(2.7%), 사업가・경영(2.1%), 군인(2.1%) 파일럿(1.8%), 정치인(1.7%) 성직자(1.7%), 스튜어디스(1.5%), 농・축・수산업자(0.9%), 자영업자(0.9%), 영화감독(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은 교사, 간호사, 의상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연예인, 요리사를 더 선호했고, 남자청소년은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경찰, 군인, 컴퓨터프로그래머, 운동선수를 더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예인과 운동선수에서만 좀 더 높게 응답했다.

일곱째, 여가활동: TV시청, 인터넷컴퓨터게임이 50%선, 집에서휴식, 친구만나기가 30%선, 집안일돕기, 음악영화감상, 독서, 종교활동이 10%선, 산책, 개인학습활동, 스포츠, 기타, 예술활동, 쇼핑하기, 여행, 동아리활동, 아르바이트, 자원봉사가 10%미만으로 파악되었다. 부자가정청소년의 경우, 집안일돕기(36.9%)에 많이 응답하였고, 모자가정청소년은 '음악영화감상(17%)', 일반가정청소년은 집에서휴식(44.1%)에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스포츠활동, 인터넷컴퓨터게임을 제외한 다른 활동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의 응답율이 높았다. 독서(14.7%), TV시청(56.3%)에 초등학생이 많이 응답하였고, 음악영화감상(18.2%), 인터넷게임(58.5%), 종교활동(14.5%)에 중학생이 많이 응답하였다.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으로 전체청소년의 44.6%가 여행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쇼핑하기가 30%선, 음악영화감상, 친구만나기, 인터넷컴퓨터게임이 20%선, 스포츠, 산책, 아르바이트, 예술활동, TV, 집에서휴식이 10%선, 동아리활동, 개인학습활동, 자원봉사, 집안일돕기, 독서, 종교활동이 10%미만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부자가정청소년이 집안일돕기(13.7)에 다른 가정유형 청소년에 비해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TV시청, 스포츠활동, 인터넷컴퓨터게임에서 남자청소년이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면, 예술활동, 쇼핑하기, 동아리활동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음악영화감상, 아르바이트, 쇼핑하기에서는 중학생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여가생활을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은 41.1%가 시간부족, 22.6%가 비용이 부담되서, 8.0%가 함께 할 사람이 없음, 7.9%가 적절한 장소 및 시설 부족, 3.2%가 프로그램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여덟째, 독서: 첫 번째로 즐겨 읽는 책의 1위는 만화책(47.9%)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되었고, 2위는 중학생과 부자가정청소년의 경우 소설책으로 응답되었고, 다른 가정유형과 초등학생, 남자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양서적으로 응답되었다. 시/에세이는 일반가정청소년, 여자청소년, 초등학생만이 첫 번째로 즐겨 읽는 책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즐겨 읽는 책으로 모든 유형의 청소년이 1위는 소설책, 2위는 만화책을 응답하였다. 즉 조사대상 청소년은 만화책, 소설책, 교양서적을 즐겨 읽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자가정청소년과 중학생의 경우 교양서적을 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지원서비스: 현재 66.3%가 급식지원・밑반찬제공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학습지도(5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37.9%), 식사준비 및 취사(32.7%), 사회교육(29.6%), 청소년캠프(29.4%), 개인상담・정서적지원(27.7%), 무료진료(27.2%), 음주・흡연교육(26.8%), 현금지원(생활비, 장학금)(25.3%),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십)(22.1%), 동아리활동(22.1), 이・미용서비스(21.6%), 친구와 좋은관계맺기(21.6%),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21.3%), 멘토링(21.1%), 진로지도(21.1%), 가족프로그램(19.40%), 세탁서비스(17.1%), 주거환경개선사업(15.6%),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13.3%), 아르바이트알선(7.1%) 순

으로 지원받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60%정도가 사회교육(검퓨터, 수영, 피아노)을 희망하였고,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57.9%), 현금지원(생활비, 장학금)(57.3%), 가족프로그램(55.8%),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53.9%), 무료진료(53.7%), 주거환경개선사업(52.0%), 친구와좋은관계맺기(51.6%), 청소년캠프(51.3%), 아르바이트알선(51.0%), 동아리활동(47.2%),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십)(46.3%), 이・미용서비스(45.5%), 진로지도(44.6%), 세탁서비스(43.9%), 개인상담・정서적지원(43.1%), 멘토링(42.5%), 학습지도(39.3%), 기초생활보장수급자(37.8%), 식사준비 및 취사(35.7%), 음주・흡연교육(34.8%), 급식지원・밑반찬제공(29.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반가정청소년들이 다른 가정유형의 청소년보다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청소년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원의가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서비스, 급식지원・밑반찬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에서 남자청소년, 가족프로그램, 친구와좋은관계맺기, 개인상담・정서적지원, 사회교육, 동아리활동, 진로지도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중학생이 세탁서비스, 식사준비 및 취사, 음주・흡연교육,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리더십)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상황을 열악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4분의1 정도의 청소년만이 자신의 형편이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는 24.6%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결혼상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중학생과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이나 초등학생에 비해 자신의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남자청소년을 위해서는 현실을 비관적이나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전에

여가활동 등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자청소년과 중학생을 위해서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위기가정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부자가정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다른 가정유형청소년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부가가정이 이혼과 별거율이 높았으며, 부모음주를 가정문제를 갖고 있었고, 부자가정청소년 역시 다른 가정유형청소년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무단결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정유형청소년에 비해 방을 혼자 쓰는 청소년이 가장 적었고, 아르바이트 경험한 청소년이 많았으며,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대학진학 여건도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으로 36.9%가 집안일돕기를 응답했고, 희망하는 여가활동 조차 집안일돕기를 선택하였다.

셋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청소년들은 교과과목별, 성별, 교급별로 성적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국어와 영어성적이, 남자청소년의 경우 사회, 수학, 과학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는 모든 과목에서 초등학생보다 자신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습지도나 진로지도를 실시할 때, 우선 순위 대상과 교과목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정서적 발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남녀와 교급별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 조사결과 우울감과 불안감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감의 경우,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폭력과 청소년비행에 있어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자칫 무심히 지나치게 되는 가벼운 가정폭력이나 청소년비행에 대해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7.7%의 청소년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

도로 부모로부터 욕을 들은 경험이 있었고, 21%의 청소년이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라는 폭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6%의 청소년이 거짓말이나 남을 속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0% 이상의 청소년이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 적이 있다고 하였다.

여섯째, 중학생의 경우, 바른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들 특히 부자가정청소년이나 조손가정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과 여자청소년의 경우 또래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를 충분히 못 받는 상황에서 또래지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도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진로지도와 취업지도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학교 졸업 후 진로: 조사대상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일반계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며, 실업계고등학교(25.1%), 취업(6.0%), 기타(10.2%) 순으로 응답하였다. 위기가정청소년들은 82%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3분의2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원의나 기대는 막연한 것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위기가정 청소년들은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지도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이 조기 진로지도를 통해 적성에 능력에 맞는 진로를 찾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덟째,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능한 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서비스로 사회교육(검퓨터, 수영, 피아노),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 현금지원(생활비, 장학금), 가족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 무료진료, 주거환경개선사업, 친구와좋은관계맺기, 청소년캠프, 아르바이트알선 등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현재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로는 급식지원·밑반찬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학습지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식사준비 및 취사, 사회교육, 청소년캠프, 개인상담·정서적지원, 무료진료, 음주·흡연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욕구를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유형별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1)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표 Ⅳ-69>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A.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측면		빈도(%)
생활상의 문제	청결, 예절, 형제간 폭언/폭력	6(9.8)
건강상의 문제	영양 불균형, 결식/식사, 성장부진/비만	3(4.9)
사회정서적 문제	감정조절 미숙, 산만함, 폭력성, 공격성, 분노감, 우울감, 나약함, 의지부족, 의욕부족, 방화, 또래관계의 어려움, 왕따경험, 고집, 도벽, 낮은 자존감	32(52.5)
방임/유해 환경 노출	야간에 아동 홀로 집에 있음, TV/컴퓨터 장시간 사용, 장시간 외부 배회	21(34.4)
이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	남아는 여성을 우습게 봄, 남자성인에게 잘 보이려 함, 부성상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거부,적대), 남아의 경우 여성성 강함	19(31.1)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태도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태도, 의존, 어머니에 대한 반항, 권위무시, 양부모가정 동경	11(18.0)
기타	낮은 학업성취도	5(8.2)

B.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측면		빈도(%)
생활상	청결함, 긍정적 생활태도, 조용함, 예의바름, 활달함, 결단력, 리더쉽 강함	10(16.4)
정서상	온순, 정서적 안정	4(6.6)
학업성취도 높음		1(1.6)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태도	친밀감	1(1.6)
합계		61(100.0)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사회정서적 문제(52.5%), 방임 및 유해환경의 노출(34.4%), 아버지나 이성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는 것(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의 가장인 어머니의 경우 생계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방임하게 되고 그 결과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활의 측면에서 모자가정 아동・청소년들은 청결하고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지니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현장 전문가들은 보고하고 있다.

(2)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이 사회정서적 문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방임과 유해환경의 노출이라는 응답임에 비하여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정서적 문제(63.9%) 다음으로 생활상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가사와 자녀양육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활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부자

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불과 3.3%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회정서적 문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감정조절의 미숙, 산만함, 폭력 등은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들과 유사하지만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타난 의지부족, 나약, 우울감 등은 부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말, 집중력의 부족, 단체생활 부적응, 욕설, 타인배려 부족, 잘 운다 등이 나타났다.

<표 Ⅳ-70>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A.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측면		빈도(%)
생활상의 문제	형제애 부족, 청결, 가사활동 동원, 부적절한 소비문화	37(60.7)
건강상의 문제	영양불균형, 결식/식사, 성장부진/비만, 음식에 대한 집착, 군것질	14(23.0)
사회정서적 문제	감정조절/표현 미숙, 산만함, 폭력성, 공격성, 왕따경험(가해/피해), 도벽, 거짓말, 낮은 자존감, 집중력 부족, 단체생활 부적응, 욕설, 또래관계의 어려움, 타인배려심 부족, 잘 운다	39(63.9)
방임/유해 환경 노출	가출	15(24.6)
이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	가출엄마에 대한 불안감, 여아의 경우 스킨쉽을 좋아함	7(11.5)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자간 유대관계 약화/단절, 집에 가기 싫어함, 아버지 행동모방(음주/폭력), 아버지에 대한 반항, 양부모가정 동경, 아버지 음주에 대한 불안감, 여아의 경우 신체변화(2차성징)에 대한 아버지와의 대화부재	5(8.2)
기타	낮은 학업성취도	7(11.5)
B.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측면		빈도(%)
생활상	씩씩함, 책임감 강함	2(3.3)
합계		61(100.0)

(3)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표 Ⅳ-71>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A.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측면		빈도(%)
생활상의 문제	예절	6(9.8)
건강상의 문제	결식/식사, 위장장애/비만/소아당뇨/충치, 편식습관	8(13.1)
사회정서적 문제	감정조절/표현 미숙, 산만함, 공격성, 폭력성, 욕설, 의욕부족, 낮은 자존감, 거짓말, 이기적, 또래관계의 어려움, 왕따경험, 외로움, 어른스런 말투, 소극적(소심), 도벽, 애정결핍 증상, 인내심 부족, 고집	35(57.4)
방임/유해 환경 노출		4(6.6)
이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	친구나 선생님께 관심끌기 위한 떼쓰기/폭력,	1(1.6)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	조부모에 대한 분리불안, 속이고 무시/반항, 부재(사망)에 대한 불안감, 양부모가정 동경, 의존, 떼쓰기(응석받이)	24(39.3)
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모에 대한 분노, 불신, 양가감정(그리움/원망), 버림받았다는 의식 강함	6(9.8)
기타	낮은 학업성취도	21(34.4)
B.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측면		빈도(%)
생활상	(조모有)청결함, 긍정적 생활태도, 올바른 식습관	4(6.6)
정서상	(조모有)정서적 안정	2(3.3)
합계		61(100.0)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 역시 사회정서적 문제(57.4%)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39.3%)가 나타났다.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조부모와의 분리에 대한 불안, 조부모를 무시하거나 반항, 조부모를 속이고 무시하거나 반항, 떼쓰기 등이다.

2) 기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현재 실시중인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

전체적으로 실시중인 서비스에서는 학습지도/진로지도프로그램(96.7%), 급식지원/밑반찬제공(93.4%), 개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9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서비스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가 각각 47.5%,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39.3%), 무료진료(36.1%)의 순이다.

현재 실시 중인 서비스의 생존욕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급식지원/밑반찬제공(93.4%), 수급자선정/현금지원(65.6%), 금주 및 금연교육(59.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희망하는 서비스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7.5%로 가장 많았고, 금주와 금연교육(36.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현금지원(34.4%), 이・미용서비스(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욕구와 관련하여 실시중인 서비스로는 또래지지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50.8%, 가족관계강화 프로그램이 47.5%로 나타났고, 희망하는 서비스의 내용 역시 세 항목 모두 비슷한 수치(가족관계 강화프로그램은 39.3%, 멘토링 프로그팸 26.1%, 또래지지프로그램 34.4%)를 보이고 있다.

성장욕구와 관련하여 실시중인 서비스로는 학습지도/진로지도 프로그램이 9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캠프(78.7%), 컴퓨터, 수영, 피아노 등의 사회교육1(72.1%)의 순이다. 희망하는 서비스는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47.5%), 동아리활동(34.4%), 사회교육1(27.9%)의 순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서비스가 2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2> 현재 실시중인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

욕구 영역		서비스 내용	현재 빈도(%)	희망 빈도(%)
생존 욕구	의	세탁서비스	7(11.5)	20(32.8)
		교복지원사업	12(19.7)	
	식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57(93.4)	8(13.1)
		식사준비 및 취사서비스 제공	27(44.3)	9(14.8)
	주	주거환경개선사업(도배, 수리)	5(8.2)	29(47.5)
	건강	이·미용 서비스	29(47.5)	20(32.8)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	23(37.7)	16(26.2)
		무료진료	35(57.4)	22(36.1)
		금주와 금연교육	36(59.0)	13(21.3)
		안전(교통안전, 소방교육, 성교육 등)	15(24.6)	
	경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지원(생활비 및 장학금)	40(65.6)	21(34.4)
		아르바이트 알선	4(6.6)	12(19.7)
		현물지원(쌀, 교복, 목욕비 등)	8(13.1)	
관계 욕구	부모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29(47.5)	24(39.3)
	친구	또래지지프로그램	31(50.8)	21(34.4)
	이웃	멘토링프로그램	31(50.8)	22(36.1)
성장 욕구	자아 개발	개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	55(90.2)	11(18.0)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 리더십 등)	43(70.5)	12(19.7)
	여가 문화	사회교육1(컴퓨터, 수영, 피아노 등)	44(72.1)	17(27.9)
		사회교육2(권리교육, 인성교육, 경제교육 등)	12(80.3)	
		동아리활동	21(34.4)	21(34.4)
		청소년캠프	48(78.7)	11(18.0)
		기타(영화관람, 요리, 텃밭 가꾸기, 국악교실, 풍선아트)	28(45.9)	
	진로 직업	학습지도, 진로지도프로그램	59(96.7)	10(16.4)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	8(13.1)	29(47.5)
지역사회 연계		음악회 개최, 환경캠페인, 자원봉사, 체육대회, 가사도우미 연계, 바자회(아나바다)	15(24.6)	
기타		교사교육, 학부모 회의/상담, 야간보호서비스, 놀토 프로그램, 스카우트 활동	16(26.2)	
합계			61(100.0)	61(100.0)

* 희망서비스의 빈도(%)가 없는 항목은 실시중인 서비스의 기타 답변사항임.

3) 가정유형별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사업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각 기관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자가정

<표 Ⅳ-73>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구분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빈도(%)
의	생활지도(위생교육), 의복전달 서비스	4(6.6)
식	외식지원, 김장김치 나누기, 급식지원(석식포함), 밑반찬 서비스, 쌀지원	13(21.3)
주	주거공간마련 도우미, 희망공간 만들기 (가정 내 아동공간 확보)	2(3.3)
건강	목욕서비스, 음주/흡연/인터넷중독 교육, 이・미용 서비스, 무료진료(치과,안과), 심리치료	12(19.7)
경제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장학금, 난방비, 행정(법률)지원, 학원교육지원	10(16.4)
가족지원 및 부모동반	가족캠프, 부모상담, 주말농장, 싱글맘 교육, 부모교육, 취업지원, 가족나들이	22(36.1)
친구	또래관계형성 정서프로그램(친구와의 악수, 포옹, 마음나누기)	1(1.6)
이웃	결연후원서비스, 멘토사업	10(16.4)
사회정서 발달	정서(순화)발달 프로그램,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 생일잔치, 청소년 인문학, 사회성 증진프로그램	12(19.7)
여가/문화	연극관람, 계곡체험, 요리, 컴퓨터, 음악(피아노), 미술, 체육(태권도), 동아리 활동	8(13.1)
진로/직업	학습지도(영어, 독서, 과학지도), 학습서 지원, 진로지도	14(23.0)
기타	(주말)야간보호, 안전교육	12(19.7)
합계		61(100.0)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가족지원 즉 어머니를 지원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직업교육이 23.0%, 식생활 지원(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부자가정

<표 Ⅳ-74>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구분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빈도(%)
의	세탁서비스, 생활지도(위생교육), 의복전달 서비스	8(13.1)
식	외식지원, 김장김치 나누기, 급식지원, 밑반찬 서비스	22(36.1)
주	청소서비스(자원봉사자 연계), 희망공간 만들기(가정 내 아동공간 확보)	7(11.5)
건강	목욕서비스, 음주/흡연/인터넷중독 교육, 성교육, 이・미용 서비스, 무료진료(치과,안과), 심리치료	13(21.3)
경제	장학금, 난방비, 학원교육지원, 행정(법률)지원	7(11.5)
가족지원 및 부모동반	가족캠프, 가정방문, 부모상담, 부모교육, 가족나들이, 부모모임, 취업지원, 아버지에게 편지/선물하기, 아버지와 극장가기, 집단상담	20(32.8)
친구	또래관계형성 정서프로그램(친구와의 악수, 포옹, 마음나누기)	4(6.6)
이웃	결연후원서비스	10(16.4)
사회정서 발달	개인상담, 청소년 인문학, 사회성 증진프로그램, 미술치료, 집단프로그램, 생일잔치, 체육(태권도)	16(26.2)
여가/문화	요리, 음악(악기지도), 컴퓨터, 영화감상, 동아리 활동	6(9.8)
진로/직업	학습지도(영어, 한문, 독서지도), 학습서 지원, 진로지도	12(19.7)
기타	(주말)야간보호, 안전교육	8(13.1)
합계		61(100.0)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식생활지원이 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지원과 아버지와 함께 하는 서비스가 32.8%, 사회정서발달 서비스가 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에서 식생활지원이 3위에 그친 반면,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1위로 나타났다.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진로/직업교육이 우선순위에 있는 반면 부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사회정서발달 서비스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3) 조손가정

<표 Ⅳ-75>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구분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빈도(%)
의	생활지도, 의복전달 서비스	3(4.9)
식	외식지원, 급식지원, 쌀지원, 밑반찬 서비스, 도시락 배달 서비스	18(29.5)
주	희망공간 만들기(가정 내 아동공간 확보)	2(3.3)
건강	목욕서비스, 조부모 병문환, 이・미용 서비스, 음주/흡연/인터넷중독 교육	17(27.9)
경제	재활용품 모아주기, 생필품 지원, 장학금, 난방비, 기업후원	12(19.7)
가족지원 및 조부모 동반	가족캠프, 가정방문, 부모상담, 조손가정 강화프로그램(공동모금회), 부모교육, 부모대행역할 프로그램, 가족여행	19(31.1)
친구	또래관계형성 정서프로그램(친구와의 악수, 포옹, 마음나누기)	2(3.3)
이웃	결연후원서비스, 지지집단	9(14.8)
사회정서 발달	개별상담, 청소년 인문학, 사회성 증진프로그램, 정서안정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체육(태권도), 동아리 활동	14(23.0)
여가/문화	요리, 야외활동, 영화감상	5(8.2)
진로/직업	학습지도(영어, 한문, 독서지도), 학습서 지원, 진로지도	17(27.9)
기타	임시보호(조부모 입원시 실무자 가정에서 보호), 파트타임 보육돌보미 사업, 안전교육	8(13.1)
합계		61(100.0)

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가족지원 혹은 조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31.1%로 가장 많았고, 식생활 지원이 29.5%, 건강지원과 진로/직업교육이 각각 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캠프나 가정방문, 조부모상담뿐 아니라 조손가정 강화 프로그램, 부모대행역할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4) 가정 유형별 시행하기 희망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사업

(1) 모자가정

<표 Ⅳ-76>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희망하는 프로그램

구분	모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빈도(%)
의	세탁서비스, 청결교육	4(6.6)
식	급식	1(1.6)
주	환경개선(도배,수리,청소)	2(3.3)
건강	목욕서비스(남아), 심리치료, 의료지원	6(9.8)
경제	가사도우미 지원, 장학금, 생활비, 컴퓨터 보급	5(8.2)
가족지원 및 어머니 동반	부모교육, 재택근무 직업소개, 창업지원, 가족여행, 가족치료, 지지집단, 부모갈등해소 프로그램, 엄마와 함께하는 장보기	36(59.0)
이웃	멘토링프로그램(성인 남성)	8(13.1)
사회정서 발달	개별상담, 기본생활예절교육,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집단놀이치료, 인성교육, 미술치료, 의사전달 스피치 교육, 성역할 교육, 정서안정	19(31.1)
여가/문화	문화체험(음악회, 연극 등), 스포츠 프로그램, 등산, 해병대 캠프	7(11.5)
진로/직업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선 및 직업훈련, 직장체험, 자립지원, 진로상담, 학습지도	5(8.2)
기타	야간보호서비스	5(8.2)
합계		61(100.0)

모자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시행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 가족지원 즉 어머니를 지원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음(36.1%)에도 불구하고 가장 희망(59.0)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29.5%)이다.

(2) 부자가정

<표 Ⅳ-77>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구분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빈도(%)
의	생활지도(아동대상 가사교육), 세탁서비스, 요리교실	7(11.5)
식	도시락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9(14.8)
주	환경개선(도배,수리,청소)	5(8.2)
건강	알콜중독 치료/예방 사업, 목욕서비스(여아), 심리치료, 게임중독 예방교육, 의료지원	13(21.3)
경제	가사도우미 지원, 장학금, 교복지원, 컴퓨터 보급	13(21.3)
가족지원 및 아버지 동반	부모교육, 가족여행, 가족캠프, 취업소개,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지지집단, 엄마에 대한 이해프로그램	32(52.5)
이웃	멘토링프로그램	2(3.3)
자아개발	개별상담, 인내심/예절 교육, 자아발견 프로그램, 집단 놀이치료, 미술치료, 의사전달 스피치 교육, 성역할 교육, 공격행동감소 프로그램	21(34.4)
여가/문화	문화체험(축구, 공연, 영화 등)	8(13.1)
진로/직업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선 및 직업훈련	1(1.6)
기타	야간보호서비스,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부자원)	8(13.1)
합계		61(100.0)

부자가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응답율이 나타난 것은 식생활지원(36.1%)였으나,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가족 지원 및 아버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율이 전체의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가정을 떠난 어머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포함한 자아개발 프로그램(34.4%)이다.

(3) 조손가정

<표 Ⅳ-78>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구분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빈도(%)
의	세탁서비스, 위생교육	9(14.8)
식	밑반찬 서비스, 쌀지원, 외식지원	4(6.6)
주	환경개선(도배,수리,청소,샤워실)	4(6.6)
건강	비상 의료기관 연계, 심리치료, 목욕서비스, 무료진료서비스	13(21.3)
경제	경제교육, 장학금, 생활비, 가사도우미 지원	10(16.4)
가족지원 및 조부모 동행	가족상담, 가족여행, 조부모 건강관리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업, 부모교육(양육방법/의사소통 등), 조부모 돕기 프로그램(공감대형성)	24(39.3)
이웃	젊은 성인 동행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수양부모연계)	11(18.0)
자아 개발	성장프로그램(자존감 향상), 개별상담, 예절교육, 놀이치료, 미술치료, 의사전달 스피치 교육, 캠프, 성역할 교육	24(39.3)
여가/문화	문화 체험, 요리	6(9.8)
진로/직업	학습지원, 진로교육, 학원수강,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선 및 직업훈련	8(13.1)
기타	야간보호서비스, 부모와 자녀 만나기 주선	2(3.3)
합계		61(100.0)

조손가정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족지원 및 조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응답율(31.1%)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39.3%). 동일한 비율로 응답을 보인 항목은 아동을 위한 자아개발 프로그램이며 다음으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21.3%의 응답율을 나타내고 있다.

5) 기관들의 역할

빈곤 가정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과 빈곤아동을 돌보고 있는 현장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역할

<표 Ⅳ-79>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		빈도(%)
아동 지원	- 경제적 지원 (생계비, 학비, 아동수당, 주거환경개선) -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중복서비스 개선) - 정책적 지원(일관되고 지속적, 중장기적 정책) - 교육의 기회 제공 - 자립지원 (실직가정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 다원화된 사회안전망 구축(다문화, 농어촌, 장애아동)	37(60.7) 23(37.7) 25(41.0) 3(4.9)
지역아동 센터 지원	- 교사 지원(야간교사, 급식담당, 일반교사) 및 처우개선 - 재원 지원	6(9.8) 8(13.1)
합계		61(100.0)

전문가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60.7%)이 가장 많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41.0%),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3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의 경우 중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13.1%)과 교사를 파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9.8%) 있다.

(2) 학교의 역할

<표 Ⅳ-80> 학교의 역할

학교의 역할		빈도(%)
빈곤아동 지원	- 경제적 지원(학비감면, 장학금, 무료급식)	15(24.6)
	- 학교생활 지원(또래관계-사회성 형성, 왕따/낙인감)	28(45.9)
	- 지역복지센터 및 기타 복지시설과의 협조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	15(24.6)
	- 소외아동 전문케어 교사 지원	28(45.9)
	- 학교 내 요보호아동 발굴 노력	15(24.6)
	- 야간 보육실 운영	5(8.2)
학교 역할 발전 노력	- 적절한 교육서비스 개발 (학습 격차 해소)	
	- 아동 안전보호	
	- 아동 개별 특성 발달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	
	- 학부모 교육/상담, 가정환경 파악	13(21.3)
	-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 기본적 학습, 정서적 지원	16(26.2)
	- 교육책임자의 사회복지 현장 방문 및 인식 전환	5(8.2)
합계		61(100.0)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는 아동이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45.9%)하고 소외 아동을 전문적으로 케어 하는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45.9%)이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의 복지 기관과의 협력(24.6%), 학교 내 요보호아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4.6%)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방과후 학교 사업이나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들이 복지 시설들과의 갈등이나 경쟁관계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국가적 수준, 지역사회 수준에서 빈곤아동이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표 Ⅳ-81>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빈도(%)
아동보호의 기능	22(36.1)
학습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44(72.1)
가정 역할 대행	17(27.9)
가정과의 적극적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	13(21.3)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정부)간 협조로 대상아동/가정 발굴 및 서비스 제공	17(27.9)
결연/후원 연계,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노력	5(8.2)
아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지지	14(23.0)
합계	61(100.0)

빈곤아동을 돌보고 있는 대표적 시설 중의 하나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동의 학습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72.1%)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아동보호의 기능(36.1%), 가정 역할을 대행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상아동 가정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라는 응답은 각각 27.9%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6) 기타의견

그 밖의 의견에는 무응답이 많았으며 응답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 지원대상 확대,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Ⅳ-82> 기타의견

기타의견
지원형태의 확대(재정, 교육)
지원대상 확대(빈곤층, 농어촌, 다문화, 동성애)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개발(다양성 및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복지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려 문제 해결
지역아동센터 재정적, 인적 정부지원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부자가정에 대한 시설 확충
아동관련 정부부처의 통일
아동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밀접한 연계

7) 요약 및 결론

(1)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과 특성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사회정서적 문제(52.5%), 방임 및 유해환경의 노출(34.4%), 아버지나 이성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는 것(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정서적 문제(63.9%) 다음으로 생활상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부자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불과 3.3%에 불과하였다. 사회정서적 문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감정조절의 미숙, 산만함, 폭력 등은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들과 유사하지만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타난 의지 부족, 나약, 우울감 등은 부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말, 집중력의 부족, 단체생활 부적응, 욕설, 타인배려 부족, 잘 운다 등이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 역시 사회정서적 문제(57.4%)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39.3%)가 나타났다.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조부모와의 분리에 대한 불안, 조부모를 무시하거나 반항, 조부모를 속이고 무시하거나 반항, 떼쓰기 등이다.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

전체적으로 실시중인 서비스에서는 학습지도/진로지도프로그램(96.7%), 급식지원/밑반찬제공(93.4%), 개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9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서비스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가 각각 47.5%,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39.3%), 무료진료(36.1%)의 순이다.

현재 실시 중인 서비스의 생존욕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급식지원/밑반찬제공(93.4%), 수급자선정/현금지원(65.6%), 금주 및 금연교육(59.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희망하는 서비스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7.5%로 가장 많았고, 금주와 금연교육(36.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현금지원(34.4%), 이・미용서비스(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욕구와 관련하여 실시중인 서비스로는 또래지지 프로그램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50.8%, 가족관계강화 프로그램이 47.5%이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가족관계 강화프로그램은 39.3%, 또래지지프로그램 34.4%를 보이고 있다.

성장욕구와 관련하여 실시중인 서비스로는 학습지도/진로지도 프로그램이 9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캠프(78.7%), 컴퓨터, 수영, 피아노 등의 사회교육1(72.1%)의 순이다. 희망하는 서비스는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47.5%), 동아리활동(34.4%), 사회교육1(27.9%)의 순이다.

(3) 가정유형별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사업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가족지원 즉 어머니를 지원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직업교육이 23.0%, 식생활 지원(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식생활지원이 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지원과 아버지와 함께 하는 서비스가 32.8%, 사

회정서발달 서비스가 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가족지원 혹은 조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31.1%로 가장 많았고, 식생활지원이 29.5%, 건강지원과 진로/직업교육이 각각 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유형별 시행하기 희망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사업

모자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시행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 가족지원 즉 어머니를 지원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음(36.1%)에도 불구하고 가장 희망(59.0)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29.5%)이다. 부자가정을 위해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가족지원 및 아버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율이 전체의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가정을 떠난 어머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포함한 자아개발 프로그램(34.4%)이다. 조손가정의 경우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가족지원 및 조부모와 함께 하는 서비스(39.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비율로 응답을 보인 항목은 아동을 위한 자아개발 프로그램이며 다음으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21.3%의 응답율을 나타내고 있다.

(5) 기관들의 역할

빈곤가정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 중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응답은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60.7%)이 가장 많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펴야한다는 의견(41.0%),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3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지원으로는 역할은 재정적 지원(13.1%)과 교사를 파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9.8%) 있다.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은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45.9%)하고, 소외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케

어 하는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45.9%)이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의 복지기관과의 협력(24.6%), 학교 내 요보호아동・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4.6%)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아동・청소년을 돌보고 있는 대표적 시설 중의 하나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학습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72.1%)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아동보호의 기능(36.1%), 가정 역할을 대행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상아동과 가정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라는 응답은 각각 27.9%였다.

(6) 기타의견

그 밖의 의견에는 무응답이 많았으며 응답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 지원대상 확대,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개발,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7) 결론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특성과 이들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앞으로 시행하고자 희망하는 프로그램,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의 유형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산만함, 폭력성, 감정조절의 어려움, 또래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 사회정서적 문제는 세 가정 유형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나타나는 공통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모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방임/유해환경에의 노출과 이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부자가정 아동・청소년들은 방임/유해환경에의 노출과 건강상의 문제 즉, 영양 불균형, 결식의 문제, 성장 부진 혹은 비만, 음식에 대한 집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부자가정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즉, 모자가정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많은 반면 부자가정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아동・청소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사, 양육, 경제활동 모두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가정보다는 가사, 양육, 경제활동 모든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한국사회의 여성임금이 남성임금에 비해 저임금이므로 어머니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부자가정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의 저임금은 결국 어머니들이 밤늦게까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동·청소년들은 밤늦게까지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지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방임이나 유해환경의 노출이라는 문제는 어머니의 노동 관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늦은 귀가는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남자 자녀들은 어머니를 아버지를 대신하여 보호하려는 경향도 있으며 이것이 왜곡될 경우 어머니 즉 여성을 우습게 보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반면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사회정서적 문제와 방임/유해환경 노출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모자가정과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즉, 모자가정의 경우 저임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반면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과 가사에 있어 곤란함을 겪는다는 것이다.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사회정서상의 문제와 더불어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현장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부모에 대한 분리불안, 의존, 때쓰기(응석부리기), 조부모를 속이고 무시하기, 반항하기, 조부모 사망에 대한 불안감 등이다. 즉, 아동・청소년들이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라기 보다는 부모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의 또 다른 표현이 조부모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나타

나는 것이다.

둘째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달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하는 방법도 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을 통해 사회정서적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통의 서비스가 필요하며 각 가정의 유형에 따라 모자가정은 야간보호를 포함한 안전한 보호 서비스, 부자가정은 야간보호를 포함한 안전한 서비스와 급식 지원과 식사예절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손가정은 부모부재의 상황을 아동·청소년들이 수용하고 자신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부모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개별, 집단) 상담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중인 프로그램들은 각 가정의 유형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제정, 지자체의 지원, 기타 다른 기관들의 지원 등을 통해 실시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현장전문가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금주금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현금지원, 이·미용서비스 등 전문적 기술, 재정, 전문적 교육 등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 시설이고 정부의 운영보조금 역시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희망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이나 지방정부 혹은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실무전문가들의 답변에서 아동에게도 경제적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즉,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보다 재정적 지원이 더 많았다. 재정적 지원은 모든 사업의 기초이다.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은 사업의 기초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예산을 충분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과 학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고, 소외아동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교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나 시설들과의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단체들과의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61명의 응답자 중 15명이나 응답하였다. 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교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 등 학교가 실행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중복됨으로써 현장의 갈등요소가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가 갈등관계,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계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Ⅴ.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방안

V.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복지지원방안

국내외의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정책 분석과 위기가정 아동・청소년과 현장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가정 유형별(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공통점과 차이를 고려한 복지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또한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와 같이 이 연구조사에서 파악된 복지욕구 영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지원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한부모가족의 범위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자녀수가 2명 이상이어서, 그중 한명(대개는 첫째 자녀)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비록 18세 미만의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에서 탈락되게 된다.

법 취지로 볼 때, 18세 이상(취학시에는 만 22세 이상)의 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만약 18세 이상의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어서 최저생계비 130%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교육비의 지원대상 등 국가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증액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와 고교생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액수를 실제 아동양육비에 맞게 증액해야 한다. 현재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한부모가족 만 10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2007년에는 만6세 미만에게 주었고, 2008년에는 만 8세 미만, 2009년은 만 10세 미만에게 주고 있다.

그동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사실상 총수)을 상향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상한 연령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를 책정할 때 실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책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국민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이므로 지원 대상아동은 일차적으로 14세까지 확대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상한선인 18세미만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에는 전체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이 있고, 비취업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충급여가 있다. 즉 아동수당(Child Benefit)은 1977년 도입된 보편주의적 수당제도로 아동수에 따라 수급급액은 차이가 난다. 2005년 현재 한 가족 당 첫째 아동에 대해 년간 884파운드($ 1,540)씩 지불되며, 두 번째 아동부터는 년간 595파운드($ 1,033)씩 지불된다. 또한 두 자녀를 가진 비취업 한부모의 경우 2000년 현재 주당 27.55 파운드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52.20 파운드의 소득보충급여를 받고 있다.

각 나라마다 화폐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비를 실질적인 양육비에 상응하도록 증액하고, 점차 전체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3.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교육비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현재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빈곤 한부모가족에 있는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200만원, 2009년부터 학기당 230만원까지 '미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2학기부터는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도 학기당 110만원까지 '사랑드림'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에 대한 장학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의로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행정적 뒷받침이 약하다.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시도하고, 궁극적으로 인력양성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을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는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차액에서 '타지원액'을 뺀 금액을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로 제공한다. 예컨대, 2009년도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081,186원이고, 타지원액이 181,138원이므로 현금급여기준은 900,048원이다. 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주거급여로 최대 186,467원, 생계급여로 713,581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정에 소득인정액이 6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113,581원으로 감액되고, 좀더 열심히 일하여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이 된다면 생계급여는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1,081,186원 이상이 되면 수급자에서 박탈당하게 된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이 되면 생계급여는 213,581원으로 증액되므로, 단순 보충급여 방식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

보충급여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는 장애인, 자활사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자, 대학생이 일한 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를 한부모가족의 소득평가액 산정시에도 인정을 하면 한부모가족의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방식은 좀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을 포함하여 보육료 면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많은 영역에서 중복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번 수급자가 된 사람은 전생애동안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요부양아동가정부조 AFDC(Aid Family with Denedence Children)을 수정하여 '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책보조금'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개정하였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평생 동안 수급기간을 60개월(5년)로 제한하였고, 주 정부는 수급기간을 더 단축하거나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주당국이 수급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제도화시켰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지만, 복지제도로 말미암아 근로의욕이 지나치게 저하되고 의존적인 국민을 양산시킬 수 있는 것은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5.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부자가정을 위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유형의 가정에 비해 부자가정이 가장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정은 일반적으로 모자가정과 동일하게 일반가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 이외에 부자가정은 부의 가사능력 미숙, 남성의 사회적 특징상

상담대상의 부족 등 생활상의 문제들을 겪고 있다.

따라서 첫째로 부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단순히 저연령 아동에 대한 소액의 양육비지원, 학비지원, 복지자금 대출 대여 등의 형식적 지원에서 벗어나 부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로, 자녀양육과 취업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의 추진,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등 일상생활지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가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식사, 영양, 예절교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자가정에 대한 도우미 파견을 통한 가사지원 등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가정생활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로 부자가정의 자녀와 부가 갖고 있는 정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기능의 충실히 필요하다. 부자가정의 부는 모자가정의 모에 비하여 상담상대가 적으므로 부자가정의 부와 자녀가 가벼운 마음으로 모여 상담·교류,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의 제공과 더불어 심각한 정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끝으로 부자가정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급여와 복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교육, 노동, 주택, 생활환경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관계행정기관,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주민의 연계가 필요하며, 부자가정이 사회적 편견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6. 부자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2009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자보호시설 41개소이지만, 부자보호시설 1개소 밖에 없다. 전체 한부모가정 중에서 약 20%가 부자가정인 상황에

서 부자보호시설이 전체의 2.4%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성차별적인 정책이다. 또한 모자자립시설(3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14개소), 미혼모자시설(27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19개소), 미혼모공동생활가정(2개소)도 모두 모자가정 혹은 미혼모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볼 때, 향후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은 성차별적인 시설의 규모를 보다 균형있게 설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자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은 기존의 모자보호시설이나 모자자립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이나 독립생활가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자가정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사업인 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주택의 우선 입주자로 부자가정을 우대하고 공급물량의 일부를 부자가정에게 우선 할당하면 부자가정의 주거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모자·부자가정간의 성차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자가정이 각자 자신의 생활권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살 수 있도록 가사지원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영유아보육시설 등이 인접한 지역에 소규모 부자보호시설 혹은 독립생활가정을 두고, 부자가정이 자주적인 독립생활을 하면서 자녀보육, 가사, 아동생활지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7.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혼부모를 조기에 돕는 거점기관을 활성화시킨다.

선진 외국의 한부모가족의 발생요인을 보면, 배우자의 사망에서 이혼으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혼외출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혼외출산의 중요한 요인인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혼모가 조기에 상담,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교육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미혼모보호시설처럼 이미 발생된 미혼모를 일시적

으로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혼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핵심기능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8. 양육비조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양육비 확보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족법의 개정으로 2009년 11월 9일부터 이혼시 가정법원에 제출한 '양육비조서'에 의해서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별도의 소송이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이혼한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비 조서'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2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원의 법집행을 모니터링하고, 양육하고 부모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전체 센터로 확대하고, 이를 보다 조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옹호활동이 절실하다.

9.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계좌'를 지원한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가구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이미 수급자로 받았던 많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130%를 넘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억제하게 되는데, 소득 중에서 일정액을 '자립계좌'로 만들어서 장기간 저축을 하고, 그 금액을 자녀교육, 주거마련, 사업자금 등 가정의 실질적인

자립에 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을 제안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아동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만큼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발달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립계좌'를 제안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희망플러스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공제와 같은 법적 조치를 철저히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에게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하도록 하고, 그들의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시켜서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고용지원강화를 통한 자활중심의 복지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소득이전정책은 한부모가정이 처해있는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정의 가구주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추진되는 NDLP프로그램은 한부모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보육의 비용과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득증대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장을 알선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근로활동참여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11. 한부모가정을 위한 홈메이커 서비스를 제도화시킨다.

한부모가정 특히 부자가정에서 가장 호소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자녀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그리고 가사지원서비스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홈메이커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노인가족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가사지원 등)와 유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가사지원, 간병지원과 같은 개념으로 아동·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홈메이커로 양성하고, 이들이 한부모가정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개발하였듯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12.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을 제도화시킨다.

현재도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서 동반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동반자는 대개 3개월 정도 길어도 6개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는 멘토를 지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치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한부모가족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지도력이 있는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을 멘토로 지정하여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드림스타트센터와 같이 일정한 시설과 물적인 조건을 갖춘 기관이 멘토를 양성하여 배치하고 이들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좋겠다.

13.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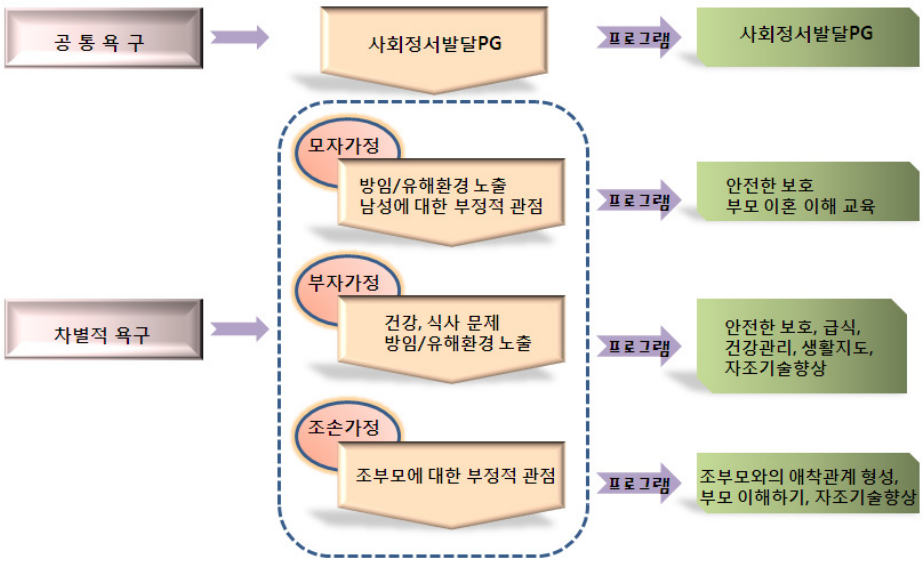

[그림 V-1] 위기가정 아동의 욕구와 프로그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살펴보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공통적 욕구는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이다.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은 자기감정 조절능력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인간관계 기술 향상, 친구사귀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소주제로 하여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특히 부자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식사 외의 다른 식사들을 아동·청소년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의 늦은 귀가로 인한 야간보호가 필요하며, 컴퓨터나 TV 등에 너무 오랜 시간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조손가정의 아동들은 조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이해하기, 자조기술 향상시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조부모들에게도 최근 아동·청소년 양육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조손간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4.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사정하고 이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조직이 필요하다.

(한)부모, 조부모 등의 양육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는가? 지역사회 내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시설, 단체,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만큼 실제로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은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경우 그 모든 시설, 단체,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어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림 V-2]에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나 양육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역사회의 지정된 조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 욕구사정을 한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연결해주고 이후 평가를 통해 욕구 충족 여부, 아동·청소년 발달 평가, 중복과 누락 심사 등을 하고 이 평가를 기초로 다시 욕구사정을 하는 것이다. 지역시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내의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욕구사정, 프로그램 제공,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가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보호망에서 아동·청소년이 벗어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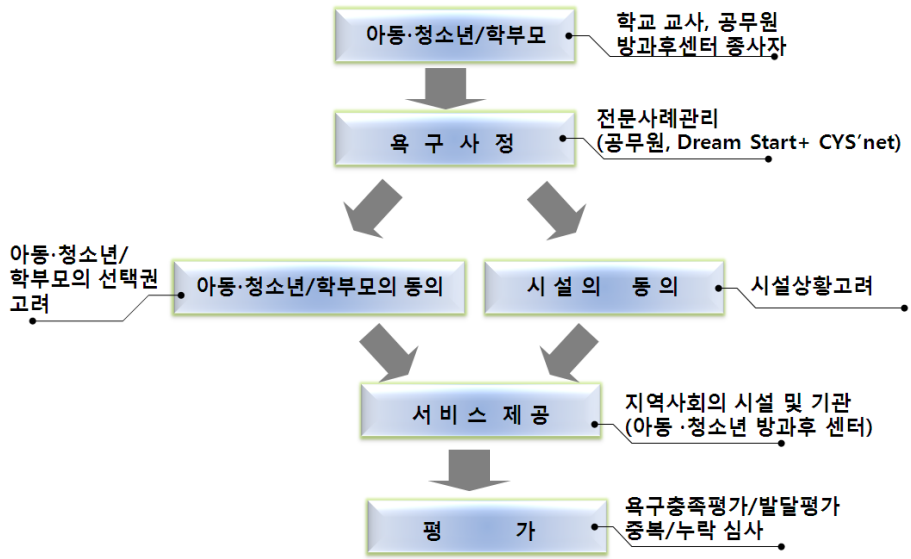

[그림 V-2] 서비스 흐름도

이러한 사회적 보호망을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각 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적 수준 즉,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 비용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컨설팅을 해야 한다. 최근 방과후 학교나 서울형 어린이집 등에 대해 많은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홍보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기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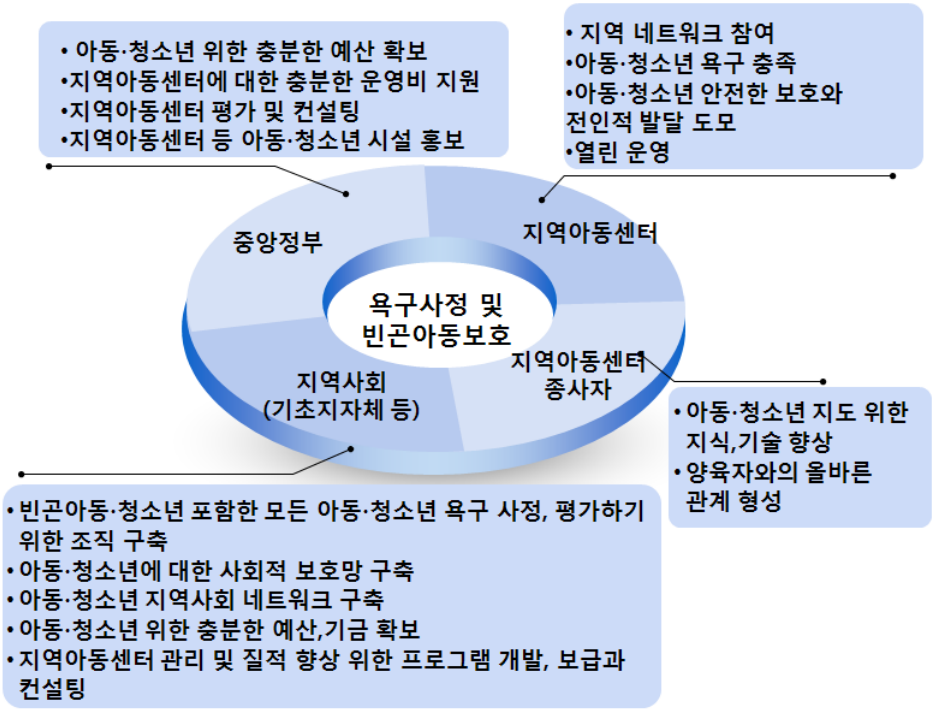

[그림 V-3] 사회적 보호망 구축을 위한 각 수준에서의 과제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사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와 연결하며 평가하여 이후 새로운 욕구를 다시 사정하고 충족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전문사례관리팀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양육상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전문사례관리팀은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CYS-net이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드림스타트의 경우 수급자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 내의 모든 수급자 아동들을 사례관리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 오히려 아동과 보호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자녀양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의 대상 아동이 중학생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한 CYS-net과의 협력으로 아동이 청소년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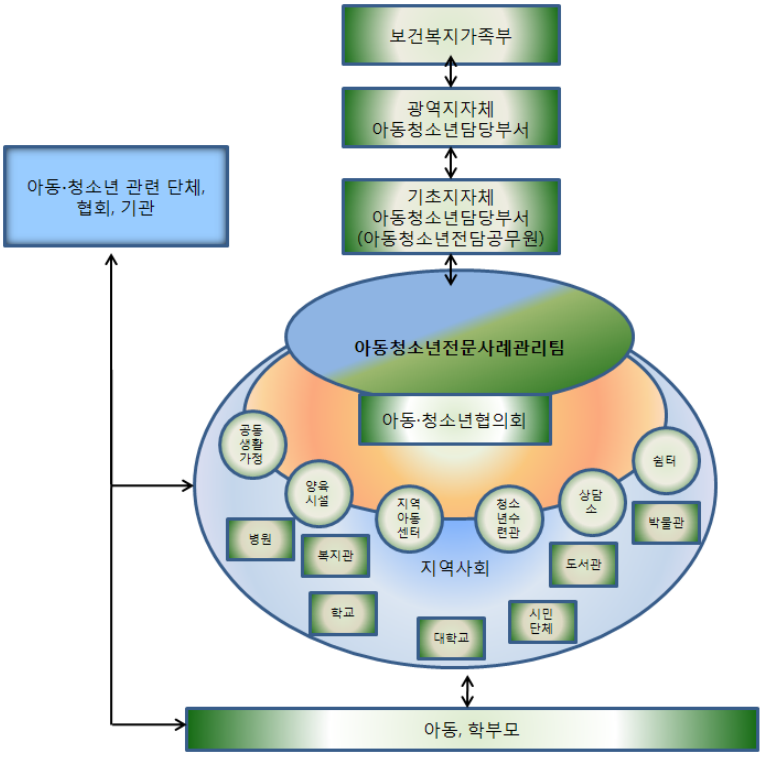

[그림 V-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따라서 전문사례관리팀은 아동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다를 지라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협력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서비스가 지나치게 문제 청소년이나 수급자 가정의 자녀들로 국한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자원 동원 체계를 구축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인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인지, 사회정서, 신체적 발달 등 아동·청소년 발달의 전 영역이 균형있게 발달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양육자 및 학교 교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15.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확대하고 지원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한부모가족만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제16조 제1항 11호에서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역사회에서 주로 방과후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급식제공 등을 하여 아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3,200여개소가 있고, 대개 한 개소당 30명 미만의 정원이므로 96,000여명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일반 가정집의 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에 지역사회에서 좀 더 많은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매월 시설당 약 3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계한 최소 지원액인 월 60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

16.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취업 정책을 개발한다.

빈곤한 부자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진로지도와 취업지도 이다. 중고등학교 시기는 장래를 위한 진로와 취업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취약계층청소년들의 경우, 진로 및 취업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매우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Misssion locale'이나 'CIDJ', 일본의 'Job Cafe'는 이를 위한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정비체제로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센터인 Job Cafe를 운영하고 있다. Job Cafe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조직으로서 지역 실정에 따라 설치되고 관민협동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학생, 프리터, 청소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직장체험, 개인상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厚生労働, 2003:12)[15]

프랑스의 Mission locale은 1982년 취약계층의 청소년이 학업을 일찍 중단하고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과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 두 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학업을 마친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거주 구역에 따라 정해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센터의 주 임무는 학업을 마치거나 중도에서 그만 둔 청소년들의 취업계획, 건강, 직업교육, 거주지 마련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2005년 이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 수는 115만 명으로 96만 명이 전문 관계자와 개별적으로 직

15)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중 job cafe 사례 참조

접 상담을 하였으며 매해 이용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35만5천 명의 청소년이 취업정보를 원했으며 6만8천 명이 보조직으로 취업했으며 23만 명이 직업교육을 받았다. 파리시에만 5개의 센터가 있다.[16]

17. 조손가정을 위한 전담 주치의, 간호사 방문 의료서비스 및 간병인 파견제도를 실시한다.

조손가정은 기본적으로 노인과 미성년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따라서 양육자 혹은 가구주인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노인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손가족 600가구 중 절만 이상이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20%의 조부모는 그 외에도 다양한 잦은 질병에 시달리는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건강을 유지하는 조부모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이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손자녀들도 영유아인 경우에는 부득이 잔병을 앓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양육자인 조부모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 지원은 이들의 생계서비스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단순히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경감 같은 경제적 대책 이외에도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나 혹은 간호사 등이 관할 지역의 조손가족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이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치료비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과 치료방법에 대한 불신 등이 질병 치료를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비용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관할지역의 조손가족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가족들의 건강 전반을 진단하고, 이들이 적

16) 프랑스의 청소년복지정책 중 Mission locale 사례 참조

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장기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손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이들을 전담하여 간병할 자체 인력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이는 곧 생활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손자녀의 결식이나 학교 결석 및 학업중단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미성년인 손자녀가 조부모 간병으로 인해 자신의 성장에 필수적인 학교생활을 포기하거나 손자녀의 간병으로 다시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이들 조손가족에 간병을 요하는 질환자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간병인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간병인이 해당 조손가족을 방문하여 환자를 간병하고, 간병 과정에 대해 담당 사회복지사나 주치의가 감독하여 질환자가 있는 조손가족이 그로 인해 다른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공공간병지원제도의 수립도 적극 고려해야 할 제도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선아(2006). 한부모가정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강욱모(2004). 한부모가족과 빈곤: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한국사회복지학, 56(1), 127-153.

강혜준(2006). 초등학생을 둔 한부모가정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고생순(2001). 저소득 부자가정의 아동양육의 실태와 정책과제.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고정자(2004). 한부모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제29권, pp. 277-302.

김미곤・양시현・최현수(2006).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제 26권 제1호, pp. 3-35.

김미숙(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지역아동센터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114, pp.78-90.

김미숙・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7권 제1호, pp. 3-26.

김미숙・조애저・배화옥・김효진・홍미(2007). 한국의 아동빈곤 실태와 빈곤아동 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이・채구묵(1997). 욕구조사론. 서울 :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김순애(1987).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 형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김은정(2007).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재진(2009).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재정포럼, 2009년 6월

김정은(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지역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안녕과 영향 미치는 요인.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자(1984). 편부모가정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학주(2004). 미국의 한부모 가족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한국가족복지학, 13, pp. 77-102.

김혜선(2005). 농촌과 도시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제 28권 pp. 341-378.
김환준, (2003).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복지학, 53, pp. 129-153.
민가영(2004).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박대식(2008). 미국의 복지개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소혜(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창기(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 논문.
박현선(1998a).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박현선(1998b).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호, pp. 23-52
박혜준(2008).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의사소통향상을 위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효과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방진희(2005). 저소득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백나경(2005).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아동·청소년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혜석(2004).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pp. 409-439
성지혜(2001).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손덕순·공선영·김지애(2007).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 가족 여성 개발원.
송미원(1999).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성자(2002).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신건희(1995). 새로운 가정문제 부자가정에 대한 소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논총 제 1권. pp. 73-116.
신상숙(2005). 부자가정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신수자(1995). 부자가정의 특성과 대책.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신용주(2001). 영국의 한부모정책. 한국여성학, 17(2), 129-156.
신은정(2004). 조부모손자녀세대의 가족기능과 손자녀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재민(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안경순(2007), “조손가족에서 아동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천정웅 이용교 편저, 적극적 관점의 아동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안진희(2005).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양수경(2006). 조손가정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여성부(2007). 2007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오승환(2001).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2호, pp. 77-107.
유경애(1985), 부친부재가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산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5권, pp. 359-383.
유안진(1995). 아동양육. 서울: 문음사.
유재선(1989). 결손 및 정상가정 학생의 성격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2008).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명숙(2009).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국정과제 세미나 자료
이상매(2004). 위기가정 가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소희 외(1997). 가족복지. 서울: 형설출판사
이애재(1999). 편부모 가족기능 요인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이여봉(2003).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이영주(1999). 부자가정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재연·백정재(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제12권 1호, pp. 71-93
이정이(2007). 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 지각의 조절효과.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채영(200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형태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화영(2007). 저소득 조손가정 조부모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이화진(2004). 조손세대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지지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희섭(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 논문.
장병림(1984). 아동심리학. 서울: 법문사
장혜경・김혜영・김영란・송다영(2005). 모자가족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7). 빈곤가정 아동의 실태 및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현안문제에 대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정책 제언.
전재일・이성희・남연희(1999). 부자가정의 실태와 복지정책. 사회복지개발연구원출판부.
전제일・양점도(1991). 청소년 비행의 가정환경적 요인특성. 사회복지연구 제 1권. pp. 65-83.
전창진(2007). 조손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정윤남(2002). 부자가정 자녀의 생활상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저소득 부자가정 청소년 중심으로. 광주산업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정지연(2007). 부자가정의 가족기능과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정효미(2006).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지역아동센터보고서(2009). 미발간.

차순호(2003). 한 부모 가정의 아동 및 부모부재 가정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최은희(2006). 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지원 방안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최해경(2006). 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적응유연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23권, pp. 37-58.
통계청(1996-2007).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통계청(2001-2006). 가계조사. 각 년도.
통계청(2003-2006). 소득5분위별 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가계조사. 각 년도.
통계청(2006). 2006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개발연구원 편(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여성복지연구회(2005). 가족복지론. 서울: 청목.
한민수(2002).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소외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황덕순, 이바르 뢰드멜, 히더 트럭커(20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Ackerman, B. & Alstott, A. (1999). *The stakeholder socie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Amato, P. R. & Rivera, F. (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pp. 372-384
Blank, R. (1997). *It takes a N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Blank, R. M. (1996). Why has economic growth been such and ineffective tool against poverty in recent years? In J. Neill (Ed.). *Poverty and Inequality: The political economy of redistribution* (27-41).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Block, J.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 control & ego resiliency in organig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Brooks-Gunn(1993). Why do young adolescents have difficulty adhering to health regimes? In N. Krasnegor, L. Epstein, S. B. Johnson & S. J. Yaffe (Eds.), *Developmental aspects of health compliance behavior* (pp. 125-15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Brown, L. B., (2003). Grandparents Raising Grand children: An In-depth Phenomenological Study. The New Mexico State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Child Poverty Unit(2008). *Ending child poverty*: Making it happen. London: Crown.

Clark, R. (1983). Family life and school achievement: Why poor Black Children suceed or fail. Chicago: University Chicago Press.

Curley, J. & Sherraden, M. (1998). *The history and status of children's allowances: Policy background for children's savings account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Sain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2000). *Fact Sheets on Social Securety-Lone Parents*. London: Crown.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5). *Opportunity for all: The seventh annual report*. London: Crown.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2007).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An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1994/95-2006/07. London: Crown.

DfEE (1998) *National Childcare Strategy*,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Dodge, K. A. & Feldman, E. (1990). Issue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19-15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dge, K. A. & Newdman, J. P. (1981). Biased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aggressive boys. Journal of Alnormal Psychology, 90, pp. 375-379.

Dolton, P., Smith, J. & Azevedo, J. P. (2008). *The impact of the UK New Deal for Lone Parents on Benefit Receipt*. London: Crown.

DoToledo, S. & Browun, D. (1995). *Grandparents as parents: A survival gruide for raising a second family.* New York: Guilford Press.

Downey, D. B. (1994).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Economic or interpersonal depriv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5, pp. 129-147.

Downs, s. w. Costin, L. B. & Mcfadden, E. J. (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white plains, NY: Longman.

English, D. (1998).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The future of Children, 8(1), pp. 39-53.

Evans, M., Eyre, J., Millar, J., & Sarre, S. (2003). *New Deal for Lone Parents: Second Systhesis Report of the National Evaluation.*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Working Paper W163. London: DWP.

Fields, J. (2003). *Children's living arrangements and characteristics: March 2002.* Washington, DC: United States Census Bureau.

Finlayson, L., & Marsh, A. (1998) *Lone Parents on the Margins of Work.* DSS Research Report No. 80, CDS: Leeds.

Fordhand, R, Middleton, R & Longo, N(1987). Adolescent Functioning and consequence of recent parent divorce and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8, 305-315.

Fuller-Thompson, E., & Minkler, M. (2000). America's grandparent caregivers: Who are they? In B. Hayslip & R. Goldberg-Glen (Ed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oretical, empirical and clinical perspectives* (pp. 3-21).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Garm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pp. 416-430.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pp. 127-136.

Gerard, J. M. & Buehler C. (1999). Multiful risk factore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pp. 343-361.

Gilbert, N. & Terrell, P. (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New York: Allyn & Bacon.

Gouze, K. R. (1987). Atten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as correlates of aggression in preschool males. Journal of Alnormal Psychology, 15, pp. 181-197.

Gregg, P., Harkness, S., & Smith, S. (2007). *Welfare reform and lone parents in the UK.* CMPO Working Paper Series No. 07/182.

Grych, J. H., & Fincham, F. D., (1992).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ve : Toward Greater Integration of Research and A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3), 433-454.

Guidubaldi, J., Joseph D. Perry & Cleminshaw, H, K (1984). The legacy of parental divorce. In B. B. Lahey & A. E. Kazdin(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7, 109-151. New York Plenum Press.

Hales, J ., Lessof, C., Roth, W., Gloyer, M., Shaw, A., Millar, J., Barnes, M., Elias, A., Hasluck, C., McKnight, A., & Green, A. (2000). *Evaluation of the New Deal for Lone Parents Early Lessons from the Phase One Prototype-Synthesis Report*.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Research Report No 108.

Harris, K. M. Furstenberg, Jr. F. F. & Marmer J. K. (1998). Paternal involvement with adolescent in intact families: The Influence of fathers over the life course. Demographt, 35(2), pp. 201-216.

Haskins, R. & Primus, R. M. (2001). F*ive years after welfare reform: An agenda for reauthoriza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Haveman, R. (1997). Welfare report: 1996 style. In J. Neill (Ed.). *Poverty and Inequality: The political economy of redistribution* (9-25).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Hayslip, B. & Kaminski, P. L. (2005). Custodial grandchildren: Improving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fforts to help grandparents. *Children and Families*, 18(3), 26-33.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a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Hirsch, D. (2006). *What will it take to end child poverty?* York: Joshep Rowntree Foundation.

Hirsch, D. (2008). *What is needed to end child poverty in 2020?* York: Joshep Rowntree Foundation.

HM Treasury. (2004). *Child Poverty Review.* London: Crown.

HM Treasury. (2008). *Ending child poverty: everybody's business.* London: Crown.

Houtman, s. (1999). To grandma's house we stay: When you have to stop spoiling your grandchildren and start raising them. Northridge, CA: Studio 4 Productions.

Huston, A. C. (1991).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possible solutions for poverty among children. In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 282-315).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ymel, S. Wagner, E. & Butler, L. J. (1990). Reputational bias: View from the peer group.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56-18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 Bowlby(2000). Attachment and Loss, Harmondworth: Penguin Books.

Kirby L. D.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raser (Ed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Washington, DC: NASW Press.

Liaw, E. & Brooks-Gunn, J (1994). Cumulative familial risk and low-birthweight children's cognitive and behavioral develop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pp. 360-372.

Lurie, L. (2001). Changing welfare offices, *Policy Brief* (Welfare Reform & Beyond). 9. The Brookings Institution

Mayer, S. E. (1997a).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cKay, S., & Marsh, A. (1994) *Lone Parents and Work,* DSS Research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pp. 311-346.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pp. 185-204.

Minoff, E. (2006). *The UK Commitment: Ending Child Poverty by 2020.* 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Working Paper. Washington, DC: 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Mishel, L., Bernstein, J., & Allegretto, S. (2005).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4/2005*. Economic Policy Institute,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Study findings: Study of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Council for One Parent Families. (2007). *Lone Parent Facts*. Available at: http://www.onefamilies.or.uk/fact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7). *Focus on Families*: 2007.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Report No 25 HMSO: London.

Patterson, G. R. & Bank, L. (1989). Some amplifying mechanisms for pathologic processes in families. In M. R. Gunnar & e. Thelen (Eds.), Systems and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22, pp. 167-20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Perry, D. G., Kusel, S. J., & Perry,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pp. 807-814.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5-307.

Rogers, A., & Henkin, N. (2000). School-based interventions for children in kinship care. In B. Hayslip, Jr., and R. Goldberg-Glen(Ed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oretical, empirical, and clinical perspectives. 221-238, N. Y. Springer. 265.

Rutter, M. (1990).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181-214). New York: Cambridge.

Sedlak, A., & Broadhurst, D. D. (1996). Third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immonds, D., & Bivand, P. (2008). *Can work eradicate child poverty?* York: Josheph Rowntree Foundation.

Starr, R. H.., Maclean, D. J. & Keating, D. P. (1991). Life-span development outcomes of child maltreatment. In R. H. Starr & D. A. Wolfe (Eds.),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sues and research (pp. 1-32). New York: Guilford Press.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4).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03. Current population report. Census Bureau, Washington, D.C.

Werner, E. E. & Smith, R. S. (1987).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Hill.

Werner, E. E. (199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childhood intervention (pp. 97-116),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seman, M (2001). Making work for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in I. Lodemel, & H. Trickey(Eds.) *An offer you can't refuse: Workfar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 215-247). New York: The Polity Press.

Zimmerman, M. A. Salem, D. A., & Maton, K. I. (1995). Family structure and psychosocial correlates among urban African-American adolescent males. Child Development, 66, pp. 1598-1613.

内閣府(2009). 2009년도 少子化社會白書.
内閣府(2008). 2008년도 青少年白書.
厚生勞動省(2008). 2008년도 厚生勞動白書.
大阪市 健康福祉局(2009). 大阪市次世代育成支援行動計劃(2009. 3. 16).
田澤あけみ・福知栄子·林浩康(2002). 新兒童福祉論. 法律文化社.
山縣文治(2005). 兒童福祉論. ミネルヴァ書房.
成清美治·吉弘淳一(2008). 兒童福祉. 学文社..
鈴木幸雄・金城悟(2007). 兒童福祉概論. 同文書院.
千葉茂明(2007). エッセンシャル児童福祉論. みらい.
遠藤和佳子・松宮満. 児童福祉論 シリーズ · はじめて学ぶ社会福祉. ミネルヴァ書房.
西館有沙・德田克己・高玉和子編著(2009). 子ども支援学. 文化書房博文社.
古川孝順・田澤あけみ(2008). 現代の兒童福祉. 有斐閣ブックス.
厚生勞動省. 2006年度 全國母子世帶等 調查結果報告.
公的扶助研究會(2007). 「座談會 兒童扶養手當と母子加算の削減を通して母子世帶の生活實踐考える」『公的扶助研究』206號.
子どもと保育總合研究所(2007). 最近保育資料集. ミネルヴァ書房.

부 록

1.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설문지
2.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지

전문가 의견조사서

※ 본 조사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복지욕구(체감적 욕구)외에 지역아동센터의 실무자들이 이들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욕구(규범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오니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귀 기관명 : _____)

2.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점이나 특성**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부자가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조손가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귀 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두** 표시해 주시고, 차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3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구영역	서비스 프로그램		현재실시 여부	앞으로 희망여부
생존욕구	의	세탁서비스		
	식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식사준비 및 취사서비스 제공		
	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배, 수리)		
	건강	이・미용 서비스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		
		무료진료		
		음주나 흡연교육		
	경제	현금지원(생활비 및 장학금)		
		아르바이트 알선		
관계욕구	부모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		
	친구	또래지지프로그램		
	이웃	멘토링프로그램		
성장욕구	자아 개발	개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 리더쉽 등)		
	여가 문화	사회교육(컴퓨터, 수영, 피아노 등)		
		동아리 활동		
		청소년캠프		
	진로 직업	학습지도		
		진로지도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		

*** 위의 프로그램 이외에 귀 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부자가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조손가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음 기관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학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지역아동센터: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설문지 NO.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또한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금 귀찮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137-715)
연구책임자 : 이혜연
(TEL: 02.2188.8834)

200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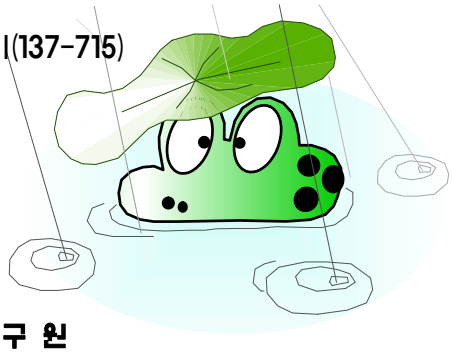

한 국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

Ⅰ.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 자신과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믿음직스럽다.	1	2	3	4
2) 나는 섬세하다.	1	2	3	4
3) 나는 과묵하다.	1	2	3	4
4) 나는 결단력이 있다.	1	2	3	4
5) 나는 상냥하다.	1	2	3	4
6) 나는 대범하다.	1	2	3	4
7) 나는 따뜻하다.	1	2	3	4
8) 나는 감성이 풍부하다.	1	2	3	4
9) 나는 지도력이 있다.	1	2	3	4
10) 나는 의리가 있다.	1	2	3	4
11) 나는 유순하다.	1	2	3	4
12) 나는 모험적이다.	1	2	3	4
13) 나는 자신의 신념을 주장한다.	1	2	3	4
14) 나는 친절하다.	1	2	3	4
15) 나는 온화하다.	1	2	3	4
16) 나는 다정다감하다.	1	2	3	4
17) 나는 강하다.	1	2	3	4
18) 나는 독립적이다.	1	2	3	4
19) 나는 꼼꼼하다.	1	2	3	4
20) 나는 얌전하다.	1	2	3	4

2.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7)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8)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부족하다.	1	2	3	4
9)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10) 때때로 나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3. 자신과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롭다고 느낀다.	1	2	3	4
2) 잘 운다.	1	2	3	4
3)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봐 두렵다.	1	2	3	4
4)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6)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1	2	3	4
7)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	2	3	4
8)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9)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10) 걱정이 많다.	1	2	3	4

4. 자신과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쉽게 피로해진다.	1	2	3	4
2)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졌으면 한다.	1	2	3	4
3) 나는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밀려닥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4) 나는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5) 나는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한다.	1	2	3	4
6)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7)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쓴다.	1	2	3	4
8) 사소한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1	2	3	4
9) 나는 실망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머릿 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1	2	3	4
10) 나는 걱정거리나 관심거리를 생각하면 긴장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자신과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누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맞서서 때린다.	1	2	3	4
2) 나는 화가 났을 때 심한 말을 한다.	1	2	3	4
3) 나는 누군가가 나를 놀리면 크게 화를 낸다.	1	2	3	4
4) 나는 치고, 부수고, 때리는 TV 또는 영화나 게임을 좋아한다.	1	2	3	4
5)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1	2	3	4
6) 나는 심한 장난을 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7) 나는 화가 났을 때, 문을 '쾅' 닫는다.	1	2	3	4
8) 나는 미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를 좋아한다.	1	2	3	4
9) 나는 남을 약 올리면 기분이 좋게 느껴진다.	1	2	3	4
10)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못살게 군다.	1	2	3	4

6. 다음은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사일과 직업입니다.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자에 V표,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자에 V표, 남・여 모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여모두에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남자	여자	남녀모두
1) 운전하기			
2) 아기 돌보기			
3) 고장난 물건 고치기			
4) 청소하기			
5) 빨래하기			
6) 무거운 짐 나르기			
7) 다림질하기			
8) 전구, 형광등 갈아끼우기			
9) 시장보기			
10) 설거지하기			
11) 국회의원			
12) 간호사			
13) 의사			
14) 미용사			
15) 경찰관			
16) 사업가			
17) 의상 디자이너			
18) 유치원 선생님			
19) 무용가			
20) 비행기 조종사			

7.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나요?

___ ①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___ ②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___ ③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___ ④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8. 2009년 1학기에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며칠입니까?

___ ① 없다 (→ 9번으로) ___ ② 1-2번
___ ③ 7일 정도 ___ ④ 보름 정도 ___ ⑤ 한 달 정도 ___ ⑥ 한 달 이상
(**②~⑥ 중 한 곳에 응답한 사람**은 → 8-1번으로)

8-1. 학교를 결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하나만** 고르세요)

① 학교준비물, 수련활동비 등이 없어서 ② 가사를 돕기 위해(집안일, 생활비 마련 등)
③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④ 몸이 아파서
⑤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⑥ 선생님이 싫어서
⑦ 가출을 해서 ⑧ 공부하기 싫어서
⑨ 친구들이 싫어서 ⑩ 성적이 나빠서
⑪ 학교 규칙에 얽매이기 싫어서 ⑫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진로와 맞지 않아서

9.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2가지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

① 부모님이 안계심 ② 부모님의 불화 ③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④ 부모님의 무관심 ⑤ 부모님의 실직 ⑥ 부모님의 음주
⑦ 가족의 질병 ⑧ 집안 식구의 가출 ⑨ 경제적 어려움
⑩ 가족 간의 폭력(부모자녀 간, 형제간) ⑪ 기타 (_____)

10. 20년 후에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___ ① 매우 행복할 것이다
___ ② 약간 행복할 것이다
___ ③ 그저 그럴 것이다
___ ④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___ ⑤ 전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11. 다음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없었다	6개월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1주일 1-2번 정도
1)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혹은 주먹으로 맞거나) 몽둥이로 맞았다.	1	2	3	4
2)부모님이 위험한 도구로 나를 위협했다.	1	2	3	4
3)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1	2	3	4
4)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셨다.	1	2	3	4
5)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6)나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12. 다음과 같은 경험을 지난 얼마나 자주 직접 해보았는지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	2	3	4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	2	3	4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	2	3	4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	2	3	4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	2	3	4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8)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1	2	3	4
9)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1	2	3	4
10)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1	2	3	4

Ⅱ. 여러분의 의식주, 의료·보건 및 건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최근(2009년 1학기 이후)**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경험은? (**모두** 고르세요)
___ ① 없음 (→ 2번으로)
___ ②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질환
___ ③ 안과질환
___ ④ 충치 및 잇몸질환
___ ⑤ 위장 및 내과질환
___ ⑥ 피부질환(아토피, 습진, 부스럼 등)
___ ⑦ 결핵 및 폐질환
___ ⑧ 성 관련 문제나 질병
___ ⑨ 백혈병, 암 혹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
___ ⑩ 각종사고(교통사고, 부주의사고)로 인한 질병

1-1. 치료를 받았나요?
① 모두 치료받음 (→ 2번으로) ② 일부 치료 받음 ③ 전혀 치료받지 못함
(**②~③ 중 한 곳에 응답한 사람**은 → 1-2번으로)

1-2. 무슨 이유로 치료받지 않았나요? (**하나만** 고르세요)
① 증세가 가벼워서 ② 치료비가 없어서 ③ 거리가 멀어서
④ 의료보험이 없어서 ⑤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⑥ 치료가 무서워서
⑦ 귀찮아서 ⑧ 몸이 불편해서(움직일 수 없어서) ⑨ 기타_____

2.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 가족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집안에 환자가 있어 가족 간에 심리적인 갈등이 있다.
___ ② 경제적 부담(약값, 병원비) 등이 크다.
___ ③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전혀 못 받고 있다.
___ ④ 간병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제약이 있다.
___ ⑤ 어려움이 전혀 없다.
___ ⑥ 기타(_____)

3. 여러분은 현재 누구와 함께 방을 쓰고 있습니까?
___ ① 혼자 ___ ② 형제 ___ ③ 부모님
___ ④ 온 가족 ___ ⑤ 기타 (_____)

4. 여러분은 다음 중 어느 장소를 공부방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___ ① 사설 독서실
___ ② 공공독서실과 구립・시립도서관
___ ③ 지역아동센터・방과후공부방
___ ④ 학교 교실이나 도서관
___ ⑤ 집
___ ⑥ 기타 (_____)

5.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바꿨으면 하는 것 2가지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

① 화장실 보수 및 개조 ② 샤워 시설 설치 ③ 혼자 쓸 수 있는 방
④ 좁은 실내 공간 ⑤ 온수시설이 없음 ⑥ 부엌 개조
⑦ 기타 (_____)

6. 여러분의 한 달 평균 용돈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단,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 학원비 등을 제외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 용돈이 없을 경우에는 '없다' 고 적으십시오.

(약_____원)

6-1. 여러분은 용돈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매우 넉넉하다
___ ② 약간 넉넉한 편이다
___ ③ 적당하다
___ ④ 부족한 편이다
___ ⑤ 매우 부족하다

6-2. 여러분의 한달 평균 용돈으로 어느 정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약_____원)

6-3. 용돈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무엇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까?
___ ① 의복비(신발, 의복, 가방, 악세사리 등)
___ ② 문화교양비(영화, 연극관람, 도서구입)
___ ③ 교제비(친구들과 만날 때 쓸 돈)
___ ④ 오락비(오락실, PC방)
___ ⑤ 외식비(간식 및 군것질)
___ ⑥ 기타 (_____)

7. 여러분은 일(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예(→ 7-1번으로) ___ ② 아니오(→ Ⅲ-1번으로)

7-1. 한달 평균 얼마 정도를 벌었습니까? (약_____원)
7-2. 어떤 일로 돈을 벌었었는지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___ ① 신문배달 ___ ② 주유소 주유원
___ ③ 물품 판매(편의점 등) ___ ④ LPG 가스배달
___ ⑤ 음식점에서 배달업(중국집 등)
___ ⑥ 음식점에서 서빙(패스트후드점, 분식점 등)
___ ⑦ 광고지 배포
___ ⑧ 기타/꼭 적어주세요(_____)
7-3.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___ ① 용돈이 필요해서(학용품 구입이나 친구만남을 위해)
___ ② 학교등록금이나 학원비에 보태기 위해서
___ ③ 가정의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___ ④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___ ⑤ 기타 (_____)

8. 지난 한 달 동안 식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예(→ 8-1번으로) ___ ② 아니오(→ Ⅲ. 가족,학교,지역사회 질문으로)

8-1. 지난 한 달 동안 식사를 거른 횟수는 몇 번입니까?

횟수 (_____)번 정도

8-2. 식사를 거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___ ① 시간이 없어서 ___ ②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___ ③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서 ___ ④ 돈이 없어서
___ ⑤ 기타_____

Ⅲ. 여러분의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여러분의 부모님(혹은 부모님 역할을 대신 해 주시는 어른)은 어떠한지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	1	2	3	4
2) 나의 능력을 존중해준다.	1	2	3	4
3)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1	2	3	4
4) 내가 필요할 때 가지고 있는 것(물건,장소)을 주거나 빌려준다.	1	2	3	4

2. 여러분의 친구는 어떠한지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	1	2	3	4
2) 나의 능력을 존중해준다.	1	2	3	4
3)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1	2	3	4
4) 내가 필요할 때 가지고 있는 것(물건,장소)을 주거나 빌려준다.	1	2	3	4

3. 여러분의 학교선생님 어떠한지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	1	2	3	4
2) 나의 능력을 존중해준다.	1	2	3	4
3)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1	2	3	4
4) 내가 필요할 때 가지고 있는 것(물건,장소)을 주거나 빌려준다.	1	2	3	4

4.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지역아동센터(복지관)의 선생님은 어떠한지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준다.	1	2	3	4
2) 나의 능력을 존중해준다.	1	2	3	4
3) 내가 무언가 의논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된다.	1	2	3	4
4) 내가 필요할 때 가지고 있는 것(물건,장소)을 주거나 빌려준다.	1	2	3	4

5. 여러분은 주말이나 휴일에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___ ① 혼자 ___ ② 아버지 ___ ③ 어머니
___ ④ 형제자매 ___ ⑤ 친척어른 ___ ⑥ 할머니나 할아버지
___ ⑦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___ ⑧ 친구 ___ ⑨ 기타 (_____)

6. 여러분은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캠프나 스포츠활동 등 부모님과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참여하겠습니까?

___ ① 참여하겠다(→ 6-1번으로) ___ ② 참여하지 않겠다(→ 6-2번으로)

6-1. 다음 중 어느 프로그램에 가장 참여하고 싶습니까?
___ ①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___ ② 공연이나 콘서트 관람
___ ③ 우리 가족만의 단기 여행
___ ④ 여러 가족이 함께 하는 캠프나 야유회
___ ⑤ 레포츠나 스포츠 활동
___ ⑥ 기타(_____)

6-2.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흥미가 없어서
___ ② 부모님이 바빠서 함께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___ ③ 부모님이랑 함께 하는 것이 창피해서
___ ④ 프로그램 내용이 식상할 것 같아서
___ ⑤ 참가비용이 우리 가정형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___ ⑥ 기타(_____)

7.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학교 밖의 장소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싶습니까?
횟수 (_____)번 정도, 어울리는 장소 (_____)

7-1.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장 원하십니까?
___ ①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
___ ② 학교 공부를 함께 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___ ③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___ ④ 나에게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며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친구
___ ⑤ 기타 (_____)

8.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정도

9. 현재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만** 고르세요)

___ ① 부족한 학습의 보충을 위한 학습지도
___ ② 여가 및 운동, 문화활동 지도
___ ③ 가사서비스
___ ④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능력의 향상 지도
___ ⑤ 기타 (_____)

10. 학교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예: 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행사참여,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있다(→ 10-1번으로 ___ ② 없다(→ Ⅳ. 교육, 문화, 지역사회서비스 질문으로)

10-1. 여러분이 학교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예: 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행사참여,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V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1	2	3	4
3)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1	2	3	4
4) 나도 언젠가는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1	2	3	4

Ⅳ. 여러분의 교육, 문화 및 정보활동, 여가 및 취미 활동,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중학교 졸업 후, 어떤 진로를 택하고 싶습니까?

___ ① 일반계고등학교
___ ② 실업계고등학교
___ ③ 취업
___ ④ 기타 (_____)

1-1. 앞의 질문에서 해당학교를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취업이 유리해서 ___ ② 경제적인 이유로

___ ③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___ ④ 학업성적이 부진해서

___ ⑤ 적성에 맞아서 ___ ⑥ 기타 (_____)

1-2.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합니까?

___ ① 중학교 졸업 ___ ② 고등학교 졸업

___ ③ 대학교 졸업 ___ ④ 대학원 이상

2. 자신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3번으로) ② 아니오(→ 2-1번으로)

2-1.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고르세요.)

___ ① 성적이 안 좋아서

___ ② 경제적인 이유로

___ ③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___ ④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필요가 없어서)

___ ⑤ 기타 _____

4. 학원이나 개인(집단)지도를 받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못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있다 ___ ② 없다

5. 여러분은 학교공부 외에 현재 학원에 다니거나 개인(집단)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V 표시해 주세요.

___ ① 가정교사 과외 ___ ② 학습지 구독 ___ ③ 속셈·주산·부기학원

___ ④ 컴퓨터 학원 ___ ⑤ 체육관(태권도, 수영 등) ___ ⑥ 입시 학원

___ ⑦ 영어학원 ___ ⑧ 지역사회복지관(피아노, 태권도, 영어, 컴퓨터, 수영 등)

___ ⑨ 피아노 학원 ___ ⑩ 지역아동센터(학습지도, 피아노, 미술 등)

___ ⑪ 없다 ___ ⑫ 학교방과후활동 ⑬ 기타 (_____)

5-1. 위의(5번) 활동 중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 2가지만 그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_____,_____)

6. 아래의 <보기>에서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_____,_____

<보 기>

1) 교사	2) 교수	3) 과학자	4) 공무원	5) 정치인(국회의원)
6) 판사, 변호사, 검사		7) 의사, 약사	8) 간호사	9) 농·축·수산업자
10) 자영업자	11) 사업가・전문경영인		12) 회사원 ,은행원	
13) 기술자	14) 건축가	15) 파일럿(비행기조종사)		16) 스튜어디스
17) 경찰	18) 군인	19) 방송관계자(작가, PD, 기자, 아나운서 등)		
20) 만화가	21) 컴퓨터 프로그래머		22) 의상 디자이너	
23) 헤어디자이너	24) 연예인	25) 영화감독	26) 운동선수	27) 사회복지사
28) 성직자(신부, 목사, 승려 등)		29) 요리사	30) 기타	

7.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표시하세요)

___ ① 휴대폰 ___ ② MP3 ___ ③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 ___ ④ 가지고 있지 않다

8. 아래의 <보기>에서 자신이 방과 후 혹은 주말 등의 자유 시간에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을 **3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

<보 기>

1) 집안일 돕기	2) 집에서 휴식	3) 독서	4) TV시청	5) 음악·영화감상
6) 예술 활동(그림, 사진, 연주 활동 및 관람)			7) 스포츠 활동	8) 친구 만나기
9) 인터넷·컴퓨터 게임		10) 아르바이트	11) 종교 활동	12) 동아리 활동
13) 개인적 학습활동		14) 여행	15) 쇼핑하기	16) 자원봉사
17) 산책(길거리 돌아다니기)		18) 기타		

8-1. 위의 <보기>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3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

9. 여가나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시간이 부족하다 ___ ② 비용이 부담된다

___ ③ 함께 할 사람이 없다 ___ ④ 적절한 장소 및 시설이 없다

___ ⑤ 어디서 어떻게 즐겨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___ ⑥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 ___ ⑦ 기타(_____)

10. 여러분은 한 달에 평균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_____) 권

10-1. 여러분은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즐겨 읽습니까? 2 가지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___,___)

① 교양서적(과학, 철학, 종교, 소설, 역사 등)

② 생활, 취미, 정보서적(컴퓨터, 디자인 등)

③ 만화책 ④ 주리 및 범죄물 ⑤ 성에 관련된 책

⑥ 무협지 ⑦ 하이틴 로맨스 ⑧ 기타 (_____)

1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앞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서비스**를 모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현재 이용여부	앞으로 희망여부
의	세탁서비스		
식	급식지원, 밑반찬제공		
	식사준비 및 취사서비스 제공		
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배, 수리)		
건강	이·미용 서비스		
	운동지도 및 기구대여		
	무료진료		
	음주나 흡연교육		
경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지원(생활비 및 장학금)		
	아르바이트 알선		
부모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친구	친구와 좋은 관계맺기 프로그램		
이웃	멘토링프로그램		
자아 개발	개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집단프로그램(인간관계, 리더쉽 등)		
여가 문화	사회교육(컴퓨터, 수영, 피아노 등)		
	동아리 활동		
	청소년캠프		
진로 직업	학습지도		
	진로지도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취업소개		

Ⅴ.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세요.

___ ① 할아버지 ___ ② 할머니 ___ ③ 아버지 ___ ④ 어머니

___ ⑤ 형제 또는 자매 ___ ⑥ 기타 친척 ___ ⑦ 기타 _____ ___ ⑧ 없음

4. 자신의 가정형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5. **현재**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① 결혼 또는 재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모름

6.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 각각의 학력에 V 표시해 주세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봐주는 사람은 7번으로)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경우, 할아버지·할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학력에 V 표시해 주세요.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1) 할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할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본인의 학교 성적에 V 표시해 주세요.

성적	매 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 준	중간	잘하는 수 준	매 우 잘하는 수준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영역	①	②	③	④	⑤
(5) 과학영역	①	②	③	④	⑤

9.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요?

( )시/도 ( )시/군/구 ( )구 ( )동/읍/면

※ 살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동/읍/면 으로 표기

※ 살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동/읍/면 으로 표기

♣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 · 안선영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 · 장원섭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Ⅶ :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 · 안선영 · 이계오 · 이미리 · 김성식 · 김명희 · 박일혁

09-R02 아동 · 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 · 김영애 · 조선하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 · 김성언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09-R04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 · 송병국 · 김혁진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박병식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최은실

09-R07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 ·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혜연 · 이용교 · 이향란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 · 방은령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II / 이종원 · 김영인

09-R10 아동 · 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 · 박형란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 · 설수영 · 원형중 · 설민신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청소년 진로 · 직업 지표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아동 · 청소년 활동 · 문화 지표 / 임지연 · 김정주 · 김신영 · 김민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 · 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 · 김희진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 · 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 이중섭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김진호・임성택・주동범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임영식・문호영・김남정・한지연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윤옥경・조남억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흥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욱・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 김기헌・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김낭향 (자체번호 09-R19-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헌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헌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 · 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 · 김영지 · 김희진 · 정익중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 · 이종원 · 천정웅 · 이용교 · 길은배 · 전명기 · 정효진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 · 서정아 · 길은배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철웅 · 방은령 · 송민경 · 송병국 · 오승근 · 유진이 · 조아미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헌 · 홍세희 · 설현수 · 유성렬 · 정익중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 · 정익중 · 박현선 · 천창암 · 박현동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 · 김지경 · 성윤숙

09-R26 한 · 중 · 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 · 임희진 · 김현철 (2010년 발간)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 · 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 · 진미정 (2010년 발간)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 · 김성희 · 박영숙 · 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 · 임희진 · 안선영 · 김지연 · 강현철 · 김광혁 · 김기남 · 박창남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 · 성윤숙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조혜영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 · 이종원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 · 박진규 · 박정배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 · 김미숙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헌 · 안선영 · 장상수 · 김미란 · 최동선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윤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헌・김지경・임희진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샵 (4/11)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가나다. 순)

이상균 가톨릭대학교·교수

정일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교수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교수

◈ 자 문 진 ◈

(가나다. 순)

김경희 부천새롬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김성경 성서대학교 교수

류제덕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

박영숙 지역아동정보센터 센터장

박현선 세종대학교 교수

송미숙 서대문해피존 시설장

연구보고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가정·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 786-299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 978-89-7816-806-9(93330)